

2000년 겨울호

언론중재



정기세미나

언론관련 법률의 쟁점과 개선방안

- 언론환경의 변화와 언론관련 법률의 쟁점별 검토
- '언론피해구제법' (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

국내논문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언론관계판례평석

반론보도의 범위와 한계

언론중재

2000. 겨울

차 례



계간/2000년 겨울호 • 제20권 • 제4호/통권77호
 인쇄/2000년 12월 25일 • 발행/2000년 12월 30일
 등록/1981년10월14일 등록번호/바-692
 발행인/박 영 식 • 편집인/이 병 훈
 인쇄인/김 행 슌
 발행/언론중재위원회 • 서울 중구 태평로1가25
 (프레스센터빌딩15층)
 전 화:732-6031~5, 732-6011~3, 725-0050,
 730-9498, 2001-7627
 FAX:730-9420, 730-5487, 732-7585
 www.pac.or.kr

식자 편집/태성인쇄기획
 인쇄/정화인쇄주식회사

정기세미나

언론관련 법률의 쟁점과 개선방안

- 5 • 언론환경의 변화와
언론관련 법률의 쟁점별 검토 • 강경근
- 34 • '언론피해 구제법' (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 • 양삼승
- 55 • 종합토론

국내논문

- 64 •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 이재진

언론관계 판례평석

- 83 • 반론보도의 범위와 한계 • 권형준

지방토론회

- 95 • 전북지방토론회
사회갈등 조정자로서의
언론의 역할 • 권혁남

언론보도와 인격권

- 104 • 포르말린, 피를 말린 • 박용규

위원칼럼

- 110 • 뉴미디어의 등장 • 송정제

해외동향

- 112

자 료

- 118 • 언론중재신청사례
- 132 • 최근의 국내언론관계판결
- 148 • 외국의 언론관계판결
- 158 • 외국신문평의회사례

언론과 법

- 162 • 언론소송과 판결

위원회 소식

- 166

언론법제 관련문헌

- 168

지상중계

- 170 • On-Line 중재상담실

- * 본지는 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한다.
- * 이 책에 게재된 원고의 내용은 당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 이 책은 방송위원회에서 조성한 방송발전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정기세미나 참석자 명단

- 발표자 (2)
 - 강경근 (순실대 법학과 교수)
 - 양삼승 (변호사)
 - 사회자 (1)
 - 윤재윤 (서울지법 부장판사)
 - 언론사 (19)
 - 김남기 (조선일보 사회부 차장)
 - 김장식 (대전매일 사회부 차장)
 - 김진원 (중앙일보 사회부 수석기자)
 - 김태수 (세계일보 사회부 차장)
 - 문희봉 (인천일보 사회부 차장)
 - 박병권 (국민일보 사회부 차장)
 - 박성권 (국제신문 사회1부 부장)
 - 박수연 (서울방송 법조팀장)
 - 박현수 (경인일보 사회부 차장)
 - 송우달 (한겨레 민권사회2부 부장)
 - 오주승 (광주일보 사회부 차장)
 - 유해석 (매일신문 사회2부 부장)
 - 윤현주 (부산일보 사회부 차장)
 - 이이표 (강원일보 사회부 차장)
 - 이인범 (대전방송 사회부 차장)
 - 중재위원 (25)
 - 이준희 (한국일보 사회부 차장)
 - 임경탁 (전북일보 사회부 차장)
 - 최충용 (문화일보 사회1부 차장)
 - 현문학 (매일경제 사회부 차장)
 - 박영식 (위원장)
 - 송정재 (부위원장)
 - 김해도 (서울 중재위원)
 - 송선우 (서울 중재위원)
 - 신동식 (서울 중재위원)
 - 최광일 (서울 중재위원)
 - 김재덕 (서울 중재위원)
 - 박인순 (서울 중재위원)
 - 이의자 (부산 중재위원)
 - 박기성 (대구 중재위원)
 - 김복규 (대구 중재위원)
 - 허광욱 (광주 중재위원)
 - 윤병구 (대전 중재위원)
 - 조균상 (대전 중재위원)
 - 이문옥 (대전 중재위원)
 - 박주봉 (대전 중재위원)
 - 차재영 (대전 중재위원)
 - 김건영 (경기 중재위원)
 - 한영달 (강원 중재위원)
 - 지규현 (강원 중재위원)
 - 허근녕 (충북 중재위원)
 - 이기수 (충북 중재위원)
 - 우종인 (충북 중재위원)
 - 장공자 (충북 중재위원)
 - 임경숙 (경남 중재위원)
 - 기타 (2)
 - 신영철 (대전고법 부장판사)
 - 전성오 (국정홍보처 국정홍보국 서기관)
 - 사무처 (15)
 - 이병훈 (사무총장)
 - 김굴근 (전문위원)
 - 노항기 (전문위원)
 - 김용주 (기획실장)
 - 오광건 (중재심의1팀장)
 - 권우동 (조사연구팀장)
 - 정희성 (조사연구팀 차장)
- 외 직원 8명
총 64명

<제1주제>

언론환경의 변화와 언론관련 법률의 쟁점별 검토

I. 언론의 시장 개방성 및 공익 투명성을 요구하는 언론환경의 변화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의 동력은 언론이다. 언론이 자유로운 시장의 질서와 더불어 소장(消長)을 같이 할 때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한 의사를 표출할 수 있다. 언론은 그러해야 하며 또 그렇게 실천되어야 할 과제로서¹⁾ 비록 그것이 진부한 '어젠다 (agenda)'라 하더라도²⁾ 한국의 언론상황에서는 절실한 요구다. 나아가 '시장질서 속에서도 공익성을 실현하는 언론'을 바라는 언론환경의 최근의 변화는 이러한 과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우선순위로 설정케 한다.³⁾

이러한 언론관련 법제를 실현하기 위한 논의의 한 축은 언론 시장의 주체인 언론수용자 즉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1) 언론개혁시민연대, "신문개혁, 시민이 나서야 한다" 토론회(2000.9.27~28)에서 김중배(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대표) "이런 토론회를 수없이 해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축적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새로운 출발점에 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2) 장재성(문화일보 편집부 기자) "기자들이 언론개혁에 대해 그렇게 무관심한 것은 아닙니다. 기자협회보에서 '언론개혁'이라는 시리즈를 시작하려 하면 반대하는 편집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신물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떠들어댔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3) 월간 "신문과방송"은 신문계 주요단체를 대상으로 '신문개혁'은 어떤 범위와 수준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해 '지상좌담'으로 엮었다. 6개 신문 관련 단체에 설문(개방형)을 보낸 결과 회수된 설문지는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를 제외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노동조합연맹의 공식의견과 한국기자협회 박동수 부회장, 한국언론학회 방정배 회장 등 4부였다. 이들의 지상좌담, '신문개혁' 어떻게 해야하나, 『신문과방송』(1999년 8월) 참조. 또한 언론환경의 변화에 다른 법제 논의의 쟁점으로서, 홍기선은 '방송 개혁의 방향'에 대하여 왜 방송을 하는가?(편성), 누가 방송을 맡는가?(송신자), 방송운영 조건은?(제도) 등으로 나누고, '방송 개혁의 방법론'으로서 개혁주체의 아마추어리즘 배제, 논의

강 경 근

송실대 법학과 교수

- 고려대 법학과 및 동 대학원 법학 박사
- 송실대학교 법학연구소장
-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서명법 제정위원
- 현 송실대 법학과 교수
- "프라이버시의 침해와 면책사유" "편집권독립 법제화의 논리와 실제" 외 다수

록 하기 위한 '언론구조' 관련 법제의 영역이며, 다른 한 축은 인터넷 환경 속의 언론시장 속에서 변용되는 '언론매체' 관련 법제의 추적에 있다.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언론구조 관련 법제는,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라는 외적 언론의 자유를 실현하는 법제의 검토도 필요하겠지만⁴⁾ 최근의 언론환경의 변화는 오히려 언론 자체의 내부적인 의사 형성을 민주적으로 하기 위한 내적 언론의 자유 및 이를 위한 외적 요건 등을 포함하는 편집권, 언론사 소유 및 경영의 개방성·공개성 등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⁵⁾ 즉 단체나 법인을 형성하여 언론의 자유를 향유하고 있는 '매체로서의 언론'은⁶⁾ 언론의 자유의 핵심이 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한다고 하는 공동체적 기능을 이행함에 있어서 법·제도적 제한과 사실상 제약을 공히 받고 있다.⁷⁾

특히 그 내부적 의사결정 즉 매체로서의 논

조를 실질적으로 형성할 수 있게 하는 '편집·편성'(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편집'으로 한다)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부심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매체로서의 언론을 운영하는 단체 내지 법인'(즉 언론사, 이하에서는 '언론사'라는 말로 표현한다)의 소유구조와 연결되면서 언론사 경영의 개방 및 투명성에까지 그 파급효과가 미치고 있다. '발행이나 퇴출이나'(publish or perish)의 긴장관계 속에서 점증하는 시장에 대한 언론의 부하(負荷)는, 언론이 시민사회의 형성과 민주적인 공동체의 구성 기능보다는 시장의 짐을 짊어진 언론사 사주 내지 경영자 대(對) '내적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편집인간의 긴장관계를 가져온다. 언론환경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라는 전형성을 넘어서, 언론 기능의 최소한을 법제로써 보장받을 수 있는 언론제도인 편집권의 독립과 이에 관련되는 한도에서의 언론사 지배구조의 검토라

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들고 있다. 홍기선, "방송개혁의 방향과 방법", 한국언론학회 제99-1차 쟁점과 토론, 『통합방송법과 방송개혁』, 1999.2.9(화).

- 4)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언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 조항은 물론 전통적인 의미의 언론의 자유 즉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정하는 규정이다. 그러한 의미에서의 언론의 자유는 외적 표현의 자유의 한계문제로 논의되는 찬양·고무·동조나 이적성에 관련한 국가보안법 개폐의 법제 논쟁이라든지 음란물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둘러싼 논의로 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위 헌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과 더불어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헌법 제21조제2항)는 규정의 해석영역에 속한다.
- 5) 최근에 이러한 논제를 다룬 논문으로서 김서중, "한국의 신문 개혁을 위한 법률개정 제안", 『세계언론법제동향』, 2000년 상권 : 주동황, "법·제도 지원은 언론탄압이 아니다", 『신문과방송』, 2000년 6월 : 김주연, "제도개혁으로 내부동력 끌어내야", 『신문과방송』, 2000년 6월 참조.
- 6) 매체로서의 언론은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신문·통신·잡지'(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제1조) 그리고 '보도·논평 또는 여론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에 의하여 문자 등의 정보를 보거나 듣거나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된 전자적 기록매체로서 동일한 제호로 계속 제작되는 간행물',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제책되지 아니한 간행물(동법시행령 제1조의2 제1,2,3호) 그리고 '방송'(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 방송법 제2조) 등을 말한다.
- 7) 이재경은 언론이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내적인 억압, 즉 언론사 조직내의 '비민주적인 통제체제'와 '자본의 압력'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한다. Lee, Jae-Kyung, "Press Freedom and Democratization: South Korea's Experience and Some Lessons," *Gazette*, 56(1997), p.135 참조.

헌법이 규정한 언론 기능의 핵심은
편집의 자유와 독립

고 하는 문제의식을 낳게 한다.⁸⁾

언론의 자유를 민주국가의 존립·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으로 볼 때(헌재 1993.5.13, 91헌바17 결정), 국가는 자유로운 언론을 위한 제도적 보장 즉 언론의 내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제를 제정하여야 할 헌법상 책무를 지며, 그 내용은 헌법 제21조 제3항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의 이해에 달려 있다. 방송·통신의 ‘시설기준’을 법률로 정한다든지 신문의 ‘기능’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것은, ‘객관적 질서로서의 언론제도’(헌재 1991.9.16, 89헌마165 결정)를 형성·유지하기 위하여 국가는 법률에 ‘의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함을 특히 지적한 것이다. 주목할 사항은 통신과 방송의 시설기준에 관하여서는 법률의 유보영역에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시설기준에 대해서가 아니라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고 한 점이다. 이때 그 ‘기능’의 의미는 언론의 내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조항에서 말하는 신문이라는 의미는 매체로서의 언론 전체를 가리키는 광의의 의미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겠다. 즉 신문이라는 매체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을 포함하는 언론매체 전체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언론의 내적 자유를 실현하는 의무를 법률제정권자인 국회에게 부여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한다면 위 조항에서는 특히 ‘방송·통신’ 등의 언론매체의 경우에 한정하여서만 그 시설기준을 특정하여 법률로 보장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리라 본다.

그렇다면 헌법이 규정한 언론의 ‘기능’의 핵심은 편집의 자유와 독립이며, 그 외연은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주에서의 언론사 소유구조 및 경영의 개방과 투명성 그리고 언론이 향유하는 자유에 상응한 언론의 책무를 정함에⁹⁾ 있다. 특히 언론의 책임에 관계되는 정간물법의 내용 중 반론보도의 예외사유 확대의 가능성이라든지, 현실적 악의의 판례 이론과 징벌적 배상론의 국내 법리에의 적용 문제 그리고 선거기사심의를 위한 별도의 규

8) 입법청원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청원자: 언론개혁시민연대)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권력과 유착해 성장을 거듭한 우리 나라의 언론기관, 특히 신문기업들은 정치권력의 통제가 느껴지지자 스스로 권력기관이 되어 갔다. 이들은 국민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거나 전달하는 일보다는 신문지면을 사유화하여 자신들의 특정한 견해를 마치 지배적인 사회여론인 것처럼 전파해 왔다. 질적 차별성이 없는 신문들이 구독 판매보다는 광고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한 채, 발행부수 등 기본적인 시장 정보마저 감추고 속이면서, 비윤리적, 낭비적 출혈경쟁을 일삼고, 기업주의 이해에 따른 보도, 논평을 유포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일이 벌어져 왔다. 특히 재벌이나 족벌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이해관계에 근거한 집단들이 언론 기업을 전적으로 소유, 지배하면서, 이들 언론은 언론기관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공정성과 객관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언론사 소유주의 이해만을 추종하는 사적인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의 공공성 회복을 위하여, 진정한 언론 자유의 유지를 위하여 가장 기본적이고도 최소한의 장치로서, 언론에 대한 무제한적인 사적 독점과 재벌·족벌의 배타적인 소유·지배를 용인하고 있는 현행 정간법을 개정하여 재벌, 족벌에 의한 신문의 사적 지배를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9) 이는 헌법 제21조 제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에서 표현되어 있다.

정을 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의 적부 등은 결국 언론의 자유와의 상관관계에서 그 '한국적'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라 하겠다.

끝으로 인터넷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언론 매체 관련 법제는 인터넷 환경에서의 언론의 위치라고 하는 원론적 문제와, 정보통신매체를 개인의 의사표현의 수단으로만 이해할 것인가 또는 이에서 나아가 매체로서의 언론으로 파악할 것인가,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업무의 언론으로서의 성격 인정 여부¹⁰⁾ 그리고 전자정보공개의 문제(다만 이 문제는 본고에서 생략한다) 등으로 볼 수 있다.

II. 편집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제

1. 기본권으로서의 편집권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1조 제1항)라는 언론의 자유의 본질은 인간 개개인의 "정신적 사유·행태의 외적 표현의 자유의 보장"(헌재 1992.2.25, 89헌가 104 결정)이라고 하는 '외적 언론의 자유' 즉 '사회' 속의 개개 '시민'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출하고 인격을 실현할 수 있게 하여(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적 의미)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함에 있지만, 중요한 또 다른 본질은 '내적 언론의 자유'에 있다.

내적 언론의 자유는 자유로운 언론을 형성하기 위한 '제도'를 가능케 하는 기능의 '최소한'을 법·제도적으로 언론의 자유 속에 설정하는 것, 즉 언론제도를 언론 스스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설정을 의미한다. 이때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1조 제1항)를 전제로, 시장의 지배로부터 언론이 제도로서 존립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동 제3항) 등의 규정은 내적 언론의 자유의 근거 조항이다. 즉 헌법 제21조 제3항에서 정한 객관적 질서로서의 언론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론사존립의 보장, 자본으로부터의 언론의 독립 즉 경영으로부터의 편집의 독립 등을 통하여, 언론으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대항권력'(contre-pouvoir)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언론의 자유를 정한 헌법의 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자유로운 언론제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편집인 등이 권리로서 주장하는 '편집권'은 법률에 규정되었기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상 권리가 아니라,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즉 편집권은 언론의 자유가 지니는 성격 중 특히 객관적 가치질서로부터 나오는 언론의 '내적 자유'를 실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형성하는 기본권이다. 편집권을 기본권으로 구성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10)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ISP가 서비스하는 인터넷 가상공간에 올려지는 명예훼손적 메시지는 일반 사용자(user)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 명예훼손적 메시지가 발생한 상황에서 ISP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 법적 적용이 달라진다. 단순 배포자(distributor)로서 간주할 것인지, 아니면 메시지에 대한 통제 관리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일부 책임을 져야 하는 편집자(publisher) 모델을 적용할 것이냐가 그 동안 주요 법적 논쟁이 되어 왔다." 유의선,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위법성 구성 및 조각사유 준용에 관한 연구 - 형법 307~310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43-2호, pp.179~209, 1998년 겨울호 참조.

편집권은 언론의 내적 자유를 실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형성하는 기본권

내용은 언론사 사주나 경영자의 영업의 자유와 경쟁하는 관계에서 언론이 '언론이기 위하여' 유지하여야만 하는 범주 내지 언론수용자의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 등의 기본권으로부터 파생되는 반론보도청구권이나 정정보도청구권 등 권리와 상관계로부터 정하여진다. 즉 편집권의 기본권으로서의 내용은 언론이 국가권력은 물론 언론사 사주나 경영자 그리고 언론수용자인 국민으로부터 받게 되는 직·간접적인 여러 변수들이다.

2. 편집권의 물적 독립 - 편집의 전문성 보장

편집권의 핵심은 편집의 물적 독립에 있다. 편집권의 물적 독립이란 편집 자체의 독립을 의미한다.¹¹⁾ 편집 자체를 둘러싼 구체적 문제는, 매일 매일의 기사 작성과 그 편집 및 발행 등에 있어서 편집의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편집국장 내지 부장과 일선 기자들 '간(間)'의 기사 선택 및 사실 보도에 있어서의 취사에 대한 판단의 시점의 차이를 편집의 범주로 포섭하여 조정할 수 있는 방식의 선택에 있다. 물론 언론사 발행인이나 사주 등이 보도될 내용의 취사선택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이에 관련한 인사권을 행사하며 이러한 행태에 권력이 개재되어 있다면, 이는 편집 자체의 권한을 국가가 직접 또는 언론사 사주의 경영권 행사를 통하여 개입하는 것이 되어, 편집의

물적 독립을 침해한다. 이 경우, 국가가 권력으로써 개입한 사실이 없을 때에도 편집권은 당연히 침해되는 것일까.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정간물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은 '발행인은 종사자의 편집 및 제작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등의 발행인의 편집 '보호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이를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경우 편집에 관한 일련의 행위가 '반드시' 발행인의 개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발행인 등의 경영자는 그의 경영권 즉 인사권의 행사를 그 '나름대로' 편집의 보호의무라고 판단한 것과 '함께' 고려하여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이며, 그러한 경우 표면상 위 법 조항이 편집의 물적 독립의 의의에 관련하여 주는 법의(法意)는 언론 경영자의 '영업의 자유' 내지 '재산권'과 언론종사자들의 '편집권' 간 상충관계의 조정문제가 된다. 이러한 해석을 피하려면 정간물법 제6조 제2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 조항은 경영자 등에 의한 편집권의 '직접적인' 개입금지라는 물론 언론사 경영자 등의 경영권행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나 명목상 언론종사자들의 편집권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일 역시 편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다.

이러한 엄격해석은 정간물법 제6조 제2항의 존재의의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발행자 등의 편집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배제함으로써 같

11) 1996년 4월 8일, 1957년 4월 7일 선포한 '신문윤리강령'을 다시 채택하는 형식으로 '신문윤리강령'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제정하였다. 즉 신문윤리강령은 제3조에서 언론의 독립을 그리고 제4조에서 보도와 평론의 공정성을 규정하고,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1조에서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실현하기 위해 부당한 억제와 압력을 거부해야 하며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하며, 제10조에서는, "편집자는 사내외의 압력이나 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개된 편집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한다"고 하면서, 표제의 원칙(제1항), 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제2항), 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제3항), 기고기사의 변경금지(제4항), 기사의 정정(제5항), 관계사진 게재(제6항), 사진조작의 금지(제7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은 조문에 있는 '편집활동의 보호'라는 문언을 과도하게 제한해석하는 결과로 되어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택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나올 수 있는 해석적 대안은, 편집의 권한을 편집종사자들에게만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경영자 등에게도 인정하되 이를 '간접적', '보조적', '열위적(劣位的)' 권한으로만 보아, 편집을 둘러싼 갈등을 편집인 등의 편집종사자들과 발행인 등 경영진간의 '편집권' 대 '경영권' 간의 충돌로 해석하여 그 접점을 찾는 것이다. 발행인 등에게 간접적이거나 편집의 권한을 인정할 경우, 편집종사자들과 발행인 등간의 편집자체에 대한 갈등은 '편집권'이라는 기본권을 '각자의' 입장에서 국가에 대해서 주장하는 형태가 된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논리는, 언론의 편집·편성의 자유를 언론의 실제 제작자인 편집인·편성인 내지 그 종사자들에게 전권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언론의 자유와 언론사 운영자가 향유하는 재산권 내지 영업의 자유간의 상충관계로써 푸는 과제로 상정하는 경우다. 하지만, 그것은 언론사 사주나 경영자 등은 경영권만을 전속적으로 부여받을 뿐 편집에 대한 발언권이 없다는 논리가 되어, 현재의 정간물법상으로는 실재하기 어려운 논리다. 결국 편집의 권리는 편집인 등 편집종사자들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된다기 보다는 경영자 등과 상당 부분 경합하여 지닌다고 보는 것이, 현행 정간물법에 기초한 실제 문제의 해결에서 합리적이다.

이러한 추론이 의미하는 바는, 편집권은 언론사 존립이나 영업 등의 측면과는 별개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논하여질 사안으로서 편집종사자들의 편집에 관한 '일'(working)이 경영자

등이 편집에 관하여 간접적이거나 행하는 권한보다 본질적이며 전문적인 사항이라는 것이다. 마치 국가의 영역에 있어서 사법권의 독립이 '재판'의 전문적 성격에 기인하듯이 또는 국회의 자율권이 인정되듯, 나아가 사회영역에서 대학과 같은 지식집단의 자율성이 보장되듯, 편집행위의 '전문성' 내지 '제1차적 판단권'은 편집종사자들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편집을 매일같이 행하는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경영자 등이 언론사의 자본적 존립을 위한 경영권행사를 하면서도 명목상으로는 정간물법상의 '편집의 보호'라는 이름하에 편집 자체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관련한 인인권행사가 있더라도, 정간물법 제6조 제2항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항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정간물법 제6조 제2항의 편집권에 관한 규정은, 언론사 운영은 재산권행사 내지 영업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재산권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며(헌법 제23조) 영업의 자유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제한된다는 논리와 함께, 언론의 자유의 영역에서 이러한 생각이 '조야(粗野)하게' 표현된 것이어서, 편집권의 기본권적 성격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간물법 제6조 제2항 "발행인은 종사자의 편집 및 제작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개괄적 조항은 편집권의 물적 독립을 위한 명확한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법제적 과제다. 이 조항은 편집권의 귀속 주체인 편집인이 주체가 되어 편집을 독립하여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편집 과정에서 갈등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발행인으로 하여금

편집권의 독립문제는 기자들의 전문성,
 기자직의 경력직화로 대변되는
 언론인의 자기 고백 영역

편집권 독립의 보장 주체로 규정하여, 편집의 보호는(적어도 그 보호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발행인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는 한) 현실적 측면에서는 발행인의 자유로운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취지에서, 위 조항은 '편집인 등 그 종사자는 독립하여 편집 및 그 제작 활동을 행한다' 등으로 수정해야, 편집인과 편집종사자들의 편집 '권'은 발행인 등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지니는 기본권적 '권리'로 인식된다. 이러한 편집권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선택과 그 당부의 판단은, 그 판단자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실현되든지 편집종사자들과 발행인간의 내적인 '타협의 장'에서 결정되든지 할 것이다.

다만, 편집권이라는 권리를 둘러싸고 편집인 등 편집종사자들과 발행인간에 갈등을 겪고 있다면, '헌법의 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편집권의 구체적인 판단과 선택에 있어서는 편집에 실질적으로 직접성을 지니고 있는 편집종사자들의 의견이 선(先)이 되는 우(優)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는 결국 편집기자 등의 '전문성' 여하에 관련된다. 편집인 등 편집종사자들이 편집의 독립권을 발행인 등에게 행사하기 위하여 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무엇인가. 편집에 종사하는 기자들 역시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근로권과(헌법 제32조) 근로 3권을(헌법 제33조) 행사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함으로써 편집의 독립에 관한 내용을 단체협약의 체결에 의하여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관련한 노동쟁의를 하도록 하는 것일까, 아니면 발행인 등과 함께 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러한 기능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결론은 정간물법 개정을 통하여 반영될 것이다. 정간물법은 제6조 제1항에서 '발행인은 노사협조의 정신에 따라 종사자의 근무환경·처우 기타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근무환경·처우 기타 복리증진'의 일을 같은 조문의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한 '편집 및 제작환경'의 일과는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정간물법의 취지라면, 편집권에 관한 문제는 노사관계에 임하는 순수한 노동법의 시각에서 보고 있다는 단정은 하기 어렵다.

편집권의 독립 문제는 기자들의 전문성, 기자직의 경력직화로 대변되는 언론인의 자기고백의 영역이다. 이는 결국 언론을 매체로서 운영하는 경영자 내지 사주에게, 언론사를 재산권의 객체인 자본제적 '상품'으로서가 아니라 '공공재'로서 파악하도록 하여, 학교의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교육권 실현자로서의 측면과 마찬가지로 언론의 경영자 역시 헌법상 '언론 자유의 실현자로서' 인식되도록 하는 것이다. 때문에 그 구체화를 위한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핵심은 편집의 전문성이라는 '물적 독립'에 있다. 이는 발행인 등이 생각하는 편집의 선택보다는 편집종사자들의 그것에 더 많은 전문성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편집과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경영자의 인사권 행사는 '간접적이나마' 편집권 독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임을 부인할 수 없고 따라서 편집권독립을 위한 '인적 보장'을 요구하지만, 엄격하게 본다면 이는 편집의 '물적 독립'의 문제와는 다른 시각에서의 '노동의 문제' 내지는 '자본의 논리'일 수 있다. 그것은 어느 집단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편집의 물적 독립을 확립하기 위한 요체는 편집과정의 공개와 실명화다. 사실도 기명화 되는 것이 이에 합치하지만, 최소한 편집과정은 물론 편집회의가 제한된 범위나마 공개되어서 기사결정에 대한 이의권을 인정하여 '소수의견'의 표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 편집권의 목적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전제가 된다. 왕은 모든 것의 위에 있지만 신과 법보다는 아래에 있다는 명제는 법은 배워야만 알 수 있는 '인공적인 이성' (artificial reason)인데 왕은 이를 배운 바 없으며 따라서 법에 대한 1차적인 판단권자는 이를 배워서 알고 있는 법관이라는 것이, 사법권의 독립을 쟁취한 영국에서의 논리였다. '편집'에 대해서도 그러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편집권의 물적 독립을 위한 법제는 최소한 방송법 제4조의 규정과 같은 정도의 규정을 정간물법에서도 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3. 편집권의 인적 독립 - 편집인과 경영자의 상호독립

편집권의 인적 독립은 편집에 관한 전문적 종사자의 언론사 경영자로부터의 독립이다. 이러한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유형은 첫째, 계약법상 근로계약의 양쪽 당사자의 입장에 따른 '자유로운 의사' 로써 체결하는 계약관계다. 하지만 이는 헌법과 정간물법 등의 법률이 설정한 언론종사자들의 법률관계에 반드시는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 당사자가 '협약을 체결하는 관계'에 따라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전제의 설정이 가장 많이 알려진 경우이고 실효성도 크다. 다만 우리 근로 관계법이 언론매체 기업의 경우에도 적용될 만한 신축

성이 있는나의 여부가 문제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을 기초로 언론종사자들을 특별한 범주 집단으로 보아 그 '일터의 조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방식이 선호된다. 다만 언론종사자들의 언론노조활동에 의한 노사간의 단체협약 체결로 경영진에 의한 사람의 채용과 급료의 책정권을 노동조합이 회수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경제질서에서 보장되는 재산권 구조상 그 한계에 있으며, 사원 지주제 역시 이러한 부담감을 말끔히 제거하지 못한다는 점을 전제로 현재의 언론사 경영자와 편집인간의 관계를 정한 법제 정비를 검토한다.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신문·통신·잡지·기타 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정간물법(제1조)에서 말하는 정기간행물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이며(제2조제1호), 발행인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대표자이고(제2조제10호), 편집인은 '발행인이 선임한 자로서 정기간행물의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다(제2조제11호). 편집인은 발행인이 선임한 자이기에 인사에 있어서 발행인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면서도, 정기간행물의 '편집에 책임을 진다.' 이와 같이 편집인이 편집에 대하여 지는 '책임'이 어느 범위의 어느 정도까지 어떠한 책임인가에 대하여 정간물법은 '발행인은 종사자의 편집 및 제작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규정만을 두어(제6조제2항), 발행인의 '편집보호' 조항은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강령적 성격에 그치게 하고 있다. 위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발행인을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에 처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은(제22조, 제23조, 제24조 참조), 이를 더욱 말해준다.

편집인이 편집의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법적 보장을
받고 있다고 보기 힘들어

정간물법에 의하면 편집에 대한 책임은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지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제기하는 반론보도 청구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하 "언론사"라 한다)를 상대방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6조제1항), 구체적으로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대표자'인 발행인과(제2조제10호)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편집인이다(제2조제11호). 따라서 위 발행인과 편집인이 각자가 지는 책임에 상응한 권한을 자기의 영역 내에서 독자적으로 지니고 있을 때, 규범의 체계조화성 내지 책임의 개별화라는 근대 법원칙에 합치된다. 이때 편집인이 편집의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법적 보장을 받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정간물법의 규정이다.¹²⁾ 편집인이 그 인사에 있어서 언론사 즉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부터(이는 개인인 자연인도 될 수 있겠지만 대개는 법인이다. 정간물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법인이 아닌 자는 정기간행물 중 일간신문이나 일반 주간신문 또는 통신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개인이나 사기업의 형태로 존립하여 있고 편집인이나 기자들은 그러한 언론사에 고용되어 있다는

법적 '신분관계'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 즉 편집인과 언론사와의 신분적인 노와 사의 관계는 당연한 전제이기에 굳이 법에서 규정할 어유는 없다. 그렇다면 정간물법 제2조 제11호에서 편집인을 굳이 '발행인이 선임한 자'라고 못박은 것은 위와 같은 편집인과 언론사간의 노사의 관계를 새삼스럽게 선언한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우선 문언상으로도, 편집인을 선임하는 자는 '언론사'(즉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가 아니라, '발행인'(즉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대표자')인 것이다. 만일 편집인의 선임자가 언론사로 표현되었다면, 언론사라는 문언에는 발행인뿐 아니라 편집인도 포함되므로, 편집인은 언론사의 대표자인 발행인에 의해서만 선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결국 이는 사주이기도 할 것이다. 정간물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발행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다른 이사나 임원을 발행인으로 할 수 있다), '스스로' 선임 행위를 행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편집인의 '인사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예컨대 편집기자들에 의한 선임 등)의 방식이 적어도 법제상으

12) 이러한 점은 방송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 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제2조제1호), '방송편성책임자'는 방송편성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자로서(제2조 제23호) 방송편성의 자유를 보장받으며(제4조 제1항), 방송의 공적 책임(제5조) 및 공정성과 공익성(제6조)에 기초하여 '방송순서의 편성·제작이나 방송국의 운영에 관하여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제4조 제2항). 그렇지만 이러한 규정을 위배한 방송국의 장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의 규정이 없다는 점(제9장 제105조~제108조), 반론보도청구의 상대방이 방송사업자라는 점 등은 정간물의 경우와 같다(제91조 제1항). 다만 방송의 경우는 '방송위원회'가 설치되어(제3장 제20조~제42조), '방송의 운용·편성의 기본정책'을 다루도록 하는(제27조 제1호) 차이가 있다.

로는 가능하다. 결국 정간물법 제2조 제11호 중 '발행인이 선임한 자'라는 문언은 삭제하든지 또는 '언론사가 선임한 자' 내지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 고쳐야 한다.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대표자인 발행인이 선임하지 아니하고 편집부의 기자들이 선거로써 선출하거나 언론사 노조원들에 의한 선출 등에 의한 편집인의 취임은, 추후 발행인에 의한 형식적인 선임행위가 없는 한, '엄격히 해석하자면' 정간물법에 의한 편집인은 아니다.¹³⁾ 정간물법의 위 규정 자체가 발행인 또는 언론사 사주가 지니는 정간물에 대한 소유권 내지 영입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과잉으로 손상하는 조항으로 단정될 여지는 적기 때문이다.

편집인의 인적인 독립은 그의 면직에 있어서도 발행인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때 완성된다. 정간물법은 임명권자인 발행인의 재량에 속하도록 하고 있다.¹⁴⁾ 임법론상으로는 그 면직을 행함에 있어서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명백한 문언으로써 열거된 사유가 아니라면 발행인 등은 일정한 임기 동안에는 그를 그 직에서 물러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들 필요는 있다. 이는 논리적으로 편집인 등의

임기 규정(예컨대 '2년' 또는 '2년 이내' 등으로 하는 조항)을 동시에 요구한다.

4. 편집권 독립의 법제와 개정안의 예

현행 법제

•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기능의 보장) ① 발행인은 노사협조의 정신에 따라 종사자의 근무환경·처우 기타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발행인은 종사자의 편집 및 제작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 방송법

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 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3) "편집국 구성원 즉 기자들이 국장임면에 어떻게 참여하느냐를 유형별로 보면 대략 6~7개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직선제→한겨레신문, 직선제+중간평가제→경향신문, 복수추천제→부산일보, 임명동의제→중앙일보, 임명제+제한적인투표제→동아일보, 임명제+중간평가제→내외경제, 사전임명동의제→연합통신이 최근 채택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어느 제도가 보다 이상적이거나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내리는 것은 아직 시행경험이 일천한데다 각 회사마다 처한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국외자들에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강신철, "우리 나라 일간지의 편집국장임면제도", <http://www.ssmmedianet.org/archive/sub/spe16.html>

14) 홍수원 편역, "발행인과 편집인, 항상 대립하는가? 신문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긴장관계", *Columbia Journalism Review*, 2000년 5/6월호 "신문사의 경영환경이 바뀔 때 따라 발행인의 역할도 변하게 되고 그에 따라 편집인의 구실 또한 달라지게 되었다. 헤드헌팅사의 위커는 "마케팅이 편집인에게 이제 더 이상 추악한 용어가 될 수 없다."면서 "이를 외면하고 원칙을 고수하는 편집인은 점차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새로운 기업문화 속에서 편집인과 편집국이 경영쪽의 요구에 밀리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발행인과 편집인의 관계가 기껏 불평등한 파트너십에 불과하다고 혹평한다. 데이비드 홀은 "흔히 발행인이 편집인에게 모든 재량권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얼토당토한 소리다."라고 주장한다. 발행인에게는 편집인을 해임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신문을 이끌어 가는 사람은 바로 발행인이라는 것이다."

현행 정간물법상의 편집인 규정,
즉 '발행인이 선임한 자'라는 문언은
삭제하거나 '언론사가 선임한 자' 등으로 고쳐야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개정청원안¹⁵⁾

현행 법령	개정안
<p>제5조(연수) ①발행인은 종사자의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제도를 설치·운영한다/ ②발행인은 공동으로 종사자의 연수를 위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제6조(기능의 보장) ①발행인은 노사협조의 정신에 따라 종사자의 근무환경·처우 기타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발행인은 종사자의 편집 및 제작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91·12·14, 95·12·30] 1. 일반일간신문은 타블로이드 2배판 4면 기준의 신문지를 시간당 2만부이상 인쇄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운전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인쇄시설 2. 특수일간신문 또는 외국어일간신문은 운전기 1대이상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인쇄시설 3. 통신의 발행에 있어서는 전파법에 의한 무선통신시설/ ④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에의하여 등록된 인쇄소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인쇄시설(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인쇄소의 시설에 한한다)을 보유하고 그 인쇄시설만으로써 당해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95·12·30]</p>	<p>제5조[제6조와 통합] (기능의보장) ①발행인은 종사자의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제도를 설치운영한다.</p> <p>②발행인은 공동으로 종사자의 편집 및 제작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p> <p>③발행인은 노사협조의 정신에 따라 종사자의 근무환경 처우 기타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④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인쇄소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인쇄시설(출판사 및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인쇄소의 시설에 한한다)을 보유하고 그 인쇄시설만으로써 당해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7조[신설](편집규약) ①일반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인은 편집위원회가 제정한 편집규약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개정할 때에도 같다.</p> <p>②편집위원회는 사용자와 취재 또는 편집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사용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은 발행인이 위촉하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은 취재 또는 편집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되 이들의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위촉한다.</p> <p>④편집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편집의 공공성과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2. 편집위원회의 구성, 권한, 조직,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운영에 관한 사항 3. 편집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공정성의 보장에 관한 사항 4. 편집의 기본적인 원칙 및 지침에 관한 사항 5. 편집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양심에 반하는 취재 또는 제작에 대한 거부권에 관한 사항 6. 편집의 기본원칙에 합당한 취재 또는 제작 과정에서의 부당한 내부 통제 또는 간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사항 7. 편집 취재와 관련한 윤리에 관한 사항 8. 편집위원회의 규칙 제정 등에 관한 사항 9. 편집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 편집방향의 심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p>⑤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편집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발행인에 대하여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p>

15)〈'편집규약' 조항 신설제정이유〉 언론의 편집에 대하여 일정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 현행의 실효성 없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이 제7조를 신설하여 편집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Ⅲ. 언론사 소유구조 및 경영의 개방·투명성 관련 법제

1. 언론사 지배구조 관련 현행 법제

헌법 제21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방송·통신의 시설기준' 법정주의는 방송사나 통신사의 시설의 기준을 통한 그 지배구조의 내용을 법률로 정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여기의 시설기준은 방송, 통신을 운영함에 소요되는 물적 설비의 소유 및 보유관계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하겠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언

론사의 소유구조와 그 영업구조를 둘러싼 현행 법제의 내용을 일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언론사 소유구조를 규정한 법제의 예'는 '방송법'이 대표적이다.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¹⁶⁾ 제2항은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고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법 시행령 제4조(소유제한의 범위 등)¹⁷⁾에서 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 16) ①방송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3.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에 출자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규모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이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④대기업과 그 계열회사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⑤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⑥종합유선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⑦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⑧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⑨정당(정당법에 의한 지구당을 포함한다)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⑩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 대상자에는 그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⑪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17) ①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 중에서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한다. ②법 제8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라 함

방송법과 달리 정간물법은
언론사 소유구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3.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에 출자하는 경우” 등은 이에서 제외하고 있다. 더불어 제3항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이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고 하여 소위 재벌언론을 배제하고, 제4항에서는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고 한다. 이밖에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의 상호 겸영이나 주식 또는 지분 소유의 금지 등도 정하였다.

그런데 신문 등 정기간행물에 관련된 내용을 법제화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은 언론사 지배구조의 문제에 있어서 방송 등과는 달리 겸영금지 내지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¹⁸⁾ 소유구조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 제21조 제3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정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매출액(결산상 매출액 중 방송광고수입, 방송수신료수입, 방송프로그램판매수입 등 방송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에 한한다. 이하 같다)과 당해 방송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을 합한 매출액이 전체 방송사업자의 매출액 총액 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3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다만, 법 제8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방송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위성방송사업자가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③법 제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이하 “겸영”이라 한다)하는 경우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3. 전송망사업자(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한다)가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④법 제8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매출액과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을 합한 매출액이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매출액 총액 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3을 초과하는 경우 2.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⑤법 제8조 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특정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과 당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을 합한 매출액이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 총액 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3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은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8) 제3조(겸영금지등) ①일간신문(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 또는 외국어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통신은 상호겸영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이하 “무선방송”이라 한다)을 겸영할 수 없다. / ②일간신

항이 방송·통신의 '시설기준'을 정하라는 것과는 달리 신문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보호하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물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문의 기능'을 단순히 신문 등을 포함하는 정기간행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언론매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본다면 위 정간물법에서 신문사 등의 소유구조를 정하는 법률이 위헌은 아니라 하겠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신문의 '기능'이라고 한 점에 비추어 전통적으로 의사표현의 자유 즉 외적 언론의 자유를 실현하는 매체로서의 신문이 지니는 '자유로운 언

론'의 구성요소적 성격이라든지 그와 함께 논의되는 자유로운 편집의 권리를 통한 언론사 자체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의 실현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측면은 광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예를 들어 방송법은 방송사 등의 광고방송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에¹⁹⁾ 반하여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를 정하는 정간물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이다.

2. 언론사 지배구조 관련 법제의 개정안 예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청원²⁰⁾

현행 법령	개정안
제3조(경영금지등) ①일간신문(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 또는 외국어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통신은 상호경영할	제3조(경영금지 및 소유지분제한 등) ①일간신문(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 또는 외국어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통신은 상호경영할 수 없으며, 방송

문·통신 또는 무선방송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소유하는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계열의 기업이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른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 또는 계열기업은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 ④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중 그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외국자금의출연)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 의 정부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연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등록신청시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 제73조(방송광고 등) ①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 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②방송광고의 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당해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은 이를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④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 하여야 한다. ⑤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 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소유집중제한 개정 및 신설 이유> 사실상 대기업에 의한 신문사의 전면적인 지배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근본적으로 신문, 통신, 역시 방송과 마찬가지로 재벌의 여론지배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으므로 방송과 신문, 통신에 차이를 두어야 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재벌 신문 못지 않게 그 폐해가 심각한 족벌의

헌법 제21조 제3항은 방송·통신의 경우 시설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문의 경우 그 '기능'을 보호토록 규정

현행 법령	개정안
<p>수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이하 "무선방송"이라 한다) 또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이하 "종합유선방송"이라 한다)을 경영할 수 없다.[개정91·12·14.95·12·30]</p> <p>②일간신문·통신·무선방송 또는 종합유선방송을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1이상을 소유하는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계열의 기업이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른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1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개정95·12·30]</p> <p>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 또는 계열기업은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p> <p>④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 사원)중 그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친족관계나 처의 삼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그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p> <p>⑤공보처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89·12·30]</p> <p>제4조 (외국자금의 유입금지) 누구든지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위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로부터 기부금·찬조금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상의 출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외국의 교육·체육·종교·자선 기타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부터의 출연으로서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9·12·30]</p>	<p>법에 의한 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를 경영할 수 없다.</p> <p>② [신설] 누구든지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20%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p> <p>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 또는 계열기업(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할 수 없다.</p> <p>④현행과 같다.</p> <p>⑤[신설]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그 초과 주식 또는 초과지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p> <p>⑥[신설]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p> <p>⑦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제4조(외국자금의 유입금지) 생략</p> <p>제6조[신설](발행부수등의 공개) ①일간신문이나 일반주간신문, 통신의 발행인은 총발행부수와 판매부수, 광고수입, 구독료수입 내역에 관한 보고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p> <p>②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인은 총 발생주식과 자본내역 그리고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의 개인별 내역에 관한 보고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p> <p>③기타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제6조 ①~②항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5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p> <p>⑤ 문화관광부장관은 개인이나 단체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요청할 경우 보고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법절차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p>

3. 언론사 소유구조 및 경영 관련 법제의 개선의 시점(視點)

언론사 지배구조를 법률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의 질서 속에서 언론이 지니는 기능과 영업의 자유를 생각할 때, 반드시 헌법질서에 합치하는 일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일간신문과 통신 방송의 상호경영의 금지, 재벌의 신문사지분 소유 금지, 족벌(특수관계인 포함)의 신문사 지분소유제한 등의 문제들이 그러하다.²¹⁾ 하지만 언론의 민주주의 형성 기능 등의 공공성은 이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이를 전제로 하더라도 언론의 자유와 기능을 어느 선상에서 조화할 것인가의 판단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고 따라서 논의의 스펙트럼은 다양할 것이다. 더군다나 신문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식으로 신문의 발

행부수와 판매부수의 공개 특히 ABC(부수공사) 제도의 강제, 광고수입, 구독료수입의 공개, 발행주식과 자본내역 공개, 법인의 이사 현황 등의 공개, 그리고 이들 사항들에 대한 국가에의 신고의무 부과 등의 문제들은 그 '논의주체'를 제대로 설정하고(예컨대 '신문개혁위원회'의 설치와 위상의 정립 등) 다른 나라 입법례(예컨대 독일의 '신문출판통계법' 등)의 참조가 필요하다.

IV. 언론책임을 정한 법제와 내적 언론의 자유

1. 내적 언론의 자유를 실현하는 의미로서의 언론의 책임성

언론의 자유를 구체화하는 언론보도는 공공

언론 지배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재벌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속하는 자들의 지분 한도가 일정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므로 제3항과 같이 신설하였다. 따라서 방송의 동일인 지분도 20%로 낮추고 이에 따라 신문의 지분 제한도 20%로 하는 것이 오늘날 언론 현실에서 입법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신문의 지분제한을 방송과 달리 규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해 존재하는 언론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신문과 방송이 달리 취급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방송법 제6조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을 원용하여 지분 소유 금지 또는 그 한도를 위반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고 주무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제6항과 7항을 신설하였다. 또 주무장관의 자의에 의한 시정 명령 지연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래 '차'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 점 관련하여서는 주무장관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한 방송법 조항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시정명령에 따른 지분 처분의 기한을 6개월 이내로 법률로써 그 상한을 정하였다. <자료공개조항 신설개정이유> ABC 제도가 지금까지도 전혀 정착되고 있지 못한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나라의 신문기업은 발행부수는 물론이고 신문업의 영위에서 비롯되는 기본적인 사항조차도 숨기거나 속이는 경우가 흔하다. 현행법에는 제3조 5항에 경영여부와 친인척의 이사회 참여 문제에 관해서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신문의 기능보장을 위한 포괄적인 규정이 되지 못한다. 신문사로 하여금 기본적인 자료를 적절한 절차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나 언론수용자,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단, 자료의 공개는 상업적인 목적에 이용될 수 없도록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다.

21) 이들 문제들을 상세하게 통계적으로 다룬 글로서는 김서중, "한국의 신문 개혁을 위한 법률개정 제안", 『세계언론법제동향』, 2000년 상권, pp.181-190이 논의의 기본 틀로서 참조된다. 더불어 같은 필자, "신문사 1인 지배체제 막는 쪽으로", 『신문과방송』, 1999년 8월, 참조.

언론사 지배구조를 법률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어

의 이익이나 타인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여,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내적 언론의 자유의 범주를 한정하고 있다.²²⁾ 즉 언론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내적 언론의 자유 못지 않게 인격권(헌법 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 등의 기본권 간의 관계에서 ‘자유언론’과 ‘책임언론’의 조화가²³⁾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²⁴⁾ 여기에서 책임언론을 실현함에 있어서 대표적인 법제도가 반론권 또는 정정보도청구권이며 특히 전자인 반론권은 자유언론과의 관계에서 언론의 내적 자유를 제약하는 기능도 지닌다는 점에

서, 우리의 정간물법도 이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는 개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는 한계를 넘어서 언론이 이를 침해한 경우의 구제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권리구제방법으로는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나(민법 제750조, 제763조, 제394조), 예외적으로 민법 제764조는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금전배상에 갈음하여 또는 이와 함께 침해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원상회복구제를 인정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으며, 제764조에서 말하는 처분의 대표적 예가 사죄광고 게재인 것으로 이해되어 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학설·판례였으나,²⁵⁾ 사죄광고의 강제는 위헌으로 되어²⁶⁾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사죄광고를 행하는 것 외에 그 강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 22) 언론의 자유가 신장됨과 동시에 언론의 책임과 윤리성에 대한 면밀한 반성과 감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Kyu-Ho Youm, “South Korea’s Experiment with a Free Press,” *Gazette*, 53(1994), p.53 참조.
- 23) 양경승, “뉴미디어시대의 언론중재제도”, 『언론중재』, 2000년 여름호, p.66 “정보화사회에 있어서는 이제 언론의 ‘자유영역’ 보다는 ‘책임영역’의 중요성이 월등하게 커졌다고 할 수 있고, 거대 정보유통 조직에 의한 정보의 독과점 및 왜곡 문제 또한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 24) 양경승, “뉴미디어시대의 언론중재제도”, 『언론중재』, 2000년 여름호, p.68 “언론의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진실한 경우 명예훼손 등의 죄책을 면제하는 형법상의 정당화 사유를 손해배상의 민사적 영역에까지 확장함으로써 언론의 공적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로써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외에는 사실상 정상적인 언론활동으로 인하여 언론사나 언론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됨으로써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도내용이 비록 진실이 아닌 경우라도, 보도 당시 진실이라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적법성을 인정해온 판례를 입법으로써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소 제기 전의 범죄사건 보도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여 범죄사건의 보도를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하되, 유죄의 확정판결 전까지 당해 피의자와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여 처우하거나 그의 친족 또는 주변인에 관하여 불필요한 보도를 하지 않도록 금지규정을 두어야 한다.”
- 25) 종전 인정된 사죄광고의 예로서는, “부도덕한 소문을 기사화하여 미혼여성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한 사죄광고”(서울고등법원 1989.11.29, 89나8158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4, 89나36528 판결), “手記의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하면서 기사와 관계없는 선정적 사진의 삽입으로 원고의 성폭행 경험을 묘사한 수기로 오인되게 하여 명예훼손한 데 대한 사죄광고”(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17, 90가합15896 판결) 등을 들 수 있다.
- 26) 헌재 1991.4.1, 89헌마160 민법 제764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위헌 결정[판례집 3, 149~159] 특히 157면-159면, “우리 민법 제764조의 적용에 있어서도 사죄광고를 구하는 판결이 아니고도 ① 가해자의 비용으로 그가 패소한 민사손해배상판결의 신문·잡지 등에 게재 ② 형사명예훼손죄의 유죄판결의 신문·잡지 등에 게재 ③ 명예훼손기사의 취소광고 등의 방법을 상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 하여도

따라서 민법상 인정되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으로서는 정정보도청구권과 정기간행물 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반론보도청구권을 들 수 있다.²⁷⁾ 이 양 권리는 언론

의 자유의 한계와 개인의 권익의 충돌을 조화하는 대표적인 제도이지만,²⁸⁾ 정정보도청구권과는 달리 반론권은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중재 과정을 거쳐야 하는 한계가 있는 등²⁹⁾

사죄광고의 경우처럼 양심결정의 강제나 인격권을 무시하는 등의 헌법위반의 문제는 별로 생길 수가 없다. 취소광고라 하더라도 윤리적 판단이 여기에 게재된 것이 아니고 공연히 적시된 사실의 존재의 취소를 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하는 명예회복에 필요한 다른 처분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고 또 금전배상청구도 배제하지 않는 터이며 결코 사죄광고만이 명예회복에 유일무이의 수단이나 아니라고 한다면 구태여 가해자에게 양심표명의 강제 내지 굴욕감수를 강요하는 사죄광고제도는 어디까지나 과도한 것이며 또한 불필요한 국민의 기본권의 제한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764조가 사죄광고제도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그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정도 또한 과잉하여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 될 수 없어 헌법 제19조에 위반되는 동시에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침해에 이르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민법 제764조가 동조 소정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이라면 동 규정은 헌법에 위반될 수밖에 없다. 바꾸어 말하면 민법 제764조는 동조 소정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7) 이밖에 추후보도청구권이 있다. 이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관한법률 제20조에서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 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의 형태로 종결될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제1항), 그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되며(제2항) 이에 관한 사항은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정기간행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제3항)고 되어 있다. 다만 명예 등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사전 예방이나 사후정지·배제 등 금지청구권에 의한 보도금지제도는 사실상 법원에 의한 검열이어서 언론의 자유와 조화되기 어려우나,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청구와 결합하여 언론의 보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28) 현재 1991.9.16. 89헌마165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3항, 제19조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합헌결정[판례집 3, 518~541] 특히 524-525면,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에 관하여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언론에 의한 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 입증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방법에 의하여 그 해결책을 찾았다. 프랑스에서는 1789년의 시민혁명을 계기로 국가에 의한 검열제도가 폐지되자 언론의 자유의 남용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도 대두되고 민·형사상의 일반구제절차만으로는 개인의 인격권의 보호가 불충분하다고 인식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프랑스는 1822.3.25. 출판법 제11조에서 모든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소유자 또는 편집자는 피해자로부터 반론이 있을 때에는 반론의 수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만일 3일 이내에 발행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 호에 무료로 반론을 게재할 것을 규정하여 이른바 반론권을 입법화하였다. 한편 독일에서는 프랑스의 반론권제도를 본받아 제정된 1874년의 제국언론법이 정기간행물에 관청 또는 개인에 관한 사실이 보도되었을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책임편집자에게 사실적 주장에 대한 '정정'을 청구할 수 있게 하였는데, 그 성질은 언론기관의 고의, 과실 등 주관적 요건을 따지지 아니하며, 보도된 사실적 주장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는 점에서 위의 '정정'이라는 용어는 그후 '반박권' 또는 '반론권'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9) 언론중재제도는 1980년 12월 31일 구 언론기본법(제49조) 및 1981.3.31.에 업무를 개시한 언론중재위원회제도로부터 시작되어 언론기본법의 폐지 후인 1987년 그 대체입법인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관한법률의 시행 이후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다. 즉 구 언론기본법상 정정보도청구권(사실상 반론권인)과, 그 첫 판례(서울민사지방법원 1982.9.3. 82카18633 판결) 이후 1986년 1월 28일 대법원이 선고한 85다카1973 판결은 정정보도청구권을 반론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구 언론기본법 제6장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제48조~51조)의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의 자유의 한계와 개인 권익의 충돌을 조화하는 대표적인 제도

차이점을 지닌다.³⁰⁾ 정정보도청구권은 틀린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그러한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금전배상할 것을 청구한다든지 이를 바른 내용으로 고쳐서 다시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사법의 일반원리인 자기책임주의에 합치된다고 하겠으며, 그러한 자기책임의 원칙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포섭되는 권리이므로 그 합헌성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에 대하여, 언론매체의 보도 등으로(일방적 인상만 형성되어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

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그 언론매체에 대하여 행하는 기왕사실보도에 대한 반박의 보장을 요구하는 반론권(right of reply) 즉 반론보도청구권(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등은 사실이 아닌 보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라도 그러한 보도에 대한 반박을 인정하는 권리가기 때문에,³¹⁾ 사실보도를 그 속성으로 하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 내지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반론권을 법률적 수준의 권리 이상으로 본다면 적어도 그것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 유형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이 제도가 언론통제의 한 수단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필요 이상의 경계를 늦추지 않아, 피해구제제도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은 1987년 11월 28일 언론기본법을 폐지하고 제정된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관한법률의 제정에 의해서 비로소 활성화될 수 있었다. 현재의 정기간행물법은 언론중재의 주된 사항인 반론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중재위원회가 구체화하며, 그에 대한 위원회결정은 단순 조정권에 그치지 아니하는 중재결정권까지 부여되어 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30) 정정보도청구권은 정간물법과 관계없이 민법 제764조에 의해서 인정되는, 말 그대로 '틀린' 보도를 '정정'하는 권리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언론사 등에 대하여 법원이 그 언론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하나로써 이행하도록 명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정정보도청구권은 민법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그 행사는 언론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까지는 행사할 수 있다. 정간물법상 이는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법원에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즉 언론보도로 인한 침해의 구제를 위하여 법원에 소 제기를 하려면, 반론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전심절차인 언론중재를 거쳐야만 하지만,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반론보도청구의 중재에 대한 법원에의 불복절차도 판결에 대한 항소다. 그런데 간접강제라 함은,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법원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연기간에 응하여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의 배상을 할 것을 명하는 제도이다. 원래 민사재판상의 제도였지만 언론중재시의 반론보도에도 적용하여,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그 소가 인용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 있다. 간접강제는 언론억제수단이 아니라 언론피해자의 신속한 권익구제제도다.

31) 반론권은 Gegendarstellungsanspruch 또는 droit de reponse 내지 right of reply 등의 번역으로서 원어(原語)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반박 내지 응답의 권리(droit de réponse)'다. 즉 언론에 의해서 보도된 사실관계의 당사자가 해당 언론매체를 상대로 기왕의 사실보도에 대한 반론문게제요구 내지 반박·해명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즉 반론권을 언론매체의 사실보도로 인격권 등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언론매체에 대하여 행하는 기왕의 사실보도에 대한 반박을 '국가가 보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본다면,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반론권은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의 최소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반론권제도를 받아들인 나라들의 법제는 오늘날 크게 프랑스형과 독일형의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프랑스형의 반론권은 사실상의 주장은 물론 논평·비판 등의 의견이나 가치판단에 대하여도 반론을 허용하여 반론권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데 반하여 독일형의 경우는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서만 반론을 허용하여 반론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것이 다르다."고 함으로써, 적어도 반론권이 단순한 법률상의 권리에만 그치는 것은 아님을 선언하고 있다.

들어가지 아니하며, 그런 점에서 언론의 자유와 같은 속성을 지니는 권리는 아니다. 오히려 언론매체에 의하여 자기에 관한 사실이 보도된 당사자가 스스로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침해로 이유로 하는 국가의 보호를 요구하는 권리로서 인식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반론권은 그 헌법상 근거를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에 내포되어 있는 인격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에서 찾을 수 있다.

나아가 반론권은 보도의 진실성 여부를 가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언론기관이라는 사인의 사실보도에 대한 사인인 국민의 반박기회보장

이라는 무기대등의 측면에서의 언론침해구제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평등권(헌법 제11조)을 그 근거로 할 수 있으며, 또한 언론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헌법 제21조제4항제1문)라든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언론기관에 대한 피해자의 피해배상청구의 규정(헌법 제21조제4항제2문) 역시 반론권의 근거조항이 될 수 있다면,³²⁾ 민주주의적 가치질서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언론제도를 보장하는 측면에서의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제1항) 역시 반론권의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³³⁾ 결국 반론권은

32)헌재 1991.9.16, 89헌마165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3항, 제19조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합헌 결정[판례집 3, 518~541] 특히 526-527면, "반론권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되는 취지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도 신속·적절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이 주어져야 함이 마땅하며, 특히 공격내용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끔 보도된 매체 자체를 통하여 방어 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반론권제도가 적절하고 형평의 원칙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독자로서는 언론기관이 시간적 제약아래 일방적으로 수집공급하는 정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반대주장까지 들어야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진실발견과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하여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제21조의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은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언론·출판의 자유가 민주사회에서 비록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에서 유래하는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 등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헌법의 위 조항들을 종합해 볼 때 언론기관에 의하여 일반적인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은 피해자에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속하고도 적절한 방어의 수단이 주어져야 함이 형평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이 규정한 반론권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바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에 그 바탕을 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보도된 사실적 내용에 대하여 반박의 기회를 허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공정한 여론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언론보도의 객관성을 향상시켜 제도로서의 언론보장을 더욱 충실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취지 아래 헌법의 위에 든 각 조항들을 근거로 하여 제정된 것이다."

33)헌법재판소는 구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이 언론기관의 사실보도에 대한 반박내용제청구권인 반론권이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따지거나 허위보도의 정정청구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하며(헌재 1991.9.16, 89헌마165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3항, 제19조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합헌 결정[판례집3, 518~541]), 대법원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의 진실 여부는 권리행사의 요건이 아니며(대판 1986.1.28, 85다카1973) 또한 진실에 부합되는 원문보도내용에 대하여서도 정정보도청구는 인정된다고(대판 1991.1.25, 90다카25468) 한다. 즉 반론보도청구제도는 보도매체를 통한 방어기회보장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언론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향상 도구로서 제도로서의 언론보장을 더욱 충실하게 하는 것이지 진실발견을 통하여 잘못을 잡아 줄 것의 청구권은 아닌 것이다.

언론이 개인의 명예, 프라이버시 등을 침해했다면 이는 자유언론에 관한 헌법조항이 아니라 책임언론을 정한 헌법 제21조 4항의 적용문제임을 인식해야

언론의 자유에 반하는 권리가 아니며,³⁴⁾ 언론의 자유와 반론권이 보장하는 인격권 등과의 충돌에 대한 규범조화적 제도의 하나라고 하겠다.

반론권(Gegendarstellungsanspruch, droit de réponse, right of reply)은 언론매체의 보도 등으로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 등을 침해받은 피해자가 그 언론매체에 대하여 행하는 기왕의 사실보도에 대한 반박을 보장하는 권리로써, 반론게재요구권의 형태로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명예나 인격, 프라이버시 등을 언론이 침해했다면 제1차적으로 이는 자유언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이 아니라 책임언론을 정한 헌법 제21조 제4항의 적용문제임을

을 인식해야 한다.

2. 공인보도와 실제적 악의의 원칙

언론이 침해하기 쉬운 사익은 명예 등의 인격권 및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의 권리다. 명예 등의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의 핵심을 이루는 기본권으로서 명예감정 등과 같은 내부적 명예나 사회적 평가라는 외부적 명예를 모두 포함하므로, 외부적 명예만 보호하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되는³⁵⁾ 명예의 개념이라든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는³⁶⁾

34) 헌재 1991.9.16, 89헌마165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3항, 제19조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합헌 결정[판례집 3, 518~541] 특히 535면, “현행 정정보도청구권제도는 그 명칭에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론게재청구권으로 해석되고 이는 언론의 자유와는 비록 서로 충돌되는 면이 없지 아니하나 전체적으로는 상충되는 기본권 사이에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5) 개인의 명예에 대한 침해의 형사법적 구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형법 제307조제1항 공연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동법조제2항 공연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형법 제308조 공연허위사실적시 사자명예훼손죄) 등으로써 인정된다. 이러한 경우가 언론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구성요건과 형량에 있어 차이를 지닌다. 즉 일반인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행함은 처벌되며(형법 제309조제1항), 공연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된다(형법 제309조제2항). 이와 같이 형법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주체는 언론사나 언론사 발행인 등에 한정되지 아니한 일반인이다. 따라서 신문·잡지·방송 등의 보도에 의하여 명예가 훼손된 국민은 자연인·법인·단체·집단을 가리지 않고 그 보도매체를 이용하여 보도를 행한 자연인과(주로 기자 내지 취재원·제보자가 될 것이다), 언론사 발행인 또는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출판물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처벌요구와 관계없이 기소·처벌할 수 있으나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형법 제312조제2항). 때문에 피해자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예컨대 고발 등)를 철회한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면서 사건은 종료된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 자체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가 그러하다.

36) 민법상 명예에 대한 침해의 구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민법 제750조),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51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764조). 이때의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사실적·객관적 평가이므로 명예에 대한 훼손은 인격권의 침해다(대판 1989.10.24, 89다카12824). 하지만 사람의 인격에 일신으로 전속한 가치인 내적 명예라든지 자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인 명예감정은 침해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보호하려 해도 그 주관적인 인식의 차이 때문에 법적 보호에는 적당치 않다. 여기에서의 불법행위의 성립은 과실행위로도 족하다. 주의의무를 소홀히

명예보다는 범주가 넓다. 다만 출판물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는 공연사실적시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³⁷⁾ 또한 민법상의 손해배상법의 체계상으로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고(즉 언론에 의한 피해자)가 그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사실의 '진실성과 공익성'의 입증책임은 언론사 즉 피고의 몫이다(통설·판례). 즉 '진실성 입증'이 되면 범죄성립이 조각된다. 이 때 명예를 포함하는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간의 상충관계에서의 조화적 판단이 요구된다. 이러한 진실성 입증의 한 예로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이론으로 성립되

어 온 '공인이론'이 있다.³⁸⁾ 즉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 기타 공인에 대한 언론의 보도 내용이 비록 사실과 거리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보도된 사실의 당사자가 되는 공인 스스로 당해 보도를 행한 언론사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보도했다든지 또는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만히 하여 보도를 하였음 즉 언론사보도의 '실제적 악의'(actual malice)가 있음을 거증하지 못하는 한, 명예훼손 등 행위로 언론을 벌할 수 없다는 판례이론이 그것이다. 이때의 공인(public figure)의 개념은 공직자는 물론 국가적 사항에 상당한(substantial) 책무를 가지거나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 인물을 말한다.³⁹⁾ 공적 인

한 결과 명예훼손적 기사 등이 나간 경우다. 이와 더불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영미의 '징벌적 명예훼손'(Punitive Defamation)에 따른 '배 배상'의 제도를 받아들여서는 어렵더라도 제재적 위자료의 도입은 고려하여야 한다.

- 37) 이러한 정당화사유는 '허위' 사실적시행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나 허위사실적시행위에만 죄가 되는 사자명예훼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38) 미국의 경우 명예훼손 소송이 가져오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s)에 의한 고액의 손해배상액 등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공인이론에 의하여 '실제적 악의'(actual malice)의 원칙에 의하여 헌법상 우월적인 지위를 지녀왔다고 하면서,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공인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정의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권과의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법기준—예컨대 현실적 악의 원칙—이 없이는 언론에 큰 의미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는 이채진, "명예훼손법상의 공인과 언론에 나타난 공인의 개념적 차이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3-4호, 1999년 여름호 참조.
- 39) 공인의 명예에 대한 침해의 구제에 대하여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당해 보도의 당사자가 되는 공직자 등이 그 보도를 행한 언론사의 '실제적 악의'(actual malice)가 있음을 증명해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1964). "마틴 루터 킹 2세 목사를 체포한 Montgomery 경찰을 전면광고로 비난하여 몽고메리시 경찰서장인 L. B. Sullivan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신문사와 광고 공동명義인의 50만달러 배상명령의 근거 법률인 'Alabama주 명예훼손법'은, 그 보도가 허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혹은 무시한 경우인 '실제적 악의'(actual malice)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한 보도를 인정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1조 언론의 자유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위헌이다." 공인 이론은 처음에는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elected public officials)에 한정했다가, 저명인사인 경우까지 적용한다는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1974) 그리고 '선거로 선출되지 아니하는 공직자'(nonelected public officials)에까지 확장된 로젠블라트 사건(*Rosenblatt v. Baer* 383 U.S. 75 (1966)) 등으로까지 확장하여, '비관적 시민'(the citizen-critic)은 정부권한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견제(checking)기능을 이행할 수 있었다. 공인 개념에 '공익사항'(public interest matters)에 관련된(implicated) 사인(private citizens or private figure)도 포함할 수 있는나에 대하여 *Curtis Publishing Co. v. Butts*, 388 U.S. 130 (1967)에서는, 가능하다는 의견(Black, Douglas, Brennan, White)이 그렇지 않다는 다수의견(Warren 대법원장도 이에 동조)에 1표차로 밀려 결국 포함시킬 수 없었지만 언론의 헌법적 특권(constitutional privilege)을 부인한 것은 아니었고 공인과 사인의 구분이 엄격했을 뿐이었다.

공인이론과 관련된 최근의 판례이론을
정간물법 개정에 반영토록 해야

물(도의회 의원)의 공적인 활동과 관련된 사실을 보도한 신문기사가 명예훼손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 인격권(헌법 제10조)으로서의 개인의 명예 보호와 언론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반되는 두 권리를 조정하는 한계 설정을 하는 것이 쟁점으로 된 사건에서,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이하 ‘언론의 자유’라 한다)는 보장하되 명예 보호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제한을 받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개인의 언론 활동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라는 개인 대 개인간의 사적 관계에서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하나, 당해 표현이 공공적·사회적·객관적인 의미를 가진 정보에 해당되는 것은 그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즉 알 권리)는 개인의 인격형성과 자기실현은 물론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하는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공적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⁴⁰⁾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한 형사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헌법적인 요청을 고려하여 첫째, 그 표현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입증이 없어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위를 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둘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라는 요건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그 적용범위를 넓혀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의 배려라는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실(알 권리)에는 공공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이로 인하여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은 쉽게 수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6. 22. 92도3160, 공 1993하. 2188; 1994. 8. 26. 94도237, 공 1994하. 2572, 각 참조). 셋째, 명예훼손적 표현에서의 ‘비방할 목적’(형법 제309조)은 그 폭을 좁히는 제한된 해석이 필요하다. 법관은 엄격한 증거로써 입증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위자의 비방 목적을 인정하여야 한다. 신속한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신문의 속성상 허위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서 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거나, 중요한 내용이 아닌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보도는 모두 형사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대법원 1996.8.23. 94도3191, 공 1996하. 2928 참조). 시간과 싸우는 신문보도에 오류를 수반하는 표현은, 사상과 의견에 대한 아무런 제한 없는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고 이러한 표현도 자유토론과 진실확인에 필요한 것이므로 함께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허위라는 것을 알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진위를 알아

40) 헌재 1999.6.24. 97헌마265 불기소처분취소 기각 결정[판례집 11-1, 768~801] 특히 775면. 즉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명예)를 보호할 목적으로 만든 명예훼손 관련법은,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제한·억압하는 수단으로 쓰여졌다.”(776면) 따라서 “이 두 권리를 비교衡量하여 어느 쪽이 우위에 서는지를 가리는 것은 헌법적인 평가 문제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론매체의 명예훼손적 표현에 위에서 본 실정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언론의 자유와 명예 보호라는 상반되는 헌법상의 두 권리의 조정 과정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공적 인물과 사인, 공적인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고,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은 공적 인물이 그의 공적 활동과 관련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하는 등 개별사례에서의 이익衡量에 따라 그 결론도 달라지게 된다.”(777면)

보지 않고 게재한 허위보도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⁴¹⁾ 이러한 판례 이론에 따를 경우, 정간물법의 개정에 있어서 이를 반영하는 문제도 필요하다.

3.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반론보도청구의 특칙의 문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제8조에서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정하고 이어서 제8조의2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간동안 방송위원회 대신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제8조의3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케 하여 역시 선거기간동안 언론중재위원회 대신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 조사 및 사과문(‘사과문’까지 요구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크다)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며 나아가 제8조의4에서는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등을 규정하고 있다.⁴²⁾ 이러한 규정들은 ‘선거’의 기간동안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

41)헌재 1999.6.24, 97헌마265 불기소처분취소 기각 결정[판례집 11-1, 768~801] 특히 pp.778~779.

42)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개정97·11·14]/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방송법 제20조(방송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개정2000·2·16]/ ②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 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2000·2·16]/ ③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개정2000·2·16]/ ⑥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⑦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97·11·14]/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정기간행물”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처리는
언론의 책무를 정하는 법률에서
정식으로 설치한 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는 점, 선거소송에 대한 처리기간의 특칙이 있는 것과 같이 선거기사와 방송 등 선거보도의 공정성 판단의 문제는 기존 방송위원회나 언론중재위원회에서와는 다른 기관을 통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는 점 등이 제도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논리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 능력을 지니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를 대신하여 급조된 임시기관에서 이를 심의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적 시각에서 볼 때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하겠다. 특칙은 인정하되 처리기관은 여전히 언론의 책무를 정하는 법률에

서 정식으로 설치한 이들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V. 인터넷매체와 표현의 자유 관련 법제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 통신은 신문, 방송, 통신이 갖는 일방향적 정보전달의 기능으로부터 쌍방향 정보전달체계를 가능케 하는 등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통하여⁴³⁾ 최근의 언론환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④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전문개정2000·2·16]/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객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후보자나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후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상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후보자나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④방송법 제91조(반론보도청구권)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선거방송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전문개정2000·2·16]

43) 예를 들면 권기창, “통신과 방송 융합에 대한 정책적 대응”, 국회 입법조사분석실 현안분석(제137호 1997년4월) 참조.

경의 변화를 주도하고,⁴⁴⁾ 특히 인터넷 뉴스는 수용자를 언론사의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정보의 제공자 내지 참여자가 될 수 있게 만들었다.⁴⁵⁾ 이와 같은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Cyberspace(즉 가상공간)이라고 하는 virtual reality(즉 가상현실)은⁴⁶⁾ 또 하나의 '실재하는 현실'(real reality)이고,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는 사이버스페이스와 실세계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on-off 공동체다. 사람이 인지·해독할 수 있는 analogue적 정

보로써⁴⁷⁾ 소통되는 실세계에서와는 달리, 사이버스페이스는 컴퓨터가 인지할 수 있는 digital언어으로써 아날로그적 정보를 정형성, 순간적 대량이동성을 지닌 정보로 전환하여 이를 '전세계적 통신망'(World Wide Web)인 Internet 즉 '상호접속된 컴퓨터의 국제적 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of interconnected computers)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정보사회의 기반구조를 이룬다. 사이버스페이스의 세계도 실세계에 비교하여 비록 상대적이지만

44) 한국언론재단, 『수용자의식조사』(1993-2000년)를 보면, 인터넷 매체의 등장이 인쇄매체의 이용시간의 축소뿐만 아니라 전파매체의 이용 시간 역시 줄어들게 하고 있다.

45) 박선영, "인터넷 신문·방송과 반론 보도", 『언론중재』(2000년 봄호), "우리 나라의 인터넷언론은 인터넷이 갖고 있는 특성, 즉 정보의 생산이나 흐름에 있어서의 탈중앙통제적(decentralized)인 요소, 또는 쌍방향성의 의사소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문사나 방송사가 서비스차원에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들이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인쇄물이나 방송이라고 하는 수단에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바뀌었을 뿐, 그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방송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상에 사이트를 개설하고 내용을 공급하면 그만이다. 인터넷신문의 경우, 기존의 정기간행물등록등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고 있는 엄청난 시설기준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이다.", "통합방송법은 인터넷방송의 시대적 요청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법률이 되고 말았으며, 정간법도 인터넷신문과 관련된 조항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46) William Gibson의 공상과학소설 'Neuromancer'에서 유래하는 Cyberspace는 "형질할 수 있다"(malleable)는 점에서 '물리적 세계'(physical world)와 구분된다.

47) 정보사회에서 일컬어지는 '정보'의 의미는 포괄적으로는, '공동체에서 생산·유통되어서 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유·무형의 정신'을 말하겠지만, 정보사회의 지평을 밝히는 의미로서는 특히,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으로 신속·광역성과 沒 개인성을 지니면서 전파될 수 있는 정보 예컨대 digital communications에 의한 정보'를 가리킨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제2조제1호), 정보의 정의에 관련한 이 조항은, 정보라는 사회적 사실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중 특히 공개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개념에 관한 규정이기도, 일반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다고는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의에서 看取할 수 있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1994.1.7.법률제4734호)이 있다. 이 법에서는 정보를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제1조)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문맥영역이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정보에 직결되는 사안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라고 할 때의 그 '처리'라 함을, "컴퓨터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제3호), 즉 "처리되는 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화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제2조제5호)고 하며, "개인정보화일"이라 함은 "...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제2조제4호), 국민이 그 공개를 청구하는 대상으로서의 정보는, 그것이 '국가'의 정보이든 국가에 의하여 보호받는 대상이 되는 '개인의' 정보이든 현행 실정법에 따르면, 공히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정보' 또는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임을 알 수 있다. 手記로 행하여지는 정보 내지 수기로 처리되는 종이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과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인터넷이 개개인의 외적 표현의 수단인지
매체로서의 언론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

‘구획된 세계’가 되는 등 일정 형식의 지리적 위치를 가지지만, 아직도 ‘영역이 없으며 영역을 구분할 수 없는’(unzoned and unzoneable) 점이 많이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공동체’(community)로 인식되며 이를 기초로 삶의 양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그룹이 네티즌(netizen)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언론 출판에 대한 정부규제를 금지하고(Congress shall make no law ...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을 통하여 이를 주에도 적용하는 등을 기초로, 미국연방대법원은 on-line system이 ‘사적 보유 영역’(a privately-owned area)에 있다고 할지라도 표현이라는 목적에 비추어서는(for speech purposes) ‘공공광장’(public forum)으로 본다 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법은 실세계에서 포착할 수 있는 정도의 변용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지리적 기반을 전제로 하는 법, 국가, 국가주권, 국가법률과 다른 양태를 보이지만 법의 핵심가치가 질적으로 변형되어야 하는 곳은 아니며, 법의 질적인 내용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담는 형식에서

의 변화 정도를 요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언론의 자유 역시 인터넷 등을 통한 ‘의사형성·발표, 정보수집·전달’ 등을 실질적인 내용으로 하므로 그러한 의사의 표현의 자유 즉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의사의 형성과 전달·보급 및 형성 등을 국가권력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향유할 수 있는 자유가 여전히 여기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그 의사의 표현의 수단이 ‘언어·문자’⁴⁸⁾에 의한 담화·연설·방송·문서·도화·출판 또는 학문적 표현이라든지 ‘상형·영상’ 등을 넘어서⁴⁹⁾ ‘전자 내지 digital언어’ 등에 의한 표현 동일 뿐이며, 그러한 수단에 의하여 표현된 의사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정신적 판단을 전제로 하는 등 가치평가가 가능한 사실이다. 이와 같은 인터넷 환경에서의 언론의 위치라고 하는 원론적 문제를 기초로,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정보통신매체를 개개인의 외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으로만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매체로서의 언론’으로 파악할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동시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업무를 매체로서의 언론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에도 관련된다.

48) ‘말’이라고 하는 음성언어는 사람만이 지니는 표현의 수단이므로 말로써 자신을 표현하려 함은 사람의 본질적 자유에 속한다. 다만 음성언어는 불안정하기에 이를 고정하기 위하여 도구를 사용해 굵든지, 직물로 짜든지, 쌓든지, 맺든지 등으로 하다가 ‘문자’가 생기게 되니 문자는 말과 더불어 본질적인 표현수단이다.

49) 음반 및 비디오물이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한 언론이다. 즉 현재 1993.5.13. 91헌바17 음반에관한법률 제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한정위헌 결정[판례집 5-1, 275~296], 특히 284-285면, “일반적으로 헌법상의 이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의사표현·전파의 자유, 정보의 자유, 신문의 자유 및 방송·방영의 자유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중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즉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음반 및 비디오물도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한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의 하나로 인정되며, 이러한 작용을 하는 음반 및 비디오물의 제작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서도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개정청원⁵⁰⁾

현행법령	개정안
<p>제2조(용어의 정의) 7. “통신”이라 함은 전파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통신사와 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행하는 송수신 또는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7. “통신”이라 함은 전파법에 의하여 고정무선국의 허가를 받아 외국 통신사와 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p>

참고문헌

단행본

김택환 외, 『21세기 한국 언론·정책법제 연구』, 한국언론연구원, 1997.
 박용상, 『언론과 개인법: 명예, 신용, 프라이버시 침해의 구제제도』, 조선일보사, 1997.
 방석호, 『미디어법학』, 법문사, 1995.
 성낙인, 『언론정보법』, 나남출판, 1998.
 유일상, 『언론법제론』, 박영사, 1998.
 평원순, 『언론법제신론』, 나남, 1989.
 한국언론재단연구원 편, 『한국신문방송연감』, 한국언론재단, 1986-2000.
 한국언론재단, 『수용자의식조사』, 한국언론재단, 1993-2000.
 한국언론재단, 『새로운 시대의 신문』, 한국언론재단, 2000.
 J. Zelezny, Cases in Communications Law, California : Wadsworth Publishing Co., 1993.

논문

강경근, “편집권 독립 법제화의 논리와 실제”, 『언론개혁시민연대창립토론회 발제문』, 1998.
 강신철, “우리 나라 일간지의 편집국장 임면제

도”, <http://www.ssmidianet.org/archive/sub/spe16.html>
 권기창, “통신과 방송 융합에 대한 정책적 대응”, 국회 입법조사분석실 현안분석, 제137호 1997년 4월.
 권학남, “총선보도 제약 조항신설, 미디어 선거 활성화 막아”, 『신문과방송』, 2000년 2월.
 김민중, “원고의 신분과 명예훼손법리의 적용”, 『언론중재』, 2000년 여름호.
 김서중, “신문사 1인 지배체제 막는 쪽으로”, 『신문과방송』, 1999년 8월.
 김서중, “한국의 신문 개혁을 위한 법률개정 제안”, 『세계언론법제동향』, 2000년 상권.
 김옥조, “선거방송심의와 표현의 자유”, 『신문과방송』, 2000년 6월.
 김유정, “사이버 음란물의 규제와 청소년 보호”, 『언론중재』, 1997년 겨울호.
 김재홍, “한국 언론의 옴부즈맨제도 운용 실태와 전망”, 『언론중재』, 1999년 봄호.
 김주연, “제도개혁으로 내부동력 끌어내야”, 『신문과방송』, 2000년 6월.
 류일상, “의견광고와 명예훼손 및 그 대책”, 『언론중재』, 1997년 여름호.
 류한호, “신문-정기간행물법의 공론화가 시급하다”, 『미디어 비평』, 통권 제26호, 1998년 12월.
 류한호, “선거기사심의위 보도의 문제점”, 『신문과방송』, 2000년 4월.

50) <개정 이유> 현행 조항 제7항 통신의 정의는 인쇄 매체가 위주가 되었던 시대의 통신의 개념으로서, 오늘날 발달된 정보통신수단과 통신(뉴스 및 정보 제공)업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통신에서 간행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미미해지고 있으며, 단순한 정보통신과의 경계도 애매해지고 있다. 무선국의 허가를 요하는 조항 역시 유선, 인터넷 등으로 다양화한 정보통신수단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실효성이 없다.

박용규, "언론평해 법률구제 제도 검토 필요", 『신문과 방송』, 1999년 8월.

방석호, "뉴미디어 시대의 반론권과 액세스권", 『언론중재』, 1997년 봄호.

성낙인, "선거보도와 반론권", 『언론중재』, 1997년 겨울호.

안광식, "언론의 환경변화의 언론중재", 『언론중재』, 1997년 여름호.

안광식, "옴부즈맨제도의 기능과 역할", 『언론중재』, 1999년 봄호.

양경승, "언론중재제도의 운용과 과제", 『언론중재』, 1997년 여름호.

양경승, "뉴미디어시대의 언론중재제도", 『언론중재』, 2000년 여름호.

오상석, "취재현장과 언론윤리강령", 『언론중재』, 2000년 가을호.

유의선,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위법성 구성 및 조각사유 준용에 관한 연구 - 형법 307~310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43-2호, 1998년 겨울호.

윤영철,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언론중재』, 1997년 겨울호.

이은영, "명예훼손 소송에서의 재산적 손해 인정에 대한 법적 쟁점", 『언론중재』, 2000년 여름호.

이재진,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언론중재』, 1998년 봄호.

이재진, "명예훼손법상의 공인과 언론에 나타난 공인의 개념적 차이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 43-4호, 1999년 여름호.

정갈진, "언론보도에 비친 언론윤리", 『언론중재』, 2000년 가을호.

정윤식, "뉴미디어 시대 표현의 자유와 한계", 『언론중재』, 1997년 봄호.

조준원, "1990년대 언론관련 손해배상판결의 사회과학적 분석", 『언론중재』, 2000년 가을호.

주동환, "법·제도 지원은 언론탄압이 아니다", 『신문과 방송』, 2000년 6월.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노동조합연맹, 박동수, 방정배(지상좌담), "신문개혁' 어떻게 해야하나", 『신문과 방송』, 1999년 8월.

채수영, "수용자가 바라본 언론인 직업윤리", 『언론중재』, 2000년 가을호.

최창삼, "언론평해구제와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 『언론중재』, 1997년 가을호.

표성수, "명예훼손 면책사유로서의 상당성 기준", 『언론중재』, 2000년 여름호.

황상재, "언론환경변화에 따른 언론개념의 재정립", 『언론중재』, 1997년 봄호.

황상재,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와 쟁점들: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정보법학』, 한국정보법학회, 1997.

홍기선, "방송개혁의 방향과 방법", 한국언론학회 제99-1차 '쟁점과 토론', 『통합방송법과 방송개혁』, 1999. 2. 9.

홍수원 편역, "발행인과 편집인, 항상 대립하는가? 신문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긴장관계", *Columbia Journalism Review*, 2000년 5/6월호.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광고교육학회 공동학술세미나 "통합방송법 시행 반년 점검, 쟁점과 토론" (2000.8.17.목) 발제논문: 김학천, "통합방송법, 당초의 쟁점과 한계: 법 시행이후의 성찰"; 박은희, "새방송법과 시청자주권: 법시행과 제도화과정"; 정기현, "통합방송법과 광고산업의 발전방향".

Emmanuel Derieux, "프랑스법상 '커뮤니케이션법(학)'의 의미와 범위", 『언론중재』, 1997년 여름호.

Jan H. Samoriski, John L. Huffman and Denise M. Trauth, 기술 발달에 뒤 처진 법체계, 『언론중재』, 1997년 봄호.

Lee, Jae-Kyung, "Press Freedom and Democratization: 'South Korea's Experience and Some Lessons,'" *Gazette*, 56, 1997.

Youm, Kyu-Ho, Right of Reply under Korean Press Law: A Statutory and Judicial Perspectiv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41, 1993.

Youm, Kyu-Ho, South Korea's Experiment with a Free Press, *Gazette*, 53, 1994.

자 료

입법청원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청원자: 언론개혁시민연대

"전자통신, 프라이버시, 그리고 '전자사생활 보호법'", 1986, 『언론중재』, 1997년 봄호. □

〈제2주제〉

‘언론피해구제법’ (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

I.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언론중재제도의 도입은 1980. 12. 31. 언론기본법의 제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즉 위 법의 시행과 함께 소위 반론권의 개념이 학문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로써 우리 나라 언론법제의 새로운 이정표가 이루어졌다.

이후 언론중재제도는 초기의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도, 성장을 해오던 중, 1987년 민주화 과정에서 존폐의 위기를 맞이하였으나 그 동안의 업적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언론기본법 자체는 폐지되었으나, 언론중재제도 자체는 살아남아 1987. 11. 28. 정간물법 또는 방송법의 일부로 흡수되게 되었다.

위 1987년의 위기를 넘긴 언론중재제도는 그 이후 약 10년 동안 실질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내실을 다지는 데에 큰 성과를 올렸다. 즉 그 동안의 연구·토론의 결과로서 법전상의 정정보도라는 용어에도 불구하고 “반론권”이라는 개념이 확립되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인받는 성과를 올렸으며, 실무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서 반론권 내지는 언론중재의 개념이 일반 국민에게 익숙한 제도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주변 여건의 성숙에 힘입어, 언론중재제도는 그 체제의 본격적인 정비와 재도약을 꿈꾸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이와 같은 노력은 드디어 1996. 7. 1.의 법개정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결실은 “반론보도”라는 용어를 법률용어로 채택함으로써 오랫동안의 논의에 종지부를 찍었으며, 반론보

양 삼 승
변 호 사

- 서울대 법대 및 동 대학원 법학박사
-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및 대법원장 비서실장 역임
- 현 법무법인 화백 대표 변호사
- “헌행법과 언론수용자 권익”, “정정보도청구권 및 언론중재 제도 개선방안” 외 다수

지금까지 중재제도는 실질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국민에게 익숙한 제도로 자리잡아

도뿐만 아니라 정정보도청구에 대하여서도 선택적으로(즉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으로 할 수 있게 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중재위원회에 “직권중재결정”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중재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은 커다란 변화는 결국 중재위원회의 위상을 “양적 및 질적으로” 높이는 것으로서, 그 동안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의 표현이며, 장래의 도약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변화로 평가 된다.

II. 앞으로의 과제

이제 2001. 1. 1.이 되면 우리 나라에 언론중재제도가 도입된 지 만 20년이 되어 명실상부 우리의 중재제도는 성년기에 접어들게 된다. 그 동안의 성장기에서 겪어왔던 아픔을 디디고, 활기찬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가 오는 것이다.

앞에서 간략하게 보아온 우리의 언론중재제도 20년을 돌이켜보면, 앞으로 우리의 중재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스스로 명백하게 보여진다. 과거 수년간 중재제도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이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 논의하고 토론한 결과가 축적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이를 종합·정리하여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여러분들의 논의의 성과로서 별첨과 같은 “언론피해구제법(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의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위 법안의 내용은 다방면에 걸쳐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그 중요한 골격을 나누어 보면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첫째는, 중재의 주체인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의 고양”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언론중재와 관련된 제도의 “통합”을 통한 “효율성의 확보”에 관한 것이며, 셋째는 언론중재와 관련된 제도의 “신설 및 변경”을 통한 “효율성의 증대”에 관한 것이다. 아래에서 이 점들의 각 각을 살펴보기로 한다.

III. 언론중재위원회 위상의 고양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피해로 인한 여러 경우에 있어서 그 조정자로서 차지하는 역할을 보다 넓힘으로서, 언론피해구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 문제는 언론중재위원회 자체의 위상을 높이는 문제와 나아가 중재위원회의 위원장 및 중재위원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는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중재위원회 자체의 위상의 고양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 이냐의 문제, 즉 바꾸어 말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어느 범위의 권한을 부여할 것이냐의 문제는 우리 나라 언론중재제도의 본질에 관련되는 문제로서 지극히 정책적인 문제이고,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의 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1980. 12. 31. 우리 나라에 언

론중재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우리의 법은 중재위원회의 위상에 대하여 지극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 즉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반론권의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언론계에의 충격을 우려하여, 그 완충장치로서 중재위원회라는 제도를 신설하여 위 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야만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것만으로도 불안하여 중재위원회의 중재는 순수하게 “조정”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으로서 하등의 강제적인 효력도 부여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그러던 중, 제도가 시행되어 가면서 점차 자신감을 얻게 되고 중재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호의적인 것임이 밝혀지게 되자 1996. 7. 1.의 개정시에는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도 선택적으로 중재의 대상으로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나아가 중재위원회에 “강제중재”의 권한을 부여하여(다만, 이의신청의 권한은 유보되어 있었다.) 중재부의 중재에 실효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진일보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중재제도가 성년기를 맞이함에 따라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는 획기적인 방안들이 고려되고 있다.

가. 언론“중재”제도의 도입(27조, 28조) : 양적 위상제고 ①

개정안에서는, 언론분쟁에 관한 해결의 한 가지 방안으로 언론“중재”라는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이 점에 관하여는 우선 “조정” 및 “중재”라는 개념을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즉, 법률상 “조정”이라는 개념은 알선이나

권유와 같이 양 당사자가 조정자의 조정안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따라야 할 필요가 없고 단지 권유적인 의미만이 있는 소극적 개념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중재”라는 개념은 장래에 생길 또는 현재에 이미 발생한 어떤 분쟁에 대하여 양당사자가 “사전에” 중재인의 결정에 따르기로 서로 약속·합의한 이후에만 절차가 시작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중재인의 중재가 내려진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승복하기로 약속하는 경우로서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종래 우리의 실무에 있어서는 위 두 가지 개념을 명백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서로 혼동하여 사용해 왔으며, 현행법상의 언론중재제도도 이와 같은 점에서 정확하지 않은 용어의 사용인 것이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있어서는, 위 개념을 명확히 법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면서, 제27조에서 “언론‘중재’”의 제도를 정식으로 채용하고 있다.

즉 제27조는 “당사자 쌍방은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위 중재신청은 조정 절차의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고 하며 나아가 제28조 2항은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의 중재제도는 상사거래에 있어서 오래전부터 활성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상사중재원은 이점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나아가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이러한 중재제도는 거의 모든 중요한 상거래의 중요한 계약조항의 하나로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언론중재의 경우에는 상사중재와 달라서, 사전에, 이와 같은 합의를 하기가 어려운 점이

손해배상청구도 중재위의 조정대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중재위에 대한
국민의 평가와 관련

있으나, 반드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고, 또한 조정과정이나, 사후에 당사자의 합의로 이러한 중재가 이용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중재에 의한 해결은 사안의 종국적 해결이 된다는 의미에서 그 유용성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나. 손해배상청구에도 조정가능(21조)
: 양적 위상제고 ②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대하여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개정의 논의가 있을 때마다 논란이 있었던 문제이다. 즉 1996. 7. 1.의 법개정에 즈음하여서도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되었었다.

이에 대한 찬성론으로서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의 구제방안으로서는 반론보도, 정정보도, 손해배상의 3가지가 있는 바, 이 중 앞의 2가지는 이미 현행법상 언론조정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만큼, 나머지 한 가지인 손해배상까지도 조정의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언론피해로 인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이에 대한 반대론도 만만치 아니하다. 즉, 언론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정신적 손해(위자료)와 경제적 손해로 나누어질 것인데, 어느 것이나 그 액수의 산정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특히 경제적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기업인 경우에는, 인과관계 및 손해범위의 산정이 지극히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법원의 제소에 앞서서 신속히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마무리지으려는 중재제도의 취지에 적합치 아니하며, 이는 비현실적인 발상이라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중재위원회에 어느 정도의 권한과 위상을 부여할 것이며, 현재 우리의 중재위

원회가 어느 수준에 있는가의 평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개정안에 있어서는 중재위원회의 20년에 이른 성장과정에 비추어 자신감을 나타내어 손해배상의 경우까지도 조정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21조).

다. 조정전치주의의 획일적 채택(29조 3항)
: 질적 위상제고 ①

현행의 법률규정에 의하면,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법원에 제소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반론보도청구의 경우만으로 한정되어 있다.

즉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다시 말하면,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중재위원회를 거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아예 중재의 대상으로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현행법의 태도는 최초의 규정에 비추어서는(당시는 반론보도만이 중재의 대상이었고, 정정보도는 그 대상이 아니었다) 진일보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는 과도기적인 현상인 것으로서, 중재위원회의 조정의 역할을 확실히 하는 데에는 미흡한 것임에 틀림없는 것이었다.

개정안에 의하면 이 점을 획일화하여 규정하였다. 즉 제29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의 소(손해배상,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제소에 앞서 중재위원회의 조정은 3가지 경우에 모두 거쳐야 함으로써, 조정전치주의를 획일적으로 채택한 것이다.

언론중재처리현황

'81. 3.31~2000.10.31

연도	신청 건수	처리 결과								비고	
		합의	중재 결정			중재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동의	이의	계속						
1981	44	9				12(5)	1	2	20(2)		
1982	50	19				19(5)		2	10(4)		
1983	71	21				22(7)	1	1	26(8)		
1984	54	12				29(8)	3		10(5)		
1985	59	12				28(5)	4		15(7)		
1986	49	14				10(2)	1		24(11)		
1987	47	10				9(4)	1		27(2)		
1988	55	16				12(5)		1	26(13)		
1989	121	29				35(10)		6	51(21)		
1990	159	42				43(10)	1	2	71(40)		
1991	220	52				48(9)	3	1	116(43)		
1992	381	81				79(12)	19		202(107)		
1993	423	132				96(16)	8	2	185(84)		
1994	541	162				127(10)	7		245(128)		
1995	528	111				150(25)	26	3	238(124)		
1996	556	129	2	7(1)		169(21)	9	1	239(137)		
1997	490	161	10	5(1)		79(13)	8	4	223(108)		
1998	602	226	14	10(2)		97(8)	5		250(106)		
1999	641	244	11	18(2)		102(16)	24	5	237(92)		
2000	508	172	11	10(1)		57(7)	9	1	248(132)		
계	5,599 100.03%	1,645 29.5%	48 0.9%	50(7) 0.9%		1,223(198) 21.8%	130 2.3%	31 0.6%	2,463(1,174) 44.0%		

()안은 피해구제건수

반론 및 정정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의 조정전치주의의 채택은 중재위의 실무처리 현황을 고려할 때 언론피해사건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바람직

실질적 피해구제율(피해구제건수/중재건수)

'81. 3.31 ~ 2000.10.31

구 분	신청건수(A)	계속·기각·각하·계류(B)	중재건수(A-B)	피해구제건수	피해구제율	비 고
'81~'99년	5,091	151	4,940	2,758	55.8%	
2000년	508	10	498	323	64.9%	
총 계	5,599	161	5,438	3,018	56.7%	

조정전치주의의 확일화에 반대의 견해를 가지는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확일화는 법원에 이르는 길을 복잡하게만 할 뿐으로서 결국 궁극적인 권리구제를 어렵게 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전치주의의 강요가 불필요한 또 하나의 절차를 강요하는 것인지, 아니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법원에서의 절차를 피하여 싼 비용으로 간편한 절차로서 분쟁해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지는, 결코 논리의 문제는 아니고 현실적으로 중재위원회의 실무처리 현황이 어떠한지의 실증적인 문제인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중재위원회 창설이후 현재까지 20년 동안의 각 중재부의 사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예상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사건들이 중재성립 등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으며, 통계상으로는 신청취하의 항목으로 처리되었으나 실제적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성립을 토대로 한 취하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한다면 중재과정에서의 합의비율은 훨씬 높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합의비율은 일단 제소된 후 법원에서의 합의비율에 의하면 월등히 높은 것임은 통계상 명백하다. 이와 같이 과거 20년의

실무경험상 중재위원회의 중재실적이 실증적으로 입증된 이상, 한편으로는 중재의 대상을 넓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반드시 중재를 거처도록 하는 것은 언론피해 사건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최근의 중재신청사건 처리현황 통계표 참조).

라. 직권조정예 이의신청서 소제기 간주 및 고법판할 : 질적 위상제고 ②

현행법은 언론중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1980. 12. 31.의 최초의 법규정에서 진일보하여 직권중재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즉, 중재부는 사건을 심의·중재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성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안의 성질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조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실행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직권조정결정에 불복방법을 열어두지 않으면 헌법상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결정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위 중재결정은 효력을 잃고, 당사자는 다시 법원에 제소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이의신청이 남발되어, 공연히 법원에의 제소만이 늦추어지는 부작용만이 생긴다는 비판이 있어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권조정 결정에 이의신청이 행해진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자동적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으로써, 새로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제30조 2항).

개정안은 나아가 직권조정결정을 위해 중재부에서 심도 있게 조사하고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으면 다시 법원에서 1심부터 심리하게 된다면 공연한 시간과 수고의 낭비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1심의 심리를 건너뛰어(이는 중재부의 심리를 1심의 심리로 대체하는 취지이다.) 1심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의 관할로 함으로써, 공연한 시간의 낭비 및 지연책의 예방을 도모하고 있다(제33조 2항).

그리고 이와 같은 방안을 직권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뿐만 아니라, 불출석으로 인한 취하 간주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31조) 및 중재결정(32조) 취소의 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다(33조 2항).

이러한 규정의 입법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이와 같은 취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다만, 한 가지 유념해 두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경우의 관할을 고등법원으로 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중 3심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는 결과로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점이다.

2. 중재위원의 위상의 고양

중재위원의 위상을 높이는 문제는 중재위원회 위상의 위상을 높이는 문제와 서로 맞물려 있다. 즉 이번의 개정안에 의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하여, 현행법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손해배상까지도 중재의 대상으로 하고,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에 대해서도 법원에의 제소에 앞서 반드시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중재부에 대하여도 거의 1심 법원에 버금가는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여, “언론중재”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제소법원을 고등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중재위원회의 위상제고와 발맞추어 중재위원의 위상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서 첫째는, 언론중재위원장의 “상임화”가 절실하다(8조 5항) 할 것이다. 앞서 본 개정안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중재위원회의 업무의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지고, 따라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상근하는 위원장의 존재는 필연적인 것이다.

나아가, 개정안에 따르면 중재위원회는 명실공히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사건의 “전부”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또한 법원에의 제소에 앞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조직으로 자리매겨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위상에 걸맞게 중재위원의 임명권자도 격상하여 현재의 문화관광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바꾸는 것이 장기적인 언론문화의 창달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8조 2항).

언론피해구제법(안)은 정간물법, 방송법, 민법 등에 분산되어 규정된 언론피해구제 관련 법률을 일목요연하게 통합하여 규율하고 있어

IV. 언론중재관련 제도의 통합 (효율성의 확보)

이번 개정안이 의도하고 있는 또하나의 목표는, 언론중재에 관련된 여러 제도 및 규정들을 통합하여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언론피해구제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의 2가지가 포함될 수 있다.

가. 단일법의 제정

현행법의 여러 규정상 언론피해구제와 관련된 법률은 민법, 정간물법, 방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등에 분산되어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이를 찾아보기 어렵고,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규정내용도 서로 통일되어 있지 아니한 점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제작·반포·판매·방송금지가처분 등을 포괄하는 언론피해구제 방안을 일목요연하게 규율한 단일법의 제정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것인데, 이 개정안에서 비로소 이와 같은 희망이 달성되었다.

이는 그 동안 분산되어 여러 곳에서 세 들어 있던 식구들을 이제는 여러 여건이 성숙되어 하나의 집을 지어 한지붕 밑으로 모으려는 시도로서, 법시행 20년을 맞이하여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나. 선거시기의 반론보도청구 절차 통일 (38조 내지 40조)

현행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면 선거운동기간 중의 반론보도청구에 대하여, 방송에 관련된 것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정기간행물에 관련된 것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원적으로 규율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원적인 규정보다는, 구제절차를 통일화시키고, 조정(중재)절차의 효용성을 높이고, 나아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라도 선거시기의 반론보도청구는 이를 모두 언론중재위원회가 통일적으로 다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이러한 기초 위에서 제4절(38조 내지 40조)의 규정하에 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V. 언론중재관련 제도의 신설 및 변경 (효율성의 증대)

이번 개정안이 의도하고 있는 세 번째의 중요한 목표는, 종전의 기존관념에서 벗어나 약간 새로운 시도를 함으로써, 시대의 변화에 따른 언론주변 여건의 변화를 받아들여서 이를 법률의 규정으로 수용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정내용은 신선한 것이며,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유념하여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짐이 없도록 개정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아니될 부분이다. 여기에는 다음의 4가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가. 새로운 매체의 등장에 대응 (정보통신매체) (2조 3, 4호)

최근의 통신수단의 발달은 하루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통신의 활성화는 장래의 예측을 불허할 정도이다.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은 각종 통신수단의 발달에 대응하여 이 각각의 통신수단에 상응하는 반론청구 등 언론피해 구제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종래의 법적인 개념 즉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의 개념에만 따른다면, 오늘날 보편화되어 있는 기존의 언론사가 자기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서비스로 인한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쌍방향성을 지닌 매체의 특성상 인터넷 매체에 대한 구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지만, 기존의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전재(轉載)하는 해당 언론사의 인터넷뉴스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공성 및 대중매체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언론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언론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제대상으로 함으로써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3호 및 4호).

나. 옴부즈맨 제도의 설치 의무화 (5조)

언론에 의한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언론기관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언론기관 자체의 활동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인간의 속성상 자율적인 규제의 실효성에 항상 의문이 있어 왔기 때문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자율적 규제 제도의 가치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더욱이 최근에 이르러 일부 전향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중요 언론매체에 있어서는 언론 관계에 밝은 변호사들을 자문변호인단으로 선정하여 보도가 나가기 이전에 사전적으로 보도내용을 검토하게 하여 문제될 수 있는 내용은 수정·삭제함으로써, 피해의 예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하여 개정안은 최근의 이러한 바람직한 일부 움직임을 받아들이고, 더욱더 고취시키는 의미에서, 그리고 최소한으로라도 선언적인 의미에서 이러한 “사내 옴부즈맨” 제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즉 개정안 제5조는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나 또는 법률교수직에 있는 자 또는 언론현업에 종사한 자 중에서 1인 이상의 옴부즈맨을 두도록 하고(제3항 및 제2항), 위 옴부즈맨은 언론사의 보도내용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사전 또는 사후에 검토·확인하여,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언론사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항).

비록 선언적인 규정이기기는 하나 언론이 나아가야 할 장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참신한 규정이라고 여겨진다.

다. 정정보도청구의 요건완화 (14조 제1, 2항)

종래의 전통적인 이론에 의하면, 언론에 의한 법익침해의 경우에 인정되는 구제수단 중 정정보도청구권은 궁극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권리구제의 한가지 유형으로 인정되었다. 즉 원칙적인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의 방법 이외에 특별한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원상회복적

언론사의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공공성과 대중매체적 성격을 고려하여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규정

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리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그 당연한 전제 요건으로서 “진실이 아닌 보도”라는 요건이외에도, 가해자인 언론사측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의 입증의 요구되어 왔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론의 문제를 떠나 실제적으로 관찰해보면, 언론피해의 구제방법 중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는 원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신청인이 입증할 필요가 있는냐의 여부에만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점에서는 서로 본질상 다름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면에서 보면 정정보도청구를 구태여 불법행위로 인한 구제수단의 일종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정정보도라는 권리의 실제에 중점을 두어서, 정정보도의 청구를 위하여는 고의·과실 및 위법성의 입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14조 제1항 및 제2항).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의 개정안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으로서는, “정정보도 청구권”은 반론권과도 다르고, 또한 민법의 일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불법행위로 인한 예외적인 원상회복 조치와도 다른 “특별한 성격의 새로운 권리”를 창설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소멸시효기간 단축

(13조 제1항, 14조 제3항, 17조 제3항)

언론매체의 급속한 기술적 발전 및 통신수단의 발전으로 인하여 정보의 유통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피해자가 언

론보도 사실을 과거에 비하여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알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대생활에 있어서 모든 생활의 리듬이 과거에 비하여 현저하게 빨라진 것을 감안한다면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의 소지 역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함으로써 언론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것이 개정안에 있어서 피해자의 권리구제의 방법을 신속·간이하게 보장해 주는 데에 대한, 언론사측에 대한 당연한 배려사항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소멸시효의 기간에 관하여, 현행법상으로는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당해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민법 760조), 개정안에서는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개월 또는 그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로 단축하였다(제13조 제1항).

또한 정정보도의 경우에는, 현행법상으로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또는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로 단축하여 규정하였다(제14조 제3항).

그리고 반론보도청구의 경우에도 정정보도와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제3항).

VI. 법원에서의 절차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및 중재위원회 내에 있어서의 여러 조항들뿐만 아니라 언론피해구제사건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마무리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언론 피해구제사건이 법원에 제소되어 심리되는 과정에 관하여도 몇 가지 특징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즉 현행 법령의 규정 및 법원의 실무례에 의하면, 반론보도청구의 소와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법률적으로 그 실제적 권리의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즉 전자는 형식적인 권리이고, 후자는 실질적인 권리라고 표현할 수 있다.) 위 2가지의 소송은 절차상 병합하여 심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즉 전자는 가처분의 절차에 의하고 후자는 본안소송의 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이에 따라 사건의 배당 역시 달리하고 있다(전자는 신청부로 후자는 본안부로 배당함).

그러나, 이와 같은 구별은 형식논리적인 근거에 의한 것으로서 손해배상, 정정보도, 반론보도가 모두 결국은 언론의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는 실질적인 공통점은 전혀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개정안은 위 실질적인 공통점을 중요시하고 권리구제의 실효성에 중점을 두어 위 3가지의 소송은 서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하되 모두 본안소송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다(제29조 제2항).

다만 반론보도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그 권리의 본질이 형식적인 권리인 것이므로(즉, 원보도의 진실여부를 묻지 않는 것이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증명이 아닌 소명만으로서도 청구를 인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4조 제2항).

나아가 언론피해구제사건은 신속한 해결이 그 생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사건의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4조 제3항).

그러나 이 3개월의 규정은 재판업무의 본질상 훈시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가집행선고를 하도록 하고, 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집행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4조 제4항).

Ⅶ. 맺는 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언론중재제도가 시행되어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있어서, 언론피해구제에 관심이 있는 법률가·법학자 및 언론인들의 이념을 지배하고 있는 2가지의 등대가 있었는데, 그 하나는 “언론에 관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고 다른 하나는 “언론중재기능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지난 수년간 위 2가지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연구를 하여 왔고, 그 연구의 성과를 집약한 것이 이번의 개정안이다.

약간의 과장을 덧붙여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우리나라의 현재의 법제도 및 언론중재에 관한 기본적인 틀을 크게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개정안의 내용이 현재로서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담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여기에서 한 가지 자신 있게 부연해 두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개정안이 만들어지게 된 기본적인 밑바탕에는 그 동안 20년에 걸쳐서 경험을 쌓아온 우리의 언론중재제도 및 그 주동적인 역할을 해온 우리의 언론중재위원회

언론피해구제법(안)은 언론에 관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언론중재 기능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집약

자체에 대한 우리 나름의 자신감과 신뢰감이
그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부디 언론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의 활발한
토론을 거쳐 중지를 모아, 우리의 실정에 맞는
그러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개정안이
만들어져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언론피해구제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의 책임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
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및
정당한 범익을 보호하고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활
동을 보장하여 양자의 조화를 통한 공정한 여론형성
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기간행물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정기간행물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한 신문,
통신, 잡지, 기타 간행물을 말한다.

2. 방송 :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말한다.

3. 정보통신매체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 정기간행물 또는 방송의 내용을 제공함을 목적
으로 하는 매체를 말한다.

4. 언론사 : 정기간행물과 방송, 정보통신매체를 경

영하는 법인 또는 자연인을 말한다.

5. 언론사의 대표자 :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
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외국 정기간행물로서 국내에 지사
또는 지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사실적 주장 :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
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7. 언론보도 : 정기간행물이나 방송, 정보통신매체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8. 정정보도 :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
지 아니한 때에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
는 것을 말한다.

9. 반론보도 :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
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언론의 자유)

① 언론의 자유와 권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② 누구를 막론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수단과 방법으로 언론에 부당한 간섭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자유로운 활동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
다.

③ 언론은 취재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편성, 제작, 보도할 자유를
갖는다.

제4조(언론의 책임)

① 언론사의 소유자, 발행인, 편집인, 편성책임자 기타
누구를 막론하고 언론을 자기 또는 그 친족, 그가 소속
한 정파나 종교 등의 부당한 이익추구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언론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선량한 풍속 및

도덕관념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와 인격적 성장을 고양하는 등 그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언론은 타인의 정당한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침해가 이루어진 때에는 스스로 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손해배상이나 정정보도 등 원상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사내 옴부즈맨)

① 언론은 공표 전에 보도내용의 진실성 및 그것이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여부를 최대한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 공표 후에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님이 밝혀지거나 이해관계인의 반론이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일간신문과 방송, 통신은 제1항의 업무를 담당할 자율적 기관으로서 사내에 1인 이상의 옴부즈맨을 두어야 하며 정기간행물과 방송을 겸영하는 경우 각기 따로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옴부즈맨은 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조교수 이상의 법과대학 교수의 직에 있었거나 5년 이상 언론 현업에 종사한 자로서 당해 언론사에 소속되지 않은 자여야 한다.

④ 옴부즈맨은 당해 언론사의 보도내용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를 사전 또는 사후에 검토 확인하여 언론의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정당한 명예나 기타 법익을 침해하는 등 제4조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해 언론사의 발행인, 편집인 등 책임 있는 자에게 시정을 구하는 등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언론사는 옴부즈맨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언론의 면책)

① 언론의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언론은 그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여 처우하거나 그의 친족 또는 주변인에 관하여 불필요한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기간과 송달)

①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 의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배달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우편에 의하거나 모사전송(팩시밀리)의 방법에 의한다.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

제8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조정 또는 중재하고 언론보도에 의한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며 피해구제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 및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되 위원의 5분의 2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로 하고, 위원 중 5분의 1 이상은 언론계인사 중에서 위촉한다.

③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자를

포함한다)와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중재위원과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가 만료한 때라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는 그 지위를 유지한다.

⑤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⑥ 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에 관하여 누구로부터든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아니한다.

⑦ 비상임 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중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써 행한다.

제9조(중재부)

① 분쟁의 조정, 중재 및 시정권고를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중재부를 두되 그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재부는 5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부의 장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중재부의 의사결정은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5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행한다.

제10조(사무처)

① 중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피해구제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두되 중재위원회 위원

장이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매년 그 활동결과를 정리하여 다음 연도 정기국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사무처의 조직, 운영과 그 직원의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피 해 구 제

제1절 총 칙

제1관 손해배상청구

제12조(손해배상책임의 요건)

① 언론사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보도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신용 등 인격적 법익이나 재산적 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그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도와 관련하여 취재, 편성, 제작 등에 관여한 자는 언론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③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각기 독립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13조(소멸시효)

① 제12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월 또는 그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8조 내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론사의 대표자에 대하

여 서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중재위원회에 대하여 조정 또는 중재신청을 한 때에만 중단된다.

③ 제2항의 언론사의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 법에 따라 피해자가 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며, 조정 또는 중재신청을 취하한 때에도 같다.

④ 중단된 시효기간은 이 법에 따른 재판 또는 그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결정 등이 확정된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며, 특정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복수의 피해자들 상호간에 생계를 같이하거나 4촌 이내의 친족 또는 배우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그 1인에 대한 시효완성의 효과는 전원에게 미친다.

제2관 정정보도청구

제14조(정정보도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청구권은 피해자가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또는 그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소멸한다.

④ 제13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정정보도청구권에 준용한다.

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재하고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하여야 한다.

③ 언론사의 대표자가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 또는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발행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④ 정정보도문은 원 보도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실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의 한도 내에서 기사의 크기, 위치, 방송주파수와 방송시간대, 형식 등이 동일하거나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정정보도문은 독자투고의 형식이나 피해자의 진술형식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예외 사유)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보도내용 중 지엽말단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정을 구하거나 기타 청구에 상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2. 원래의 보도 후 후속보도에 의하여 충분한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3. 광고(의견광고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하거나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

4.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위법한 경우

5.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개된 회의나 법원의 공개재판절차를 사실대로 보도한 경우

제3관 반론보도청구

제17조(반론보도청구의 요건)

-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이 진실한지 여부를 불문한다.
- ③ 제14조 제3항 내지 제5항은 반론보도청구에 준용한다.

제18조(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

- ① 제15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준용한다.
- ② 반론보도문은 피해자의 진술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예외 사유)

- ①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언론사는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 1. 원래의 보도후 후속보도에 의하여 충분한 반론이 이루어진 경우
 - 2.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특별한 증거조사를 요하지 아니하고서도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 ② 제16조는 반론보도청구에 준용한다.

제20조(추후보도청구권)

- ①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추후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추후보도는 무죄판결이나 그와 동등한 형태로 형사절차가 종결된 사실을 전달하는 데 국한한다.

③ 추후보도청구에 관하여는 제1, 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무죄판결 등이 있거나 그것을 안 날로 한다.

④ 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절 조정 및 중재절차

제21조(조정신청)

- ①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정신청은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3항(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각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제15조 제1항(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언론사에게 먼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한 때에는 그 각 청구를 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언론사에게 먼저 손해배상을 청구한 때에는 그로부터 2월 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제15조 제1항은 제1항의 조정신청에 준용한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조정신청서에는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중재위원회는 중재규칙으로 조정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포함하여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조정)

- ① 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한다. 관할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때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② 조정은 신청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쌍방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정정보도, 반론보도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천재, 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일 내에 당해 중재부에 이를 소명하여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부는 속행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새로 조정기일을 정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⑤ 조정기일에 중재위원은 조정대상인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들에게 설명, 조연하고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으로 합의를 권유한다.

⑥ 변호사 아닌 자가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중재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⑦ 조정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제23조(증거조사)

① 중재부는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쌍방에게 조정 대상 표현물이나 기타 관련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하며, 중재부는 필요한 경우 그 위원 또는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자료를 수집 보고하게 하고 조정기일에

그에 관하여 진술을 명할 수 있다.

③ 중재부의 장은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회 조정기일 전이라도 제1, 2항에 의한 자료의 제출이나 증거자료의 수집,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④ 중재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한다. 다만 위 법의 법원은 중재부로, 법관은 중재위원으로, 법원서기는 중재위원회 직원으로 본다.

제24조(결정)

① 중재부는 조정신청이 부적법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 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③ 중재부가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직권조정결정)

① 당사자 사이에 합의(제22조 제3항에 의한 합의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관여한 중재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없이 당사자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직권조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제2항의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6조(조정합의 등의 효력)

① 조정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제25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그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및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7조(중재)

① 당사자 쌍방은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의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③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7조 제1호 내지 제4호, 제38조, 제39조, 제45조를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의 법관은 중재위원으로 보며, 제척·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 중재부가 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중재위원의 회피에는 중재부의 허가를 요하지 않으며 회피로 인하여 결원된 중재위원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8조(중재결정의 효력)

- ① 제25조 제2항은 중재결정에 준용한다.
- ②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절 소송절차

제29조(조정전치주의)

①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법원에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청구의 소와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 정

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 상호간에 청구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소는 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제기할 수 없다.

제30조(제소기간 및 당사자)

① 제29조 제1항의 소는 제24조에 의한 결정 정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이 있을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 상대방인 언론사를 피고로 한다.

③ 제1, 2항의 소장 또는 이의신청서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한 인지를 첨부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로 본다.

④ 중재서기는 제2항의 경우에 조정사건 기록을 이의신청서와 함께 지체없이 관할 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31조(즉시항고)

① 제22조 제4항의 기일 속행신청이 기각된 경우 그 신청인은 결정 정보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당해 중재부를 경유하여 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③ 법원은 심리에 필요한 경우 중재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중재위원을 상대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즉시항고장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1조 제2항에 정한 인지를 첨부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30조 제4항은 즉시항고에 준용한다.

제32조(중재결정 취소의 소)

① 중재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내

지 제9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부를 경유하여 법원에 중재결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당사자가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10일, 중재결정이 있는 날(취소의 사유가 중재결정이 있는 후에 발생한 때는 그 발생한 날)로부터 6월(다만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중재결정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의 피고는 상대방 당사자로 한다.

④ 제30조 제3, 4항은 중재결정 취소의 소에 준용한다. 다만 그 소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로 본다.

제33조(관할)

①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정정보도 또는 반론 보도청구의 소의 제1심 재판은 분쟁당사자인 언론사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소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와 제31조의 즉시항고 및 제32조에 의한 중재결정 취소의 소는 위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34조(법원의 심리)

① 법원은 소가 부적법하거나 제25조 제3항의 이의 신청 및 제31조의 즉시항고가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는 등으로 부적법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심리는 민사소송법의 본안소송절차에 의한다. 다만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소명만으로써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늦어도 사건의 접수 후 3개월 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 청구 또는 반론보도청구가 병합된 경우에 소송의 신속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변론을 분리하여 일부판결을 할 수 있다.

④ 법원이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하는 때에는 가집행 선고를 붙여야 하며,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하다.

⑤ 제25조 제3항의 이의신청과 제31조의 즉시항고는 제1심 재판 선고 전까지 취할 수 있다.

제35조(상소)

① 정정보도청구나 반론보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용된 판결에 대한 상소심의 심리결과 그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언론사가 이미 정정보도나 반론 보도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그 의무이행에 따른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은 제32조의 중재결정 취소의 소와 재심의 소에 준용한다.

제36조(집행)

①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의 집행은 민사소송법 제693조 및 제694조의 간접강제에 의하되 집행문을 요하지 않으며 피고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나 반론보도청구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제1항의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 제2항의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에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정정보도청구나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상소 또는 재심의 제기, 상소추원신청이 있는 때에도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37조(가처분)

① 법원은 언론보도로 인하여 현저히 피해자의 법

익을 침해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권리 등 제반사정을 정당하게 비교 형량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표현물의 제작, 반포, 판매, 방송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에 따라 표현물의 봉인이나 집행관에게의 점유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피해자로부터 제2항의 재판에 대한 집행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지체없이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 야간과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도 집행할 수 있다.

④ 기타 가처분에 관한 사항은 민사소송법에 의한다.

제4절 선거관련 보도의 시정청구

제38조(반론보도청구)

①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에 있는 신문에 관한 사항 또는 정강, 정책, 공약사항에 관한 사실적 주장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같은 기간 내에 당해 언론사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자는 24시간 내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과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고 협의 성립시부터 24시간 내에 이를 보도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경우 협의 성립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발행호에 이를 보도하여야 하며, 그 발행호가 선거기간 종료 후에 발행되는 경우에는 전국에 걸쳐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론사의 대표자는 제1항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제19조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
2. 당해 보도내용이 후보자간 합동토론회에서 상대방 후보자가 발언한 것인 때
3. 당해 보도내용이 상대방 후보자의 발언으로서 피해자가 당해 언론사를 통하여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선거방송 등이 예정되어 있을 때

제39조(조정, 중재 등)

①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언론사가 이를 거부한 경우 피해자는 청구가 있을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조정기일(그 횟수를 불문한다)에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쌍방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피신청인인 언론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제22조 제4항의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없다.

④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제3항에 의하여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때 및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집행력이 있다.

⑤ 제38조 제2항은 제4항에 의한 반론보도에 준용하며, 이의신청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조정결정이 있는 때에도 이와 같다. 언론사가 직권조정결정에 따른 반론보도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5천만원 이하 또는 1일당 3천만 원 이하의 비율에 의한 과태료에 처한다. 비송절치는 중재위원회가 법원에 통보함으로써 개시된다.

⑥ 언론사는 제5항에 의한 직권조정결정에 따른 반론보도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그에 이르게 된 경위와 언론사의 입장을 표명하는 기사를 반론보도와 동시에 방송 또는 게재 할 수 있으며, 제35조 제2항은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피해자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판명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⑦ 기타 선거관련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통상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다른 권리와 의 관계)

① 제39조에 의한 반론보도청구권은 이 법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정정보도청구권 등 기타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정정보도청구권 등의 행사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제4장 시정권고

제41조(시정권고)

① 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언론사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써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조정 또는 중재신청이 된 사건과 관련한 시정권고는 당해 중재부가 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42조(불복절차)

①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은 당해 시정권고를 한 중재위원회 또는 중재부에서 한다.

③ 언론사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은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중재위원회나 중재부는 재심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43조(시정권고의 효력)

①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친다.

② 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제5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 후에 이루어진 언론보도에 적용한다.

제2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경과규정)

① 이 법 시행 당시 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정기간행물법에 의하여 위촉된 중재위원 및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그 임기만료 시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기간행물법 제3장, 방송법 제91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 4는 삭제한다. □

종합토론

사회자 · 윤 재 윤
서울지법 부장판사

사회자 : 제1주제 “언론환경의 변화와 언론 관련 법률의 쟁점별 검토”에 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발표를 하신 강교수께서는 언론의 내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물적 독립으로서의 편집 전문성, 인적 독립으로서의 편집인 선임문제를 주요하게 보았습니다. 편집권은 원칙적으로는 편집전문인에게 있으며, 간접적·열위적으로는 경영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편집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적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편집권의 인적 독립에서는 편집인의 선임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므로 현행법상 ‘발행인이 선임한 자’라는 문언을 ‘언론사가 선임한 자’로 바꾸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었으면 합니다.

김남기 (조선일보 사회부 차장) : 강교수는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문제, 특히 경영권과 편집권의 갈등 내지 사주의 언론간섭 문제 등에 대해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정립해 주었습니다. 기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주가 편집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은 일이겠으나 실제로 그럴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

운 문제입니다. 설사 발행인이 관여할 수 없다 하더라도 더구나 편집책임자를 자체적으로 선출한다 해도 이 또한 어느 정도 현실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신문사의 사할에 대하여 가장 관심이 많은 발행인이 편집에 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시장경제논리에 입각한 생각이지만 객관적인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김재덕 (서울 중재위원) : 발표자는 편집권이 기본권이라 했는데 어떤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주장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강경근 (발표자) : 편집권을 언론사의 논조를 어떠한 방향으로 정해서 이를 외적으로 표현하여 국민의 알 권리에 이바지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생각한다면 그것의 근거는 헌법 제21조 제1항 언론·출판의 자유가 지니는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 속에는 국민 개개인이 가지는 외적인 표현의 자유 외에 언론이 우리 공동체에서 수행하는 일정한 질서의 형

성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21조 제3항의 언론의 기능의 의미에 대해 헌법이론가들의 명확한 논거는 없으나 내적 언론자유의 기초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만으로는 편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언론사 사주나 경영자는 경영권만 전속적으로 부여받을 뿐 편집에 대한 발언권이 없다”는 주장은 현행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정간물법’이라 한다)의 해석상으로는 실재하기 어려운 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발행인의 편집권한을 인정하되 이를 간접적·열위적 권한으로 보고, 전문적인 권한으로서의 편집권, 즉 편집권의 전문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원 (중앙일보 사회부 수석기자) : 편집권의 귀속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실익적인 측면에서도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편집권이 기본권이라는 시각은 매우 새로운 접근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편집권이 기본권이라고 한다면 그 권리의 침해에 대해 어떠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편집권을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강경근 (발표자) : 편집권을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 한다면 공권력에 의해 편집권이 침해됐을 때나 편집권을 규정한 법률이 불완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재덕 (서울 중재위원) : 발표자의 의견대로 만약 편집권이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이라 한다면 논설권, 발행인권도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편집권이 헌법상 인정되

는 것이라면 정간물법상 발행인이 편집권을 보호하는 것인 양 기술되어 있는 것과는 모순됩니다. 편집권의 독립을 논해야 하는 것은 편집에 관여할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주나 발행인이라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편집권을 침해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지만,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조균상 (대전 중재위원) : 사주에 의한 편집권 관여 문제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는 경영권과 편집권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편집권을 어떻게 보장하여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현실적인 애로사항에 중점을 둔 논의가 진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편집권의 보장은 일선기자의 소신있는 기사 작성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 시킨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권리

박현수 (경인일보 사회부 차장) : 편집권의 기본권 여부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도 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취재현장에서 바라볼 때는 편집권에 대한 이러한 추상적인 의미보다는, 편집권의 보장은 일선 기자가 자신의 소신에 따라 기사를 작성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며, 기자나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권리임을 밝힙니다. 시장경제 원리의 입장에서 사측이 관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사측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편집권을 보장해 주더라도 사주의 기업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가 지면에 100% 반영될 수 있는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면 합니다.

한영달 (강원 중재위원) : 일선 취재현장과 괴리된 논의보다는 신문제작활동에서의 편집권의 문제를 다루었으면 합니다. 편집국장, 일선기자 등 실무자에게 편집권의 우선 순위를 양보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봅니다. 언론개혁 시민연대의 정간물법 개정청원안의 “발행인은 편집권을 보호한다”는 규정은 다소 애매한 조항이라고 판단되며, 이를 “발행인, 기자, 편집국장과 편집권에 대해 협의한다”는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희봉 (인천일보 사회부장) : 편집권은 워터게이트사건과 같은 큰 사건의 보도에서 편집국장 개인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기사화하고 실제로 그 보도의 책임을 질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방지의 경우 시장이나 경찰청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사의 경우 편집국장 개인이 판단하여 처리하는 경우보다는 사주나 발행인과 상의한다고 봅니다. 즉 신문의 존립이 걸린 경우 사주와 협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편집권의 문제는 회사의 분위기나 상황, 사안의 중요성 등에 따라 다양해지므로 단언적으로 편집권 독립문제를 논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최광일 (서울 중재위원) : 편집권 독립의 협의적인 의미는 취재제작과정에서 사측으로부터의 부당한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취재, 보도하는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신문사 발행인이 평소 일일이 편집권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며, 보통 중요한 사안에 한해서 편집인과 협의합니다.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언 (서울방송 법조팀장) : 최근 편집권 침해 양상을 살펴보면, 언론사주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은 줄어든 데 반해 오히려 사회단체 등 이익집단으로부터의 침

해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월남참전 군인들의 한겨레 신문사 난입,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의 MBC 난입사태, 네티즌들의 항의에 의해 SBS의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광고가 중단된 사태 등 사회 각 이익집단이나 재벌, 경제계 등으로부터의 부당한 압력으로 인해 편집권이 침해받는 경우가 보다 심각합니다. 따라서 순수하고 자유로운 편집, 보도를 보장하기 위한 편집권에 관해 논의해야 한다면 사주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편집권 보호보다는 사회단체 등 이익집단으로부터의 편집권 보호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언론사주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편집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은 현저히 줄었으나 사회단체 등 이익집단에 의한 편집권 침해가 커지고 있어

김남기 (조선일보 사회부 차장) : 언론사 지배구조문제, 재벌언론과 족벌언론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자께서 제시하셨지만 언론사 지배구조와 보도의 공정성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듭니다. 특정재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기사내용이 치우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신문의 공정성과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신문의 공정성이라는 명제는 언론의 지배구조, 소유구조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준희 (한국일보 사회부 차장) : 기업체가 언론사를 소유한 경우, 그 언론사 논조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언론사 논조가 그리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최근 조사를 보면 게이트 키퍼과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정치적인 외압보다는 내적인 통제 즉 사주나 편집

간부에 의한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자리에서 편집권의 독립 문제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견해는 상당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내적 통제 요인이 작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기사의 가치 판단에 있어 기자 의사에 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를 입법화하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기자의 편집권은 중요한 것이며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보호해야 합니다.

윤현주 (부산일보 사회부 차장) : 한국 언론사의 소유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오랜 전통을 가진 미국 등 선진 국가의 언론은 높은 도덕성이 전제가 되어 편집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기본적인 도덕의식을 망각하지 않지만 우리의 현실은 다릅니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압력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편집권 보호를 위해 소유구조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경탁 (전북일보 사회부장) : 편집권에 대한 시각은 시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1980년대는 편집국장 개인에게 많은 책임을 부여한 반면, 1990년대 들어 언론자유가 정착되면서 외부로부터의 개입보다는 내부적인 압력이 커졌고, IMF이후에는 언론사 경영의 위축이 편집권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편집권이 합리적으로 행사되고 있을 때 일반 독자로부터 지지를 받고 언론사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신동식 (서울 중재위원) : 현재 외부로부터의 편집권 침해는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 사실이며 오히려 언론사 스스로 편집권 보호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됩

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그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언론사 소유구조와 관련 그 언론사 소유지분의 한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경영부분이 점차 중요성을 가지는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편집권은 국민의 알 권리를 형성하는 측면에서 기본적 권리이나 이를 어떻게 실현하는가는 각 언론사의 내부적인 판단에 맡겨야

강경근 (발표자) : 연구실에서 추상적으로 사고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많았는데 언론현업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견해를 접하고 새롭게 느낀 부분이 많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시장질서 속에서 공익성을 실현하는 언론이라는 상반되는 가치 중에서 언론사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생존논리가 중요하다는 시각을 견지했습니다.

다만 언론이 언론이기 위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의 내적 언론의 자유마저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생존이라면 우리 헌법이 예견하는 바는 아니라는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지배구조 내지 소유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간물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면서 편집권의 법제화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었기에 대한 근거를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으로 접근했습니다.

편집권을 기본권으로 본다는 제 견해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자면, 편집권은 언론의 내적 자유를 실현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형성하는 기본권이고 그 기본권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정치권력은 물론 언론사주, 경영자 등으로부터 받게 되는 여러 변수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편집권을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발행인이 절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되고, 이는 현실과도 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편집인에게 1순위의 편집에 관한 권한을 주어 사주나 발행인으로부터 독립하여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편집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인 권리가기는 하지만 이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는 각 언론사의 내부적인 판단에 맡기자는 견해입니다. 한편 소유구조와 관련하여 방송이나 통신의 경우 공영성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소유구조 제한이 가능하지만, 사기업적 성격이 많은 신문사의 경우 헌법의 명문화된 규정이 없음에도 소유구조를 제한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옳은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자 : 제1주제에 대한 토론은 이 정도로 마치고, 제2주제인 언론피해구제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가칭 '언론피해구제법'은 여러 법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분쟁에 관한 법률을 통일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에서 모든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중재위의 조정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남발할 우려가 있어

이이표 (강원일보 사회부 차장) : 최근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이나 반론보도청구로 인해 언론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배상도 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으로 하는 것은 언론에 또 다른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즉 언론피해당사자가 정정이나 반론에 만족하지 않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한편 법안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보도를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보도”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언론사의 책임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것이라 보며, 사실보도의 경우는 저촉되지 않는지, 차후에 민·형사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양삼승 (발표자) : 가칭 '언론피해구제법'안에는 손해배상도 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은 새롭게 신설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법률 조항을 옮겨온 것에 불과합니다. 다만 이 법안으로 인해 국민들이 보다 확실하게 인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은 분명합니다.

한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한 보도의 경우 그 책임을 문도록 한 규정이 언론사의 책임을 더 강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셨는데, 이는 현행 법률에서만 한 걸음도 앞서 나가지 않은 것이며,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다 알기 쉽게 고친 것입니다. 언론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알기 쉽게 단일법에 규정함으로써 언론사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인식은 전환해야 할 발상이라고 봅니다.

박병권 (국민일보 사회부 차장) : 이 법이 제정되면 언론의 공적 임무인 사회비판 기능이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표현의 자유도 소홀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보도대상자가 무죄판결이 나면 변호사가 소송을 권유하는 실정이며, 언론보도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언론사에 직접 항의하는 것은 물론 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모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개인법익에 대한 의식이 이렇게 향상되었으므로 언론피해구제법률을 전면에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수 (세계일보 사회부 차장) : 중재위원회의 기본적인 역할은 언론보도 피해자에게 신속한 명예회복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청구까지 중재위원회를 거치도록 한다면 반론·정정보도청구와 함께 금전적인 부분까지 요구하게 되어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안을 중재위원회에서 먼저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인범 (대전방송 사회부 차장) : 가칭 '언론피해구제법'안의 입법취지는 중재위원회의 위상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손해배상청구를 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으로 할 때 중재위원회가 일종의 '언론법정'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또한 이 법안이 제정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피해당사자에게 중재위원회가 그 처리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해도 (서울 중재위원) : 언론계 여러분이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 방어적인 입장을 피력하셨는데, 국민들의 개인법익에 대한 높아진 인식을 고려할 때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하고자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에 앞서 중재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게 될 경우 언론사측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허근녕 (충북 중재위원) : 손해배상의 문제는 이 법안과 관계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송비용도 많이 들고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편리한 제도가 아닌가 합니다. 상대적으로 언론사에서 손해를 본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겠으나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중재위원회의 각 중재부에는 현직 부장판사 등 법률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문제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못지않게 이 법안이 가져올 수 있는 언론자유 의 위축 등 역기능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박현수 (경인일보 사회부 차장) : 언론피해구제법으로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다만 이 법안이 가질 수 있는 역기능적인 측면에 대해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예를 들어 언론중재제도로 인해 일선 기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반론보도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반론을 반드시 구하려는 입장이나, 요즘은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취재한다고 판단되면 언론사에서 반론을 구하고자 하여도 이를 거부하고 보도후 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못지않게 중요한 언론 자유 및 알 권리의 위축 등이 법안이 가져올 수 있는 역기능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김남기 (조선일보 사회부 차장) : 손해배상을 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으로 할 경우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이 남발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언론계의 공통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가액에 따라서 2천만원 이하는 소액심판법으로, 5천만원 이하는 단독

사건으로 하는 등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2천만원 이하의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는 등의 방안을 마련,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조정대상 가능여부를 정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현문학 (매일경제 사회부 차장) : 언론사는 보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소송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정이나 반론보도청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언론사의 경영이 취약한데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피해구제법이 시행되면 손해배상소송의 남발로 자연스레 언론계에 제2의 구조조정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의 중재위원회 도입은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것이 아닌가 합니다. 현재 우리의 취재관행을 살펴보면 취재원의 말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만 외국의 경우는 공개적인 브리핑이나 기자회견을 통해 기사작성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를 중재위원회에서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언론계의 취재관행부터 바뀌어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정착되어야 하며, 언론피해를 줄이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급증하는 언론관련 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고려하여
언론피해구제법안에 대해 접근해야**

김진원 (중앙일보 사회부 수석기자) : 언론 피해구제 관련 법률을 왜 통합하여 규율해야 하며 이 법안의 주요 내용, 즉 손해배상을 어떠한 이유로 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중재위원회의 손해배상도입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분명히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취재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관련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변호사들도 새로운 소송형태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언론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고려하여 이 법안에 대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 피해자 입장에서는 오보로 인한 피해는 오진으로 인한 경우보다도 크다고 보겠지만, 우리 나라의 언론보도로 인한 위자료는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사소송의 위자료액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조균상 (대전 중재위원) : 손해배상청구권을 중재위원회의 조정대상에 포함하는 견해에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으나 짧은 조정기간 동안 정확한 손해배상액의 산출이 가능할런지의 문입니다.

양삼승 (발표자) : 여러 의견을 듣고 느끼게 되는 한 가지는 언론인들 스스로 비판의 잣대를 동등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적 기관 등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는 경우와 언론계에 대한 비판에 있어 적용하는 기준이 틀려서는 안됩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중재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중재 절차 단계에서 손해배상을 제기하여 언론인들이 불이익을 가질 수 있다는 논리는 사실이 아닌 보도로 인해 피해 받은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그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중재 처리결과와 긍정적 효과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손해배상을 포함하였을 때 신속한 처리와 높은 피해구제율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피해구제율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를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손해배상의 중재대상 포함문제에 대해서 법률가 가운데서도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분

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김차장의 제안대로 소액의 손해배상액 청구에 대해서는 중재위에서 처리하고 그 이상의 손해배상액은 법원에서 처리토록 하는 방안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사 경영구조가 취약한 상태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중재위원회에 도입할 경우 언론사의 경영압박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언론보도에 대해 책임지지 못하는 언론사는 퇴출되어야 한다는 반론 또한 있음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손해배상을 중재대상에 포함할 경우 중재부는 반론 내지 정정보도 외에 손해배상을 활용,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에 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편 중재부에서 반드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간단한 사안인 경우 위자료액만을 결정하고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불성립결정을 한다면 손해배상액의 산정 문제는 해결되리라 봅니다.

**언론보도로 피해받은 국민을 생각한다면,
중재절차 단계에서 손해배상이 제기되어
언론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은 잘못**

임경탁 (전북일보 사회부장) : 손해배상청구를 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으로 하는 이 법안은 언론계에게는 일종의 악법이 될 수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며 공론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배상의 도입으로 오히려 중재위원회의 역할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법부내에 언론전담재판부를 두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사회자 : 이 자리는 가칭 '언론피해구제법'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장임을 유념해주셨으면 합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판단은 분명 법원에서 해야겠지만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든다는 비효율성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중재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복잡한 사안을 중재위원회에서 단시간에 처리하는 경우를 접하면서 중재위원회의 효능성을 절감한 적이 있습니다.

문희봉 (인천일보 사회부장) : 손해배상을 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진다면 아마도 반론이나 정정보도로 마무리될 사안조차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재위원회에서 손해배상을 처리하게 된다면 손해배상의 성립조건 내지 그 단서조항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이표 (강원일보 사회부 차장) : 정정보도 청구나 반론보도청구의 조정전치주의의 효능성을 인정하지만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고 손해배상액에 불만을 가질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조정전치주의를 두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인범 (대전방송 사회부 차장) : 오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미 지배적인 사회 분위기입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소송제기의 의지가 없는 사람까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행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굳이 중재위원회에서 손해배상을 중재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손해배상의 책임을 언론사가 아니라 기자 개

인이 지고 있는 상황임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김태수 (세계일보 사회부 차장) : 언론계 자신에게 적용하는 잣대를 완화하여 언론계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또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손해배상의 중재위 원회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언론중재위의 절차를 통해 반론이나 정정보도으로써 만족해하던 언론피해자들이 명예회복의 판단 기준을 금전으로 바꾸어 피해구제의 기준으로 삼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법원 내에 조정기구를 두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보도로 인한 소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인 관련 보도의 면책기준을 구체화 시켜야

김남기 (조선일보 사회부 차장)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언론소송이 붓물 터지듯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언론의 면책 조항과 관련하여 공인 또는 공직자에 대한 보도의 경우 지금의 '상당성 기준'을 구체화하여 명시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실제적 악의'이론의 적용문제와 관련, 공인이나 공직자의 경우에 한하여 형사상 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의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삼승 (발표자) : 공인관련 면책기준의 설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법안 제6조는 언론의 면책조항의 구체성에 대한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것입니다. 언론의 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언론의 책임이 인정되면 이 또한 엄격해야 하며 그 절차는 신속하고 간편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위원장 : 장시간 동안 토론에 적극 참여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훌륭한 주제논문을 준비해주신 발표자 여러분과 열띤 토론으로 이끌어 주신 사회자에게 감사드립니다.

편집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적 권리로서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권리임을 강조한 강교수께서는 편집권의 독립과 그 전문성을 견지하기 위한 현행 법 규정의 미비점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첫선을 보인 가칭 '언론평해구제법'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고, 특히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중재위원회의 조정전치주의로 규정함에 대해 언론현업에 계시는 분들의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결코 확정된 것이 아니며, 오늘의 자리를 비롯한 많은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가다듬어 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손해배상은 위자료라 칭하는 정신상의 손해와 재산상의 손해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칭 '언론평해구제법'안의 규정대로 언론중재위의 중재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위자료가 주가 될 것이며, 언론중재위의 각 중재부에는 법률전문가인 현직 부장판사, 변호사와 전직 언론인이 중재위원으로 있어 법원에서의 판단보다 유연한 결정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따라서 중재위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지 못한 사건만 법원에서 판단토록 하는 것이 언론피해자와 언론사 양자에게 모두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토론에 적극 참여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0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를 마칠 것입니다. □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I. 문제제기

사이버공간(Cyberspace)은 더 이상 가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다. 현실(reality)과 가상(virtual reality)의 이분법적 구분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사이버공간은 실제의 공간이다. 왜냐하면 사이버공간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은 더 이상 가상 속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적 공간에서의 해결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지난 8월말 국회 사이버정보문화연구회는 '사이버정보문화현장'을 선포했다. 이는 사이버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삶의 양식을 개발하고 건강한 가치체계를 정착시켜 정보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하며 다가오는 사이버세계에서 인류의 소중한 꿈인 자유, 민주, 평등을 실현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 현장은 도전적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디지털문화의 창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공동체 구축, 다양한 사이버문화 형성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¹⁾ 이러한 사이버정보문화 현장의 선포는 사이버공간이 더 이상 일상적인 생활과 유리된 비현실적인 장소가 아님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동시에 사이버공간이 더 이상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출하고 그 보편적 민주성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아님을 반영한다. 다시 말하자면 사이버공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나 기대는 이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사이버공간은 접근 가능한 누구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견해, 생각, 그리고 사상을 순간적이고 광범위하게 유포하고 획득할 수 있는 상호작용적(interactive) 장치로 이용되어 왔다. 그래서 사이버공간에서는 누구나 기존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서는 불가능했던 혁신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향유할 수가

이 재 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신문학과 조, 동 대학원 석사
- 미국 아이오아대 저널리즘 석사, 남일리노이대 저널리즘 박사
- JCI 편집위원, 한국언론학회 이사
- 현재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 명예훼손법상의 공인과 언론에 나타난 공인의 개념적 차이에 대한 연구", "Libel Law and the Press" 외 다수

1)대한매일, 2000년 9월 1일자.

있다.²⁾ 이러한 이유로 사이버공간은 기존의 미디어에서의 문제가 되는 민주주의 실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장소가 되며,³⁾ 신속하게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술적 측면은 진리의 발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의심치 않았다. 다시 말하자면 사이버공간은 기존의 무너진 사상의 공개시장을 복원할 수 있는 진정한 매체로서 기대되어 왔다.⁴⁾ 무엇보다도 사이버공간은 자신이 자유롭게 창출한 생산물을 어떠한 형태의 제도적 검열도 받지 않고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미디어들의 ‘전달(transmission)’ 이상의 “공유, 참여, 결사, 또는 공동의 신념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⁵⁾

다시 말하자면 사이버공간은 기본적 존립근거로서 ‘보편성(universality)’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미국의 1996년 전자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에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술적인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는 보편성이 인터넷 존립의 근간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사이버공간은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여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민주적 매체로서의 기대를 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이버공간은 기존에는 정치적 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전자민주주의’라는 직접적 민주주의 구현의 공론장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되었다.⁶⁾

그러나 사이버공간이 사회변화를 주도하고 커뮤니케이션의 낙원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는 점차 퇴색하고 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반하여 사이버공간에서는 예상치 않은 여러 가지 윤리적 및 법적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⁷⁾ 즉, 허버트 갠디(H. Gandy)가 간파하는 것처럼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매체에 대한 바램은 “현실이라기보다는 환상”일 수가 있다.⁸⁾ 사이버공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사이버공간이 새로운 범죄형태를 초래할 것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 기존의 법을 적용하는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지적한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와 인격권(reputational right) 보호와의 갈등이다.

이러한 이해에 입각해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간의 갈등이 어떠한 문제점을 초래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사이버공간이라는 비현실적 장소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의미와 그 규제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기술적 특성에 근거한 익명성이 갖는 특징은 어떠한가를 살펴본다. 그리고 최근 한국과 미국에서 발생한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소송들을 분석하여 어떠한 법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다시 말하자면 본 연구는 첫째, 사이버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의 의미와 규

2)Cavazos, E. A., “Note : Computer Bulletin Board Systems and the Right of Reply : Redefining Defamation Liability for a New Technology”, *Review Litigation* 12, 1992, pp.231-266.

3)Sunstein, Cass, “The First Amendment in Cyberspace.” *Yale Law Journal* 104(7), 1995.

4)정윤식, “뉴미디어 시대 표현의 자유와 한계.” 『언론중재』, 1997 봄, pp. 17-25.

5)Carey, James W. *Communication as Culture*, Boston: Unwin Hyman, 1989, p.15.

6)Kang, Myung Koo, “The grassroots online movement and changes in Korean civil society”, *Review of Media, Information and Society* 3, 1998, pp.107-127.

7)Gandy, Oscar H. *The Panoptic Society*,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4.

8)Gandy, Oscar H. “The Information Superhighway as the Yellow Brick Road”, *National Forum* 74(2), 1994, p.24.

제형태는 어떠한가, 둘째,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소송의 현황은 무엇이며 어떠한 법적인 문제를 내포하며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의 의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려고 한다.

II. 기존연구분석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라는 명제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접근들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매체의 발전과 함께 이론적 접근의 설득력도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기존의 매체와는 혁신적으로 다른 사이버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여타의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에 있어 어떻게 비교형량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시각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몇 가지 이론들이 발전되어 왔다.⁹⁾

먼저, 소위 '절대주의 이론(absolutist theory)'으로 표현의 자유는 수정헌법 제 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절대적인 것으로 이를 제약하는 어떠한 법을 제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접근은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이 빈번한 경우 현실적인 구속력이 약하다.

둘째,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균형이론(ad hoc balancing theory)'이다. 이러한 이론적 접근은 비록 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중요한 기본권이기는 하지만 여타의 기본권과 상충할 경우 법원에서 그 형평을 사회적 가치의 실현정도를

통해 판단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표현의 자유가 갖는 의미와 한계는 경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때 표현의 자유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주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인 안정성이 약한 단점을 지니고 있다.

셋째, '표현의 자유 우월론(preferred position balancing theory)'이다. 이 이론은 표현의 자유가 여타의 개인권과 상충될 때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과 상충될 때, 그 기본권이 표현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법원에 입증하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에 그 무게를 더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넷째, '언론매체 접근이론(access theory)'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언론을 이용하는 권리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매체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가 하는 점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의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가장 좋은 일례는 미국에서 인쇄매체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규제도 가할 수 없으나 방송은 전파매체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규제가 허용될 수 있다. 이는 동시에 개인들이 얼마나 매체에 접근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하는 접근의 정도를 포함한다. 방송의 경우 개인들은 아직도 반론권 청구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들 중에서 첫 번째 절대주의적 자유론을 제외한 나머지 접근들은 기본권들간의 갈등의 해결에 있어서 이론적 접근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 공간에서와는 달리 사이버공간의 경우 실제적인 참여가 없다면 개인적 기본권들이 서로 상충하는 일은 없을 것으

9)Pember, Donald R. *Mass Media Law*, New York: WCD,McGraw-Hill, 1997.

인이 지고 있는 상황임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김태수 (세계일보 사회부 차장) : 언론계 자신에게 적용하는 잣대를 완화하여 언론계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또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손해배상의 중재위 원회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언론중재위의 절차를 통해 반론이나 정정보도로써 만족해하던 언론피해자들이 명예회복의 판단 기준을 금전으로 바꾸어 피해구제의 기준으로 삼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법원 내에 조정기구를 두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보도로 인한
소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인 관련 보도의 면책기준을
구체화 시켜야**

김남기 (조선일보 사회부 차장)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언론소송이 빗물 터지듯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언론의 면책 조항과 관련하여 공인 또는 공직자에 대한 보도의 경우 지금의 '상당성 기준'을 구체화하여 명시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실제적 악의'이론의 적용문제와 관련, 공인이나 공직자의 경우에 한하여 형사상 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의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삼승 (발표자) : 공인관련 면책기준의 설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법안 제6조는 언론의 면책조항의 구체성에 대한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것입니다. 언론의 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언론의 책임이 인정되면 이 또한 엄격해야 하며 그 절차는 신속하고 간편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위원장 : 장시간 동안 토론에 적극 참여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훌륭한 주제논문을 준비해주신 발표자 여러분과 열띤 토론으로 이끌어 주신 사회자에게 감사드립니다.

편집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적 권리로서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권리임을 강조한 강교수께서는 편집권의 독립과 그 전문성을 견지하기 위한 현행 법 규정의 미비점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첫선을 보인 가칭 '언론피해구제법'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고, 특히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중재위원회의 조정전치주의로 규정하는데 대해 언론현업에 계시는 분들의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결코 확정된 것이 아니며, 오늘의 자리를 비롯한 많은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가다듬어 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손해배상은 위자료라 칭하는 정신상의 손해와 재산상의 손해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칭 '언론피해구제법'안의 규정대로 언론중재위의 중재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위자료가 주가 될 것이며, 언론중재위의 각 중재부에는 법률전문가인 현직 부장판사, 변호사와 전직 언론인이 중재위원으로 있어 법원에서의 판단보다 유연한 결정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따라서 중재위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지 못한 사건만 법원에서 판단토록 하는 것이 언론피해자와 언론사 양자에게 모두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토론에 적극 참여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0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I. 문제제기

사이버공간(Cyberspace)은 더 이상 가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다. 현실(reality)과 가상(virtual reality)의 이분법적 구분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사이버공간은 실제의 공간이다. 왜냐하면 사이버공간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은 더 이상 가상 속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적 공간에서의 해결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지난 8월말 국회 사이버정보문화연구회는 '사이버정보문화현장'을 선포했다. 이는 사이버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삶의 양식을 개발하고 건강한 가치체계를 정착시켜 정보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하며 다가오는 사이버세계에서 인류의 소중한 꿈인 자유, 민주, 평등을 실현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 현장은 도전적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디지털문화의 창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공동체 구축, 다양한 사이버문화 형성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¹⁾ 이러한 사이버정보문화 현장의 선포는 사이버공간이 더 이상 일상적인 생활과 유리된 비현실적인 장소가 아님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동시에 사이버공간이 더 이상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출하고 그 보편적 민주성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아님을 반영한다. 다시 말하자면 사이버공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나 기대는 이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사이버공간은 접근 가능한 누구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견해, 생각, 그리고 사상을 순간적이고 광범위하게 유포하고 획득할 수 있는 상호작용적(interactive) 장치로 이용되어 왔다. 그래서 사이버공간에서는 누구나 기존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는 불가능했던 혁신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향유할 수가

이 재 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신문학과 조, 동 대학원 석사
- 미국 아이오아대 저널리즘 석사, 남일리노이대 저널리즘 박사
- JCI 편집위원, 한국언론학회 이사
- 현재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 명예훼손법상의 공인과 언론에 나타난 공인의 개념적 차이에 대한 연구", "Libel Law and the Press" 외 다수

1)대한매일, 2000년 9월 1일자.

있다.²⁾ 이러한 이유로 사이버공간은 기존의 미디어에서의 문제가 되는 민주주의 실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장소가 되며,³⁾ 신속하게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술적 측면은 진리의 발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의심치 않았다. 다시 말하자면 사이버공간은 기존의 무너진 사상의 공개시장을 복원할 수 있는 진정한 매체로서 기대되어 왔다.⁴⁾ 무엇보다도 사이버공간은 자신이 자유롭게 창출한 생산물을 어떠한 형태의 제도적 검열도 받지 않고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미디어들의 ‘전달(transmission)’ 이상의 “공유, 참여, 결사, 또는 공동의 신념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⁵⁾

다시 말하자면 사이버공간은 기본적 존립근거로서 ‘보편성(universality)’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미국의 1996년 전자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에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술적인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는 보편성이 인터넷 존립의 근간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사이버공간은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여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민주적 매체로서의 기대를 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이버공간은 기존에는 정치적 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전자민주주의’라는 직접적 민주주의 구현의 공론장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되었다.⁶⁾

그러나 사이버공간이 사회변화를 주도하고 커뮤니케이션의 낙원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는 점차 퇴색하고 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반하여 사이버공간에서는 예상치 않은 여러 가지 윤리적 및 법적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⁷⁾ 즉, 허버트 갠디(H. Gandy)가 간파하는 것처럼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매체에 대한 바램은 “현실이라기보다는 환상”일 수가 있다.⁸⁾ 사이버공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사이버공간이 새로운 범죄형태를 초래할 것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 기존의 법을 적용하는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지적한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와 인격권(reputational right) 보호와의 갈등이다.

이러한 이해에 입각해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간의 갈등이 어떠한 문제점을 초래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사이버공간이라는 비현실적 장소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의미와 그 규제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기술적 특성에 근거한 익명성이 갖는 특징은 어떠한가를 살펴본다. 그리고 최근 한국과 미국에서 발생한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소송들을 분석하여 어떠한 법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다시 말하자면 본 연구는 첫째, 사이버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의 의미와 규

2)Cavazos, E. A., “Note : Computer Bulletin Board Systems and the Right of Reply : Redefining Defamation Liability for a New Technology”, *Review Litigation* 12, 1992, pp.231-266.

3)Sunstein, Cass, “The First Amendment in Cyberspace.” *Yale Law Journal* 104(7), 1995.

4)정윤식, “뉴미디어 시대 표현의 자유와 한계.” 『언론중재』, 1997 봄, pp. 17-25.

5)Carey, James W. *Communication as Culture*, Boston: Unwin Hyman, 1989, p.15.

6)Kang, Myung Koo, “The grassroots online movement and changes in Korean civil society”, *Review of Media, Information and Society* 3, 1998, pp.107-127.

7)Gandy, Oscar H. *The Panoptic Society*,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4.

8)Gandy, Oscar H. “The Information Superhighway as the Yellow Brick Road”, *National Forum* 74(2), 1994, p.24.

제형태는 어떠한가, 둘째,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소송의 현황은 무엇이며 어떠한 법적인 문제를 내포하며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의 의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려고 한다.

II. 기존연구분석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라는 명제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접근들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매체의 발전과 함께 이론적 접근의 설득력도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기존의 매체와는 혁신적으로 다른 사이버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여타의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에 있어 어떻게 비교형량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시각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몇 가지 이론들이 발전되어 왔다.⁹⁾

먼저, 소위 '절대주의 이론(absolutist theory)'으로 표현의 자유는 수정헌법 제 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절대적인 것으로 이를 제약하는 어떠한 법을 제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접근은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이 빈번한 경우 현실적인 구속력이 약하다.

둘째,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균형이론(ad hoc balancing theory)'이다. 이러한 이론적 접근은 비록 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중요한 기본권이기는 하지만 여타의 기본권과 상충할 경우 법원에서 그 형평을 사회적 가치의 실현정도를

통해 판단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표현의 자유가 갖는 의미와 한계는 경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때 표현의 자유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주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인 안정성이 약한 단점을 지니고 있다.

셋째, '표현의 자유 우월론(preferred position balancing theory)'이다. 이 이론은 표현의 자유가 여타의 개인권과 상충될 때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과 상충될 때, 그 기본권이 표현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법원에 입증하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에 그 무게를 더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넷째, '언론매체 접근이론(access theory)'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언론을 이용하는 권리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매체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가 하는 점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의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가장 좋은 일례는 미국에서 인쇄매체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규제도 가할 수 없으나 방송은 전파매체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규제가 허용될 수 있다. 이는 동시에 개인들이 얼마나 매체에 접근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하는 접근의 정도를 포함한다. 방송의 경우 개인들은 아직도 반론권 청구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들 중에서 첫 번째 절대주의적 자유론을 제외한 나머지 접근들은 기본권들간의 갈등의 해결에 있어서 이론적 접근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 공간에서와는 달리 사이버공간의 경우 실제적인 참여가 없다면 개인적 기본권들이 서로 상충하는 일은 없을 것

⁹⁾Pember, Donald R. *Mass Media Law*, New York: WCD, McGraw-Hill, 1997.

로 보인다. 다시 말하자면 사이버공간에서의 기본권 충돌이나 문제의 발생은 소위 네티즌들 사이의 개인적 반목의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사이버공간에서의 정보전달의 순간성과 광범위성이 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지 않는 수많은 메시지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야기되는 가장 큰 쟁점은 명예훼손과 같은 개인적 인격권에 대한 침해현상의 확산이다.

이와 관련된 가장 큰 의문은 현실공간에서의 법적인 체제가 인터넷의 가상공간에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990년 초기부터 트라이브(Tribe) 등 법학자들은 기존의 사법적 틀(judicial framework)이 컴퓨터 통신 혁명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공간에서의 쟁점들은 현재의 법적 체제로서는 적확하게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¹⁰⁾ 최근에 문화적 영역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여러 쟁점들을 살펴보면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명예훼손법의 제정이나 또는 재정비에 있어 황성기¹¹⁾는 '매체특성론'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매체특성론적 접근방법이란 앞에서 지적한 것과 유사하게 정보의 흐름과 통제에 있어서 그 특성이 서로 다른 매체에 따라 규제에 관한 법적 원리가 달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서, 매체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접근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즉 표현의 자유나 표현매체에 관한 법적 원리나 헌법상의 원리를 해석함에 있어서 매체의 특성을 감안해

야 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기존의 원리들을 재구성해야 하며 또한 표현매체규제에 관한 정책과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매체특성론적 접근방법은 정보의 흐름에 있어서 나타나는 매체의 구조적 특성과 표현의 자유가 추구하는 가치와의 관련성을 탐구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각 매체의 특성이 표현의 자유가 추구하는 가치에 어떻게, 어느 정도로 기여하는가를 탐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매체특성론적 접근방법을 명예훼손법의 문제에 적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가설이 성립할 수 있다. 즉 "매스미디어와 쌍방향미디어는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매스미디어와 쌍방향미디어에 적용되는 명예훼손법리도 달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매체론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용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간의 갈등과 같은 쟁점들은 이용자들이 사이버공간을 익명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제약 없이 인터넷 등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제반 법적 문제들을 야기 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¹²⁾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은 단지 자신의 신분을 감추거나 가명을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적 공간에서 타인들과의 대면적 상황에서 주위의 사회적 압력이 없는 익명적 상황까지를 포함한다. 이러한 익명성을 이용자의 익명성 수준을 기준으로 '비가시적 익명성(invisible anonymity)' 즉, 자신의 주소(아이디)를 가지

10) Sugawara, Sandra. "Computer Networks and the 1st Amendment." Washington Post, October 26, 1991.

11) 황성기, "전자미디어와 명예훼손법" 『언론중재』, 2000 봄, pp.21-36.

12) 이재진,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언론중재』, 1998 봄, pp.25-35.

지 않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와, '가시적 익명성(visible anonymity)', 즉, 자신의 주소를 가지고 참가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¹³⁾ 전자의 경우에는 완전히 타인의 주소를 이용하거나 자신의 아이디를 숨기는 경우라면 후자는 비록 이러한 행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치 주소만 알고서 편지를 교환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현실에서의 대인커뮤니케이션이나 매스커뮤니케이션과는 달리 참여자들에 대한 정보가 없이 단지 기본적인 주소만으로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측면에서 익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과 듀크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익명을 통한 사이버공간에의 참여는 평소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군가에서 인정받는다는 위안과 만족감을 얻게 해주며, 현실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매력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한다.¹⁴⁾ 이러한 익명적 참여자들은 현실공간에서는 불가능한 익명적 권력의 창출을 유도한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은 더욱 활발하고 직설적인 의견표출이 허용되는 토론을 유도하게 된다.¹⁵⁾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보면 무엇보다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것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거리낌없이 솔직하게 표출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¹⁶⁾ 즉, 사이버공간은 그 이용자들이 자신의 실체를 감추고서 공간에 참여하여 획기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하여¹⁷⁾ 자신들이 원하는 표현을 전달할 수 있는 긍정적 결과가 담겨있다. 그러나 이와 반면에 이용자들이 수용하기 힘들거나 원하지 않는 정보에 노출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도 함께 존재한다. 그래서 익명성은 기존의 미디어에서는 가능하지 않는 상당한 정도의 표현의 자유의 추구하고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와 같은 형태의 범죄의 발생이라는 모순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익명성에 대해서 미국의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은 McIntyre v. Ohio Elections Commission에서 익명성이란 헌법하에서 악의적(pernicious)이고 사기행위적(fraudulent)인 것이라기보다는 옹호(advocacy)와 이견(dissent)이 허용되는 자랑스러운 전통이라고 간주했다. 대법원은 Talley v. California(362 U.S. 60 (1960)) 판례를 인용하면서 위대한 문학작품은 꽤 자주 가명이나 익명으로 쓰여졌는데, 이렇게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감추는 것은 경제적 또는 관료적인 보복에 또는 사회적 추방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리고 단지 가능한 한 자신의 신분을 은밀하게 하려는 욕망 등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어떠한 동기에 근거하든지 간에 익명으로 남을 권리는 진입의 조건으로 신원을 밝히기를 원하는 시장적 요구에 앞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익명으로 남고자 하는 개인적 작가의 결정은 수정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언론자유 의 한 측면이라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익명성이란 다수의 폭력(tyranny of majority)으로부터의 방어막인데, 이는 관대하지 못한 사회적 결과에 따라 지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보복을 받거나 또는 이들의 사상이 억압되는 것을 막도록 한다는 수정헌법 제 1조의 취지를 담

13) Lee, Gia B. "Addressing Anonymous Messages in Cyberspace." *Journal of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2(1), June 1996.

14) 주간조선, 2000년 11월 9일자, p.61.

15) 윤영철, "대안적 대체로서의 PC통신." 『한국언론학보』 43(1), 1998 가을, p.198.

16) 윤영철,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언론중재』 17(4), 1997 겨울, p.7.

17) Rogers, Everette, *Communication Technology*, New York: Free Press, 1986.

고 있다”고 실시하였다. 계속해서 대법원은 사기성 있는 행위까지 보호하게 되는 경우 이는 분명 익명으로 남을 수 있는 권리가 남용된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언어란 본질상 때로는 입맛에 맞지 않는(unpalatable)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우리사회는 남용될 위험성보다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더욱 큰 무게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였다(115 S.Ct. 1511 (1995)). 한국 법원의 경우 아직까지 익명성의 사회적 성격에 대해서 정의한 바가 없다.

이러한 익명성은 헤링(Herring)¹⁸⁾에 따르면 사이버공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간에 관계를 맺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교환할 수 있는 접근성(accessability)을 강화하고, 정체감을 감출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고 이러한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는 단서들을 중립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탈맥락성(social decontextualization)을 발생하며, 이러한 이유로 이용자들은 자신을 덜 자제하게 되고 그 결과로 불쾌한 행동이 유발될 수도 있으며 한편에서는 타인에게 대해 더욱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어 위계적 커뮤니케이션 형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 헤링에 따르면 익명성은 결국 타인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혀서 공동의 문화를 형성한다는 긍정적인 면과 이용자들이 자제하지 못하고 새로운 형태의 갈등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익명성 또는 익명적 환경은 사람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이버공간을 선호하도록 만든다는 연구들이 있다.¹⁹⁾ 이들 연구에 따르면 외향적인 사람들은 공개적이며 얼굴을 마주 대고 자신을 노출시키는 매체를 선호하는 반면 사회적 실재감이 부족한 내성적인 사람들 또는 사교성이 낮은 사람들이 사회적 단서가 부족한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들의 상호작용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이버공간을 선호하게 된다고 한다. 연구들은 이처럼 사람들이 참여하여 대면 커뮤니케이션에 비해 보다 자유롭고, 빈번하고 평등화된 의사교환을 행한다고 보았다. 익명성은 또한 고민이 있는 경우 처음 대하는 사람에게도 몇 년을 알고 지낸 친구처럼 솔직하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는 방편이 되기도 한다.²⁰⁾ 그러나 이와는 달리 현실적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고 자신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사람이 오히려 사이버공간에서의 토론참여에 더 적극적이라는 연구도 보이고 있다.²¹⁾

18) Herring, Susan. "Gender and Democracy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in Rob Shields(2nd ed). Computerization and Controversy: Value Conflicts and Socia Choices, San Diego, CA: Academic Press, 1996.

19) Rice, R.E. and Love, G. "Electronic Emotion: Sociemotional Content in a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Network." Communication Research 14(1)(1987) : 이재현, 『인터넷과 사이버사회』,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 : 배진한,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이 대인 커뮤니케이션 채널 및 정보이용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5 : 김유정, "사회실재감(social presence)에 따른 의사교환 과정에 대한 두 매체의 상이한 인식조사: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과 대면 커뮤니케이션(Face-to-Face Communication)의 비교연구", 언론학회, 연세대학교 언론연구소, 1995 : 김현주, "컴퓨터통신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관한 연구." 『94 통신학술 연구과제』, 충남대학교, 1995.

20) 김문중, "익명을 역이용 하자", 대한매일, 2000년 9월 5일자.

21) 박선희, "시민적 관여(civic engagement)가 컴퓨터 매개 정치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익명성과 동시에 사회적 단서의 부족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격화(flaming)이다. 격화란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 표출의 형태인 욕설이나 비방, 중상모략 등 현실공간(off-line)서는 사회적 규범이나 틀에 의해 공공연히 나타날 수 없는 인간들의 비억제적 행위(uninhibited behavior)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²²⁾ 이러한 현상에는 장난 섞인 글(pun)이나 맥락에 닿지 않는 글을 올리는 행위들²³⁾을 포함하게 되는데 이는 잠재하는 사회의 정서적 특징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⁴⁾ 왈서(Walther)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매개 통신(CMC)의 특징을 첫째, 이용자들은 상대방과 상황을 이상적으로 상상하는 경향이 있으며, 둘째, 자신에 대한 자신 있는 단서를 제공하며 꺼리는 단서는 감춤으로서 최대한 선별적인 자기노출이 가능하며, 셋째, 이용자 자신이 정보를 편집할 수 있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바람직한 자기상을 가공하며, 넷째, 용이한 대화의 상황에서 서로 상대에게 순응하여 관계를 발전시키는 행위적 순응(behavioral conformity)의 경향이 발생한다고 보았다.²⁵⁾

이처럼 익명성은 사이버공간에 참여하는 사람들간의 솔직하고 빈번한 상호작용적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 동시에 사회적 단서의 부재 또는 사회적 실재감의 결여로

인한 잘못된 커뮤니케이션 또는 감정적인 격화를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익명성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의 경우에도 참여자들의 일상적 담화가 항상 이성적이지 않으며 또한 토론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도 항상 합의점에 이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²⁶⁾ 이러한 익명성 또는 익명적 상황은 궁극적으로는 명예훼손과 같은 개인권의 침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현재 이러한 개인권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명제가 서로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 큰 문제는 특정한 주제에 대해 같은 견해를 보이는 참여자들이 집단적 이익을 위해서 소위 사이버 훌리건(hooligan)이 되어 명예훼손적 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이때는 명예훼손 소송을 통하여 일일이 다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지난 8월 인천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군가산점 폐지를 지지한 전 여성장관과 여성국회의원에 대해 1천 건이 넘는 인신공격성 메시지가 게재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일이 개별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기타 정치인들과 연예인 등 이른바 유명인들은 상당수 근거 없는 명예훼손적 허위사실 유포로 전전공공하고 있는 실정이다.²⁷⁾

22) 김성훈, "PC통신 토론방의 격화가 참가자의 내집단 선호, 의견개진 및 토론평가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석사논문, 1998, p.7.

23) 윤영민, 『전자정보 공간론』, 서울: 전예원, 1996, p.8.

24) Walther, J. B.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Impersonal, Interpersonal, and Hyperpersonal Interaction." *Communication Research* 23, Feb. 1996.

25) Walther, J. B. "Group and Interpersonal Effects in International Computer-mediated Collabora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3(3), Mar/ 1997, p.350.

26) Poster, Mark. "Cyberdemocracy: Internet and Public Sphere." in David Prter(ed.), *Internet Culture*, London: Routledge, 1997.

27) 한국일보, 2000년 8월 28일자.

III. 관련판례 분석

1. 미국 관련판례 분석

1) 사이버공간에서의 쟁점들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현상은 현실공간의 명예훼손법 적용에 있어서 많은 쟁점들을 초래하고 있다. 우선 문제되는 명예훼손적 글의 종류와 고소인의 자격(공·사인 구분)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고려는 어떻게 기존의 명예훼손법을 무리 없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쟁점들은 두 가지 면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기존의 명예훼손법을 사이버공간에 적용하기 위해 어떤 기준에서 공인과 사인을 구분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사이버공간(예를 들어 전자게시판)에 얼마나 접근이 용이한가 하는 근접성(accessibility)에 주목한다. 이에 대해 몇몇 학자들은 컴퓨터를 통해 명예훼손적 글에 응답(reply)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 누구나 공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사이버공간의 참여자들은 쌍방향적인 매체특성상 누구나 '반박'(counter speech)을 위한 수단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전자 게시판 등을 통해 사이버공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명예훼손에 대해

응답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의 명예훼손법이 정하고 있는 공인·사인에 대한 구분이 적용됨이 없이 모두 공인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⁸⁾ 따라서 사이버공간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수정헌법 제 1조가 요구하는 바대로 명예훼손상의 현실적 악의를 증명해야만 한다고 간주한다. 법원의 경우 사이버공간에서 기존의 명예훼손법에 따른 공인/사인 구분이 모호해 지기 때문에 그 구분을 인터넷의 이용에 얼마나 참여했느냐 하는 이용자의 참여정도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²⁹⁾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당사자들의 형평성의 문제를 간과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의 당사자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터넷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하지 못하거나 또는 수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 사이버공간에 접근이 용이한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취급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만일 사이버공간의 참여자들을 모두 공인으로 일괄적으로 분류한다면 접근이 용이하지 않는 사람들은 효과적으로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을 뿐더러 현실공간에서 사인들의 거증책임인 '부주의'(negligence)기준보다 더욱 높은 거증책임을 지게되는 부담이 따른다.

둘째,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현상에 있어서, 법원이 어떻게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28) Martin, C. A. & C. L. Counts, "Libel in Cyberspace: A Framework for Addressing Liability and Jurisdictional Issues in this New Frontier", *Albany L. Rev.* 1, 1996, p.1083.

29) Miranda, David, "Defamation in Cyberspace: Stratton Oakmon, Inc. v. Prodigy Services Co." *Alb. L.J. Sci. & Tech.* 5, 1996, p.229.; McCarthy, E. J. "Networking in Cyberspace: Electronic Defamation and the Potential for International Forum Shopping." *U. Penn. J. Business L.* 16, 1995, p.527.

(ISP)와 이용자들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화할 수 있는가 하는 시각이 있다. 예를 들어 만일 인터넷에서 게재된 글이 응답이나 대항적 수단을 통해 그 회복을 구하기 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어떤 개인에게 입혔을 때, 과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를 미리 예방하고 가능한 자신들을 명예훼손 소송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인터넷에 대한 통제권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는 인터넷에서의 이용자들의 전례 없는 언론의 자유라는 명제와 맞물려 논란을 빚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수정헌법 1조가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모두 자유롭게 피력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³⁰⁾ 사이버 공간에서의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의 책임정도에 대한 법적인 선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기존의 명예훼손법상의 잘못에 대한 책임기준(standard of fault)이 흔들리게 된다고 주장한다.³¹⁾ 다시 말하자면 만일 법원이 서비스 공급자들이 정보 배포자인지 또는 편집자인지에 대한 기준의 제시와 아울러 이용자들의 인터넷에서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한계가 설정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현실적 악의 원칙을 인터넷에 적용하는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법원은 이러한 문제들은 원칙의 적용을 통한 일관적인 해결보다는 사건마다의 상황에 따른 개별적인 해결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법원의 융통성 있는 입장에서 문제는 기존의 현실적 악의 원칙이 지속해 왔던 적용상의 '안정성'(stability)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이다.

일부 학자들은 명예훼손과 같은 법률적 문제의 예방차원에서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그 내용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³²⁾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인터넷의 언론자유 옹호자들에 의해 격렬한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점은 재고할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이는 법원이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들의 이익에 균형을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설정될 가능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들과 관련, 법원은 '편집과정에서의 개입정도'라는 기준이외에 아직 구체적으로 상업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용자들의 인터넷 내용에 대해 이차적 책임이 있는가 또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절대적인 언론자유 권한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2) 사이버 공간 이용자 관련 판례분석

현실공간의 명예훼손법은 현재 두 가지 논리적 근거에서 공인 그리고 공공의 관심사와 관련된 언사에 대하여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적용하고 있다. 첫째, 공인 즉, 공적 인물(public figure) 또는 공직자(public official)가 제소할 경우, 이들은 언론매체의 명예훼손적 글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미디어에 접근(access)하기 용이하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보호는 사인이 관련된 경우 보다 적다고 인식된다. 둘째, 공적 인물이나 공직자들은 공중의 주의(attention)를 자발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활동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비판의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

30)Moore, G. "The First Amendment is Safe at Prodigy." New York Times Dec. 16, 1990, sec 3, 13.

31)Martin, C. A. & C. L. Counts, *Ibid.*, p.1083.

32)Keith Silver. "Good Samaritans in Cyberspace", *Rutgers Computer and Tech*, L.J. 23, 1997.

다는 점이다.³³⁾

먼저 분석에 있어 중요한 대상 판례는 1994년에 있었던 *Suarez v. Meeks*이다.³⁴⁾ 이 사건은 언론인인 믹스(Brock Meeks)가 제소자인 수아레즈(Suarez)에 관한 명예훼손적인 글을 전자게시판에 게재함으로써 발생하였다. 전문투자회사를 운영하는 수아레즈는 전자우편(e-mail)을 통하여 믹스에게 만일 투자를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스팸메일을 보냈다. 이에 대해 믹스는 전자게시판에 수아레즈는 “뻥뻥한 냉혈 우편통신 재력가”라고 게재했고, 수아레즈가 운영하는 투자회사를 “우편통신 사기를 위한 꺾질뿐인 유령회사”라고 비방했다. 수아레즈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이후에 믹스가 다시는 인터넷에 수아레즈사에 대한 어떠한 글도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명령을 오하이오주 지방법원에 청구하였다.

법정에서 믹스는 수아레즈가 미국 대법원에 의해 구성된 현실적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믹스의 주장은 현실공간의 명예훼손법상 수아레즈사가 공적인물에 속한다는 이해에 근거하는 것이다. 또한 수아레즈는 믹스의 게재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격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믹스의 주장에 따르면 수아레즈사는 믹스가 그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기사를 허위인 줄 알면서 게재했거나 또는 진실여부에 대해서 부주의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clear and convincing proof)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사실상 수아레즈가 공인

이라는 주장은 그의 사회에서의 지위를 두고 볼 때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았다. 그럼에도 믹스는 문제되는 기사가 인터넷의 전자게시판에 실렸기 때문에 누구나 이에 대해 쉽게 응답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수아레즈를 공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본 사건은 믹스의 현실적 악의 원칙 주장에 대한 법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나오기 전에 쌍방의 합의하에 해결되고 말았다.³⁵⁾

또 다른 이용자관련 사건인 *Medaphone Corp. v. DeNigris*는 한 인터넷 이용자가 프로디지(Prodigy)사의 전자게시판에 올린 글에 대해 메다폰사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뉴저지주 지방법원에 청구함으로써 시작되었다.³⁶⁾ 인터넷 이용자인 드니그리스(DeNigris)는 전자게시판에 메다폰사를 “문제가 많고...사기를 일삼는 회사”라고 혹평하는 글을 게재했다. 메다폰사는 드니그리스가 게재한 글이 자신의 회사주식이 폭락하는데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소송사건도 법정의 의견이 개진되기 전에 상호합의를 통해 해결되었다.

세 번째 사건은 *It's In the Cards v. Fuschetto*이다(*It's In the Cards, Inc. v. Fuschetto*, 535 N.W.2d 11 (Wisc. App. 1995)). 본 사건은 스포츠 기념품 판매업자들을 위한 스포츠넷(SportsNet)이라는 전자게시판 이용자들 사이의 명예훼손적 다툼이다. 원고인 미뉴(Meneau)는 다른 게시판 이용자인 푸세토(Fuschetto)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글을 전자게시판에 실었고 이에 푸세토는 미뉴와 스포츠

33) Weber, S. Jeremy(1995). "Defining Cyberlibel: A First Amendment Limit for Libel Suits Against Individuals Arising from Computer Bulletin Board Speech", *Case West Research* 46, 1995, p.236.

34) *Suarez Corp. Industries v. Meeks*, No. 267513 (Ohio Cuahoga County 1994)

35) Resnick, T. "Cybertort: The New Era", *Nat'l L.J.* July 18, 1994, A21.

36) *Medaphone Corp. v. DeNigris*, No. 92-3785 (D.N.J. 1993)

넷을 운영하는 It's In the Cards 회사에 대해 그 이차적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하였다. 본 사건에서 쟁점이 된 사항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자게시판을 정기간행물로 간주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It's사는 위스컨신주의 경우 전통적으로 철회법(retraction statute)이 적용되고 It's사가 운영하는 전자게시판이 정기간행물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자신이 운영하는 전자게시판의 내용을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스컨신주 법률에 의하면 정기간행물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들은 법원에 제소하기 전에 출판물 담당 회사로 하여금 문제되는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고등법원은 전자게시판을 법률상의 정기간행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기존의 법률은 사이버 공간이 생성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며 따라서 이는 이용자들이 산발적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매체에 적용할 수 없으며, 명예훼손에 관한 법조항을 사이버 공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입법자들이 이에 맞는 법률을 입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3) 사이버 공간 서비스 제공자 관련 판례

사이버공간과 관련된 최초의 판례이자 편집자/배포자 기준을 처음으로 고려한 1991년 *Cubby v. CompuServe*에서, 뉴욕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뉴스 배포자(distributor)에 속한다고 보았다(*Cubby, Inc. v. CompuServe, Inc.*, 776 F.Supp. 135 (S.D.N.Y. 1991)).³⁷⁾ 동 판례는 은행업을 하는

커비(Cubby)사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컴퓨서브(CompuServe)사를 명예훼손의 2차적 책임을 들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법원은 서점이나 또는 어떤 정보 배포자의 경우 논란이 되는 기사의 오류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명예훼손의 2차적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서점 모델을 적용하였다. 법원은 컴퓨서브사를 전통적인 뉴스 공급자(신문)와 배포자(서점)에 각각 비교하면서, 필요하다면 일반적으로 사인(private figure)에 적용되는 거증책임인 부주의 원칙(negligence standard)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컴퓨서브사는 공공 도서관, 서점, 또는 신문 가판점과 같이 기사의 출판에 있어 어떠한 편집자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을 뿐 만 아니라, 컴퓨서브사가, 다른 서비스 공급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전달하는 모든 명예훼손적 정보를 일일이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문에서 컴퓨서브사의 전자 포럼(게시판)에 콘텐츠를 제작, 공급하는 카메론 커뮤니케이션즈(Cameron Communications)사가 명예훼손 정보의 편집자인지 또는 배포자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치 않았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의 학자들은 법원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 전통적인 뉴스 배포자 사이의 구분에 대한 법원의 이론적인 근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일축하고 나섰다. 왜냐하면, 컴퓨서브는 서점과 같은 기존의 뉴스 배포자들이 갖지 못한 내용 통제(control)를 위한 기술적인 힘(technological power)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³⁷⁾ 그러나 판결에서 법원은 일단 컴퓨서브사와

37) DiLello, Edward V. "Functional Equivalency and Its Application to Freedom of Speech on Computer Bulletin Boards",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26, Winter 1993, p.224.

같은 서비스 제공자가 전달할 정보를 결정하고 나면, 그 정보의 내용을 통제할 힘을 갖지 못한다고 보았다. 더욱이 법원은 컴퓨서브사가 전자 포럼의 내용에 대해 어떠한 편집적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컴퓨서브를 전통적인 뉴스 배포자와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4년 뒤에 있었던 Stratton Oakmont v. Prodigy 판결은 컴퓨서브 판결에서와 같은 명예훼손상의 편집자/배포자의 쟁점을 다루었다.³⁸⁾ 명예훼손법상 이러한 편집자/배포자 구분은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에 의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의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만일 서비스 제공자가 편집자의 위치로 판명된다면 현실적 악의 원칙이 보장하는 보호를 받게 되어, 비록 제공된 정보가 명예훼손적이라고 하더라도, 피소인이 공인인 경우 이러한 명예훼손적 내용이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이루어 졌다는 것을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에 근거해 증명해야만 한다. 스트라톤 판결은 현재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의 전자게시판(electronic bulletin board)에서의 편집자/배포자 논의의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 왔다. 이 소송사건은 증권투자회사인 스트라톤 오크몬트(Stratton Oakmont)사가 당시 거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인 프로디지(Prodigy)사의 전자게시판인 Money Talk에 게재된 익명의 투고를 명예훼손으로 판단, 프로디지사를 고소하면서 발생하였다. 이 판결에서 뉴욕 주 대법원은 커비(Cubby) 판결과는 대조적으로 프로디지사를 편집자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결론적으로는 동일한 추론을 하고 있다. 동 법원은 먼저 프로디지사가 그 게재 내용에 대해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결정이 편집자적 통제에 해당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런데 1997년 Zeran v. AOL 사건은 1996년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상의 '선한 사마리탄 조항'을 적용하여 발행자는 불법행위법에서 말하는 발행자뿐만 아니라 배포자도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하여 '쌍방향 컴퓨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의 정보중개자는 위 조항에 의하여 발행자로도 배포자로도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에 관한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고 판결하였다.³⁹⁾ 본 사건은 피고 아메리카 온라인(AOL)사의 전자게시판에 누군가 원고의 이름을 도용하여 오클라호마 연방빌딩 폭파사건을 미화하는 글을 수일간에 걸쳐 반복해서 올렸기 때문에 협박성의 항의 전화가 원고에게 폭주했다. 여기에 대해 원고는 아메리카 온라인사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서 피고회사는 통신품위법상(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의 '선한 사마리탄'(Good Samaritan) 조항에 의해서 발행자는 물론 배포자로서의 책임도 면책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선한 사마리탄' 조항의 취지는 네트워크상의 정보중개자의 불법행위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서 이는 인터넷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고, 정보중개자에 의한 정보의 자율규제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정보중개자는 '배포자'로서의 책임도 면책되는가 하는 점을 검토하면서 만일 이러한 책임이 추궁된다면 명예훼손적 표현이 있다는 통고를 받은 정보중개자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문제된 표현을 곧바로 삭제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 언론의 자유로운 유통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정

38) Stratton Oakmont, Inc. v. Prodigy Services Co., 23 Media L. Rep. (BNA) 1794 (N.Y. Sup. Ct., 1995)

39) Zeran v. American Online, Inc., 129 F.3d 327(4th Cir., 1997).

보중개자는 전자게시판을 자율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사이에 명예훼손 표현을 발견하면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후에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율규제를 강제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선한 사마리탄 조항은 정보중개자가 배포자로서의 책임에서도 면책됨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원고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는 기각되었다(cert. denied 118 S.Ct 2341(1998)).

결국 이러한 판결에 의하면 제3자가 발신한 명예훼손 표현에 대하여 네트워크상의 정보중개자는 완전면책되게 되었다. 즉 본 판결은 이전의 두 판결을 번복하는 것이 되었는데 궁극적으로는 통신품위법에 의해서 입법적으로 면책이 확립되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후의 판례들은 본 판결의 결론을 따르게 되는데⁴⁰⁾ 이는 명예권보호와 표현의 자유사이의 이익형량에 있어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한국 관련판례 분석

한국의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 307조 및 309조의 조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즉, 사람을 출판물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여기서 인터넷이나 PC통신은 매체적 성격상 형법상의 출판물로 인식된다. 명예훼손으로부터 면책되기 위해서는 형법 제 310조의 진실성과 공익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996년 8월 22일 서울지방법원 제23형사부의 판결(96고합472)은 한 은행원이 1996년 2월경 PC통신 천리안 '주제 토론실'란에 3차

례에 걸쳐 15대 국회의원 출마예정자인 박지원을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경우이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그리고 선거법 제251조(후보비방죄)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사건이 비록 선거법상의 후보비방죄에 국한된 것이지만, 기존의 사건들과는 달리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적 표현과 관련된 사건이어서 그 특수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공간의 특수성에 대한 고찰은 전혀 배제한 채 비방행위의 목적, 구체적인 사실적시의 유무 등에만 한정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는 1996년 10월 29일의 판결(96노1916)을 통해 비방행위의 목적, 구체적인 사실적시의 유무 등에 있어서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컴퓨터통신은 전체적인 토론주제 범위 내에서 어떠한 의견을 통신문으로 게재하고 이에 대하여 반박이 있으면 그 반박에 대하여 다시 답변하는 내용으로 토론이 진행되는데, 그 통신문은 통신가입자에게는 모두 공개되어 있어 누구라도 그 토론의 주제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라는 점을 사실인정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결을 지지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통신문을 게재하게 된 경위(쌍방향적인 컴퓨터통신에 있어 다른 통신가입자의 반박에 대한 대응)를 여러 사정 중의 하나로 참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96도2910).

이후 1997년 8월 인터넷 게시판 게재물에 대한 일반 회사들간의 명예훼손관련 소송이 발생했다. 컴퓨터 전문회사인 엘렉스컴퓨터는 컴퓨

40)Lunney v. Prodigy Serv., N.Y.Ct. App., No. 164, Dec. 12, 1999 등

터 판매업을 시작한 유공해운이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욕설을 올림으로서 명예훼손으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⁴¹⁾ 엘렉스컴퓨터는 이와 함께 유공해운을 상대로 1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엘렉스컴퓨터측은 “1년 전에 ‘사이버맥’ 팀을 만들어 매킨토시 컴퓨터 판매업에 뛰어들어 유공해운이 사이버맥의 공식 홈페이지 (www.cybermac.com)에 “Elexcompany, Fucking!”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어 회사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엘렉스측은 인터넷도 하나의 대중매체로 볼 수 있으므로 출판물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유공해운측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홈페이지가 해킹 당해 발생한 단순 사고일 뿐이며 오히려 자신들도 피해를 보았다고 맞섰다. 이후에 이는 법정으로 가기 전에 해결되었다.

같은 해 대통령선거의 특정후보에 대한 비방죄로 한 통신이용자가 구속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당시 통신운동단체, 검찰,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몇몇 통신이용자들이 특정 후보에 대해 ‘6.25 당시 공산군이었으며 동료를 배신한 기회주의자’라는 글을 77차례, 특정정당에 대한 욕설을 114차례, 후보자간의 관계를 성관계에 비유한 글 21차례 게재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함으로써 비롯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들의 행동이 공정선거의 분위기를 해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검찰의 통신 이용자들에게 구속조치에 동조하였다.⁴²⁾ 이 사건에 대해 통신운동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고 “표현과 양심의 자유

가 보장되어 있는 민주국가에서는 정치토론에 제약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구속은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통신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지 원하는 사람들만이 전자계시판에 게재된 글을 접할 수 있으므로 이를 선거법이 규제하는 ‘후보자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다소 과도한 비판일지라도 여론수렴을 위한 토론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다른 사건은 검사가 편파부당 수사를 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냈던 여성이 무고죄로 검찰에 구속된 사건이었다.⁴³⁾ 사건의 발단은 99년 2월초 사이버공간 이용자인 강미영이 PC통신 넷츠고 토론실에 “주객을 전도시킨 한심한 검사. 이를 지켜본 가족의 112 신고”라는 글을 올리고 같은 내용을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도 진정한 것이었다. 내용은 강미영의 어머니가 지난해 10월 고소한 토지사기 사건에 대해 인천지검 담당 검사가 반말을 하고 억지로 지장을 찍도록 하는 등 편파 강압수사를 했으며 검사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토론실은 네티즌들로 들끓었고 6월초까지 국내 PC통신 토론실 중 최대규모인 총 9,000여건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인천지검은 강미영을 긴급체포 한 뒤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강씨가 허위 사실을 진정하고 수사검사의 실명을 실은 내용을 컴퓨터에 띄우는 등 검찰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구속이후 사이버 시민단체인 “공권력 남용방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이 결성됐고 “네티즌 강미영 석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참여연대 등도 이를

41)조선일보, 1997년 8월 24일자.

42)한국일보, 1997년 10월 22일자.

43)한국일보, 1999년 6월 12일자, 17면.

시민 입장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진정에 대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흥분해서 과잉반응 하였다고 비판하고 나섰으며 법조계 일각에서도 권력기관이 개인의 비판에 대해 위압적으로 제한하려 든다면 시민사회가 숨조차 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2000년 법원에 의해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사범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다.⁴⁴⁾ 서울지법 형사13단독 김철현 판사는 방송인 백지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2년이 구형된 미주통일신문 발행인 배부전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를 적용,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는 1999년 국내 PC통신업체와 미주통일신문사라는 이름을 내건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성 앵커를 울린 남자는...’, ‘모 여성 앵커 이혼 사유가...?’ 등의 제목으로 유명 여성 앵커의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취지의 글을 계속 올렸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문에 대한 검증 없이 인터넷에 글을 올려 깨끗한 이미지를 생명으로 하는 여성 앵커와 그의 가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만큼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본 판결은 인터넷과 PC통신을 이용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법원이 처음 본격적인 판결을 내린 것으로 일반 명예훼손 사건에 비해 비교적 무겁게 형량을 책정한 것이 특징적이다. 재판부는 “인터넷이나 PC통신에서 거짓소문 게재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마땅한 법조문이 없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중 ‘허위사실 적시’에 준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형법상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백씨는 재판과정에

서 유전자 감식을 통해 아들이 전 남편의 친자임을 확인받았다.

같은 해 5월 PC 통신에서 상대방에 대해 저속한 표현을 쓰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⁴⁵⁾ 서울지법 동부지원은 인기 가수 박지윤 팬클럽 회원인 함모 씨가 “PC통신 게시판을 통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안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네티즌들 사이의 통신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이어서 주목된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피고가 게시한 ‘박지윤에게 환장한 사람들’ ‘당신 같은 X파리 팬들의 협박’ ‘반미치광이 광적 상태’ 등의 표현과 ‘기획사로부터 돈 먹고 한마디씩 거드는 사람 같다’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게시는 자유로운 의견 발표와 정보의 무한한 교류를 이상으로 하는 PC통신에서 이뤄진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표현의 자유 범주에 포함하기 어려운 만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이버 공간이 최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익명성을 이용한 질 낮은 언어가 범람하는 등 역기능이 더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정한 제한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실시하였다. 함씨는 지난해 6월 안씨와 PC통신 공개 게시판을 통해 인기 가수 박지윤에 대해 논쟁을 벌이면서 안씨가 자신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게시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본 판결은 사이버공간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할 필요성만을 확인했을 뿐 어느 정도의 표현은 허용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정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44) 한국일보, 2000년 3월 14일자, 31면.

4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9가단42644.

IV. 결론 및 제언

사이버공간은 기존 매체들이 가졌던 편집자 울성이 수용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통제권이 더욱 커지며, 진입이 어려운 기존매체에 비해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으며, 유통정보의 형식적인 측면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다양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공간이 그 기술적인 특성상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고 민주적인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최근 인격권 침해를 둘러싼 소송들이 증가하면서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가장 큰 원인은 익명성과 비대면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⁴⁶⁾ 이러한 원인으로 나타나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소송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라는 이익형량의 결과라는 점에서 분석의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록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욕설과 비방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서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태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를 정보화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노미적 현상으로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급변하는 기술적 상황에 대해 법적인 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들이 많다. 법학자들과 법조계에서도 영역을 구분할 수 없는 사이버공간의 법은 지리적 기반을 전제로 하는 현실의 법과는 달라야 하며(사법관할권의 문제), 불법행위 법리는 기술적으로 입증의 날로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해 있고(거증책임의 문제), 사이버공간에서는 공격에 대

한 반론이 용이한 점등을 고려해 ‘오로지 공익에 관련된 때’라는 현실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면책기준은 사이버 공간에서는 보다 넓게 적용되어야 하지만(면책사유의 문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지나친 책임과 권한을 줄 경우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제약할 위험(표현의 자유의 문제)이 있다고 주장한다.⁴⁷⁾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국과 한국에서의 사이버공간 관련 명예훼손 소송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미국의 경우 소송사건을 통해서 사이버공간에 대해서 어떠한 매체적 규제모델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나오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이러한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즉, 미국 법원이 사이버공간의 기술적 특수성에 맞는 법규제의 모델을 마련하고 있다면 한국 법원은 아직 이에 대한 숙의가 없는 상태이다. 무엇보다 타인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해 그 공간을 제공해 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혹은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도 명예훼손에 대한 이차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미국은 실정법상의 조항에 근거하여 면책의 가능성을 크게 인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법원은 이에 대해서 아직 실시한 바 없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도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유형들이 전자신문과 같은 매스미디어 유형에서부터 전자우편, 전자게시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디지털화 된 커뮤니케이션 유통과정에 다양한 이해집단들, 즉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자와 정보제공업자 그리고 이용자들이 서로 혼재 되어 있으며, 또한 이들은 다양한 역할을 동일한 공간에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총체적인 규

46)조선일보, 2000년 7월 19일자, 26면.

47)동아일보, 2000년 5월 29일자, 29면.

제모델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미국 법원은 사이버공간 이용자들의 명예훼손법적 지위와 거증책임의 정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의 제시가 없다. 무엇보다도 공인·사인 구분이 더 이상 현실공간의 명예훼손법적 기준에 의해서는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이용자들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시하고 있지 않다. 반면 한국 법원은 공인·사인의 구분보다는 명예훼손적 표현에서 이용되어지는 표현의 사회적 인내(tolerance)의 정도에 대해서 보다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표현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쌍방향적이고 접근할 수 있는 사람만 접근이 용이한 매체로서의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는 실정이다.

셋째, 미국 법원은 익명성의 사회적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한국 법원은 익명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미국 법원은 비록 익명성이나 비대면성이 개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익명의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실명을 강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한국 법원의 경우 대개 미국과 비슷한 인식을 하면서도 아직까지는 익명성의 합헌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있다. 익명성은 이용자 주체의 문제이기도 한 동시에 명예훼손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 즉 기존의 매체에 의해서 실명이 거명되지 않거나 이에 대해 알기 어려운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기존 명예훼손법은 피해 당사자가 특정되는 경우에만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넷째, 최종적으로 미국의 법원은 수정 헌법 제1조상의 표현의 자유의 논리에 근거하여 개

인적 기본권 보호를 위해 매체의 규제나 허용의 범위를 접근하고 있는 반면, 한국 법원은 규제의 필요성이라는 근거하에서 상충하는 이익의 형량을 개별적인 형태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경우 앞으로 사이버공간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법적인 적용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상급 법원의 구체적인 기준의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원의 기준제시를 위한 노력은 법에서의 '최소한의 규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다양한 기술적 양태를 가진 사이버공간에 기존 매체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의 사이버공간 명예훼손 판례들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힘들다. 최근 한국의 법조계는 적어도 피해자가 명예훼손 등으로 신고하면 발신자를 끝까지 추적해 밝혀낸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적인 효율성이 의문시된다. 만일 익명성이 강조되는 사이버공간에서 네티즌들이 특정인이 아닌 집단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명예훼손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규제나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기 힘들며 서비스 제공자들의 개입여부에 대한 법적인 판단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에서 확실한 것은 사이버공간이 기존의 매체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사이버공간의 보편성이나 개방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이들 사이에서 벌이지는 것은 네티즌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할 필요가 있지만 꼭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규제원칙에 근거하여 법적인 해결을 도

모해야 할 것이다. 법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경우 전치적 절차로서 사이버언론중재제도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노력도 고려해 볼 만하다.

참고문헌

- 김경원,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의 익명성이 커뮤니케이션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김문중, "익명을 역이용 하자", 대한매일, 2000년 9월 5일자.
- 김유정, "사회실재감(social presence)에 따른 의사교화 과정에 대한 두 매체의 상이한 인식조사: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과 대면 커뮤니케이션(Face-to-Face Communication)의 비교연구", 언론학회, 연세대학교 언론연구소, 1995.
- 김현주, "컴퓨터통신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관한 연구", 『94 통신학술 연구과제』, 충남대학교, 1995.
- 이재현, 『인터넷과 사이버사회』,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
- 김성훈, "PC통신 토론방의 격화가 참가자의 내집단 선호, 의견개진 및 토론평가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 라도삼, 『비트의 문명 네트워크의 사회』,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1998.
- 박선희, "시민적 관여(civic engagement)가 컴퓨터 매개 정치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 방석호,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검열과 내용 규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 1998.
- 배진한,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이 대인 커뮤니케이션 채널 및 정보이용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5.
- 이재진,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 현상에 대한 법제론적 연구: 현실적 악의원칙의 적용성을 중심으로" 『한양 커뮤니티』 1, 1999.
- 이재진,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언론중재』, 1998 봄.
- 윤영민, 『전자정보 공간론』, 서울: 전예원, 1996.
- 윤영철, "대안적 매체로서의 PC통신", 『한국언론학보』 43(1), 1998 가을.
- 윤영철,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언론중재』, 1997 겨울.
- 정윤식, "뉴미디어 시대 표현의 자유와 한계", 『언론중재』, 1997 봄.
- 황성기,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 1998.
- 황성기, "전자미디어와 명예훼손법", 『언론중재』 2000 봄.
- 대한매일, 2000년 9월 1일자.
- 동아일보, 2000년 5월 29일자, 29면.
- 조선일보, 1997년 8월 24일자.
- 주간조선, 2000년 11월 9일자, 61면.
- 한국일보, 2000년 3월 14일자, 31면.
- 한국일보, 1999년 6월 12일자, 17면.
- 한국일보, 2000년 8월 28일자.
- Brooks, T. D. "Catching Jellyfish in the Internet: The Public-Figure Doctrine and Defamation on Computer Bulletin Boards." *Rutgers Computer & Tech. L. J.* 20 (1995): 406-431.
- Carey, James W. *Communication as Culture* (Boston: Unwin Hyman, 1989).
- Cavazos, E. A., "Note : Computer Bulletin Board Systems and the Right of Reply : Redefining Defamation Liability for a New Technology", *Review Litigation* 12, 1992.
- Counts, Cynthia L. and Martin, Amenda. "Libel in Cyberspace: A Framework for Addressing Liability and Jurisdictional Issues in the New Frontier." *Alb. L. Rev.* 59 (1996): 1083-1112.
- DiLello, EdwardV. "Functional Equivalency and Its Application

- to Freedom of Speech on Computer Bulletin Boards."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26 (Winter 1993): 199-224.
- Gandy, Oscar H. *The Panoptic Society*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4).
- _____. Oscar H. "The Information Superhighway as the Yellow Brick Road." *National Forum* 74(2) (1994): 24-28.
- Keith Silver. "Good Samaritans in Cyberspace." *Rutgers Computer and Tech. L.J.* 23 (1997): 1-39.
- Herring, Susan. "Gender and Democracy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in: Rob Shields(2nd ed), *Computerization and Controversy: Value Conflicts and Social Choices* (San Diego, CA: Academic Press, 1996), 476-489.
- Kang, Myung Koo. The grassroots online movement and changes in Korean civil society. *Review of Media, Information and Society* 3(1998): 107-127.
- Lea, Martin(eds.) *Contexts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New York: Harvester Wheatsheat, 1992).
- Lee, Gia B. "Addressing Anonymous Messages in Cyberspace." *Journal of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2(1) (June 1996).
- McCarthy, E. J. "Networking in Cyberspace: Electronic Defamation and the Potential for International Forum Shopping." *U. Penn. J. Business L.* 16 (1995): 527-548.
- Martin, C. A. & C. L. Counts. "Libel in Cyberspace: A Framework for Addressing Liability and Jurisdictional Issues in this New Frontier." *Albany L. Rev.* 1 (1996): 1083-1108.
- Miranda, David. "Defamation in Cyberspace: Stratton Oakmon, Inc. v. Prodigy Services Co." *Alb. L.J. Sci. & Tech.* 5 (1996): 229-261.
- Moore, G. "The First Amendment is Safe at Prodigy." *New York Times* Dec. 16, 1990, sec 3, 13.
- Pember, Donald R. *Mass Media Law* (New York: WCD.McGraw-Hill, 1997).
- Poster, Mark. "Cyberdemocracy: Internet and Public Sphere." in David Prter(ed.), *Internet Culture* (London: Routledge, 1997).
- Resnick, T. "Cybertort: The New Era." *Nat'l L.J.* July 18, 1994, A21.
- Rice, R. E. and Love, G. "Electronic Emotion: Sociemotional Content in a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Network." *Communication Research* 14(1)(1987): 85-108.
- Rogers, Everette. *Communication Technology* (New York: Free Press, 1986).
- Rosenoer, Jonathan. *CyberLaw: The Law of the Internet* (New York: Springer-Verlag, 1997).
- Siderists, M. C. "Defamation in Cyberspace: Reconciling Cubby, Inc. v. CompuServe, Inc. and Stratton Oakmont v. Prodigy Services Co." *Marquette L. Rev.* 79 (1996): 1065-1081.
- Sugawara, Sandra. "Computer Networks and the 1st Amendment." *Washington Post*, October 26, 1991.
- Sunstein, Cass. "The First Amendment in Cyberspace." *Yale Law Journal* 104(7)(1995): 1757-1804.
- Walther, J. B.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Impersonal, Interpersonal, and Hyperpersonal Interaction." *Communication Research* 23 (Feb. 1996): 3-43.
- Walther, J. B. "Group and Interpersonal Effects in International Computer-mediated Collabora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3(3) (Mar/ 1997): 342-369.
- Weber, S. Jeremy(1995). "Defining Cyberlibel: A First Amendment Limit for Libel Suits Against Individuals Arising from Computer Bulletin Board Speech." *Case West Research* 46(1995): 235-276. □

반론보도의 범위와 한계

-대법원 99다63138 판결 및 서울고법 99나61271 등 판결-

I. 머리말

오늘날 기존 언론매체의 확대와 역할증대에 추가하여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정보처리 및 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정보화사회를 더욱 고도화시키면서 사회에 유통되는 정보량의 거대화, 정부와 언론기관 기타 일부 대기업의 정보독점화, 정보유통의 불균형, 정보유통에 수반하는 인권침해의 문제 등 인간사회에 미치는 기술의 영향을 증대시키고 있다.¹⁾

따라서 고도정보화사회라고 불리우는 현재 및 가까운 미래의 사회에 있어서 이미 하나의 사회적 세력으로 공인받고 있는 거대화·독점화한 언론매체가 일방적으로 대량의 정보를 유통시킴에 따라 야기하는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이에 대한 구제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고, 여기서 언론보도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동시에 일반국민과 언론매체의 부단한 접촉·교류의 장을 확보하여 언론정보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반론보도청구권이 특히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내포로 부각되고 있다.²⁾ 특히 신문이나 방송의 사실보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가 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그 결과 반론보도청구는 어떠한 경우에 어느 범위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반론보도의 내용과

권 형 준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서울대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법학박사
- 한양대 법과대학 부학장
- 한국헌법학회,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 현 한양대 법과대학 교수
- "프랑스에 있어서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헌법상의 자기결정권", "반론권에 관한 고찰" 외 다수

1) 김철수, "정보화 사회와 기본권보호", 『정보화 사회의 공법적 대응』, 1989. 5., 한국공법학회, pp.6-7
 2) 김철수, 위의 논문, pp.9-10; 양삼승, "정정보도청구제도", 『인권과 정의』 제228호(1995. 8), p.63; 성낙인, "언론표현에 의한 국민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제도", 『세계헌법연구』 제2호(1997), p.287; 박윤희, "반론권에 관한 비교헌법학적 고찰", 1995, 서울대 법학박사 학위논문, p.4; 강현중, "반론보도청구권 및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 『언론중재』 1996 가을호, p.6; 右崎正博, "反論權考", 『法律時報』, 60卷3號(1988. 3.), p.97

한계는 어떠한가 하는 구체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 제3부는 2000년 3월 24일 종교단체 '세계정교' 총령본존인 하정효 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심판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 방송이 2회에 걸쳐 보도되었으나 2차 방송은 1차 방송을 요약 보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반론보도는 한 번에 포괄하여 1회 방송함으로써 족하다고 판결하면서 2회에 걸쳐 반론보도문을 방송하여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는 2000년 7월 13일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 방송(MBC 뉴스데스크)이 6회에 걸쳐 보도되었으나 첫 번째 방송이외의 나머지 방송은 첫 번째 방송의 요약이거나 관계된 수사진행상황 등에 대한 후속보도 정도에 불과하므로 반론보도는 두 번에 걸쳐 포괄적으로 행함이 합당하다고 밝히면서 원심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원심이 인용한 반론보도 내용 가운데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내용은 반론보도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반론보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위 판결이 반론보도는 그 대상이 된 프로그램의 방영시간이나 방송회수에 관계없이 실제적으로 반론보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이면 족하다고 판시한 것은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고등법원의 위 판결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내용은 반론보도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반론보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II. 결정의 내용

1. 사건의 개요

1) 대법원 99다63138 판결

신청인('세계정교' 총령본존 하정효)은 피신청인(주식회사 문화방송)이 1998년 11월 24일 「PD수첩」 "총령본존, 어디 계십니까?" 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청인의 성 관련 비리, 현금 및 재산관련 비리, 학력에 대한 의혹 등을 보도하였고, 이어 12월 22일에도 앞서 한 보도내용을 요약하여 방송하면서 신청인이 성폭행 및 금품갈취의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자 신청인은 1998년 12월 24일과 26일 방송보도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적 주장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으나(98서울중재 327, 329) 모두 중재불성립결정되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반론보도문 방송을 구하는 반론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라는 인용판결(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99. 4. 22. 선고, 99카합91)을 받았으나 신청인은 반론보도문의 방송회수 및 방법에 대하여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상소하였고, 원심법원도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자(서울고등법원 1999. 10. 14. 선고, 99나 27325)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2) 서울고법 99나61271, 99나61288, 99나61295(병합) 판결

신청인들(만민중앙교회 및 이재록 목사)은 피신청인(주식회사 문화방송)이 1999년 5월 11일부터 5월24일까지 25회에 걸쳐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신청인의 비리에

관한 방송을 하자 신청인은 방송보도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적 주장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으나 중재결과 14건 가운데 11건이 중재불성립결정되고 나머지 3건은 기각되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25건의 반론보도문 방송을 구하는 반론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심에서 14건의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라는 인용판결(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99. 10. 14. 선고, 99카합1694, 1754(병합), 1755(병합))을 받았으나 신청인은 반론보도문의 방송회수 및 방법에 대하여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2. 결정의 요지

1) 대법원 99다63138 판결

(1) 제1심의 판결요지

제1심 판결(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99. 4. 22. 선고, 99카합91)은 “반론보도의 방송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의 하나인 구 방송법 제 41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란 그 반론보도의 내용이 사회 일반에 걸쳐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 통상인이라면 누구라도 특별한 조사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라고 적시하면서 청구인의 이 사건 반박주장이 그 내용만으로 평가할 때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 방송사가 이 사건 방송을 하기에 앞서 청구인측에게 수 차례 반론의 기회를 주었으나 청구인측에서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는 정당한 이익이 없으며 권리남용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면서 청구인은 방송프로그램에서 공표된 보도내용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 방송사는 반론보도문을 방송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만일 반론보도가 허용된다면 제보자들 개인의 명예 등 인격권이 중대·명백하게 침해됨이 예상되는 위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제보자들 개인의 신상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와 “피청구인의 사실적 주장과 전혀 관련이 없거나 청구인의 주관적 의견 또는 평가, 반박에 불과하여 반론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2) 원심의 판결요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9. 10. 14. 선고, 99나27325)은 “반론보도청구권은 원 보도의 내용이 사실적 주장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반론보도문의 내용도 이의의 대상인 원 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 곧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의 보충적 또는 추가적 진술만이 허용되고 신청인의 개인적 의견이나 가치 평가는 포함시킬 수 없으며 또한 명예훼손 등 제3자의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는 위법한 내용은 포함될 수 없고, 나아가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 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고 그 기준은 공표된 원 보도의 기사 또는 방송 전체가 아니라 이의의 대상이 된 사실적 주장 부분의 양으로 제한되어야 하므로 원 보도의 이의 대상에 비하여 장황하고 길게 작성된 반론보도문은 허용될 수 없는 바, 따라서 법원은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상의 제한이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

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인용하되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대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가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이를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원 방송이 2회에 걸쳐 행하여지긴 하였으나 2차 방송은 1차 방송을 요약 보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반론보도는 방송내용을 포괄하여 1회 방송함으로 족하다"고 판시하는 한편, 반론보도문 방송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 "피신청인으로서 법원이 명한 반론보도문을 그대로 방송하여야 하는 것이고, 방송보도의 실행방법은 통상 방송사의 아나운서, 진행자가 있는 방송의 경우에는 그 진행자가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반드시 방송프로그램의 첫머리에 방송되어야 할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신청인의 청구를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결요지

대법원은 판결(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63138)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의 규정취지 및 법원이 반론보도내용을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방송법이 규정하는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인 의미와 피해자에게 방송의 사실보도내용과 반대되거나 다른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균형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고, 법원이 반론보도의 내용을 정할 때에는 신청취지가 기재된 반론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는 한편,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식 및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문에 내용상의 제한이나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수정·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반론보도는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포 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고, 그 대상에 비하여 장황하고 길게 작성된 반론보도문은 허용될 수 없으며, 법원은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문에 위와 같은 내용상의 제한이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가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이를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2) 서울고법 99나61271, 99나61288,
99나61295 (병합) 판결

(1) 원심의 판결요지

원심판결(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99. 10. 14. 선고, 99카합1694, 1754(병합), 1755(병합))은 "자신에게 불리한 방송을 막기 위하여 방송국에 들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방송을 방해하는 것이 처벌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도 아닌 청구인들에게 반론보도청구까지 할 수 없게 만든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들이 수신회의 반론보도를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수신회의 방송을 하여 청구인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반론보도의 근거인 무기대등의 원칙상 이는 불가피한 것으로,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에

서 방송한 보도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적 주장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청구인은 반론보도문을 방송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은 “방송내용이 공개재판 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뿐 아니라 그 주장이 가처분 판결에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방송내용이 청구인들과는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보도로 청구인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및 청구인들의 반론보도의 내용이 원 보도내용과 관련이 없거나 방송보도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 그리고 반론보도문이 원방송내용을 보충하여 줄 뿐 다른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반론보도는 부적법하고, 반론보도는 사실적인 주장에 대하여 사실적인 주장을 하여야 하는데 방송보도의 내용이 개개의 사실적인 행위에 대한 평가나 보도자의 의견에 불과할 뿐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및 반론보도의 내용이 청구인들의 의견 또는 법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반론보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경우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청구인들의 반론보도가 명백히 사실에 반하거나 원보도 및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구하는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반론보도청구권의 본래의 목적에 기여할 바가 전혀 없는 경우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부분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면서 청구인들의 반론보도청구의 일부를 배척하였다.

(2) 고등법원의 판결요지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는 그 판결(서울고등법원 2000. 7. 13. 선고, 99나61271, 99나61288, 99나61295 (병합))에서 피신청인인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원심판결대로 14건의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나머지 방송보도들은 첫 번째 방송의 요약이거나 신청인 교회신도들의 MBC 사옥 난입과 관련한 수사진행상황 등에 대한 후속보도 정도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 각 방송의 내용과 길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론보도는 두 번에 걸쳐 포괄적으로 행함이 합당하다”고 판시하면서 6회분의 반론보도를 신청한 신청인의 청구를 배척하는 한편, 원심에서 인용한 반론보도 내용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신청인을 이단으로 규정한 사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위원회에서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한 사실과 신청인이 기도하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뱅이도 일어날 수 있다고 설교한 사실 등 몇 가지 내용에 대한 반론보도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어서 반론보도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심판결을 일부 변경하였다.

Ⅲ. 평 석

1. 반론보도청구제도의 취지

반론보도청구권이라 함은 방송이나 정기간행물 등 언론매체의 보도에 의하여 비판·공격을 받거나 기타 피해를 받은 자가 동일한 미디어, 동일한 스페이스로 반론 내지 해명의 기회를 부여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하며,³⁾ 그 헌법적 근거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1조에서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방송법 제91조에 의하여 제도화되어 있다. 반론권 또는 해명권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⁴⁾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의 구제와 이를 통한 올바른 여론형성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 바, “방송법이 규정하는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인 의미와 피해자에게 방송의 사실보도 내용과 반대되거나 다른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고, 법원이 반론보도의 내용을 정할 때에는 신청취지가 기재된 반론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대법원 99다63138 판결과 반론보도청구권의 본래의 목적이 “올바른 여론 형성”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서울고법 99나61271 등 판결은 이러한 반론보도청구권의 취지와 반론보도의 기준을 적절히 적시하였다고 해석된다.

2. 반론보도청구권의 청구인 적격

방송법 제91조 제1항(구 방송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반론보도청구권은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에게 인정된다. 여기서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는 피해를 받은 ‘자’는 자연인인 내·외국인과 법인은 물론 민사소송

법상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써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개체도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기관에 의하여 침해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신속·엄정하게 도모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특수한 소권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⁵⁾ 그러므로 방송 프로그램에서 공표된 보도내용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신청인(‘세계정교’ 총령본존 하정효)에 대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 99다63138 판결 및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록 목사 개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만민중앙교회에 대하여도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서울고법 99나61271 등 판결은 정당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를 받은 자’에 국한해서 인정된다. 여기서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언론보도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관련성이 있음이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며,⁶⁾ 개별적 관련성이란 함은 언론보도와 피해자간의 특별한 관련이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반론보도청구권의 주체를 이와 같이 한정하는 까닭은 반론보도청구권의 지나친 행사로 언론기관의 보도기능이 지장을 받지 않게 하려는 배려라고 할 것인 바, 대법원 99다63138 판결과 서울고법 99나61271 등 판결이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지명되어 피해를 받은 청구인인 하정효 및 청구인들인 이재록과 만민중앙교회에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여 피청구인인 방송사의 반론보도문 방송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는 것과 서울고법 99나61271 등 판결

3) 김철수, 『헌법학개론』 1999, p.619 ; 권영성, 『헌법학원론』, 1998, pp.448-449 ; 右崎正博, 전계논문, p.96 ; 강경근, “개정 정기간행물법해설”, 『언론중재』, 1996, 봄호, p.9

4) 허영, 『한국헌법론』, 2000, pp.523-525.

5) 서울민사지판, 1983. 11. 25, 83카22003; 1989. 12. 29, 89카46152

6) 대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 서울민사지판, 1995. 2. 13, 94카기4983

이 방송내용이 청구인들과는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방송보도로 청구인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청구인 교회 신도들의 방송국 난입으로 정상적인 방송업무가 진행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청구인들에게 반론기회를 제공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청구인들은 이익·간접적인 원인제공자들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서울고법 99나61271 등 판결의 원심판결이 "자신에게 불리한 방송을 막기 위하여 방송국에 들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방송을 방해하는 것이 처벌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도 아닌 청구인들에게 반론보도청구까지 할 수 없게 만든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반론보도청구제도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의미와 피해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3.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객체)

방송법 제91조 제1항(구 방송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이다. 여기서 '방송'이라 함은 구 방송법과 구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유·무선방송 모두를 포함하고, '공표'라 함은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의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됨을 의미한다.⁷⁾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은 '사실적 주장'에 한정되므로 사실적 주장이 아닌 가치판단적인 의견은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사실적 주장과 가치판단적인 의견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실적 주장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바, 학설은 대체로 독일의 예에 따라 사실적 주장의 의미를 입증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가능한 과정이나 상태를 포함하여 그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으로 보고 있고,⁸⁾ 판례도 이에 따르고 있다.⁹⁾ 다만 반론보도청구제도의 취지가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언론보도의 침해로부터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는데 있으므로 사실적 주장의 의미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국민의 권리실현을 억제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리하여 법원은 사실적 주장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여 언론보도에 대한 국민의 반론보도청구권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즉, 언론보도가 통신문이나 다른 언론보도 또는 타인의 의견진술이나 경찰의 발표 등을 인용보도한 경우나 전문보도한 경우에도 법원은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는 사실적 주장으로 보고 있다.¹⁰⁾ 그러나 예외적으로 국가·지방자

7)강현중, 전계 논문, p.9

8)박용상, 『언론과 개인법익』, 1997, 조선일보사, pp.540-545; 성낙인, 전계논문, p.310; 강현중, 전계논문, pp.9-10; 박은희, 전계논문, p.184

9)대판 1991. 1. 15, 선고, 90다카25468; 서울민사지판 1993. 9. 6, 93카합792; 서울민사지판 1992. 11. 30, 92카합3879

10)대판, 1991. 1. 15, 선고, 90다카25468; 서울민사지판, 1983. 8. 19, 83카9146; 1989. 7. 7, 89카11518; 1989. 12. 29, 89카52256

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의 경우에는 반론 보도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정간물법 제16조 6항, 방송법 제91조 제6항 (구 방송법 제41조 7항)]. 언론에 보도된 기사내용이 국가 등의 공개회의나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경우에는 이미 공개된 것이므로 관계자가 언론 보도로 인하여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¹¹⁾ 따라서 대법원 99다63138 판결의 원심판결이 “반론보도청구권은 원 보도의 내용이 사실적 주장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과 서울고법 99나61271 등 판결의 원심판결이 “반론보도는 사실적인 주장에 대하여 사실적인 주장을 하여야 하는데 방송보도의 내용이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뿐 아니라 그 주장이 가치분 판결에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와 개개의 사실적인 행위에 대한 평가나 보도자의 의견에 불과할 뿐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한 것은 법문의 취지에 합치되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보도에 의한 사실적 주장이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그 진위여부를 불문하고 인정되는 형식적 권리이기 때문이다.¹²⁾

4. 반론보도의 범위와 한계

1) 반론보도문의 내용

방송법 제91조 제4항(구 방송법제41조 제4

항)은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에 국한되므로 사실적 진술이 아닌 주관적인 의견이나 법적인 판단은 반론보도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따라서 대법원 99다63138 판결의 제1심판결이 “피청구인의 사실적 주장과 전혀 관련이 없거나 청구인의 주관적 의견 또는 평가, 반박에 불과하여 반론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과 그 원심판결이 “반론보도문의 내용도 이의의 대상인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 곧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의 보충적 또는 추가적 진술만이 허용되고 신청인의 개인적 의견이나 가치 평가는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시한 것 및 서울고법 99나61271 등 판결과 원심판결이 “반론보도의 내용이 청구인들의 의견 또는 법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반론보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경우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한 것은 법문에 합치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위법한 내용'이라고 함은 명예훼손이나 반국가단체 찬양 등 형사법상 금지된 내용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고, 반론보도가 위법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법문은 없으나 언론사가 이를 이유로 그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법원 99다63138 판결의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이 “만일 반론보도가 허용된다면 제보자들 개인의 명예 등 인격권이 중대·명백하게 침

11) 서울민사지판, 1984. 7. 13. 84카17261 참조

12) 대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해됨이 예상되는 위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제보자들 개인의 신상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법문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방송법 제91조 제3항(구 방송법 제41조 제3항)은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언론사는 그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 99다63138 판결의 제1심판결은 “반론보도의 방송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의 하나인 구 방송법 제41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란 그 반론보도의 내용이 사회 일반에 걸쳐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 통상인이라면 누구라도 특별한 조사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과 서울고법 99나 61271 등 판결 및 원심판결이 “몇 가지 내용에 대한 청구인들의 반론보도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어서 반론보도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시하면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것은 법문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입증책임은 언론사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보도의 진위여부를 불문하고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언론보도에 대응하는 반론보도내용의 진실증명은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¹³⁾ 따라서 대법원 99다63138 판결의 제1심판결이 “청구인

의 이 사건 반박주장이 그 내용만으로 평가할 때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인 방송사가 이 사건 방송을 하기에 앞서 청구인 측에게 수 차례 반론의 기회를 주었으나 청구인측에서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는 정당한 이익이 없으며 권리남용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배척한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2) 반론보도문의 길이

구 방송법 제41조 제5항은 반론보도문의 길이에 관하여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무기대등원칙의 표현으로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에 반론보도문의 자수, 방송실행 방법과 방송시간, 반론보도 방송의 회수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되는 바, 이 점에 관하여 구 방송법 제41조 제3항은 방송국이 반론보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무료로 방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원의 판결로 이를 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된다.

(1) 반론보도문의 자수

구 방송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13) 서울민사지판, 1993. 12. 11, 93카기3786

자수를 초과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문에 내용상의 제한이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법원이 이를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하여 종래 확립된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던 바, 대법원 99다63138 판결 및 원심판결은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 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고, 그 기준은 공표된 원 보도의 기사 또는 방송 전체가 아니라 이의의 대상이 된 사실적 주장 부분의 양으로 제한되어야 하므로 원 보도의 이의 대상에 비하여 장황하고 길게 작성된 반론보도문은 허용될 수 없으며, 법원은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문에 위와 같은 내용상의 제한이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가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이를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반론보도문의 자수 및 범위에 관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된다.

(2) 반론보도문의 방송방법 및 방송시간

반론보도문의 방송방법 및 방송시간을 실제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구 방송법 제41조 제6항은 반론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방송주파수에 의하여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추상적으로 선언하는 데 그치고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제41조 제3항에 따라 방송국이 피해자 또는 대리인과 협의하여 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게 되는

바, 대법원 99다63138 판결 및 원심판결은 “피신청인으로서 법원이 명한 반론보도문을 그대로 방송하여야 하는 것이고, 방송보도의 실행방법은 통상 방송사의 아나운서, 진행자가 있는 방송의 경우에는 그 진행자가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반드시 방송프로그램의 첫머리에 방송되어야 할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반론보도문의 방송방법 및 방송시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판결의 입장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의미와 피해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는 반론보도청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3) 반론보도문의 방송회수

반론보도문의 방송회수를 원보도의 방송회수와 같은 회수로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방송법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시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 결과 단순히 무기대등의 원칙에 비추어 원보도의 방송회수와 같은 회수의 반론보도방송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바, 서울고법 99나61271 등 판결의 원심판결이 “청구인들이 수신회의 반론보도를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수신회의 방송을 하여 청구인들에게 피해를 입었다면 반론보도의 근거인 무기대등의 원칙상 이는 불가피한 것으로,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것은 이러한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서울고법 99나61271 등 판결은 “나머지 방송보도들은 첫 번째 방송의 요약이거나 관련한 수사진행상황 등에 대한 후속보도

정도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 각 방송의 내용과 길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론보도는 두 번에 걸쳐 포괄적으로 행함이 합당하다”고 판시하면서 6회분의 반론보도를 신청한 신청인의 청구를 배척하고 원심판결을 일부 변경하였고, 대법원 99다63138 판결 및 원심판결도 “이 사건 원 방송이 2회에 걸쳐 행하여지긴 하였으나 2차 방송은 1차 방송을 요약 보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반론보도는 방송내용을 포괄하여 1회 방송함으로 족하다”고 판시하였다.

생각컨대 반론보도문의 방송회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할 취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반론보도청구권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인 의미와 피해자에게 방송의 사실보도 내용과 반대되거나 다른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산술적 논리를 벗어나 각 방송의 내용과 길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99다63138 판결과 원심판결 및 서울고법 99나61271 등 판결의 입장이 보다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단순한 산술적인 무기대등을 요구하며 반론보도청구권을 지나치게 남용 내지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제도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론보도청구의 명확한 한계를 제시

하고 있는 대법원 99다63138 판결과 원심판결 및 서울고법 99나61271 등 판결이 지니는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3) 반론보도청구의 내재적 한계

- 정당한 이익

방송법 제91조 제3항(구 방송법 제41조 3항) 단서는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 언론사는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정당한 이익’의 요건은 반론보도청구권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때 발생하는 언론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요건¹⁴⁾ 내지는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내재적 한계라고¹⁵⁾ 할 수 있다. 언론사가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를 가리키는가 하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이나, 예컨대 언론기관의 자발적인 추후보도·정정보도 등에 의하여 반론보도의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나¹⁶⁾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원보도내용과 관련이 없거나 원보도내용의 본질과 무관한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¹⁷⁾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반론보도의 내용이 원보도내용과 관련이 없거나 방송보도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 그리고 반론보도문이 원방송 내용을 보충하여 줄 뿐 다른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14) 양삼승, “언론관련판례에 비추어 본 동향분석”, 『언론중재』, 1993, 겨울호, p.35

15) 박윤희, 전계논문, p.201

16) 서울고판, 1990. 2. 6, 89나30506; 서울민사지판 1989. 9. 22, 89카28545

17) 대판, 1986. 12. 23, 선고, 86다카818

반론보도는 부적법하며, 청구인들의 반론보도가 원보도 및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구하는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발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반론보도청구권의 본래의 목적에 기여할 바가 전혀 없는 경우이므로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부분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청구인들의 반론보도청구의 일부를 배척한 서울고법 99나61271 등 판결 및 원심판결은 방송법 제41조 제3항 단서의 입법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사가 추후에 원보도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그 일부에 대해서만 자체적인 관련보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보도에 비하여 지면의 위치나 크기 등에 있어서 훨씬 비중이 약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¹⁸⁾

IV. 결 어

오늘날 정보화사회가 고도화되면서 거대화·독점기업화한 언론매체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고 이러한 언론매체가 대량의 정

보를 일방적으로 유통시킴에 따라 언론에 의한 개인의 법익침해현상이 점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언론으로부터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언론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며 제한적으로나마 언론에 대한 공중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반론보도청구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적극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언론계에서는 방송법 등 언론법상의 반론보도청구권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반론보도청구권을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증대되어 자칫 언론매체의 보도기능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해오고 있다.

생각컨대 반론보도청구제도는 위의 대법원 판결이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인 의미와 피해자에게 방송의 사실보도 내용과 반대되거나 다른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그 취지에 따라 반론보도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대법원 99다63138 판결과 원심판결 및 서울고법 99나61271 판결과 원심판결의 판시 내용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적절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

18) 서울민사지판. 1989. 9. 22, 89카28545

사회 갈등 조정자로서의 언론의 역할

-의약분업 분쟁을 중심으로-

권혁남

전북중재위원·전북대 신방과 교수

위원회는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적인 운용과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지난 11월 7일 전주에서 지역 언론계,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의 인사를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주 리베리호텔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권혁남 위원(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와 방극성 위원(전주지법 부장판사)의 사회로 참석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다음은 주제발표논문과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주

I. 머리말

민주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사가 정책에 골고루 반영되어야 한다.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개인보다는 집단의 힘을 이용하는 방법, 즉 이익집단(interest group)을 결성하는 것이다.

이익집단이 국가의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에 비추어 문제될 게 없으나 그 정도가 지나칠 경우에는 집단의 사익이 국민 전체의 공익을 우선하는 집단이기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된다면 국가의 정책 입안과 집행이 어려움을 겪게되어 사회 전체에 불안감과 불이익을 주게 된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올해 들어 두 차례나 폐업을 하여 의료대란을 일으켰던 의약분업과 동이다. 의사와 약사집단간의 갈등과 정부의 미숙한 조정 역할로 인해 결국 국민들만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가 사회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거나 정부가 갈등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과연 누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는가이다. 대안으로서는 국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금년 들어 두 차례 있었던 의약분쟁 사태를 언론이 조정자로서의 역할 노력을 얼마나 충실히 하였는지를 검증하고, 나아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금년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있었던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계 폐업사태에 대해 우리 나라 TV방송이 무엇을 어떻게 보도했으며, 과연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였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한다.

1. 의료계 폐업사태를 얼마나 관심있게 보도하였는가?
2. 어떤 내용을 보도하였는가?
3. 보도내용은 공정하였는가?
4. 분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했는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뉴스 프로그램은 KBS-1TV의 9시 뉴스와 MBC TV의 9시 뉴스데스크, 그리고 SBS의 8시 뉴스이다. 분석기간은 6월 20일에서 26일까지 있었던 1차 의료계 폐업사태와 8월 11일부터 시작된 2차 의료계 폐업사태 기간으로 하였다.

실제 내용분석은 분석기간을 격일로 선정하여 1차 폐업, 2차 폐업 각각 1주일씩 모두 14일분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단위는 각기 독립된 기사폭지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사유형은 크게 스트레이트, 해설기사, 기획기사, 단신으로 분류하였으며, 기사내용은 크게 8가지로 분류하였는데, “폐업으로 인한 환자들의 진료 불편 및 불만”, “의약분업의 문제점”, “파업돌입 및 전개”, “정부와 국회의 대책 및 처리”, “파업철회 및 의료정상화”, “폐업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이와 관련된 소송과 마찰”, “검찰의 수사 및 관련자 구속”, 기타 등이다.

기사의 갈등성은 갈등, 화합, 중립으로 구분하였다. 갈등기사란 당사자간의 언어 또는 행동상의 충돌과 대결구도를 담고 있는 기사를 말한다. 화합기사란 당사자들이 갈등이나 이

견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말하며, 중립기사란 갈등과 화합기사가 아닌 나머지 기사를 말한다.

각 방송사들의 하루 방송뉴스 건수가 제각기 다르고, 같은 방송사라 하더라도 요일별로 방송뉴스 건수가 달라 이들의 뉴스밸류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표준화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루에 방송된 전체 뉴스 건수의 방송순서를 4등분하여 톱뉴스에서부터 1/4순위까지를 상, 1/4순위에서 2/4순위까지를 중상, 2/4순위에서 3/4순위까지를 중하, 3/4순위에서 끝 뉴스까지를 하로 분류하였다.

보도태도는 앵커나 기자들의 멘트에서 나타난 방송사의 의료계 폐업사태에 대한 입장을 말한다.

사운드 바이트 내용의 성격은 정보적(사실에 관한 진술), 평가적(옳고 그름에 대한 진술), 정서적(좋고 나쁨에 관한 감정적 진술)으로 나누었다.

III. 분석결과

1. 관심도(보도량)

이번 의료계 폐업사태에 대한 방송사들의 관심은 매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사안의 중대성을 비추어본다면 당연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이번 사태 관련 기사건수를 보면 KBS와 MBC가 똑같이 73건, SBS 59건으로 모두 205건이다. 방송사당 하루 평균 4.9건씩의 관련 기사를 보도한 셈인데, 방송3사 모두 1차 폐업개시일인 6월 20일과 22일, 그리고 2차 폐업개시일인 8월 11일에는 7건에서 12건씩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폐업철회가 시작된 8월 19일 이후에는 보도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분석기간에 방송되었던 총 기사건수는 1,012건으로 의료계 폐업사태기사의 비율은 20.3%이다. 방송사별 전체기사에서 의약분쟁기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KBS가 20.3%, MBC가 19.5%, 그리고 보도건수에서는 가장 적었던 SBS가 21.3%로 보도비율에 있어서는 가장 높았다.

방송시간량을 보면 MBC가 총 124분 21초, KBS가 116분 26초, SBS가 95분 41초로 MBC가 가장 많았다. 방송보도 기사건수에서와 마찬가지로 방송3사들은 1차 폐업기간인 6월 20일, 22일, 24일, 그리고 2차 폐업개시일인 8월 11일에는 무려 최고 20분까지 이번 사태를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 한편 기사당 평균 길이는 MBC가 102.2초, KBS가 95.8초, SBS가 97.3초로 MBC가 가장 길었다.

2. 기사유형

기사유형을 보면 절대 다수인 85.9%가 스트레이트 뉴스이며, 기획기사가 2.0%, 해설기사가 7.8%이며, 단신이 4.4%이다. 결국 전체 기사의 90.2%가 정보가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스트레이트 뉴스와 단신인 셈이다. 이에 반해 비교적 심층적인 정보를 담을 수 있는 해설, 기획기사는 9.8%에 지나지 않아 방송3사는 이번 사태를 매우 피상적으로 보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상적인 보도 경향은 방송사마다 약간 달랐는데, KBS가 상대적으로 심층 보도를 한 셈인데, 전체 기사의 15.0%가 기획-해설기사였다. MBC는 8.3%에 불과하였고, SBS는 가장 적은 5.1%에 지나지 않았다.

3. 기사내용

이번 사태에서 우리 방송사들이 가장 많이 보도한 내용은 “폐업으로 인한 환자들의 진료 불편 및 불만”이 23.9%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의약분업의 문제점”이 18.0%로 두 번째, “파업돌입 및 전개”에 관한 내용이 14.1%,

“정부와 국회의 대책 및 처리”내용이 13.7%로 네 번째로 많았다. 이어서 “파업철회 및 의료 정상화”가 10.7%, “폐업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이와 관련된 소송과 마찰”과 관련된 내용이 9.3%, “검찰의 수사 및 관련자 구속” 내용이 4.9%이며, 기타가 5.4%이다.

결국 방송 3사들은 이번 사태에서 주로 환자들의 불편과 피해를 중점적으로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진료 불편 및 불만”과 “인명 피해 및 소송” 등을 합하면 전체 보도 건수의 3건 중 1건(33.2%)이 환자와 관련된 기사인 셈이었다.

방송사별로 보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방송 3사 모두 “환자들의 불편과 불만”을 가장 많이 보도하였지만 두 번째로 많이 보도한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KBS와 MBC는 “의약분업의 문제점”(각각 19.2%, 23.3%)을 두 번째로 많이 보도한 것과는 달리 SBS는 “파업돌입, 전개”와 관련된 내용(16.9%)을 두 번째로 많이 보도하였다.

4. 뉴스 밸류

이어서 TV 3사가 의약분업사태 관련 기사를 얼마만한 관심을 갖고서 어느 정도 비중 있게 기사화 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 동안 폐업관련기사가 톱뉴스로 보도된 것은 모두 20번으로 전체 톱뉴스 중(14일분×3방송사=42) 47.6%를 차지한다. 이어서 각 방송사들이 이번 사태를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뉴스밸류를 상, 중상, 중하, 하 등 4등급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의약분업관련 기사의 절반인 50.2%가 상에 해당하였고, 31.2%가 중상, 14.1%가 중하, 그리고 겨우 4.4%만이 하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의약분업 기사는 매우 비중 있게 취급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방송사별로 보면 방송 3사가 거의 비슷하게 의약분업 관련 기사를 매우 비중 있게 다루었

는데, SBS는 관련기사의 54.2%가 상의 뉴스밸류를 나타냈고, KBS는 관련기사의 52.1%가 상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MBC는 45.2%의 비율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SBS는 관련기사의 11.9%가 하의 뉴스밸류를 나타낸 점이 특이했는데, KBS는 하에 배치된 기사가 한 건도 없었고, MBC는 2.7%에 불과하였다.

이어서 어떤 내용의 기사들이 비중 있게 보도되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파업철회, 정상화” 관련 소식은 거의 모두가 톱 뉴스 또는 그에 준하는 비중으로 보도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기사의 90.9%가 상의 뉴스밸류를 나타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우리 방송사들이 의약분쟁의 정상화를 학수고대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어서 “인명 피해, 소송” 관련 소식은 63.2%가, “진료불편, 불만”은 59.2%, “파업돌입, 전개”는 51.7%, “검찰 수사, 구속” 관련 소식은 50.0%가 상의 뉴스밸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의약분업의 문제점”은 37.8%, “정부와 국회의 대책”은 겨우 14.3%만이 상의 뉴스밸류를 기록하였으며, 기타는 36.4%가 이같은 뉴스밸류를 나타냈다.

5. 보도태도 및 기사의 갈등성

앵커나 기자들의 멘트에서 나타난 방송사의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보도태도를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인터뷰 대상자들의 내용이 아닌 앵커나 기자들의 태도만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 기사의 약 3건 중 2건인 64.4%가 중립적이었다. 그리고 전체 기사의 17.6%가 의사에 대해 비판적인 반면에, 정부 비판적인 기사는 4.9%에 지나지 않았고, 5.4%는 정부와 의사를 동시에 비판하였다. 따라서 전체기사의 약 4건 중 1건인 24%가 의사를 직접 비판한 셈이다. 그러나 정부 입장을 지지하는 기사와 의사 입장을 지지하는 기사는 똑같이 3.9%이었다.

한편 각 방송사별로 보면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방송 3사 모두 중립적인 기사가 가장 많았다. 특히 SBS는 이번 사태를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도하였는데, 전체기사의 81.4%가 어느 한 편을 지지하지 않는 내용이었다. 비율은 높지 않지만 SBS는 오히려 의사보다는 정부에 대해 더 비판적인 입장(각각 3.4%, 6.8%)을 취했다. 반면에 KBS가 의사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장 비판적이었는데, 전체 기사의 24.7%가 의사들에 비판적인 반면에 정부 비판적인 기사는 2.7%에 불과하였다. 또한 입장지지에 있어서도 정부를 옹호하는 기사는 8.2%인데 비해 의사를 지지하는 기사는 1.4%에 지나지 않았다. MBC 역시 KBS와 비슷하였는데, 전체기사의 21.9%가 의사 비판적 기사인 반면에 정부 비판적 기사는 5.5%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MBC는 의사지지 입장이 8.2%, 정부지지 입장이 2.7%로 지지입장에서는 의사 입장 지지가 많았으나 그 비율이 높지 않았다.

한편 각 방송사들은 이번 의료분쟁사태를 지나치게 “정부-의사”, “환자-의사”간의 갈등 또는 대결적 구도로 틀지었다. 기사 내용의 갈등성을 보면 전체기사의 64.9%가 당사자간의 갈등과 대결구도를 그렸다. 이에 반해 화합은 8.8%, 중립은 26.3%이다.

방송사별로 보면 SBS가 이번 사태를 갈등과 대결관계로 가장 많이 묘사했는데 전체기사의 83.1%가 갈등과 대결기사이다. MBC는 71.2%가 갈등기사이다. 이와는 달리 KBS는 갈등보다는 중립적인 관계를 더 많이 강조했는데, 전체기사의 43.8%만이 갈등기사이고, 46.6%가 중립적인 기사이다. 한편 화합적인 기사는 KBS가 9.6%, SBS가 8.5%, MBC가 8.2%로 방송사별로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이어서 갈등관계를 묘사한 기사들만 뽑아서 방송사들이 누구와 누구의 갈등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는 각 방송사들이 주로 “의사-환자”(45.1%), “의사-정부”(30.8%)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갈등기사의 75.9%가 “의사-환자, 정부”의 관계와 관련된 기사임을 알 수 있다. 방송사들은 나머지 관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목을 하지 않았다. 방송사별로 보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KBS가 타 방송사에 비해 “환자-의사”(50.0%)에 더 많은 초점을 주었으며, SBS는 타방송사들에 비해 “정부-의사”(32.7%) 관계에 초점을 둔 점이 두드러졌다.

계속해서 관계유형별로 기사의 성격이 갈등인지 화합인지를 분석해 본 결과, 거의 모든 관계가 화합보다는 갈등으로 묘사되었는데, 특히 “정부-의사”관계 기사의 97.6%, 그리고 “환자-의사” 관계의 85.7%가 갈등관계로 처리되었다.

물론 이번 사태가 이해관계의 상충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뉴스 또한 당사자들간의 갈등을 주로 보도할 수밖에 없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언론이 사태의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정부, 국민-의사간의 이분법적인 대결과 갈등구도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조장하는 것은 사태의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의사집단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나 부정적 보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의사에 대해 비인간적,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과 적개심을 심어줄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사태가 해결된 뒤에도 그 후유증이 상당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사회통합과 공동체 의식형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 하겠다.

6. 뉴스의 초점인물

이어서 어떤 사람이 뉴스의 초점이 되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역시 이번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인 “의사와 병원관계자”가 37.1%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환자나 시민단체”가 26.8%로 두 번째로 많았는데, 결국 전체 기사의 대부분인 63.9%가 의사와 환자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춘 셈이다. 이와는 달리

“정부”(정부관리, 대통령 등)는 8.3%, 국회가 6.3%, 검찰이 4.9%, 그리고 “정부와 의사단체”를 동시에 초점인물로 다룬 기사가 5.4%, 약사단체가 2.9%이며, 기타가 8.3%이다.

한편 1차 파동(6월)과 2차 파동(8월)을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가 난다. 1차 파동에 비해 2차 파동에서 의사나 병원관계자에 초점을 둔 기사의 비율이 32.1%에서 45.9%로 크게 늘어났고, 환자나 시민단체를 초점으로 하는 기사의 비율 역시 1차 파동 22.9%에서 2차 파동 33.8%로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1차 파동과 2차 파동에서 의사와 환자에 초점을 맞춘 기사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55.0%에서 79.7%로 크게 늘어난 셈이다.

7. 육성(sound bite) 분석

의료계 폐업사태에 대한 우리 방송사들의 보도에서 초점 인물들의 육성(sound bite) 방송율은 74.6%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방송사별로 보면 SBS가 86.4%로 가장 높고, MBC가 76.7%이고, KBS가 63.0%로 가장 낮았다. 결국 SBS는 거의 모든 기사에서 초점인물의 육성 발언의 일부를 방송한 셈이다.

이어서 초점 인물의 사운드 바이트 내용의 성격을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사운드 바이트 내용을 정보적(사실에 관한 진술), 평가적(옳고 그름에 대한 진술), 정서적(좋고 나쁨에 관한 감정적 진술)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초점인물의 사운드 바이트가 있는 전체 기사의 과반수인 53.3%가 정보적이며, 13.8%가 평가적, 그리고 32.9%가 정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사운드 바이트 내용이 특정 사실에 관한 진술이 대부분이었다. 이를 초점인물별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되는데, 환자나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사운드 바이트 내용은 대부분 정서적(6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자나 시민

단체 관계자들은 주로 감정적인 말들이 많이 보도된 셈이다. 반면에 나머지 전문가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의사나 정부관리들은 대부분이 정보적인 내용이 많았으며, 국회의원의 경우는 다른 집단에 비해 평가적(33.3%)인 내용이 많이 방송되었다.

8. 분쟁 조정자 역할 노력

마지막으로 방송사들이 분쟁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3사 모두 이번 사태의 전개 과정을 신속하게 보도하는 데에만 열중하였지, 정작 사태 해결을 위한 분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우리 방송사들은 분쟁 해결을 위해 갈등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의제를 찾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고,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위한 대화의 장 마련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이를 제대로 촉구하지도 않았다. 또한 언론의 가장 중요한 분쟁 조정자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의 제시노력도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갈등의제를 부각한 기사는 전체의 8.3%에 불과하였는데, 방송사별로 보면 KBS가 12.3%로 가장 높고, MBC가 8.2%, 그리고 SBS가 3.4%로 가장 낮았다. 또한 사태해결을 위해 뉴스 시간에 분쟁의 당사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대화를 시도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간의 대화를 직접 촉구한 기사는 전체의 3.4%에 지나지 않는다. 방송사별로 보면 KBS가 4.1%, MBC가 2.7%, SBS가 3.4%이었다. 그리고 사태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기사는 전체적으로 8.3%밖에 되지 않았는데, 방송사별로는 KBS가 17.8%로 가장 높았고, MBC는 5.5%인데 반해 SBS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IV. 맺는말

본 연구는 2000년 들어 6월과 8월에 두 차례 있었던 의약분쟁 사태를 언론이 조정자로서의 역할 노력을 얼마나 하였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번 사태에 대한 텔레비전 방송사들의 뉴스보도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를 통해 앞으로 방송사들은 이번 사태와 같은 이익집단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터지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좀 더 충실히 하여야 하겠다.

첫째, 사태의 진행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면서 동시에 좀 더 신중하고 공정한 자세를 취해야 하겠다. 특히 한 쪽 편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나 부정적 보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과 적개심을 심어줄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사태의 해결이 더딜 뿐만 아니라 사태가 해결된 뒤에도 그 후유증이 상당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사회통합과 공동체 의식형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높다 하겠다.

둘째, 좀 더 적극적으로 당사자들간의 대화를 촉구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물론 뉴스 시간 이외에 여러 시사 토론프로그램을 통해 당사자들간의 토론의 장을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시청률이 가장 높은 뉴스 시간에 양 당사자들을 스튜디오로 부르거나 아니면 3원 방송을 통해 갈등 이슈만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도 시도해볼 만 하다. 혹자는 이러한 뉴스시간의 토론이 뉴스의 포맷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할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고통받고 수십명의 피해자들이 죽어가는 마당에 갈등해결을 위해서라면 프로그램 형식만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다.

셋째로 언론은 당사자들간의 갈등의제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보도하여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조정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줘야 하겠다. □

토론

사회방극성
전주지법 부장판사

최근 언론소송에 비추어 볼 때 사회갈등을 조정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

사회자 : 주제논문을 발표한 권혁남 위원께 감사드립니다. 궁금증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봉 (전 중재위원) : '사회갈등조정자로서의 언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시의적절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관하여 잘 정리해주신 발표자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언론의 역할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과 관련, 무죄를 선고받은 당사자들이 수사결과를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37억 이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라면 우지 파동 사건 등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보도하여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회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하



는 역할을 맡은 언론이 오히려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재철 (전북일요시사 편집국장) : 발표자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기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 언론의 열악한 재정 및 열악한 시설 등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언론수용자의 지적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언론사에 더 많은 전문적인 지식 확보를 요구하고 있

지만, 이러한 언론사의 속사정상 언론사 내에 전문기자를 양성하는 자체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며, 전문기자를 양성할 수 있는 연수 기회도 간헐적으로 이뤄질 뿐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기자제 도입과 관련,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종선 (새전북신문 편집국장) : 현재 전북 지역에는 새만금 사업과 전주 신공항 건설 등

여러 지역현안들이 있습니다.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언론이 어떤 보도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명웅 (전북의사회 회장) : 의약분업과 관련, 언론이 의사들을 단지 이기적인 이익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약분업과 관련 보다 전문적이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보도를 하는 등 언론이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었다면 갈등이 쉽게 해결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약분업과 관련, 언론의 보다 정확한 판단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두재균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의약분업과 관련된 최근의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흥미 위주의 선정적인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의사들은 의사와 약사 직종간의 확실한 역할 분담을 위하여 약사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단지 의료수가 인상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잘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점에 대해 언론이 보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는 집단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것도 간접적인 조정 역할이라 할 수 있어

은동표 (전북매일 편집국장) : 이번 의약분쟁사태와 관련하여 의사, 약사, 정부, 국민 등 각자의 입장이 달라서 언론이 보도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언론보도가 시민과 의사들의 대결양상으로 많이 이루어졌다고 발표하셨는데, 언론이 실질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는 정부의 방향 선회를 촉구하기 위해 시민과 의사들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것도 간접적인 조정역할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갈등조정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대안제시가 부족했다고 했는데, 언론이 스스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허장협 (전북중재위원) : 언론이 전문가적 지식을 가지고 보도해야 한다는 데 동감합니다. 또한, 언론이 사회갈등을 조정하고, 올바른 여론을 형성할 때 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사회적 논란이 되는 문제에 관해 보도를 하는 경우 양비론, 양시론적인 관점에서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언론사 고유의 논조로 옳고 그름을 확실히 결론 내리는 보도 자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광영 (한나라당 전북지부 사무처장) : 앞서 다른 분이 언급한 것처럼 지역 언론사 입장에서 전문기자 양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같은 토론회를 자주 개최하여 언론의 책임을 보다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행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자 : 많은 분들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언론의 전문성, 언론의 역할, 언론의 대안제시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언론의 전문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언론의 역할은 '목탁론'과 '거울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울론'은 1950년대까지 언론의 주류를 이뤘던 것으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객관성은 있지만 책임성은 없기 때문에 언론의 공정성 시비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으나 공적 기구로서의 언론이 무책임하다는 시비를 낳을 수 있습니다. 1950년대 이후에는 '목탁론'으로 언론이 주관적인 해석을 하고, '목탁(木鐸)'으로서 사회의 나아갈 바를 제시해주어야 한다

는 취지입니다.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가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지만, 개인적으로는 목탁론쪽에 더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의료분쟁과 관련, 언론이 중재자로서의 대안제시하는 역할이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한봉 위원의 언론이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말씀은 상당히 귀에 와닿습니다. 이는 첫째로 상업적 저널리즘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흥미 위주로 보도를 하다보니 보도의 정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둘째로 기자나 언론의 비전문성, 셋째로 언론의 무책임성이 이유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지라면 파동 등 사회 문제를 일으켜 갈등을 발생케 한다고 봅니다.

한편, 언론의 전문성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취재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언론사에는 전문기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문기자를 충원하지 못할 바에는 언론사 내부 취재시스템을 바꾸어 전문기자를 육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언론인 재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외부의 무료 언론연수 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론 스스로가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집단간 갈등문제에 대한 대안제시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론이 문제에 대한 대안제시를 기피하는 것은 언론의 무책임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의 조정자로서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홍기자 (여성단체협의회 특별사업위원) : 국민건강을 위해 실시하려는 의약분업과 관련, 언론보도가 의사들의 파업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뤄졌기 때문에 국민들은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이 보다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보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영혜 (전문직여성클럽 한국연맹 전북클럽 회장) :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문의 경우, 용어설명 등이 가능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지면이나 시간적인 제약이 많은 방송의 경우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보도해주길 바랍니다.

김명관 (민족통일 전라북도회장) : 이산가족문제, 장기수 문제 등 남북통일을 위해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정부도 물론이지만 언론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정부 정책에 대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채찍질해주고,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언론이 사회집단간 갈등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를 기피하는 것은 언론의 무책임성을 드러내는 것

위원장 :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겨가면서 진지하게 토론해주시고 발표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표자께서 방송3사의 의료분쟁 관련 보도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언론이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였는지 실증적인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언론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언론이 새로운 대안제시를 하는 것이며, 이번 의료분쟁보도와 관련, 보도가 신속하게 이뤄졌지만 새로운 대안제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여러 지방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는 지방토론회는 단지 그 지역에 국한된 문제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토론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며, 다시 한번 발표자와 사회자, 진지하게 토론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포르말린, '피를 말린'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의 교훈

박 용 규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언론정보학

'피를 말린' 심정의 피해자들

며칠 전 동네 슈퍼마켓에서 번데기 통조림을 샀다. 무심코 집다가 갑자기 왜 번데기가 먹고 싶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원래 번데기를 좋아하기는 했다. 하지만 어쨌든 이보다는 얼마 전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판결을 내린 것이 은연중에 작용했는지도 모르겠다. 집에 와 번데기를 먹으며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으로 '피를 말린'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떠올려 보았다.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은 사람들로 하여금 통조림에 포르말린이 들어 있어서 먹

으면 안 된다는 생각만 남겨 놓은 채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동안 계속 재판이 진행되어 결국 최종 무죄판결이 나면서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피해자들이 국가와 언론사를 상대로 "검찰이 허위의 혐의 사실을 발표하고, 언론사들이 사실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해 회사가 부도났다"고 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무리한 수사와 무책임한 보도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이 사건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통조림 제조업자들의 딱한 처지에 대해 동정 여론도 일고 있다.

검찰과 언론도 나름대로 할 말이 있을 것이다. 검찰은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 식품을 엄단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수사했을 것이고, 언론은 사람들로 하여금 유해 식품을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도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의 수사나 언론의 보도가 좀더 신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는 것은 사실이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가 당사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안겨 주었기 때문이다. 언론은 검찰의 발표를 그대로 보도했을 뿐이라고 항변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면책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언론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좀 더 책임감 있는 보

도를 하기 위해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의 전말

지난 98년 7월 8일, 서울지검 형사2부는 일부 통조림 제조업자들이 번대기, 골뱅이, 마늘, 호박, 팔 등을 원료로 하는 통조림 제품을 만들면서 포르말린을 방부제로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검찰은 적발된 통조림 제조업자들이 수입한 원료에 이미 포르말린이 함유된 사실을 알고도,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여기에다 또 물에 섞은 포르말린을 뿌리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를 받아 “인체에 치명적인 포르말린 사용, 식품업체 대표 적발”, “동해안 일대 포르말린 무분별 사용 규제 시급” 등의 기사를 내보냈다. 사람들이 즐겨 먹는 통조림에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을 넣었다는 보도는 곧 엄청난 분노를 자아냈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까지 형성되었다. 언론의 보도가 나가자 반

품이 쏟아져 들어오고 부채상환 압력까지 가해져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나머지 통조림 제조업체들까지 상당수가 부도를 내고 말았다. 이후 통조림 제조업자들과 그 가족들은 생계의 위협을 느낄 만큼의 심각한 경제적 곤란을 겪었다. 하지만 경제적 곤란보다 이들을 더 괴롭힌 것은 ‘양심 불량자’로 보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이었다. 무



죄판결 후 한 통조림 제조업자의 부인은 “소비자들이 전화를 걸어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할 때는 차라리 죽고 싶기만 했다”고 그 당시의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들끓는 비난 여론 속에 누구도 이들의 항변을 제대로 들어보려고 하지 않았다. 물론 언론도 통조림 제조업자들의 반론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통조림 제조업자들에게는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검찰이 천연상태의 원료에서도 포르말린 구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자연 생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채 충분한 증거도 확보하지 않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이다. 즉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나 자백도 없이 오로지 통조림에서 포르말린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에만 집착해 기소했다는 것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천연상태에서도 포르말린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통조림 제조업자들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언론은 이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발표조차도 무시하고 말았다.

1. 2심 법원은 결국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자연상태의 식품에도 원래 존재하고 인위적으로 첨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며 피고인인 통조림 제조업자들에게 무죄

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에 서도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비로소 통조림 제조업자들은 누명을 벗게 되었다. 하지만 그 동안 이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너무나 컸다. 이런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통조림 제조업자들은 급기야 국가와 언론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받아쓰기 보도관행의 상물

언론이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보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언론이 일상의 취재보도 활동에서 신속하면서도 동시에 정확하게 보도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기자들은 항상 마감시간에 쫓기면서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한다. 그러다 보면 간혹 제대로 조사하거나 확인하지 못하고 보도하여 결과적으로 오보를 내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신속함에만 집착하면 할수록 오보를 낼 가능성은 더 커진다.

항상 시간에 쫓기는 기자

들은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 흔히 한국 언론은 출입처 제도 속에서 취재원이 제공한 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해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들을 좀 더 조사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발표한 내용은 무조건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설사 오보가 된다 하더라도 면책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지 너무 쉽게 받아쓰곤 한다.

이런 받아쓰기 보도 관행의 문제점이 포르말린 사건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 애초부터 언론은 당사자들의 반론을 제대로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이 나왔는데도 거의 대부분 이를 무시했다. 더욱이 1, 2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이 내려져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던 상황에서도 여전히 재판결과를 단순히 알리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 따라서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에서

언론은 검찰이 발표한 사실을 그대로 보도했을 뿐 좀 더 조사하고 확인하려는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견제하기보다는 이런 수사 결과를 그냥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언론도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이 되고 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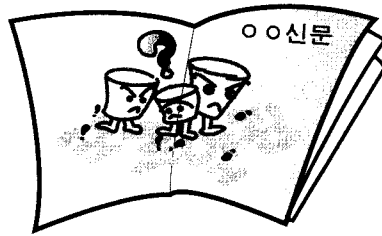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후 언론계의 반응은 대체로 두 가지 경향을 보여준다. 하나는 좀더 자세하게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조했다는 자성의 목소리이다. 다른 하나는 공공기관의 발표이고,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이 식품에 들어 있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도를 안 할 수 있었겠느냐는 불멘 소리이다. 전자가 취재보도관행의 잘못된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라면, 후자는 현실적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그대로 보도한 것은 한국의 언론관행상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나름대로 신빙성 있는 자료에

근거한 반론이 나왔을 때에 이를 무시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때에는 시간 부족과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의혹이 불거지고 근거 있는 반론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좀더 조사하고 확인하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관련 당사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너무 무책임한 보도를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법원의 무죄판결이 나오고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자 언론들은 경쟁적으로 관련 당사자들의 해명성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한 법조기자는 이에 대해 “늦었지만 죄송하다, 잘 봐달라는 의미가 담겨있지 않겠느냐”고 말을 했다. 언론의 이런 태도가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진정으로 사죄의 뜻이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도

스스로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언론이 진정으로 자성을 했다고 보기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다. 언론이 인격권 침해 방지에 대한 재인식과 함께 잘못된 취재보도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한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과 같은 일은 언제나 또 벌어질 수 있다.



인격권 침해 방지에 유의해야

언론의 자유는 자유로운 의견의 발표를 통해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토대가 되어 주기 때문에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론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

은 아니다. 언론의 자유가 국가법익, 사회법익, 개인법익과 충돌하게 될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언론의 자유가 개인법익, 즉 인격권과 충돌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고 있다. 언론중재신청이 늘어나고 명예훼손소송이 빈발하는 것은 이런 변화 추세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론의 인격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들이 갈수록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자칫 언론의 자유만 앞세우다 보면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고, 또 인격권 침해 방지를 강조하다 보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는 언론보도가 인격권을 침해했을 경우에 어느 범위까지 면책해주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취재할 당시에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널리 받아들

들여지고 있다. 만약 진실로 확인된 것만을 보도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언제나 명예훼손의 책임을 진다면 그것은 언론에게 극도의 자기억제와 검열을 강요하는 것이고, 나아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의 경우도 이런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후 언론이 “피의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한편 언론은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런 견해 차이는 “특히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공기관의 발표를 그대로 보도하였다면 보편적으로 진실의 오신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기존 판례의 경향에서 비롯되고 있다.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은 언론이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보도한 경우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론의 책임이 무조건 면해질 수 있는지가 계속 논란이 될 것이다.

그 동안 수사기관의 발표는 정보원의 신뢰도가 높고,

보도의 신속성이 요구되며, 사실 확인 능력에 한계가 있고,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어 직접 취재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특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진실이라고 오신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여져 왔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언론이 검찰 등 수사기관의 발표를 일일이 다 추가로 조사하고, 확인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보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혐의사실 발표만 그대로 보도하여 기정사실화하고, 이후에 충분히 근거 있는 반론이나 자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를 보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당사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다.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든 손배배상금을 통해 물질적 보상을 받은 피해자들의 고통은 쉽게 치유되지 않

는다. 물론 언론으로서는 불가피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또한 자칫하면 취재보도활동의 위축이 염려될 수도 있다. 하지만 언론이 인격권 침해 방지에 좀 더 유의하며, 잘못된 취재보도관행을 개선해 나간다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을 계기로 언론의 잘못된 취재보도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잘못된 관행의 개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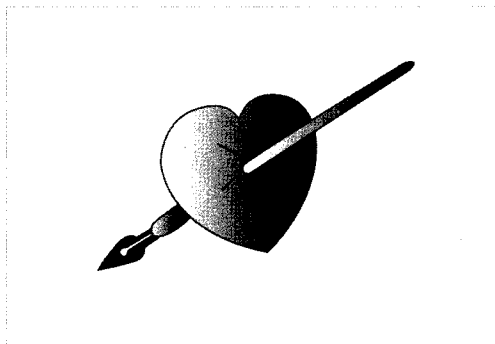
그 동안 한국 언론은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 구속기소 단계부터 실명까지 밝히며 보도하는 경향이 있었다. 혐의사실에 불과한데도 검찰이 발표하고 언론이 이를 보도하면 기정사실화 되어 ‘여론재판’에 의해 피의자들은 유죄판결을 받은 듯 받아들여지고, 나중에 실제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도 피의자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만 뒤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언론은 이와 같은 관행을 바꾸기 위

해 노력해야 한다. 혐의사실을 보도하는 경우에 적어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염두에 두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 즉 검찰 등 수사기관의 발표를 보도할 때 실명을 밝히며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또한 한국 언론은 그 동안 사건의 발생부터 구속기소 단계까지만 주로 보도하고 후속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구속기소 이후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를 잘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애초의 수사결과가 잘못 되었다는 자료나 증언이 나오더라도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후속보도를 통해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조사하고, 확인하여 보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그래야만 언론보도로 인해 피의자가 곧 범죄자로 인식되는 경향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출입처가 제공한 자료를 무조건 받아쓰는 그동안의 취재보도관행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특히 이른바 '발표 저널리즘'에 익숙한 타성에 의해 보도 자료를 무조건 믿고 확인 없이 보도한 경우에 반드시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자들로 하여금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련 법규를 숙지시키려는 시도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기자들이 자신이 쓴 기사가 가져 올 결과가 얼마나 엄청날 수 있는가를 깨



닫고 스스로 책임의식을 더욱 확고히 할 필요도 있다.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은 기자가 검찰의 수사결과를 무심코 그대로 보도하고, 이후에 수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도 그냥 무시해버린 결과가 피해자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절감하게 만들었다. 한편 피해자 가족이 천연 포르말린의 가능

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준 일부 언론에 대해 “은인과도 같다”며 소송에서 제외했다고 밝힌 것을 보면,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 좀더 조사하고 확인하려는 기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언론이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다. 즉 언론이 어느 정도 노력하면 치명적인 인격권 침해는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 동안 피 말리는 심정으로 재판과정을 지켜보았을 피해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고통에 대한 보상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피해가 더 이상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일은 언론의 몫이다. 언론자유가 중요한 만큼 인격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기자들이 피해자들과 만나 번데기와 골뱅이를 안주로 술한 잔 마시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 □

뉴미디어의 등장

송 정 제

부위원장 · 부산중재위원

'닷컴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한지가 엇그제인 것 같은데 다시 '닷컴시대'가 도래했다고 한다. 특히 정보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은 불과 수년사이에 경제, 사회, 문화를 포함하여 엄청난 변혁을 가져오게 했다. 전문가들은 정보기술의 발전 가능성은 거의 무한하다고 보고있으며, 앞으로 인류사회에 가져다 줄 혜택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우선 '네트워크'체제가 구축되면서 신문과 방송 등 기존 미디어환경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국내 일간지는 대부분 인터넷 신문사이트를 서비스하고 있고 또한 여러 신문사와 인터넷상의 정보들을 수집, 재가공하여 서비스하는 수많은 베틀신문들도 생겨났다. 현재 인터넷 신문은 130여 개의 국내신문과 대학학보 52개, 전문지 50여 개로 집계되고 있다. 인터넷 방송은 공중파방송을 비롯해 기업체와 대학, 아마추어 등 450여 개가 자기들 목소리와 색깔을 담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라면 경쟁력이 있는 다양한 '뉴미디어'가 더 많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마치 때를 맞추기라도 한 듯 생존경쟁이 치열한 '미디어'분야에 온라인 신문이 기존 종이신문과 차별성 있는 심층기사를 통해 여론형성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도전장을 던지고 나섰다.

'아이뉴스24' 등 7개 온라인 신문사들이 11월 초 각계인사들을 초청하여, 변화하는 시대의 온라인 신문의 위치와 그 방향성에 대한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가져 주목을 끌었다. 탄생된 지 일천하고 그 영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것은 없지만 온라인 신문이 고급정보와 대중성 있는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공급할 수 있다면 정보의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한 온라인신문사는 자사가 확보하고 있는 회원 2천94명을 대상으로 인터넷뉴스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내놓고 미디어 선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입증하려고 했다. 응답자의 83%가 온라인 미디어로 인해 종이신문 이용이 줄었으며, 85.8%가 방송시청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온라인 신문을 이용하는 계층은 대졸이상의 고학력자가 74.7%였고 직종별로는 경영관리, 홍보, 사무직 등 화이트칼라가 41.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미디어의 가장 큰 편익요인은 기사의 신속성이 74.3%로 나타났고 특보성과 이용편의성의 순서였다. 독자층은 25~34세가 62.6%로 압도적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71.1%로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다. 네티즌들이 뉴스정보를 얻기 위해 4개 이상의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는데 그 중에 뉴스전문사이트의 이용비율이 41.5%로 가장 높고 인쇄매체가 운영하고 있는 뉴스사이트가 37.4%로 2위이며 방송은 21.2%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맡았던 인터넷 매트릭사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조만간 온라인 미디어와 오프라인 미디어의 격돌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확

정보 흐름의 장벽을 허물어 버린
인터넷이 우리의 언론환경에 어떤 빛과
그림자를 던져줄지 주목돼

대해석을 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광고주협회가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 사회변화에 맞춰 인터넷이용자 1만5천여 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자 실태조사'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독자감소부문에는 현격한 차이점이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이 조사결과, 이용자 연령별 조사는 앞서 언급한 조사결과와 비슷한 반면 기존매체 이용시간 변화에 관한 부분에서는 온라인 조사와 다르게 나타나 두 조사의 통계자료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두 기관의 조사결과, TV와 잡지매체의 특성과 기능이 점차 인터넷 쪽으로 대체 되어 이동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과 기존매체에 대한 매체별 속성평가도 온라인신문과 광고주협회가 비슷하게 나왔다. 정보성과 편리성은 타 매체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72.7%가 향후 인터넷방송의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매체가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광고문제는 정확한 시장조사에 근거한 매체별 영향력을 파악하고 있는 광고주협회측의 자료에 의하면 인터넷광고의 효과는 브랜드 인지도(35.8%)와 제품 카테고리 기억(32.4%)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쇼핑경험자의 95.5%가 인터넷제품구입을 희망하고 있고 한달 동안 인터넷을 한 번이라도 이용해본 사람이 전체 국민 중 53.1%나 나타난 것을 보면 광고주의 매력을 자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온라인신문'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대안매체가 아닌 여론을 주도해 나가는 매체가 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있다. 한국의 온라인 신문이 기득권을 가진 신문과 방송들의 여러 제약과 모순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탄생한 것이며, '뉴미디어'로서 장점도 많으나 자본부족과 광고확보의 불확실성, 사용자들의 무료화인식 등 취약점을 극복해야 하는 벽찬 과제를 많이 안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디지털시대라고 해도 인쇄신문과 공중파 방송의 기본 속성이 크게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기존매체는 존립의 생명과 같은 독자와 시청자의 확보를 위해 온라인신문과의 불꽃튀는 속도전쟁을 벌일 것 같다. 나아가 세계적인 인터넷 뉴스메이커로 명성을 얻고 있는 업체들의 국내진출은 온라인신문의 비중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연초 뉴미디어인 아메리카 온라인이 올드 미디어의 강자 타임워너를 미디어관련으로는 사상최대의 규모로 인수합병 한 것은 정보화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가장 충격적인 뉴스였다. 정보의 제약을 없애고 국경의 장벽을 허물어버린 인터넷은 우리의 언론환경에 어떤 빛과 그림자를 던져줄지 자못 주목된다. □

每日新聞, 일본 언론사 최초의 옴부즈맨 성격의 기구 창설

일본의 언론계, 특히 신문사들은 최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와 독자들의 불만을 제3자의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제3자 기관'을 설립하라는 각계각층으로부터의 제안과 압력에 직면, 일부 신문은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대응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每日新聞社は 2000년 10월, 일본의 신문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옴부즈맨' 성격의 "'열린 신문' 위원회"를 창설, 발족시켰으며 관동지방의 下野新聞社は 11월 4일 독자의견 청취기관으로 '下野新聞 독자간담회'를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열린 신문'위원회"는 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 中坊公平 변호사, TV프로듀서 吉永春子씨, 논픽션작가이며 평론가 柳田邦男씨, 저널리스트 玉木 明씨, 上智大 田島泰彦 교수 등 5명으로 구성하고, 관료적인 운영을 배제하기 위해 위원장을 두지 않기로 했다. '下野신문 독자간담회'도 현내 거주 대학교수, 변호사, 기업경영인 등 5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일본 신문들은 지난 2, 3년 동안 타율적 규제 움직임과 여론을 의식, 각 신문사별로 보도에 의한 인권침해의 예방과 사후구제의 효율화를 위해 사내심의기구의 활성화, 기자교육 및 연수의 강화 등 다각적인 대응을 시도했으나 이러한 노력이 공감을 얻지 못하고 언론사에 대한 불신풍조가 확산되어가기만 했다.

1999년 가을, 법무성의 인권옹호추진심의회 공청회에서도 신문협회 가맹신문사 대표들이 사내의 심의기구와 불만구제의 적극적인 대응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참석자들의 반응은 의외로 냉담하였다.

이 심의회가 올 여름 발표한 주된 인권침해 유형에 '스토커', '아동학대'와 함께 '매스미디어'를 예시할 정도였으며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전문위원회의 공청회에서도 같은 반응이었다. 자민당의 '보도와 인권' 토론회에서도 이러한 지적이 있었으며, 일본변호사연합회, 소비자단체 등도 지난 1, 2년동안 총체적으로 '매스미디어'를 인권침해의 '피고' 취급을 해왔다.

이러한 움직임에 위기감을 느낀 신문협회는 "인권·개인정보위원회"를 구성, 지난 봄부터 변호사단체, 소비자단체, 정치인, 연구원 등을 초청, 연수회 등을 계속해 왔으나 "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신문사의 불만처리논 밖에서 보이지 않는다", "투명성이 없다", "결국 제멋대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불신의 소리만 들었다.

가장 먼저 만들어진 每日新聞의 "'열린 신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역할을 담당한다. 첫째, 보도에 의한 명예,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문제 등 당사자로부터의 불만이나 의견에 대한 본사의 대응을 '제3자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일이다. 둘째,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편집방침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독자나 당사자로부터의 불만제기와 무관하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셋째, 앞으로의 신문의 방향을 전망하면서 미디어 전반의 과제에 대해 제언한다.

北村正任주필은 "언론에 대한 비판이나 불신을 이유로 정부 등이 보도를 규제하게 된

다면 신문이 다하고 있는 인권옹호, 부정적 발의 활동은 크게 타격을 받게 된다. 신뢰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되는 것이 아니다. 毎日新聞은 독선에 빠지는 일 없이 사외의 소리, 독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기 위한 활발한 취재·보도를 과감하게 계속하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위원회를 창설한 것은 이러한 과제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도쿄본사 朝比奈 豊 편집국차장은 "지면에 대한 제언 외에 제3자의 관점을 불만대응에 반영토록 한 새 제도는 일본의 신문으로서의 최초의 시도이며 毎日新聞의 독자적인 '옴부즈맨'제도"라고 말하고 있다.

(『新聞協會報』, 2000년 11월호) □

을 거부해주길 청원했다. 그 후 대법원이 항소법원으로부터 그 사건을 이첩받기로 결심했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발표를 전해들은 McHale, Cook & Welch사의 경영인은 "이첩된 소송의 74%가 그 결정이 번복됐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고무되어 말했다.

SPJ는 항소법원은 "해직 교수가 외국에서 보낸 전자메일을 보내 자신이 대학교 관료였다고 주장하여, 대학의 법인명이 부적절하게 남용되었다는 항변"에 대해 주법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정헌법 제1조 전문 변호사 Robert Lystad 씨는 "어떠한 주도 법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주장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주요한 이유는 법인은 그것을 지킬 어떠한 개인적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Editor & Publisher, 2000. 8. 21, p.10.) □

법인도 프라이버시권을 가질 수 있다는 미국 판결 나와

미국 인디애나주 항소법원은 법인도 프라이버시권을 가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1990년, 해직 프랑스인 교수와 Evansville 대학간의 법정소송에서 비롯된 이번 판결은 언론인들에게 경종을 일으켰다. "이 판결은 법인에 관한 보도에 대해 불만을 가진 법인들이 언론사를 공격할 수 있는 유효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인디애나폴리스의 변호사 Daniel P. Byron씨는 말했다.

전국언론인협회(SPJ : the 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 Hoosier 신문협회 그리고 다른 두 개의 언론기관들은 인디애나 대법원에 법인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판결

선거에 입후보한 자의 적격성 등 유권자의 투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보도할 때는 오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1993년의 이바라기현(茨木縣) 지사선거에 입후보했다가 낙선한 고(故) 佐川一信 전 미도(水戸)시장(1995년 사망, 유족이 소송을 승계)이 제네콘(general contractor의 약어) 오직사건 관련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일본경제신문사를 상대로 1억엔의 손해배상과 사죄문의 게재를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0년

10월 20일 “기사가 佐川 전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2심의 판단은 인정된다”고 100만엔의 지불을 명한 2심을 지지, 일본경제신문의 상고를 기각했다.

문제가 된 것은 지사선거의 투표일 하루 전인 1993년 9월 25일자 일본경제신문 조간에 게재된 기사로, 佐川씨가 시장때 추진한 미도예술관의 건설공사를 청수(淸水)건설이 수주하지 못하게 된 것은 “라이벌회사가 미도시 간부들에게 영업활동을 전개, 그것이 주효했기 때문이었다”고 보도한 기사내용이다.

1심인 미도지방재판소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보도기관이 입후보자의 적격성 등 유권자의 투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보도할 때는 정확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오해를 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 다음 제목·기사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 일본경제신문측에 100만엔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2심인 도쿄고등재판소는 기사에 대해 “佐川씨의 이름은 기재되지 않았지만 예술관의 건설공사에 관련된 ‘시 간부들’ 중에서 시장인 佐川씨는 두드러진 중심인물이며 이것은 해당 지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고 지적, “제네콘 오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1심 판결을 지지했다.

일본경제신문사측은 판결에 대해 “기사 표현 나아가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지금까지의 최고재판소 판례는 기사의 표현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는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는 것이었다. 문제가 된 기사는 원고의 이름도 직명도 기재하지 않고 있으며 부정공작이 있었다고도 기술하지 않았다. 이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최고재판소는 종래의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판결이유에서 밝혔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新聞協會報』, 2000년 10월 31일자) □

수사단계에서의 범죄보도는 신중한 주의가 요청

-일본 和歌山지방재판소 판결-

和歌山시에서 발생한 독물카레혼입사건을 둘러싸고 사기죄로 몰린 피고에 대한 언도판결에서 和歌山지방재판소는 2000년 10월 20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취재가 행하여졌으며 이는 일종의 사적 제재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이례적인 언급을 했다.

재판부는 일부 보도기관이 사건의 발생으로부터 피고가 체포되기까지의 과정에서 피고의 가족이나 부근의 주민들이 이상한 상태에 놓였었다고 지적하며, “형사소송법의 추정무죄의 원칙에서 밝혔듯이 수사단계에서의 범죄보도는 신중한 배려가 요청되며 취재에 의해 피고가 받은 취급이나 주민의 혼미는 지역변호사회의 성명이 발표될 정도였다”고 비판했다.

(『新聞協會報』, 2000년 10월 31일자) □

일본신문협회,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서 보도목적의 개인정보 규제는 제외할 것을 주장

일본정부가 내년도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에 관한 대강이 지난 10월 11일 법제화전문위원회에서 확정되었다. 그러나 언론계는 입법취지에는 찬성하면서도 기본원칙이 모든 분야에 적용되기 때문에 취재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의 초안 심의 단계에서부터 신문협회가 긴급성명을 발표하는 등 저항에 부딪쳐 보도분야에 대해서 일부 수정이 가해졌으나 신문협회는 10월 16일 의견서를 발표, 기본원칙 내용 가운데 보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부분의 삭제를 요구했다.

기본원칙에는 언론과 관련,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개인정보의 유용성을 배려한다고 한 기본법제 목적의 취지에 비추어 개개의 기본원칙은 공익상 필요한 활동이나 정당한 사업활동 등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원칙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취급자의 자주적인 대응에 의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취지는 보도분야에 있어서의 취재활동에 수반하는 개인정보의 취급 등에 관해서도 같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기본원칙이 적용되면 취재원이 위축되거나 기본원칙을 구실로 취재를 거부할 사례

가 증가하여 독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분히 보도할 수 없는 사태도 예상된다. '적정한 방법에 의한 취득'의 원칙이 정보원을 밝히도록요구하는 법적 근거로 이용되어 보도의 근간인 취재원의 비극과의 충돌이 일어난다든지 '투명성의 확보'의 원칙을 방패로 취재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자행될 우려가 있어 보도분야에 갖가지 문제와 분쟁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보도목적의 개인정보는 법의 규제대상에서 전면적으로 제외하라는 것이 언론계의 요구로 집약된다.

(『新聞協會報』, 2000년 10월 17일자 ; 『新聞研究』, 2000년 11월호) □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보도한 데 대해 철퇴가해

미 대법원은 보도를 목적으로 한 불법적 행위의 용인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기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아동포르노 소지 및 배포 혐의로 기소된 Larry Matthew 씨의 유죄부분에 대해서 심리하지 않았다. 한편 12월에 대법원은 펜실베니아 라디오 방송국이 전화통화내용을 불법 도청한 데 따른 민사상 책임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1971년에 있었던 펜타곤 서류 사건 이래로 논쟁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펜타곤 서류사건은 사전금지(prior restraint)의 합법성과 관계된 것이었으나, 기자가 불법적으로 얻은 자료를 기사화한 점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하는지를 다루지는 않았다.

지난 10월 2일 재판부는 논평없이 워싱턴 근교의 몽고메리 카운티에 사는 57세의 Matthews씨가 신청한 항소심리를 기각했다. 30년 경력의 라디오 방송의 베테랑인 피고에 대해 판사는 Matthews씨가 방송 예정된 자유기고 글에 대한 자료의 일부로써 웹상에서 포르노사진을 교환한 사실에 대해 배심원에게 진술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두 건의 기사 사항에 대해 유죄판결했다.

검사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를 마약 밀매와 유사함을 들어 “언론에 종사하는 어떤 사람도 기사를 쓰기 위해 마약을 사고 파는 행위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한 권리라고 주장하려 한다면 법정 밖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고 사실심 법정에서 말했다.

언론의 자유측면에서 접근하는 전문가들은 배심원들은 Matthews씨의 변론을 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만약 언론인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항변할 수 없다면 미국 사법부의 인터넷상 아동포르노 근절 정책의 잘잘못을 검증할 방법이 없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언론의 자유를 위한 기자협회(the Reporters Committee for Freedom of the Press)의 전무이사는 주장했다. Matthews씨는 1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Editor & Publisher*, 2000. 10. 9., p.11.) □

미국, 범죄피의자의 인격권 보호를 둘러싸고 논란

1996년 일리노이 호수에서 한 피살자의 절단된 사체가 쓰레기 봉투에 담겨 떠올랐다.

일년 전에 경찰은 피살자 남편의 부모 소유인 중고차를 찾았다. 놀랄 만한 범죄수사의 변화 가능성에 직면하여 Decatur Herald & Review(이하 'H&R')는 기사와 사진을 실었다.

H&R은 피살자의 전 남편과 시부모들의 살해사건 혐의가 있는 후에야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살인사건의 피고측 변호사는 H&R이 부패된 사체의 사진을 발간하지 않길 원했다는 점에 대해 주장했고 판사도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신문사는 거절했다.

일리노이주 취재원 보호법에 의하면 신문사는 법원의 소환장에 대한 응답을 해야만 한다. Macon 카운티의 순회법원 James A.Hendria판사는 신문사가 확실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을 요구받았기 때문에 취재원 보호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면 심문없이 판결했다. 판사는 H&R이 사진을 더 이상 보도하기 전에 편집장을 구속시킬 것을 명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신문사가 그 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시행의 유예가 받아들여졌다.

편집장인 Bellows씨는 9월 8일 심문에서 투옥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편집장은 항소심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는 사진을 넘겨주는 것이 잠재적인 취재원의 기분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다. H&R의 편집장은 이것은 강요된 출간이라며 법원의 방침을 거부했다. 그는 “무엇을 보도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언론인의 특권”이라고 주장했다.

일리노이주의 35,350부를 찍어내는 한 일간지를 둘러싸고 진행된 혼란은 피고측 변호사들, 검사, 그리고 경찰이 신문사에게 아직 보도되지 않은 취재기사와 사진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최근의 일례들이 뉴저지주와 미네

소타주, 캔사스주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급속도로 증가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몇몇 사람들은 소환장이 몇 년을 소비하게 하고 사람들을 쇠약해지게 하지만, 단지 주기적인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또 다른 이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자들의 역할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기도 한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법조계 인사들이 전반적으로 언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설립된 언론단체 이사인 Robert O'Neil씨는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수년동안 법원은 여러 측면에서 미묘하게 흔들려왔고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언론자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거의 30여 개 주에서 법원 소환장으로부터 언론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재원보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 법령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언론인이 기사의 내용을 반복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에서만 인정되고 있다. 또한 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보통 언론인의 요구가 타당한 것이며, 정보취득을 위한 다른 출처가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만 한다.

한편 지난 주 뉴저지주의 한 판사는 살인 사건의 피고가 수사에 중요한 목격자와 대화를 했다는 사실을 보도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Philadelphia Inquirer지 기자를 겨냥해 신청한 소환장 발부를 파기했다. 한 판사는 수정헌법 제1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할 말로 표현하자면 사회해악적인 중대한 범죄가 언론의 자유를 보다 보장하는 반면, 피고측의 인격권 보호는 소홀히 취급 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ditor & Publisher, 2000. 9.18, p.5) □

기소시 검찰의 발언을 그대로 기사화하고 입증조사를 한 흔적이 없어 진실이라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일본 도쿄지방법판소 판결-

마약 및 향정신약취체법 위반 등의 죄로 복역 중인 남자가 朝日新聞 기사에서 옴진리교도로 보도되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朝日新聞社 등을 상대로 3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도쿄지방법판소 민사제15부는 2000년 9월 18일, 남자가 사건당시에 신도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한 다음 “기사는 기소시의 千葉지검의 발언을 그대로 채용했으며 입증조사를 한 흔적도 엿보이지 않아 신도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판단, 朝日新聞社 등에 30만엔의 지불을 명했다.

문제가 된 것은 1996년 9월 18일자 朝日新聞 조간에 “옴신도에 징역 10년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기사.

재판부는 “남자는 옴진리교의 교도로 활동하고 있었으나 1994년 12월 이후 회비의 납입을 중지하고 설법회 등에도 참가하지 않았으며 사건 당시 신도였었다는 사실을 추인(推認)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을 게재할 경우 상당한 입증조사를 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기사는 체포할 때가 아니고 판결할 때의 기사이므로 남자의 신상에 관해서는 충분한 입증조사가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朝日新聞社는 항소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新聞協會報』, 2000년 10월 3일자) □

편집자 주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공표치 마시기 바라며,
민약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이 동료의원을 폭행하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0경남중재10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변 영 태

피신청인 : 경남신문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0. 9. 26.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경남신문 : 『진해시의원 관광길 추태, 의원끼리 버스안 주먹질... 코뼈 부러져』제하의 기사(2000년 8월 25일자 23면)

내 용 : 진해시의회(의장 김영조) 의원들이 시민들의 혈세로 관광을 즐기다 술이 만취돼 의원들끼리 주먹질까지 벌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비난을 사고 있다.

25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하루 일정으로 시의원 및 의사국장, 전문위원 등 40여명이 부부동반으로 하계수련회 시예산 160만원을 들여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에 관광을 다녀왔다.

그러나 이날 오후 8시계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다 버스속에서 술에 취한 변모(42), 이모(46) 의원이 지난달 실시한 시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 말다툼을 벌이다 변의원이 이의원의 안면부를 3~4차례 때려 이의원의 코뼈가 부러져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다.

폭력사태가 발생하자 동료의원들은 즉시 나서 싸움을 말리고 이의원을 진해 제일병원으로 데리고 가 응급치료를 받았다.(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진해시 의원으로서 2000년 8월 25일자 피신청인의 보도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사실은, 이의원이 폭언과 폭행을 가해와 이를 피하다가 고의성 없이 버스 안에서 넘어지면서 손을 내민 것이 이의원 코에 맞은 것뿐이다. 또한, 신청인을 폭행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하자 이의원은 술에 취해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말해오다가 8월 14일에야 제일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받았고, 16일에 다른 병원인 진해의 조은 이비인후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26, 27일에는 생활체육 축구회장으로 축사와 행사를 주관했다.

사실이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왜곡,

허위보도하여 시의회 의원으로서의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다음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정정보도를 구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지난 8월 25일자 경남신문에 보도된 『진해 시의원 관광길 추태, 의원끼리 버스안 주먹질...코뼈 부러져』제하의 기사에서 “진해시의원 관광길 추태, 코뼈부러져, 술에 취한 변모(42) 의원, 지난달 실시한 시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말다툼을 벌이다, 변의원이 이의원의 안면부를 3~4차례 때려, 코뼈가 부러져, 폭력사태가 발생하자 동료의원들은 즉시 나서 싸움을 말리고 이의원을 진해 제일병원으로 데리고 가 응급 치료를 받았다”라고 보도한 바 있으나 사실 확인결과 당일 기사는 오보였음이 밝혀졌다.

당일 진해시의회 의원들과 부인들, 그리고 의사계 직원들은 1일 수련회를 다녀오던 길 이었고 변의원은 술에 취하지 않았으며, 또한 지난달 실시한 시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전혀 말다툼을 한 적이 없었으며, 변의원이 이의원의 안면부를 3~4차례 가한 적이 없으며, 이의원이 먼저 변의원에게 세 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했으며 변의원은 정당방위로 이의원의 몸을 잡은 가운데 변의원의 손이 이의원의 코를 스쳐 코피를 흘린 것이 전부이며, 또한 진해 제일병원으로 데려간 의원은 아무도 없으며 당일 진해제일병원 응급실의 진료 기록에는 이의원이 치료를 받은 사실의 기록이 전혀 없음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진해시의회 의원들과 의사계 직원들이 1일 수련회를 다녀온 날은 8월 11일이었으며 경남일보는 14일 지난 후 사실을 잘못 알고 오보했음이 드러났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 및 반론
 · 내 용 : 본지 8월 25일자 23면에 『진해시의원 관광길 추태, 의원끼리 버스안 주먹질...코뼈 부러져』제하의 기사에서 “진해시의원, 의회직원 등 40여 명이 부부동반 하계수련원에 다녀오던 중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한 변모(42세) 의원이 이모(46세) 의원에게 시의회의장단 선거관련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가하여 코뼈가 부러져 전치 3주의 중상을 입혔으며, 동료의원들이 이모 의원을 진해 제일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응급치료를 받게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변모 의원은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고, 시의회이장단 선거관련 말다툼도 없었으며, 변모 의원이 이모 의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라 이모 의원이 도리어 변모 의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변모 의원이 이를 피하려다 변모 의원의 손이 이모 의원의 코에 스쳐 피가 난 것이다”고 주장하였고, 사실 확인결과 이모 의원은 사건 당일 동료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진해 제일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3일 후에야 진단서를 발급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0. 10. 10.까지 주중에 발간되는 경남신문의 오피니언란에 박스처리하여 보도하되 제목은 원기사의 소재목 크기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남신문 : 『반론 및 정정』제하의 기사(2000년 10월 7일자 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관내 관급공사나 대형공사 허가와 관련,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0서울중재296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청인 : 황 교 선

피신청인 : 한겨레

중재부 : 서울제1중재부

접수일 : 2000. 9. 26.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한겨레 : (1)「고양시장 뇌물혐의 내사」제하의 기사(2000년 9월 21일자 17면)

내 용 :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이 경기도 양주군의 관급공사 계약서류를 넘겨받아 조사하는 등 경기북부지역 3개 시장·군수의 수뢰 혐의를 잡고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 시장·군수가 최근 몇 년 동안 발주된 관내 관급공사나 대형공사 허가 등과 관련해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지난달 말부터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또 고양시와 남양주시의 경우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대형공사와 대형 환경오염시설을 허가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2)『성남 고양주민의 시장퇴진 운동』제하의 기사(2000년 9월 22일자 16면)

“민심을 잃은 민선 자치 단체장은 반드시 퇴

진시켜야 합니다”

경기 고양시 황교선(61) 시장 퇴진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난립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각오가 대단하다. 황시장은 지난 달 21일 고양시청 앞에서 ‘러브호텔’ 난립반대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 앞에서 “법적 하자가 없다”며 “다음 선거에 안 찍으면 될 것 아니냐”고 버텼다.

그러던 그가 지난 19일 갑자기 자신의 고집을 꺾었다. 이날은 마침 그동안 학교 주변 러브호텔난립에 대한 추궁에 시달려온 강정식 고양시교육장이 ‘도망치듯’ 사표를 제출한 날이다.

(중략)

이와 함께 공대위는 “시장 퇴진운동과 함께 주민소환을 위한 ‘헌법소원’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황시장의 수뢰여부를 조사 중인 검찰은 상당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의를 거스른 자치단체장이 설자리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현직 고양시장으로서 한겨레신문 9월 21일자 17면 『고양시장 뇌물혐의 내사』제목의 기사와 9월 22일자 16면 『성남 고양주민의 시장퇴진운동』제목의 기사에 대해 각각 중재신청한다.

신청인은 시민들이 선출한 민선자치단체장인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그 어떠한 금품을 받은 바도 없을 뿐더러 위 보도에서 검찰이 상당한 혐의를 포착했다는 문구의 경우, ‘포착’이라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조사를 받았다는 뜻인데 전혀 근거도 없고 신청인도 모르는 사실을 허위로 게재했다.

신청인은 있지도 않은 금품수수혐의 보도로 인해 시민들이 선출한 고양시장의 명예와 개

인의 도덕적인 명예 등이 명백하게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음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이로 인한 불신과 오해를 받고 있는 등 정신적 피해도 심각하게 입고 있어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한겨레 신문이 지난 2000년 9월 21일자 17면에 『고양시장 뇌물 혐의 내사』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관내 관급공사나 대형공사허가 등과 관련해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는 혐의가 포착돼 지난달 말부터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대형공사와 대형환경오염 시설을 허가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한 것과, 2000년 9월 22일자 16면에 『성난 고양주민의 시장퇴진운동』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황시장의 수뢰 여부를 조사 중인 검찰은 상당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의를 거스른 자치단체장이 설자리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틀간에 걸쳐 각각 기술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황교선 고양시장은 위 보도사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수수를 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을 만한 어떠한 혐의도 없고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시민들이 선출한 자치단체장으로서 오직 시민의 편에서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최대의 시정에 반영하고 있음을 밝힌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한겨레가 9월 22일자 16면에 『성난 고양주민의 시장 퇴진운동』제하의 기사로 “황시장(경기 고양시장)의 수뢰 여부를 조사 중인 검찰은 상당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

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황교선 고양시장은 “금품 수수와 관련 검찰의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은 사실도 없다”면서 “자신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도된 관련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 2000년 10월 13일자 16면에 게재 하되, 제목(반론보도문) 활자의 크기는 이 건 2000년 9월 21일자 중재대상기사의 제목(고양시장 뇌물혐의 내사...) 활자 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 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반론보도문』제하의 기사(2000년 10월 13일자 1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문화방송이 'MBC 100분 토론' 진행 과정에서 편향적 성향의 방청객들을 일방적으로 자리 배치하는 등 공정성을 잃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0/서울중재298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 노성대)

피신청인 : 스포츠조선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0. 10. 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스포츠조선 : 『공정성 실종된 난장판 '100분토론'』제하의 기사(2000년 9월 30일자 25면)

내용 : '공정성이 결여된 잘못된 토론이었다!'

28일 오후 11시 5분부터 29일 오전 1시까지 방송된 MBC TV 심야 토론프로그램인 '100분 토론'은 토론방식에서 스스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안티조선일보운동! 언론자유 침해인가 소비자운동인가'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은 MC(유시민) 조차 객관적이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진행상의 오류를 범했다.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나섰지만 방청석의 한 시민이 지적했듯이 중구난방식 진행과 상대방 발언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일부 패널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중략)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도 논란의 여지를 남긴 전직 대통령이나 해당언론사의 특정인물에 대한 인신공격은 생방송의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해프닝이었다. 녹화방송이었다면 대부분 삭제됐어야 할 위태위태한 발언들이 여과없이 방송됐다.

패널들이나 일부 편향적인 방청객들도 문제였지만 민감한 사안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사전준비와 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방송사의 책임은 어떤 변명으로도 면할 수 없을 것 같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 두 차례에 걸친 조선일보 거부 지식인선언과 함께 조선일보 반대 시민연대의 출범을 계기로 '정당한 소비자운동인가 아니면 언론자유 침해인가'하는 논제를

놓고 사회적 의미와 정당성 여부를 파헤친다는 게 기획의도였다.

하지만 이날 토론은 한쪽 성향으로 치우친 방청객들의 일방적인 자리배치 등 처음부터 공정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진행됐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했다는 게 대다수 시청자들의 지적이다.

여과장치가 없는 생방송이란 점을 감안했다면 제작진은 좀더 세심하게 준비를 해야 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MBC 100분토론- 안티조선, 언론자유침해인가 소비자운동인가' 제하의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마저 결여된 채 사실 확인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을 왜곡 보도하고 자의적인 가치판단으로 프로그램을 편파적이라고 몰아붙임으로써 'MBC 100분토론'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했기에 중재신청한다.

사실은 안티조선측과 조선측 방청객 모두를 불렀으며 방청객들의 자리배치는 따로 없었으며 오는 대로 앉고 싶은 대로 앉게 하고 있다.

또한, 토론자들에게 생방송 들어가기 전 토론에서의 주의사항을 고지할 뿐 그 이외의 사항은 토론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며 방송사에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지시해서도 안된다. 그리고 토론과정에서 실례를 들면서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비일비재하며 이는 인신공격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거론하는 것으로 이것이 오히려 생방송의 장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스포츠 조선)는 지난 9월 30일자 25면에 '기자석' 칼럼에서 『공정성 실종된 난장

판 100분토론』제하의 기사에서 9월 28일 문화방송에서 방송된 'MBC 100분토론 - 안티조선, 언론자유침해인가 소비자운동인가'에 대해 한쪽 성향으로 치우친 방청객들의 일방적인 자리 배치 등 처음부터 공정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사전준비와 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방송사의 책임은 어떤 변명으로도 면할 수 없고 생방송의 핫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해프닝이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첫째, 문화방송사는 한쪽 성향으로 치우친 방청객들에게 일방적으로 자리를 배치한 사실이 없으며 사실은 방청객들이 앉고 싶은 대로 앉게 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 잡습니다.

둘째, 문화방송사는 사전준비와 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사실이 없으며 사실은 토론자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셋째, 토론자들의 실명거론 부분은 사실확인을 위한 자연스러운 토론과정의 일부부분으로 활기찬 생방송이 이루어지기 위한 장점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신청인측은 피신청인측에게 이 건 중재대상 기사에 대한 반론문(스포츠조선의 '기사석' 편집 형태를 감안할 때 20행 분량, 제목은 '반론 보도문'으로 하고 반론문 말미에는 "MBC 100분 토론 제작팀장 최용익"이라는 신청인측 표시가 되어있어야 함)을 2000년 10월 17일 10:00 이전에 제시하고 피신청인측은 그 반론문을 수정 내치 가감없이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스포츠조선 2000년 10월 19일자 25면 좌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반론보도문의 본문활자 크기는 이 건 중재대상기사 본문활

자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스포츠조선 : 『반론보도문』제하의 기사(2000년 10월 19일자 25면)

내 용 : 스포츠 조선이 지난달 30일과 10월 11일자에 안티조선과 관련해 쓴 '공정성 실종된 난장판 100분토론' 등의 기사칼럼은 확인절차 없는 왜곡보도와 자의적인 가치판단 등으로 공영방송 MBC의 대표적인 생방송 토론프로그램으로 성가를 올리고 있는 MBC 100분토론의 명예를 훼손했다. 첫째, 100분 토론의 제작팀은 해당 칼럼 작성기자로부터 사실확인을 위한 전화 한통 받은 일이 없으며 기사내용과 같이 어느 한쪽 성향의 방청객들에게 일방적으로 자리를 배치한 사실도 없다. 둘째, 토론자의 전직 대통령과 조선일보측의 특정한 실명거론이 인신공격이라는 지적은 생방송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토론과정의 일부부분이며 이것이 오히려 생방송의 장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MBC '100분토론' 제작팀장 최용익 □

진주문화원이 진해시의 논개동상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0경남중재12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진주문화원(원장 김계현)

피신칭인 : 진주신문
종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0. 10. 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진주신문 : (1)『다른 자치단체 사업도 반대,
전국에 동상 세운들 어떠랴』(2000년
9월 4일자 5면)

내 용 : 경남 진해시와 전북 장수군은 자
매결연을 맺은 지 1주년이 된다. 자매결연을
맺을 때 합의 사항에 따라 1주년 기념사업으
로 두 자치단체의 상징물을 교환해 설치하기
로 했다.

(중략)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진주문화원은 진해시
에 논개 동상 건립을 반대하는 건의서를 냈
다. 이들은 “논개가 장수 출신이 아니기에
'장수논개동상'을 세우는 것은 안된다”는 주
장을 폈다.

이에 대해 진해시의 공원사업소 관계자는
“결연 1주년 기념사업으로 기념물을 교환하기
로 한 것인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안내문에 출생 등에 대해서는 적지 않
고 이 동상 건립이 교류사업으로 이루어졌다
고 소개할 것이다. 건의와 관계없이 9월 안으
로 공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라고 말했
다.

(2)『부원장, “방송보고 건의서 낸 줄 알아”』
제하의 기사(2000년 9월 4일자 5면)

진주문화원 김계현 원장과 향토사연구소 김
범수 소장이 논개와 관련한 갖가지 건의서를
내는 과정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사회나 총

회 등의 전체 의견을 모으지 않은 채 ‘진주문
화원’ 이름으로 입장을 내는 바람에, 이를 우
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진주문화원은 전북도립국악원의 창무극 <그
리운 논개>진주공연 계획에 대해 반대하는 입
장을 낸 바 있다. <그리운 논개>와 관련한 입
장을 냈던 진주문화원은 지역 문화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이후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
다.

최근에는 진해시의 논개동상 건립 반대와 진
주성 의기사 앞 비문 삭제를 주장하는 건의
서를 냈다. 그런데 이들 건의서가 이사회나
총회를 거치지 않아 진주문화원 이사나 회원
들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후략)

(3)『설창수 시인도 생전에 비문 조작 주장
안했다』제하의 기사 (2000년 9월 4일자 51면)

진주문화원은 8월 28일 진주시에 의기사 앞
에 있는 “의랑 논개의 비” 뒷면에 새겨진 “논
개의 사연”이란 글이 ‘조작되었다’며 삭제를
주장하는 건의서를 냈다. 건의서는 “논개의
사연”이란 글은 “설창수(작고)의 문체가 아니
고 글씨도 오제봉(작고)의 것이 아니라 조작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 비가 세워질
당시는 ‘의기 논개’로만 알고 있었을 뿐 논
개의 출생지나 성씨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
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논개가 장수 출신이
고, 성씨가 주씨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제
3자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건의서를 낸 배경에 대해 의심해 볼만
하다. 진주문화원은 조만간에 있을 의암별제
기간의 논개 토론회를 주관할 단체다. ‘진주
논개’를 주장한 두 사람의 의기사 앞에 ‘장수
논개’와 ‘주씨’라고 기록된 비석이 있다는 사
실을 장수 쪽 토론자가 주장할 경우 대답이

궁색하다고 느껴,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진주신문 9월 4일자 5면의 『다른 자치단체 사업도 반대, 진해 논개동상 건립문제』제목의 기사, 5면의 『설창수 시인도 생전에 비문 조작 주장 안 했다. 의기사 앞 비석 삭제 주장』제목의 기사, 5면의 『이사회 총회 절차 거치지 않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중재신청한다.

사실 신청인 문화원은 진해시장에게 자매군인 장수군에서 진해시에 논개동상을 건립하는 것을 축하하고 다만 논개상을 세울 때 가능한 “의기논개상” 또는 “논개상”이라는 적절한 이름을 붙여주고 “장수출신이나 주논개”라는 기록은 일체 표시하지 않도록 건의한 것임에도 마치 논개상 건립을 반대한 것으로 허위 보도를 하였다. 또한, “진주논개를 주장한 두 사람이 의기사 앞에 ‘장수논개’와 ‘주씨’라고 기록된 비석이 있다는 사실을 장수쪽 토론자가 주장할 경우 대답이 궁색하다고 느껴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이미 우리 문화원에서 발행한 <의기 논개>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공원 관리자인 진주시장에게 서면으로 건의를 한 것임에도 기자 자신이 우리 문화원의 주체하는 학술세미나에 관련시켜 허황된 가상을 기사화하여 의도적으로 진주문화원의 업무를 비방하였다.

그리고 전북도립국악단이 만든 <그리운 논개>의 일부 내용이 논개에 관한 왜곡된 역사적 사실을 내포하고 있어 명확한 사실 정립이 있기 전에 이러한 공연물의 진주 공연은 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한 데 대해 일부 문화단체

들의 이의가 있어 이러한 문화원의 취지를 모르는 문화단체와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리운 논개> 진주 공연 논란에 대하여”라는 글을 진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익일 진주문화원 이사들에게 제공한 것일 뿐이지 사과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과문을 발표한 것처럼 허위 보도를 하였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본지가 지난 9월 4일자 5면의 기사 중에서 “진주문화원은 진해시에 논개상 건립을 반대하는 건의서를 냈다. 진주 논개를 주장한 두 사람이 의기사 앞에 ‘장수 논개’와 ‘주씨’라고 기록된 비석이 있다는 사실을 장수쪽 토론자가 주장할 경우 대답이 궁색하다고 느껴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주문화원은 문화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이후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그리운 논개> 진주 공연에 대해 진주문화원이 공연을 방해하거나 사과 또는 사과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었고, 진해시의 논개동상건립도 반대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의랑 논개비 후면 “논개의 사연” 삭제 건의도 논개관련 학술발표회와는 무관한 일상적인 업무 처리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반론보도신청인 진주문화원장 김 계 현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9월 4일자 5면의 기사 중에서 “진주문화원은 진해시에 논개동상 건립을 반대하는 건의서를 냈다. <그리운 논개> 진주공연계획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낸

진주문화원은 문화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이후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진주문화원(원장 김계현)은 “진해시의 논개 동상 건립자체를 반대한 사실은 없고, 다만 논개상을 세울 때 ‘장수출신’이나 ‘주논개’라는 표시를 하지 않도록 건의하였을 뿐이며 <그리운 논개> 진주공연과 관련하여 사과문을 발표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0. 10. 23.까지 진주신문 5면에 2단 크기로 박스 처리하여 보도하되 제목은 원기사의 소제목 크기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진주신문 : 『반론보도문』제하의 기사(2000년 10월 16일자 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구루병에 걸린 초등학생이 의료폐업 사태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청정보도)

사건번호 : 2000서울중재299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 재 정)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0. 10. 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문화일보 : 『의사선생님들 어디 계세요 빨리 수술받고 뛰놀고 싶어요』제하의 기사
(2000년 9월 28일자 31면)

내 용 : “다리가 자꾸 아파요. 운동회때 나가서 춤춰야 하는데…”

의료폐업사태로 진료과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구루병’을 앓고 있는 이희진(7·수원 안릉초등학교 1학년·사진)양은 다가오는 학교 운동회를 걱정했다.

병원을 찾아봐도 의사아저씨들이 벗어놓은 가운데 로비에 준비할 뿐 “다음달 말에나 와 보라”는 대답뿐이다.

희진이는 지난 95년 영양결핍으로 뼈가 자라지 않고 휘어지는 구루병(일명 굽추병) 판정을 받았다.

(중략)

“주변분들이 도와주셔서 당장 급한 치료비는 준비가 됐어요. 빨리 병원에가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지난 26일에도 간단한 검사후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희진이는 장래 희망이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간호사’가 되는 것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대한의사협회로 문화일보사의 9월 28일자 『구루병 어린이 이희진 양 “빨리 수술받고 뛰놀고 싶어요”』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사실은 이 환자는 1-2달전 아주대 병원 소아과외래 방문 후 가정 형편이 어려움을 안주 치의사가 사회사업팀에 의뢰하여 진료 및 치료비 지원을 받도록 한 경우다. 다행히 환자

는 지원을 받게되었고 환자는 26일 다시 외래 진료를 받았고 기초검사와 염색체 검사를 받았다. 염색체 검사의 경우 약 3주 정도가 소요되어 재진날짜를 한 달 후로 정하였고 진료비와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 희진의 아버지는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구루병은 비타민 결핍이 원인으로 비타민 보충이 치료다. 즉, 수술이 필요한 병이 아닌데도 피신청인은 수술을 빨리 받아야 한다는 문구를 아무런 사실 확인없이 삽입하였고 적절한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다음달 말에나 와 보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라는 문구로 마치 희진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였다.

위 기사로 개인적으로는 주치의와 해당병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의사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정정보도를 요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의 28일 『구루병』 초등학교 이희진 양, “빨리 수술받고 뛰놀고 싶어요”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의료폐업사태로 진료과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구루병’을 앓고 있는 이희진(7·수원 안룡초등학교 1학년) 양은 다가오는 학교 운동회를 걱정했다. 병원을 찾아봐도 의사아저씨들이 벗어놓은 가운데 로비에 준비할 뿐 ‘다음달 말에나 와보라’는 대답뿐이다.”

“빨리 병원에 가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는데...”라고 보도하였으나 사실이 아니어서 바로잡습니다. 상기 환자는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주치의와 사회사업팀의 도움으로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질환 자체도 수술을 필요로 하는 병이 아

님을 알려 드립니다.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기사를 실어 주치의와 환자 그리고 의사전체에 명예를 훼손시킨 점을 사과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본 문 : 본보 지난 9월 28일자 31면에 보도된 의사과업으로 수술 등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희진 양(7·수원) 기사와 관련, 이양의 주치의는 사회사업팀 도움으로 희진 양의 치료에 최선을 다했으며 희진 양의 구루병도 수술을 요하는 병이 아니기에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문화일보 2000년 10월 18일자 31면에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문화일보 : 『바로잡음』제하의 기사 (2000년 10월 18일자 3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속군이 도입한 동부지역 전자전 장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0서울중재301
 청구명 : 정정보도청구
 신청인 : 이건희 외 2인
 피신청인 : 한국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0. 10. 6.

처 리 결 과 : 합 의

보도내용

한국일보 : 『동부지역 전자전 장비 ‘고철’』제하의 기사 (2000년 9월 29일자 27면)

내 용 : 독자적 정보수집 및 전자전 수행을 위해 논란 끝에 400여 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입한 동부지역 전자전 장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결국 고철덩어리로 전략할 위기에 처했다.

전자전 장비 도입사업은 15대 대선 직전인 1997년 11월 17일 프랑스 톰슨사 제품으로 기종이 결정된 뒤 지난해 11월 첫 제품이 육군 모사단에 인도됐으나, 당초 군이 요구했던 주요 기능들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군 당국은 궤도차량에 탑재,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들 장비를 유선으로 연결해 사용하는 등 장비를 파행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는 올 국정감사에서 차기 VHF 무전기, CN-235중형수송기와 함께 동부지역 전자장비 도입사업에 대한 의혹을 집중제기할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28일 군 전문가들에 따르면 ▲적전파탐지 ▲감청 ▲방향탐지(ES·Electronic Support) 등의 장비는 기능을 동시수행토록 계획됐으나, 실제로는 모니터상에 이들 기능이 함께 표시되지 않는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다. 적 주파수 탐색기능도 10초 이내에 가능하도록 계약했으나 2배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적 전파를 교란·방해하는 EA(Electronic Attack)장비도 방해효과가 제한적이어서 대역(大域)방해작전은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이들 장비의 기능을 동시 작동할 경우 도중에 끊기는 단락 현상 및 데이터송수신 제한 현상이 일어나 사실상 자동화한 종합 전자전을 수행할 수 없다는 평가다.

그러나 군 당국은 실질적 보완조치 없이 올해 2월 나머지 장비를 추가도입, 조만간 실전 배치하고, 사업비 잔금 225억원도 톰슨사측에 지불한 뒤 사업을 공식 종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8월까지 보완조치를 마쳐 현재는 작은 문제만 남아 있다”며 “유선화작업도 평시엔 유선으로, 전시엔 무선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 전문가들은 “당초부터 이 장비는 항시 무선 운용토록 돼 있었다”며 “전술장비의 유선화는 말이 안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 이건희는 육군 무기체계사업단 7처장, 신청인 이상범은 무기체계사업단 기술관리실장, 신청인 황용구는 무기체계사업단 사업7처 전자정보사업계획장교로서 한국일보 2000년 9월 29일자 27면 기사가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중재를 신청한다.

육군 무기체계사업단은 육군의 무기체계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청인들은 동부지역 전자전 사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1999년 11월 전자전장비를 최초로 도입 후, 무선 네트워크, 운용 소프트웨어를 보완하여 현재 장비의 성능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못 보도하여 국민들을 오도하고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 2000년 9월 29일 27면에 게재된 『동부지역 전자전 장비 ‘고철’』이란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정정합니다. 특히 동부지역 전자전 장비는 군 요구성능을 충족하고 야전임무 수행이 가능한 장비로서 본 장비를 '고철'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표현으로 정정하며 세부 정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궤도차량에 탑재,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비를 유선으로 연결해 사용하는 등 파행운영”과 “당초부터 이 장비는 항시 무선 운용토록 돼있었다며 전술장비의 유선화는 말이 안 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이 장비는 최초부터 유선 또는 무선으로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무선운용은 보안에 취약하므로 평시에는 유선으로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적전파탐지, 감청, 방향탐지 등의 장비는 기능을 동시 수행토록 계획했으나, 기능이 실제로는 모니터상에 이들 기능이 함께 표시되지 않아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 적 주파수 탐색기능도 10초 이내에 가능하도록 계약했으나 2배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ES장비는 전파를 탐지하여 감청하며 필요한 전파의 방향탐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정상적인 장비이며 주파수 탐색기능도 10초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들 장비의 기능을 동시 작동할 경우 도중에 끊기는 단락현상 및 데이터 송수신 제한현상이 일어나 사실상 자동화한 종합전자전을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동부지역 전자전 장비는 무선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종합전자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자동화된 장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군 당국은 실질적 보완 조치없이, 올해 2월 나머지 장비를 추가 도입, 조만간 실전배치하고 사업비 잔금 225 억원도 톱슨사에 지불한 뒤 사업을 공식 종결할 계획이다”란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본 장비는 국내 도입 후 제기된 문제점을 제작사

기술진에 의하여 대부분 개선되었고, 또한 현 상태로도 임무수행이 가능하나, 보다 더 완벽한 장비를 운용부대에 제공하기 위해 육군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6차 S/W 개정판을 접수 후 최종잔금을 지불할 계획입니다.

본사는 상기 내용이 진실임을 관계기관으로부터 확인하였으며, 독자들의 오해소지 및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기 보도한 관계기사 내용을 정정합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동부지역 전자전 장비 문제없어
- 내 용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부지역 전자전 장비'와 관련 프랑스 제작사인 톱슨사에서 현지 성능보완을 실시한 뒤 국내에서 성능을 확인한 결과, 당초 우리 군이 요구했던 성능을 충족하고 야전 임무수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은 “이 장비는 유선과 무선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으며 평시에는 전파월경을 통한 기지유출 등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 유선으로도 사용 가능하며 전시에는 무선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원장비인 ES는 적의 전파 탐지와 감청, 방향탐지 등이 동시에 수행 가능하며 적 주파수 탐색도 운용 요원들이 숙달될 경우 10초 이내에 가능하고, ES와 적 전파방해장비인 EA, 통제장비 등을 자동망으로 운용할 경우 끊기는 단락현상도 지난달 실시된 국내 확인 시험평가 결과 종합전자전 수행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육군 관계자는 “현재 동부지역 전자전 장비와 관련, 운용요원들에 의해 제기된 사소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제작사인 프랑스

통슨사로부터 개정 소프트웨어를 올 연말까지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국일보 2000. 10. 20.자 사회1면 시사만화(조삿갓) 아래에 1단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동부지역...) 활자크기는 이 건 중재대상 기사 하단 기사의 부제목(내사 알고...) 활자 크기와 같게 하고, 내용 활자 크기는 이 건 중재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일보 : 『동부지역 전자전 장비 야전수행에 문제없어』제하의 기사(2000년 10월 20일자 2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됐다는 신청인의 전 부인의 주장을 인용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르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0서울중재314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청인 : 이 길 선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0. 10. 2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MBC-TV : 「아주 특별한 아침」 2부 프로그램

(2000년 9월 21일 10:00)

내 용 : “결정적인 이혼 이유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동안 남편의 바람기를 감수하고 살아왔다. 그러나 내가 계속 남편의 부부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남편이 먼저 이혼 요구를 해왔다. 현재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려 살고 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MBC-TV가 2000년 9월 21일(목) ‘아주 특별한 아침’ 제2부 임성훈의 테마토크에 출연한 김인자(가명)의 전 남편으로서 그 방송 내용에 대해 중재를 신청하고자 한다.

신청인은 이혼 전후를 걸쳐 바람을 피운 적이 없다. 진정한 이혼 사유는 오히려 전 부인이 도박에 정신이 팔려 가산을 탕진하고 외박도 잦았으며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신청인은 이혼 후 아들과 함께 집을 나왔으며, 그 이후로 현재까지 아들 내외와 손녀딸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런데 전 부인이 출연하여 신청인을 바람이나 피우고 가정생활을 파탄으로 몰고가는 가장으로 매도하는 것을 보고, 최소한 이 부분만은 전혀 사실과 다를 것을 밝혀 신청인의 명예와 가정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중재를 신청하게 되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 방송이 지난 9월 21일(목) 아주 특별한 아침 제2부 임성훈의 테마토크에서 “결정적인 이혼 이유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동안 남편의 바람기를 감수하고 살아왔다. 그러나 내가 계속 남편의 부부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남편이 먼저 이혼 요

구를 해왔다. 현재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려 살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출연자의 남편은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사실은 오히려 전 부인 김인자(가명)가 도박에 정신이 팔려 가산을 탕진하고 외박도 잦았으며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MBC가 지난 9월 21일 ‘아주 특별한 아침’ 임성훈의 테마토크 프로그램에서 김모 여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남편이 바람을 피웠으나 이를 감수하며 살았고, 부부관계를 거절하자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왔으며 현재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려 살고 있

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 김여인의 전 남편인 이모 씨는 아들, 부부와 함께 독신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한편 이모 씨는 자신이 바람을 피우고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는 전 부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 내용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MBC-TV 2000년 11월 2일 10시30분 임성훈의 테마토크 프로그램 중에 사회자의 육성으로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제목(정정보도문)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MBC-TV : 「아주 특별한 아침 2부」프로그램
(2000년 11월 2일 10:3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판결 1

PC통신 공개게시판에 원고를 비방, 모욕하는 글과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 5. 25.자 판결 (99가단42644)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홍준호 판사는 2000년 5월 25일 인기가수 박지윤 씨의 팬클럽 회원인 함○○ 씨가 PC통신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게재하고, 비방, 모욕하는 글을 게시했다며 안○○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안○○ 씨는 원고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홍준호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유로운 정보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PC통신상이라도 ‘박지윤에게 환장한 사람들’, ‘당신들 같은 똥파리 팬들의 헐박’, ‘반미치광이 광적 상태’, ‘박지윤에 대한 병적 열광상태’ 등 표현의 자유의 범주 안에 포용하기에 버거울 정도의 글을 게시하였고, ‘기획사로부터 돈먹고 한마디씩 거드는 사람들 같다’ 등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고 밝혔다. 또한, “최근 허위사실의 유포에 따른 명예감의 훼손과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 익명성을 이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는 질 낮은 언어가 범람하는 등 그 역기능이 날로 더해가는 점을 감안할 때 그러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표현행위에 대하여도 일정한 법적 제한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가수 박지윤 팬클럽 동호회 회원인 원고는 피고가 PC통신의 공개게시판을 통해 가수 박지윤 씨에 대하여 비방,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자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글을 올린 바 있는데, 그러자 피고가 가수 박지윤은 물론, 원고에 대해서도 더욱 심한 비방과 모욕을 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3천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 결 문

사 건 : 99가단42644 손해배상(기)

원 고 : 합 ○ ○

피 고 : 안 ○ ○

변론종결 : 2000. 4. 27.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3. 1.부터 2000. 5.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3. 1.부터 이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피고는 종합데이터통신망인 '하이텔'의 이용자들인데, 피고가 하이텔의 공개게시판에 대중가수인 소외 박지윤에 대하여 비방,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자, 하이텔 내 박지윤 팬클럽 동호회 회원인 원고가 이에 대하여 부당하게 위 박지윤을 모욕하는 표현에 대하여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는데, 그러자 피고는 위 박지윤에 대하여 더욱 심한 비방과 모욕을 가함은 물론이고 원고에 대하여 '당신들같은 똥파리팬들의 협박'이라는 등의 표현으로 모욕하거나, '기획사로부터 돈먹고 한마디씩 거드는 사람

들' 등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대한 위자료 금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호증, 제8 내지 10호증, 제12 내지 17호증, 제19호증의 1 내지 25호증, 제27,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한국피씨통신 주식회사로부터 'prosecu'라는 이용자번호(ID)를 부여받아 위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국내종합정보통신망인 '하이텔(hitel)'을 이용하는 자이고, 피고는 위 소외 회사로부터 'sage21'라는 이용자번호를 부여받은 피고의 올케인 소외 강○○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1998. 12.경부터 1999. 8.경까지 사이에 위 이용자번호를 사용하여 위 하이텔을 이용한 것이다.

나. 피고는 하이텔의 큰마을(PLAZA) 게시판에, 위 'sage21'의 이용자번호로, 1998. 12. 10. '왕따해야 할 연예인'의 제목으로 '학생신분에 걸맞지 않은 싸가지 없는 행동으로 티비에 나와 깎죽거리며', '시청율과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무분별하게 어린 싸가지들을 쇼프로나 가요프로에 출연시키는 관계자들도 모두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대상들이다', '우리의 미래가 미친년처럼 몸뚱이나 흔들어대고 어릴 때부터 공부는 못하고 머리는 텅빈 것들

이 티비에서 스타랍시고 대접을 받는 것들에 의해 저당잡혀서야 되겠는가'는 글을, 1999. 1. 18. '박지윤 보면 재수없다'는 제목으로 '박지윤이 우리 나라 영계 파시즘의 상징이라는 어느 분의 말씀도', '다시 강조하지만 박지윤, 그 에는 정말 밥맛이다. 원조교제의 상징 같다.'는 글을, 같은 달 25. '박지윤과 가요계의 변태성'의 제목으로 '그리고 박지윤같은 이상한 가수 갈잡은 가수가 등장하는 것은 역으로 10대 접대부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티비 가요프로그램 피디들은 사회악을 간접 조성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다'는 등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26.에도 '특히 성인의 음흉한 남자들에게는 그런 십대 가수들의 모습이 유흥환락가에서 파는 접대부의 모델로 변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티비에서 갑죽대며 사랑 어찌구 저찌구 하는 어린 여학생들의 스타화는 일반인에게 그들에 대한 수요를 유흥가에서 불러일으킬만한 어린 접대부의 모델링이 될 뿐이다', '창녀론을 주창한 김완섭 씨가 박지윤론을 주장한 것은 어린 박지윤조차 창녀로 보고 그런 것은 혹 아니겠지?', '박지윤이 창녀와 닮은 구석이 있나 잘 생각해 봐야겠다. 김완섭이가 박지윤을 들먹이는 것에 비추어서 말이다', '박지윤이 다니는 학교 교사들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박지윤을 퇴학시키는 것이 옳다'는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다. 이러한 피고의 글을 본 원고가, ① 1999. 1. 26. 피고에게 '강○○ 양이 공인에 대한 느낀 감정을 누구라도 어디서나 표현할 수 있는 민주사회의 자유를 행사한 것은 좋으나 그것이 정도를 지나쳐 헌법과 형법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형법구성 요건 즉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범죄구성요건사실에 해당함으로 엄숙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공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기본소양과 상식을 갖춘 합리적인 분으로 추정됨으로 이런 편지를 띄워 더 이상 범죄적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원조교제의 상징이다... (중략)... 등의 표현은 다시는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표현행위만으로 고소가능하지만 반성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 (중략)... 한번만 더 그러한 표현을 쓴다면 눈물 흘리며 반성하고 후회할 기회를 만들어 줄테니 유념하기 바랍니다.'라는 메일을 보내고, ② 같은 날 위 큰마을 게시판에 '고발할 권리... 박지윤 비방자들에게'란 제목으로 '법대로 하란 분들이 무서워서... 겁나서... 절대 못 그러리라는 것은 이미 경험해봐서 알거든요.', '너무 신기한 것은 법대로 하라고 떠들면서 법대로 할테니 문제의 표현 쓰라고 하면 절대 못그런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어리석음이고, 허풍입니다. 좋게 말을 했는데도... 참으면서... 그런데도 끝까지 자신의 행위를 반추하지 않는다면 법문제를 떠나 인간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라는 글을, 같은달 27. '[박지윤] 아래의 글 이어진 것'이란 제목으로 '강○○ 양처럼 송사에 능하다면서 법의 비유자도 모르는 것처럼 비판아닌 비방만 일삼지 말고 정당한 제 글에 비판한다면 반박받아들이겠습니다', '통신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해도 아무리 설득해도 반성은 못하고 계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고...'라는 글을 각 게시하였다.

라. 피고 역시 이에 대응하여 위 큰마을 게시판에, (1) 1999. 1. 26. ① '기획사 사람들 알고 보면 참 웃기는 사람들이다. 팬들을 조종

하여 협박이나 하게 하고, 정말 질이 아주 저질이다.’는 글을, ② ‘고발? 푸훗~ 함○○씨’의 제목으로 ‘박지윤에게 환장한 사람들이 있긴 있나보군요, 함○○씨. 남의 글을 제대로 읽고 고발을 하던지 고소를 하던지 하시죠?’ ‘내 글 정도의 약한 표현을 가지고 법에 고발한다는 식의 말도 안되는 소리로 협박하는 부류들에 대한 고소도 아울러 할 수 있다’는 글을, ③ ‘함○○ 씨 착각’의 제목으로 ‘지금 당장 그런 표현을 다시 안쓰는 이유는 그럴 필요를 못느끼기 때문이지, 당신들 같은 똥과리 팬들의 협박이 무서워 그런 것이 아니라란 걸 알아차리길. 팬들의 수준이 너무 유치하고 치졸하며 유아틱한 게 박지윤의 수준이 딱 어울리는구먼. 끼리끼리 뭉치고 논다더니 잘들 놀아보셔용~’는 글을, (2) 같은 달 27. ① ‘박지윤 팬들은 돈으로 매수되었나?’의 제목으로 ‘기획사로부터 돈먹고 한마디씩 거드는 사람들 같다’, ‘팬을 빙자한 기획사와 이해관계 있는 듯 여겨지는 사람들의 박지윤 나부랭이 옹호성 내지는 그에 반대되는 입장에 대한 비난의 글에 대한 반박을 하다보니’라는 글을, ② ‘함○○, 너 주소 좀 알려줄래?’의 제목으로 ‘통 앞뒤 못가리고 달려드는 것을 보니 반미치광이 광적 상태에 빠져있음을 이해하고 관대하게 넘어갈려고 했더니 정말 안되겠구나’라는 글을, ③ ‘허위사실유포-함○○에게 경고’의 제목으로 ‘당신이 제시한 그런 문장을 다시 리바이벌하지 않으니 당신의 경고문이 효력발생했다고 떠벌리는 당신의 처사를 보니 혹시 연예인 뒤치닥거리나 하면서 남에게 협박이나 하고 경고조치를 취하는 황당한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나약한 자아를 확인하는 그런 썸생이 부류 중 하나가 아닌가 싶구료’라는 글을, ④ ‘함○○, 법조문 쪼가리 남용마요’의 제목으로 ‘그리고 그 잘난 법지식

운운하며 떠벌리지 좀 말아요. 고시공부하나 낙방한 사람이 할 일 없으니까 이런 데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지 몰라도 참 한심해 보여요’라는 글을, ⑤ ‘함○○, 너 안되겠구나!’의 제목으로 ‘함○○ 이 사람은 정말로 지윤의~팬 입장에서가 아니라 지윤이를 자신이 강하게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입장에 도취되어 자기영웅적 심리에 도취되어 있는 아주 유치찬란한 아이같다’라는 글을, ⑥ ‘함○○, 장난 계속할래요?’의 제목으로, ‘당신이 뭘데 주소를 가르켜 달라니 말라니 헛소리를 계속 까대는 거요?’, ‘그리고 남의 집 주소 함부로 묻는 것 아니라우. 조심하세요. 그리고 함○○ 당신이 계속 나에 대한 헛소리 까대면 정말 가만 있지 않을테니, 어디 우리 한 번 잘해봅시다’라는 글을, ⑦ ‘계속 웃기고 있는 함○○ 씨’의 제목으로, ‘하찮은 문제에 목숨걸고 덤비며 거기에 빌붙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드는 함○○ 씨가 가련해 보여서 그냥 인심 한 번 쓸꺼요.’라는 글을, (3) 같은 달 28. ① ‘함○○의 스토키키질’의 제목으로 ‘박지윤에 대한 병적 열광상태에 집착한 모습을 보니 스토키키질’의 제목으로 ‘박지윤에 대한 병적 열광상태에 집착한 모습을 보니 스토키키질이 충분하다고 보여짐!’라는 글을, ② ‘함○○, 나 고발했수?’의 제목으로, ‘당신을 비웃는 메일이 나에게 여러통 왔었고 당신같은 광적 미치광이 스토키키에게 더 이상 신경쓰지 말라는 격려성 메일도 많이 와서 오히려 더 호뭇하다’, ‘당신이 일개통신을 하는 평범한 나에게 무시하고 비굴하다느니 허위사실유포를 했다느니, 그래서 나를 고발하겠다는니 하는 식으로 이 곳 프라자에 떠드는 행위야말로 당신이 그토록 부르짖던 고발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 개인의 정당한 언론행위에 대하여 근거없는 비난과 협박에 가까운 발언

을 한 것이 되므로 말이다', '당신이라는 작자는 도대체 정신상태가 의심이 가는 형편없는 저질 스토키 경향이 다분하여 정말 당신이 그렇게도 부르짖던 고발이나 고소를 해버려서 다시는 그런 수작으로 다른 순진한 일반인을 괴롭히지 않도록 영원히 도태시켜 버리고 싶을 뿐이다.', '할일이 얼마나 없으면 고작해야 나이 어린 여학생 연예인 꿈무니나 졸졸 따르면서 팬대표 한자리 해먹으려고 발광하는 모습을 보니 한 마디 해주고 싶다. 차라리 그 시간에 고시공부나 해서 나중에 법조인이거나 되면 박지윤같은 애들과 실컷 놀 수 있으니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말이다' 라는 글을, ③ '함○○의 정신분석의 제목으로 '한마디로, 일개 비천한 연예인 뒤통자거리'를 하면서 자기 존재의 과신과 우월성에 도취되어 있어 현실감과 상식의 정도를 몰각해버린 내적 광분상태의 절정에 달해 있는 불쌍한 박지윤 스토키이다' 라는 글을, ④ '저질상품 팬들의 파쇼적 광기를 규탄한다!'의 제목으로 '하는 짓이 어찌 그리 저질인가? 추종하는 그들만의 상품이 워낙 저질이어서 그런가?', '저질상품 팬들의 집단적 무력행사로 한 개인의 정당하고도 자유로운 활동을 짓누르려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질이주의 집단의 파쇼적 광기를 느끼게 된다' 라는 글을, (4) 같은 달 29. ① '함○○의 고발리스트 명단을 공개할까요?'의 제목으로 '물론 제가 박지윤이란 특정 연예인에 대해 비방의 글을 심하게 올린 것은 인정하고, 프라자에서 제 글을 읽은 분들께는 다소 과격하고 과장된 표현으로 언짢은 기분을 드린 것 같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없음을 다시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난 박지윤이란 대중상품에 대해 얼마든지 개인의 의사를 표출할 자유와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므로 계속 박지윤을 비롯한 질낮

은 대중상품들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강도높은 표현은 자제하더라도 부정적 감정의 표현은 얼마든지 할 생각입니다', '제가 박지윤 대중상품에 대하여 강한 표현을 한 것은 박지윤 개인에게 대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은 전혀 아니고 다수의 대중적 이익을 우선적 가치로 두고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그런 과장적 풍자와 강한 표현을 하게 된 것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평범한 대중의 한 사람인 저에게 함○○씨가 고소를 하겠느니, 고발을 하겠느니 하는 도발적인 발언으로 저의 감정을 건드린 것을 기화로 해서 더욱더 박지윤 연예상품에 대해 악한 감정을 가졌던 것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을 내세워 그 조건을 제가 다시 재현하면 고발하겠다는 아주 아량있고 관대한 씬씀이를 베푸는 척 하더니, 그가 제시한 몇몇 표현의 재사용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어 재표현하지 않은 저를 두고, 함○○ 자신은 마치 자신이 승리자가 되었고, 저는 함○○ 씨의 말대로 고발이나 고소가 무서워 꼬리를 살짝 내린 아주 비겁하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제 개인의 인격을 무시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함○○ 씨는 연예인들에 대한 과대망상 정도가 심한 사람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박지윤 기획사로부터 매수된 사람이던지 둘 중 하나 같습니다.' 라는 글을, ② '고발운운하며 뺨치는 인간의 무고죄에 대해'의 제목으로, '고발이란 단어를 타인에게 함부로 들먹거리며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다거나, 고발하겠다는 으름장 협박에 방어적 차원에서 맞대응하려고 신경써가며 글 올리며 소요된 정신적, 물질적 낭비에 대한 손해배상은 고발당한 당사자가 무혐의 처분 내려지면 상대적으로 고발한 자는 무고죄가 성립되며 고발당한 피해자는 그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데’, ‘함부로 고발, 고소 남발하며 헛소리 하는 작자들은 사회적 위화감만 조장하는 아주 악덕꾼에 비견될 수 있다.’라는 글을, (5) 같은 달 30. ① ‘법이 연예인 때문에 웃고 있다’의 제목으로 ‘법치국가의 법이 위력을 발휘하려면 우선 사이비 짜가 법조인들부터 몰아내야 하며, 사사로운 시비가지고 법법운운하며 한 개인을 협박하는 사기성이 농후한 법 남용자들도 모조리 법망에 감금해 버려야 한다’라는 글을, ② ‘프라자 여러분께 양해드립니다’의 제목으로 ‘전 박지윤 글 때문에 소수의 편집단으로부터 폭력에 가까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함○○은 공인에 대한 정당한 비난을 할 수 있는 평범한 일반대중의 한 사람의 권리마저 짓밟으려하며 고소장을 운운하면서 자신의 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강○○이라는 개인을 범죄인이라고 공표해 버렸습니다’, ‘건전한 통신문화를 위해서는 같은 통신인을 상대로 자신에게 직접적인 해꼬지를 한 경우가 아님에도 함부로 고소, 고발하겠다고 협박 운운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자들을 먼저 추방하는 일이 급선무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함○○처럼 평범한 통신인을 상대로 자신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범죄자로 몰아붙이며 고발장을 보낸다는 엄포를 부린 저질적 행위야말로 건전한 통신문화를 위하여 규탄받고 도태되어야 할 행위가 아닐까 합니다’라는 글을 각 게시하였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먼저, 피고가 게시한 위 각 글이 원고의 명

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가 하이텔 이용자라면 누구나 시간적 제한없이 게시된 글을 읽거나 내려받아 저장할 수 있는 위 큰마을 게시판에 게시한 위 2.의 라.항의 각 글을 살펴보건대, 피고의 위 박지윤이라는 대중가수의 모습이나 행동, 사회적 영향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원고의 대응, 그리고 피고의 맞대응의 과정에서 발생한 논쟁의 일환에서 게시된 글이라는 점에서 다소 원고에 대하여 비판적인 논조를 띠 수밖에 없다는 당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그 표현의 정도가 피씨(PC)통신을 이용하는 통상의 이용자가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 하지 않을 정도의 모욕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특히 ‘박지윤에게 환장한 사람들’[위 (1)의 ②], ‘당신들같은 똥파리 팬들의 협박’[(1)의 ③], ‘반미치광이 광적 상태’[(2)의 ②], ‘박지윤에 대한 병적 열광상태’[(3)의 ①] 등의 표현은 자유로운 의견의 발표와 표현의 자유, 정보의 무한한 교류를 이상으로 하고 있는 피씨통신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그 표현의 자유의 범주 안에 포용하기에는 다소 버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나아가 ‘기획사로부터 돈먹고 한 마디씩 거드는 사람들 같다.’[(2)의 ①], ‘제가 보기엔 함○○ 씨는 연예인들에 대한 과대망상 정도가 심한 사람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박지윤 기획사로부터 매수된 사람이던지 둘 중 하나 같습니다.’[(4)의 ①] 등의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위 게시글에 포함시킨 것은 피고가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고 원고의 비판에 맞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더구나 위 하이텔과 같은 피씨통신 및 인터넷 웹 페이지, 뉴스그룹 등 소위 사이버공

간은 자유로운 정보의 소통과 표현의 자유의 폭넓은 보장이라는 순기능뿐 아니라 특히 최근 들어 허위사실의 유포에 따른 명예감의 훼손과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 익명성을 이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는 질 낮은 언어가 범람하는 등 그 역기능이 날로 더해가는 점을 감안할 때 그러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표현 행위에 대하여도 일정한 법적 제한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인정과 같은 글의 게시행위는 어느모로 보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 이외에도 피고의 명예감을 손상하는 등의 글을 게시한 바 있으나 이를 게시한 뒤 피고가 증거로 확보하기 전에 원고 스스로 삭제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원고의 글이 게시된 바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② 또한 원고 이외에 박지운 팬클럽 동호회원들이 피고에게 모욕적인 글을 메일로 보내거나 게시판에 올림으로써 피고의 위 불법행위를 유발한 것이며, 피고로서는 그러한 공격에 대항하여 자기 방어적 차원에서 위 각 글을 게시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위의 글 게시가 비판에 대응하거나 방어적인 차원에서 수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고, ③ 나아가 피씨통신에서는 위와 같은 글 정도의 표현은 흔한 것으로서 용인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미 피씨통신 등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글의 표현

수준이 상당히 우려할 정도로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통상인이 수인·수용할 수 있는 표현의 한계 역시 그러한 수준까지 낮아진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위에서 인정된 불법행위의 경위, 태양, 정도,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위 각 게시물의 게시기간과 조회수를 모두 참작함은 물론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도 ‘...등의 표현은 다시는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표현행위만으로도 고소가능하지만 반성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문제삼지 않겠습니다.’[다의 ①], ‘한 번만 더 그러한 표현을 쓴다면 눈물 흘리며 반성하고 후회할 기회를 만들어 줄테니 유념하기 바랍니다.’[다의 ①] 등의 표현으로 피고에게 메일을 보내고, ‘...이게 바로 어리석음이고 허풍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행위를 반추하지 않는다면 법문제를 떠나 인간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다의 ②]라는 등의 표현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는 등 피고의 대중가수 및 사회현상에 대한 비판(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것이 다소 지나친 것이었다 할 지라도)에 대한 대응방법으로서는 다소 지나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피고의 감정을 자극하고, 이로써 피고의 위 불법행위의 강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봄이 상당한 바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감정적인 흥분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비판을 가한 점, 피고도 위 라. (4)의 ① 및 (5) ②항 각 기재와 같이 위 게시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대하여 자신의 위와 같은 거친 표현에 대한 반

성의 취지를 담은 글을 게시한 바 있는 점 등을 포함하여 위 불법행위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본다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원고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는 금 2,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 대로 1999. 3.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0. 5.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에서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5. 25.

판 사 홍 준 호 □

판결 2

보도기관은 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원고를 판문점 총격공작사건의 배후인물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0. 8. 24.자 판결 (99나11986)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2000년 8월 24일 판문점 총격공작사건의 배후인물로 지목돼 피해를 입었다며 한나라당 박관용 의원이 한겨레신문사와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판문점 총격공작사건의 배후인물인 것 같이 서술한 부분은 진실이라고 볼 수 없으나, 피고들이 안

기부장의 핵심측근으로 신빙성이 있는 이 사건 취재원을 상대로 원고와 관련된 물증의 존재 및 원고에 대한 조사사실 등을 취재하는 한편, 10개월 전부터 피고 신문사에 정보보고의 형태로 존재하던 이 사건 메모의 내용과 자신들의 취재결과가 대부분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한 후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도기관은 수사기관과는 달리 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1998년 10월 7일자와 8일자 보도를 통해 '한나라당 비의원'이 '판문점 총격 공작'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기사와 함께 원고의 사진을 게재하자, 이에 원고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1심 법원에서는 "박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한겨레는 7천만원을 손해배상하고 정정보도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1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7집 126~132면 참조).

판 결 문

사 건 : 99나11986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 박 관 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현
담당변호사 김성기, 주명수,
엄상익, 진효근, 이호선

피고,항소인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학 래

2. 박 우 정

3. 김 이 택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 이석태,
김형태, 도재형, 진선미

변 론 종 결 : 2000. 6. 29.

제1심 판 결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9. 1.
28. 선고 98가합11581 판결

주 문 :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억원과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이하 "피고신문사"라 한다)는 이 사건 판
결 송달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한겨레"신
문 제1면 전면에 2회에 걸쳐 제목은 70급
활자로, 부제는 28급 활자로 한 별지 기재
내용에 이어 제1심판결 전문을 신문서체 10
급 활자로 게재하라. 피고신문사가 위 제2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
고에게 게재시까지 지체된 신문발행일 1일
당 금 1천만원을 지급하라.

항 소 취 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금 3억
원의 손해배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신문사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와 간접강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금 7천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
급을 명하고, 피고신문사에 대하여 별지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정정보도를 명하는 한
편, 원고의 간접강제청구와 나머지 손해배
상 및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
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 그 패소부
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간
접강제를 제외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에 한하여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에 대하여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

원고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고, 피

고신문사는 “한겨레”라는 일간신문을 발행하고 있으며, 피고 박우정은 피고신문사의 편집위원장으로서 취재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내용을 검토하여 기사의 게재여부, 지면할당 및 기사크기 등을 결정하는 책임을 지고 있고, 피고 김이택은 피고신문사의 기자이다.

나. 이 사건 기사의 내용

피고 신문사는 “한겨레”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와 사진을 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 그 중 아래 (1)의 기사는 피고신문사의 특별취재반이, (2)(3)의 기사는 피고 김이택이 각 취재하여 작성하였고, (3)의 사진은 피고신문사의 기자인 유창하가 촬영하였으며, 각 기사와 사진의 게재여부, 지면 및 활자크기 등은 피고 박우정이 결정하였다.

(1)1998. 10. 7.자 제1면 머릿기사 : 『‘공작’ 배후 ㄴ의원 주목』이라는 제목 아래 『안기부와 검찰은 ‘판문점 총격공작’ 사건의 배후에 지난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핵심참모 구실을 한 한나라당 ㄴ의원이 깊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ㄴ의원의 행적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의 한 핵심관계자는 6일 “한성기 씨 등이 북한쪽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배후가 ㄴ의원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줄 만한 물증이 드러나 현재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문제 때문에 이 증거를 당장 공개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의 진위와 관련해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경우 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ㄴ의원은 ‘일’의 대가로 비료 지원 등 북한의 요구를 충분히 들어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는 내용의 기사 (2)1998.

10. 7.자 제3면 : 『판문점 ‘총격공작’ 수사 당국 초점은...』이라는 제목과 『“일 잘되면 비료지원” ㄴ의원 메시지 포착』이라는 부제 아래 『‘판문점 총격공작’ 사건의 최대 관심사는 막후에 가려진 배후의 인물이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한성기 씨 등 이른바 ‘공작 3인방’이 아무런 막후지원이나 사후보장 없이 북한쪽 인사들을 만나 그런 엄청난 일을 제안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주목하는 인물은 ㄴ의원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 희성씨다. (중략) 그러나 수사당국이 ‘총격공작’ 사건의 직접적인 배후로 염두에 두고 있는 인물은 희성씨보다 ㄴ의원이다. 한씨 등이 북한쪽 관계자들과 중국 베이징에서 접촉하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증거물에 ㄴ의원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일이 잘 되면 비료 지원 등 북한쪽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보장을 했다는 것이다. 수사당국은 이와 관련해 한씨 등이 ㄴ의원의 후원 아래 북한쪽과 ‘총격공작’ 협상에 나섰을 가능성이 적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ㄴ의원은 오래 전부터 북한의 전금철 조국 평화통일위 부위원장 등과 채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안보’를 고려해 증거물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내용의 기사.

(3)1998. 10. 8.자 제5면 : 『‘판문점 총격공작’ 당국 배후지목 3인의 역할은』이라는 제목과 『ㄴ의원, 북 전금철과 비밀채널 ‘꼬리’』라는 부제 아래 『‘판문점 총격공작사건’에 대한 안기부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배후인물이 과연 있었는지, 있다면 누구였고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성기·장석중 씨 등이 지난해 12월

북한 공작원들을 만날 때 누군가가 이들의 '신분' 등에 관해 보증을 했으며, 보증을 한 '배후인물'로는 3명 정도가 중점 거론되고 있다. 먼저 한씨 등이 북쪽에 총격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물증'에 등장하는 인물은 ㅂ의원(한나라당)이다. ㅂ의원은 한씨를 통해 북한쪽 인사들에게 "일이 잘되면 비료를 지원하는 등 요구를 충분히 들어주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다. 이 점은 ㅂ의원이 이번 '총격공작'의 실질적인 배후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특히 ㅂ의원이 수 년 전부터 북한의 전금철 조평통 부위원장과 비밀 채널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수사당국은 그가 대선 때 이 채널을 가동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던 게 아니냐고 보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와 그 오른쪽 윗부분에 『한나라 대책회의, 박관용 한나라당 의원이 6일 오전 당사에서 열린 판문점 총격공작사건 대책회의에 나와 검찰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황낙주 전 국회의장 등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는 설명을 붙인 원고의 사진

다. 원고와 오정은에 대한 관련기사의 내용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기 전인 1998. 10. 초 국민일보, 문화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의 일간신문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원고의 추천으로 판문점 총격공작사건을 모의한 3명 중 원고의 생질인 오정은이 1993. 8.경부터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대북관련 업무를 맡았다는 사실과 원고가 위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조사중이라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라. 수사결과

(1)1998. 10. 21.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원고가 신상발언을 통하여 "언론에 내가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도되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장인 이종찬은 "조사결과 박관용 의원 관련설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고 답변하였다.

(2)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판문점 총격공작사건을 수사한 후 1998. 10. 26. 오정은, 한성기, 장석중과 권영해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현재 서울 지방법원에 형사사건이 계속 중이다. 한편, 원고에 대하여는 그 무렵 수사가 종결되었다.

(증 거) 갑 1호증의 1, 2, 3, 갑 3호증의 1 내지 19,을 6호증과 변론의 전취지

3. 판 단

가. 명예의 훼손

(1)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의 성명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한나라당 ㅂ의원"이라고만 표현하였으나, 이 사건 기사가 작성되기 전인 1998. 10.초 각 일간신문에 원고가 판문점 총격공작사건을 모의한 3명 중 오정은의 외삼촌이라는 사실과

수사기관이 원고의 관련여부를 조사 중이라는 내용이 보도되었고, 특히 이 사건 기사 중 위 (3)의 기사에서는 그 오른쪽 윗부분에 원고가 판문점 총격공작사건 대책회의에 참석한 사진을 게재하면서 그 사진설명에 원고의 성명을 명시함으로써 원고가 기사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였으므로, 일반독자들은 이 사건 기사 중 “한나라당 비의원”이 원고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명예훼손이란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선고 96다3803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수사당국자에 대한 취재를 통하여, 원고가 판문점 총격공작사건의 배후에 개입했다는 물증을 수사기관이 확보한 후 원고에 관하여 조사하고 있고, 수사당국자는 원고가 수년 전부터 북한의 전금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과 비밀채널을 유지하다가 대통령 선거 당시 이 채널을 가동하여 판문점 총격공작의 대가로 비료지원 등 북한의 요구를 충분히 들어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한성기·장석중 등이 1997. 12. 북한 공작원들을 만나서 총격공작을 할 때 배후인물이 이들의 신분 등에 관하여 보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내용

을 보도한 것으로, 주로 수사당국자의 말을 인용하거나 수사상황을 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나, 위 내용과 아울러 일반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판문점 총격공작사건의 배후일 것이라는 강한 추측을 통하여 일반독자들에게 원고가 위 공작사건의 배후인 것 같은 인상을 줌으로써, 원고는 대통령선거의 승리를 위하여 북한을 이용한 총격공작을 감행하는 파렴치한 정치인이라는 인상으로 비쳐져 그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김이택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기자로서, 피고 박우정은 이 사건 기사를 신문에 게재한 편집자로서, 피고신문사는 피고 김이택, 박우정의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나. 위법성의 유무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공공성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판문점 총격공작사건의 배후인물이 누구인가를 내용으로 하고 그 대상이 된 원고가 공적 인물이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며, 그 목적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진실성과 상당성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오정은, 한성기, 장석중에 대한 공소사실 파고 신문사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할 당시 수사기관은 판문점 총격공작사건과 관련하여 오정은, 한성기, 장석중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었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수사 후 1998. 10. 26. 오정은, 한성기, 장석중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3인의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은데,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될 당시 이미 그 공소사실의 대부분에 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었다.

-1997. 12. 9. 19:00경 오정은, 한성기, 장석중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오복집에서 만나서, 장석중이 “북쪽에서 김순권 박사 방북, 계약재배 등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대선에서 누가 유리한지 물어보고 있다. 우리는 김순권 박사 방북이 우리손에 달려 있다고 북측이 믿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자, 오정은은 “북풍과 관련해서는 북측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우리측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지시하고, 한성기는 장석중에게 “내가 그 쪽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김박사 방북 등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보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한편, 오정은은 “북풍건이 공간기관에 노출 되면 김순권 박사를 활용, 대북사업에 이용했으며 남북교류 부분에만 목적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자”라고 하여 노출시 행동요령을 지시하고, -한성기, 장석중은 1997. 12. 10. 16:00경 중국 북경에 있는 캠프스키 호텔 1538호 응접실에서, 장석중의 전화연락을 받고 찾아온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소속 리철운, 김영수를 만나서,

장석중이 리철운에게 한성기에 대하여 “한고문은 오정은 국장 대신에 김순권 박사 방북이 사항을 전달하러 왔는데, 김순권 박사 방북문제는 박관용 의원도 힘을 쏟고 있다”라고 소개하여 한성기가 리철운, 김영수에게 계약재배와 김순권 박사 방북사업계획에 관하여 설명하다가, 리철운으로부터 “이번 대선에서 누가 이길 것 같으냐”라는 질문을 받고, 한성기는 “이회창 씨 지지율이 약간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매우 불안정하여 지금 시기에 북한이 조금만 도와주면 이회창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 “현재 오익제 편지사건 등 여러 가지가 신문에 거론이 되고 있는데 혹시 디제이의 친북자료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린다”라고 요구사항을 설명하여, 리철운으로부터 “대사관에 들어가 저녁에 담당자를 데리고 오겠다”는 답변을 듣고 헤어지고,

-한성기, 장석중은 1997. 12. 10. 20:00경 위 캠프스키 호텔 차방에서 리철운, 김영수와 자신을 북한 아태평위 참사라고 소개한 박충을 만나서, 한성기는 박충에게 “김순권 박사가 방북하는 문제는 오국장과 협의하여 12. 20.까지 꼭 들어가게 해 주겠다”. “현재 선거는 이회창 후보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오정은 국장과 박관용 의원도 걱정이 많다. 도와 달라. 그 대안은 지난 4·11 총선 때처럼 티브이 화면이 잘 잡히는 판문점에서 무장한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긴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우리의 요청을 들어준다면 김순권 박사를 12. 20까지 북에 보내주고 신정부 출범 전까지 비료, 영농자재 등을 지원해 주겠다”는 등 백지에 그림을 그리면서 박충에게 무력시위를 요청함과 아울러 그에 대한 대가를 약속하고, 박충으로부터 “내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평

양에 보고하여 출국하기전에 답변을 주겠다”는 대답을 듣고,

-한성기, 장석중은 1997. 12. 12. 08:30경 위 캠프스키 호텔에서 박 충, 리철운, 김영수를 만나서, 박 충으로부터 “한 선생이 말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 공화국에 전문을 보냈는데 회답이 없어 드릴 답변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무력시위 요청을 거절하는 답변을 받는 등, 특정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대통령선거에 압박하여 긴장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판문점 무력시위를 요청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였다.

② 성한용 기사가 작성한 이 사건 메모

피고신문사의 기자인 성한용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기 직전인 1997. 12. 중순경 마포가든 호텔(현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김대중 대통령후보 지원단에서 일하는 사람(이하 “이 사건 메모내용 제보자”라 한다)으로부터 “대선 직전 판문점에서 북한쪽에 총격공작기도를 했다는 첩보를 전직 안기부 차장으로부터 들었다. 그 배후에는 양쪽 정보기관장인 권영해 안기부장과 아태위원회 전금철 커넥션이 연결되어 있고, 남쪽 권영해 부장 배후에는 박관용 의원이 존재한다”는 첩보를 들었다. 성한용은 직업윤리를 이유로 이 사건 메모내용 제보자의 구체적인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서, 그가 정권교체 후 1998. 2.말경 안기부의 1급 내지 차관급 직책을 맡아 인사, 예산, 수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다가 1998. 6.경 청와대로 근무지를 옮겨서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될 당시에는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만 밝히고 있다. 성한용은 위 첩보를 처음 접하고서 그 내용이 엄청나고 황당하기까지 하다는

이유로 이를 토대로 한 기사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고신문사에 “이회창측근(박관용)-안기부(권영해)-북한(전금철)의 대선공작 커넥션”이라는 제목 아래 위 내용을 기재한 정보보고(이하 “이 사건 메모”라 한다)를 하였다.

③ 이 사건 기사의 취재경위

동아일보가 1998. 10. 1. 판문점 총격공작사건을 특종으로 보도하고, 국민일보도 1998. 10. 1. 「한나라 지도부 개입여부 “초점”이라는 제목과 「판문점총격 유도공작’ 안팎이라는 부제 아래 위 사건을 보도하자, 피고신문사는 정치부장 광병찬을 책임자로 하고 피고 김이택 등 기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특별취재반을 구성하였다.

특별취재반은 1998. 10.초 안기부장의 핵심측근(이하 “이 사건 취재원”이라 한다)을 상대로 판문점 총격공작사건의 배후에 관하여 이 사건 메모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특별취재반에 그 내용을 알려주었다. 특별취재반은 이 사건 취재원으로부터 원고와 관련된 물증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한편, 특별취재반은 원고 본인에 대하여는 취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④ 시사저널의 기사내용

종합시사주간지인 “시사저널”에서 기자로 근무하던 김 당은 1997. 12. 11. 북측인사와 접촉했던 대북 사업가를 통하여 한성기, 장석중이 그 전날인 1997. 12. 10. 북한의 리철운, 김영수, 박충을 만난 사실을 들었다. 김 당은 1998. 10. 1. 동아일보에 판문점 총격공작사건이 보도된 후,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인 이종찬, 차장인 신 건을 취재하여 원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1998. 10. 10.경 “총풍배후, 박관용·정재문·이회성?”이라는 제목과 “검찰, 총격요청 3인과의 관계·개입과정 집중추적...일부 물증확보”라는 부제 아래 기사를 작성하였고, 위 기사는 그 무렵 배포된 시사저널 제469호(1998.10.22.자)에 게재되었다.

⑤ 김순권 박사의 방북

원고가 옥수수박사로 알려진 경북대학교 김순권 교수의 방북을 적극 추진하여 김순권은 1998. 1. 5. 방북승인을 받았다. 김순권은 1998. 1. 10. 오정은, 한성기, 장석중과 함께 원고를 찾아가서 방북승인을 도와준 점에 대하여 감사인사를 한 후 그 무렵 북한을 방문하였다.

(증거) 갑 3호증의 1,을 4호증의 1, 2,을 5, 6호증,을 9호증의 4, 6,을 10호증의 3, 4,을 11호증의 2 내지 9, 당심증인 성한용, 김당과 변론의 전취지

(나)판 단

① 진실성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 중 판문점 총격공작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이 물증을 확보한 후 원고를 그 배후인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는 부분은 진실하다고 할 것이고, 당시 원고가 김순권 박사의 방북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 후 이를 성사시킴으로써 북한이 요구한 농업원조물 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비료지원 등 북한의 요구를 충분히 들어주겠다고 서술한 부분 역시 전체적으로 진실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사의 핵심이 이루는 부분, 즉, 원고가 판문점 총격공작사건의 배후인물일 것 같이 서술한 부분은 주로 수사당국자의 말을 인용하여 판문점 총격공작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이 당시 원고가 총격공작사건의 배후인물인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으므로 실제

로 원고가 배후인물이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의 기사가 진실이라는 입증은 없다고 할 것이다.

② 상당성에 관한 판단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행위와 관련하여 행위자가 보도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판결, 1998. 10. 27. 선고 98다246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 중 원고가 판문점 총격공작사건의 배후인물인 것 같이 서술한 부분은 진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당시 피고신문사의 특별취재반으로서 판문점 총격공작사건을 직접 모의한 오정은, 한성기, 장석중 3인의 비중으로 보아 이와 같이 엄청난 사건을 위 3인이 독단적으로 모의하여 실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전제 아래 그 배후인물에 관심을 집중하던 가운데, 위 3인 중 오정은이 1993. 8.경부터 그 외삼촌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원고의 추천으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대북관련업무를 맡다가 판문점 총격공작사건에서 한성기, 장석중을 북경으로 파견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 사실과 원고가 김순권 박사의 방북을 추진하여 이를 성사시킴으로써 판문점 총격공작사건에서 북한에 약속한 농업원

.....

조가 결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사실을 파악한 후, 안기부장의 핵심측근으로 신빙성이 있는 이 사건취재원을 상대로 원고와 관련된 물증의 존재와 원고에 대한 조사사실 등을 취재하는 한편, 이미 10개월 전부터 피고 신문사에 정보보고의 형태로 존재하던 이 사건 메모의 내용과 자신들의 취재결과가 대부분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하고서, 원고가 판문점 총격공작사건의 배후인물인 것 같이 서술하게 되었고 할 것인데, 보도기관은 수사기관과는 달리 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기사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은 없으나 피고들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의 위법성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000. 8. 24.

재판장 판 사 채 영 수
판 사 박 상 훈
판 사 한 양 석

〈별 지〉 청구취지 중 정정보도

제 목 : 박관용 의원 판문점총격요청 보도 사건 판결문 게재내 용 : 판문점 총격요청 의혹 사건 보도와 관련, “한겨레” 신문의 1998. 10. 7. 및 10. 8.자 박관용 의원 관련기사로 인하여 박관용 의원이 당 신문사를 상대로 제소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제1심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

일본판결

타자의 발언을 단지 인용보도하여도
그 발언내용의 진실성 및 상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
명예훼손의 책임이 면책될 수 없다

원고 : 創 학회

피고 : 주식회사 講談社, 元木昌彦, 甲野太郎, 甲野春子
東京지법1995(7) 19593호, 사죄광고등 청구사건
1999. 7. 19. 민사6부 판결, 일부인용·항소

주 문

1. 피고 講談社 및 元木昌彦은 원고에 대해 별지4 게재의 사죄광고를 피고 講談社 발행의 '주간현대(週刊現代)'에 별지4 게재의 조건으로 1회 게재하라.
2. 피고 講談社 및 元木昌彦은 원고에 대해 각자 200만엔 및 이에 대한 1995년 9월 1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5부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불하라.
3. 피고 甲野太郎 및 甲野春자에 대한 원고의 각 청구 및 피고 講談社 및 元木昌彦에 대한 그 나머지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사안의 개요

1. 본건 소송은 종교법인인 원고가 피고 甲野春子 및 甲野太郎(이하 피고 甲野春子를 '피고 春子', 피고 甲野太郎을 '피고 太郎', 양자를 합쳐서 '피고 甲野 등'으로 한다)의 발언을 주로 인용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週刊現代' 1995년 9월 23일호(이하 '본지'라고 한다)의 "여성시의원 '변사'의 수수께끼를 캐다!", '花子は 創 학회에 살해되었다'"라는 제목하에 게재된 기사(이하 '본건 기사'로 한다)에 의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간현대'를 발행하는 피고 講談社 및 본지의 편집장인 元木昌彦

그리고 본건 기사에 인용된 각 발언을 행한 피고 甲野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근거한 사죄광고의 게재 및 손해배상 그리고 지연 손해금의 지불을 청구한 사안이다.

2. 원고 : 원고는 종교법인이다.

3. 피고 : 피고 講談社는 잡지 및 서적의 출판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이며 피고 元木은 講談社가 발행하는 주간지 '주간현대'의 편집인 겸 발행인이다.

피고 太郎은 사망한 甲野시의원의 남편이며 피고 春子は 장녀이다.

당재판소의 판단

1. 쟁점 1 : 피고 講談社 등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의 성립여부

본건 기사는 시의회의원이었다던 甲野의원의 사망원인에 관해 자살로 단정하기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있고, 甲野의원이 생전에 원고에게 비판적인 활동을 계속해 왔다는 점 등에 대해 유족인 피고 甲野 등을 상대로 한 취재 등을 기초로 하여 주로 피고 甲野 등의 원고에 대한 언급을 소개·인용하면서 피고 講談社 등이 그 인용부분에 논평을 가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기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건 기사의 논평부분에서는 원고가 甲野의원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단정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일반독자에게도 원고가 살해했다는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인상을 갖게 될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① 본건 대제목에는 많은 공간을 할애하여 본문기사 활자의 세로 10배, 가로 7배라는 극대활자로 “花子は 創 학회에 살

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甲野시의원이 원고에게 살해되었다는 피고 春子の 발언 내용을 특별히 강조하는 표현방법을 채용했다는 점.

② 본건 소제목 부분에는 본문활자의 4배 크기의 고딕활자로 “옴과 같은 범행의 수법”이라고 기재하여 피고 甲野 등의 발언을 한층 더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종교가 그들을 비판한 변호사를 암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일반독자가 갖고 있던 인식을 이용하면서 원고에 의한 시의원 살해의혹의 존재를 독자들에게 강하게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읽혀지는 표현방법이 구사되었다는 점.

③ 본건 기사 본문의 태반이 시의원의 사망이 자살로 보기에 의문이 있다든가 甲野의원이 생전에 원고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사실 등 위의 언급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발언 등으로 채워진 반면 원고측의 발언은 단지 9행에 불과하다는 점.

④ 본건 기사에는 “甲野씨의 남편 太郎씨가 ‘처가 자살할 리 없다. 이 사건은 創 학회와 경찰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다’고 분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는 기재 외에 사망원인을 자살로 단정한 경찰의 초동수사를 비판하는 논평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논평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甲野시의원의 사망에 원고가 관여했다는 피고 甲野 등의 주장에 호의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본건 문제부분의 표현은 필자인 피고가 인용된 사실의 존재 그 자체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일반독자에게 이해된다고 할지라도, 일반독자로서는 본건 기사의 문제부분의 기재로부터 甲野시의원은 원고에게 살해된 것은 아닐까라는 의혹을 충분히 갖게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본건 문제 부분은 본지의 발행과 동시에 일반에 공개됨으로써 일반독자에게 甲野시의원은 원고에 의해 살해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인상을 주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상당히 저하시켰다고 해야만 할 것이다.

피고 講談社 등은 甲野시의원의 딸과 남편이 甲野시의원의 사망에 원고가 관여한 의혹을 지적한 사실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경우에도 그 표현방법 등으로 보아 일반독자에게 그 출판사 자신이 간접적으로 그 발언내용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발언내용에 관하여 진실성 또는 상당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공표된 발언내용에 대하여 명예훼손행위로서의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피고 講談社로서는 인용된 발언내용의 기재로부터 독자가 받을 인상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그 발언내용이 講談社 등의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없도록 충분히 배려하여 편집해야만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甲野의 발언 중 원고가의 시의원을 살해한 것 같은 인상을 특히 강조한 발언부분을 특별히 대제목, 소제목으로 한 것 외에도 부적절한 표현방법을 굳이 채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편집된 본건 기사의 표현방법, 구성, 배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甲野 등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데 불과했다(본건 기사의 중립성)는 것을 근거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일반독자가 보아 공정중립성이 유지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 보도에 대해서는 보도기관 자신이 간접적으로 분쟁당사자의 한쪽이 주장하는 사실 그 자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당해 보도기관은 보도한 분쟁당사자의 주장의 존재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주장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해 진실이라는 것 또는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보도된 분쟁내용에 대해 명예훼손 행위로서의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

본건에서는 본건 발언부분에 있어서 甲野 등의 주장내용 그 자체에 대한 진실성 또는 상당성의 입증이 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다.

2. 쟁점 2 : 피고 甲野 등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① 잡지출판사에 의해 공표된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경우 그 정보제공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정보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과 함께 그 정보제공행위와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는 당해 기사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잡지기사의 편집권은 그 출판사의 독점이므로 취재를 받은 자가 그 취재에 대응하여 어떠한 발언을 한 경우에도 공적기관에 의한 공식기자회견을 통한 정보제공의 경우를 제외하면 출판사에 의한 입증 취재나 독자적인 편집작업에 의한 정보의 취사선택 등의 과정을 거쳐 기사가 작성되는 것이 통상적이며 피취재자로서도 그 발언내용이 그대로 잡지에 게재되리라고는 예견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가령 피취재자가 취재측에 대해

제3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발언행위와 그 발언을 취재자료로 하여 편집된 기사의 공표에 의해 발생한 제3자의 사회적 평가와의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나 발언내용을 그대로 잡지에 게재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출판사와 의사를 통한 후 취재에 임해 제3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② 이를 본건에 비추어 보면, 본건 취재 당시 피고 甲野 등은 그들의 발언내용의 일부가 잡지기사에 게재될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음을 추지할 수는 있으나 그 이상으로 발언내용을 그대로 잡지기사에 게재하는 것에 관해 사전에 의사를 통한 사실에 대해서는 본건 전체의 증거에 의해서도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③ 한편 피고 春子は 본건 취재 당시부터 유족으로서 甲野시원의 사망에 원고가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갖고 언론매체의 취재에 응해 의혹의 존재를 되풀이 지적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春子は 피고 講談社の 취재에 응하면서도 그가 품고 있는 의혹이 게재되기를 바라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 春子が 아무리 그의 발언이 게재되기를 바라고 있었다고 해도 편집권을 피고 講談社가 독점하고 있는 이상 講談社와의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인정될 수 없는 한 발언부분의 취지의 발언이 기사로서 잡지에 게재될 것인지, 게재된다면 발언의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게재될 것

인지, 또 어떤 형태로 게재될 것인지(발언내용을 인용하는 형태로 게재할 것인지, 사실로 게재할 것인지)등을 예견하는 일은 어렵다.

이상과 같으므로 피고 甲野 등이 본건 발언부분의 취지의 발언을 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3. 쟁점 3 : 원고의 손해 등에 대하여

① 본지의 발행부수는 약 83만부로 인정된다. 또 본건 대제목은 일간신문지의 신문광고, 전국 주요도시의 전차나 지하철의 광고에도 게재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광고에 의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사회적 평가의 손해)도 본건 기사게재의 불법행위와 일응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석된다. 본건에 있어서 사죄광고의 게재가 명해질 것이라는 것을 종합해서 고려한다면 원고에게 발생한 무형의 재산적 손해로서는 200만엔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② 사죄광고의 게재에 대해서는, 위에서와 같은 손해배상만으로는 명예회복이 미진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며 본건에서는 사죄광고의 필요성이 특히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나 원고의 청구처럼 5개 일간 전국지에까지 사죄광고의 게재를 명하는 것은 과대한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건 기사가 게재된 '週刊現代'의 지면에만 사죄광고의 게재를 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출처 : 『判例타임즈』, 1999년 11월 1일자

번역 : 한동원(전 한국언론연구원장) □

미국 판결

원고가 경찰수사와 관련 위증죄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위증사실이 입증된 이상 이를 보도한 것은 정당하다

Associated Press v. Cook
(미국 Texas 주 항소법원 2000년 5월 11일 선고)

판시 요지

전직 경찰관이 Houston Chronicle지(이하 'Chronicle지'라 한다)에 보도된 기사와 관련하여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에서, Texas 주 항소법원은 언론기관들의 약식 재판(summary judgement) 신청을 기각한 1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그 기사는 살인 사건을 다룬 재판에서의 원고의 증언과 관련된 것인데, 그 증언으로 인하여 그는 위증죄로 고발되었으나 기소되지는 않았다. 법원은 일부 기사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진실임을 입증되었고, 나머지 기사에 대하여는 의견의 표현으로서 보호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그 진실한 내용이 함축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문제삼았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건 개요

전직 텍사스 경찰 간부인 Maurice Cook은 Chronicle지와 소속 기자인 Mark Smith, AP통신과 그 기자인 Mike Cochran을 상대로 하여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기사에 인용된 전직 Travis 카운티의 보안관 Terry Keel

도 함께 제소하였다.

문제 기사가 다룬 내용은, 1990년에 발생한 David Joost와 그의 처 Susan, 그리고 그의 두 자녀의 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에 관한 것이다. 경찰은 아내의 부정을 발견하고 격분한 David Joost가 자신의 처와 자녀들을 죽이고 자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Joost의 유가족들은 그러한 수사결과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경찰이 수사기록의 공개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가족들은 텍사스 기록공개법(Texas Open Records Act)에 따른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재판 기일에 원고는 경찰 책임자로서 증언하였다. 그는 수사 결과를 보완하기 위한 경찰의 증거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수사결과는 Susan Joost가 그녀의 전 고용주인 Jerry Hill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었고, 총격이 있기 직전에 Joost와 Hill의 심야 전화 통화 도중 그 불륜 관계가 드러났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원고는 구체적으로 Joost집과 Hill의 집 사이에 장시간의 통화가 있었고, 그 통화는 총격이 있기 전 날 밤 자정쯤에 이루어졌다고 증언했고, 경찰은 두 전화번호가 통화 중이었다는 것을 알 뿐 통화자의 신원은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다. 원고 증언 후 Joost 가족의 수사자료 공개 청

구는 기각되었다. Joost 사건 수사는 1995년에 공식적으로 종결되어 수사 자료가 공개되었다. 수사 자료가 공개된 후, Joost 유가족측 변호사인 Phillips는 원고가 존재하지 않은 '심야 전화 통화'에 관하여 허위로 증언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Cook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였다. 결과적으로 Cook은 대배심에 의해 기소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대배심의 심리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었다.

판결 이유

1. Houston Chronicle과 Mark Smith에 대한 청구

명예훼손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1) 피고가 원고에 대한 허위의 내용을 공표하였고, (2) 그 내용이 명예훼손적이며, (3) 피고에게 그 내용의 진실성과 관련하여, 원고가 공무원이거나 공적 인물인 경우에는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가, 일반 개인인 경우에는 과실(negligence)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Chronicle지와 Smith에 대한 소송에서 문제된 내용은, (1) 심야 전화 통화, (2) 원고의 수정 헌법 제5조상의 권리, (3) 원고가 법 집행에 있어 해충과 같은 존재라는 Keel의 발언, 그리고 (4) 원고를 기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Phillips의 발언이었다.

가. Chronicle의 1996년 2월 8일 기사 : '곤경에 처한 경찰대장 Cook 퇴진'

1996년 2월 8일 첫 번째로 게재된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지의 조사에 의하면, Cook이 Joost와 Susan Joost의 상사 사이에 사건 전 날 밤에 장시간의 심야 전화 통화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통화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것은 사실을 꾸며거나 잘못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통화 기록에 의하면 그와 같은 전화 통화는 없었다.

Chronicle지와 Smith 측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증언 내용을 요약한 이 기사 내용은 진실이었다. 왜냐 하면, Joost와 Hill의 집 사이에 사건 발생 전 날 심야에 전화 통화가 없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고, 무엇보다도 원고는 현재 그의 증언을 뒷받침할 통화 기록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고는 그의 증언이 잘못 전달된 정보에 기초한 것이었거나 다른 경찰로부터 그에게 전달된 사실들을 그가 잘못 이해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증언에 대한 원고의 설명은, 원고가 잘못 진술하였다고 보도한 것이 정확한지 여부와 무관하다. 진실한 사실관계가 암시하는 의미를 이유로 하여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이 이러한 진실한 사실관계로부터 그가 위증을 하였다고 추측할 가능성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의 문제와 무관하다. 따라서, Chronicle지와 Smith는 법률 판단의 문제로서 위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였다.

나. Chronicle지의 1996년 2월 9일 기사 : '소식통에 의하면 경찰 고위간부 해고'

Terry Keel은 Cook이 1996년 2월경에 대배심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을 무렵 Travis 카운티의 보안관이었다. '소식통에 의하면 경찰 고위간부 해고'라는 제목 아래 Chronicle지 1996년 2월 9일자에 실린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Keel의 발언이 인용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Travis 카운티의 보안관 Terry Keel은 그가 법 집행에 있어 해충과 같은 존재 라고 비난했다. 텍사스 주 의회 의

원선거 출마자인 Keel은 자신에게 다른 속뜻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곧 있을 Cook의 퇴직은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이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Keel은, 솔직히 말해서 Cook의 퇴직은 많은 일들, 너무 많아서 일일이 언급할 수 없는 일들의 극치이고, Cook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문제들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Keel의 말은 정확히 인용된 것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사의 골자는 원고가 강제로 사임하였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Keel의 진술이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의견의 진술'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인지, 실질적으로 진실인지 여부의 문제를 따지지 않는다. 모든 의견의 진술은 미국 연방 헌법 수정 제1조 및 텍사스 헌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떠한 진술이 '사실의 진술'인지 아니면 '의견의 진술'인지의 문제는 법원에 의하여 판단될 법률의 문제이다. 비록 Keel의 진술이 원고에게는 못마땅하겠지만, 그것은 이름을 부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원고가 법 집행에 있어 해충과 같은 존재라는 Keel의 발언은, 정치적 경쟁자를 두고 "사법부나 공화당에게 성가신 사람으로 간주된다."라고 한 발언과 유사한데, 그 발언은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의견으로 인정된 바 있다. 따라서 아무리 원고에게 불쾌한 내용일지라도 Chronicle지와 Smith는 Keel의 의견을 게재한 것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 Chronicle지 1996년 2월 24일 기사 : '전직 경관 거짓말 혐의를 벗음; Cook이 수정 헌법 제5조의 권리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음'

문제된 세 번째 기사는 Phillips가 Cook을 Hays 카운티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시작된 대배심의 심리에 관한 것이었다. Cook은 특

히 다음과 같은 기사 내용을 문제삼는다.

Hay 카운티의 대배심은, 1990년에 일어난 전 경마대원과 그 가족의 미스터리한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Cook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Cook이 대배심 앞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수정 헌법 제5조의 권리를 이용하였고, 자기가 형사처벌받을 내용이 들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였다고 한다. Cook의 변호인인 Dick DeGuerin은 확인을 거부하였다.

약식 재판을 위하여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기사의 골자는 대체로 사실이였다. Chronicle지와 Smith는 대배심 법정에서 출석하였던 Hays 카운티 검사 Marcos Hernandez의 공증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Hernandez에 의하면, 원고와 세 명의 다른 기마 경찰대원이 대배심에 소환되었다. 대배심이 증언을 위해 원고를 대배심 법정으로 불렀을 때, 그는 응하지 않았다. 그 대신, Hernandez의 허락 하에, 원고의 변호인인 Dick DeGuerin이 대배심 앞에서 발언하였다. Hernandez의 공증 진술서에 의하면, DeGuerin은 대배심원단에게 원고가 증언을 하지 않도록 조언을 받았고, 따라서 대배심 법정에서 불려 나오더라도 증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비록 DeGuerin이 구체적으로 수정 헌법 제5조를 언급한 것은 아니었지만, Hernandez는 원고가 그 권리를 이용할 의도였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DeGuerin과 다른 세 명의 경찰대원들이 진술한 이후, Hernandez는 원고의 증언 거부 문제에 관하여 대배심원단과 논의하였다. 그는 대배심원단이 원고로 하여금 법정 안으로 들어 오게 하고 그들 앞에서 직접 증언을 거부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알려 주었다. 대배심원단은 그런 형식적 절차를 밟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Hernandez는 자신이 알기로 원고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법

를적 근거는 수정 헌법 제5조의 권리라고 진술하였다.

Chronicle지 기사의 요점은 원고가 수정 헌법 제5조의 권리를 이용하여 대배심에서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것, 그는 위증죄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소식통에 따르면, Cook이 대배심 앞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수정 헌법 제5조의 권리를 이용하였고, 자기가 형사처벌받을 내용이 들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였다고 한다.”라는 기사 내용은, (1) 자신이 직접 대배심 앞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었고, (2) 그는 결코 수정 헌법 제5조의 권리를 주장할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3) 그는 녹화 증언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4) 종전에 위증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형사처벌받을 내용이 들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증언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허위라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를 대리하여 DeGuerin이 대배심에서 한 진술에 대한 책임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DeGuerin이 원고를 변호하는 대리인으로서 대배심에 출석하였을 때에, 원고 역시 대배심에 출석한 것이고, DeGuerin이 대배심에서 원고가 증언을 거부한다고 말한 때에 원고가 증언을 거부한 것이 된다. 비록 수정 헌법 제5조가 직접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 원고의 증언 거부는 수정 헌법 제5조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만약 원고가 수정 헌법 제5조를 이용하였다는 기사 내용이 거짓이라면, 원고는 그 허위성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는 입증하지 않았고, 그가 증언을 거부한 다른 법률적인 근거를 제시한 바도 없다. 우리는 위 기사 내용은 실질적으로 진실이라고 판단한다.

1996년 2월 24일자 기사에서 위증 조사에

관한 Phillips의 발언이 인용된 바 있다. 그 기사의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Maurice Cook이 3년 전에 한 증언 내용은, 자신이 들었거나 보고서에서 보았다는 것이었다.”라고 DeGuerin이 말했다. “사건에 대하여 그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경찰대의 Ron Stewart로부터 얻은 것임이 분명하다.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Stewart가 구두로 혹은 서면으로 그에게 알린 것이다.” … DeGuerin은, Stewart를 조사한 서류의 사본에 Joost 일가의 사망 직전에 있었던 전화 통화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DeGuerin은, 그 조사서의 사본을 읽은 Cook이 그와 같은 심야 통화가 있었다고 믿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가족측 변호사인 John Phillips는, “Cook이 위증을 하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는 특정한 날, 특정한 시기, 그리고 그 전화 통화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말하였다. Cook의 혐의는 기소하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원고는 Chronicle지가 Phillips의 발언을 잘못 인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에, 원고는 ‘Phillips는 내가 위증을 하였다고 말했고, Smith는 기사를 실을 당시 이것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증 고발장을 제출하였던 장본인인 Phillips가 원고의 위증을 믿는다는 사실은, 일반 독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게다가, 경찰대의 수사 기록에 관한 조사 기일에서의 비공개 증언에서, 원고가 Joost의 총격이 일어나기 전 날인 1990년 3월 4일이라는 구체적인 통화일과 오후 11시에서 12시 사이라는 구체적인 통화 시기를 증언한 바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전화 통화와 관련한 Phillips의 진술은, 글자 그대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실이다.

원고는 아울러 1996년 2월 24일자 기사 중 다음 내용에 대하여도 문제삼는다.

대배심에서의 쟁점은, Cook이 1993년 2월 23일의 비공개 기일에서 위증을 하였는지 여부이었다 … Cook은

'사건 발생 전날' Susan Joost의 상사이자 오랜 친구인 Jerry Hill의 집 사이에 있었던 '장시간의' 심야 전화 통화를 입증할 수 있는 통화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판사 앞에서 진술하였다.

원고는, 심야 전화 통화가 있었음을 입증할 통화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판사에게 명확하게 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기사는 허위라고 주장한다. 비록 원고가 명확하게 통화 기록이 있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의 증언은 그러한 통화 기록이 존재하였고 그가 그것을 보았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실제로, 원고는 경찰의 기록 관리인의 자격으로서 증언을 하였는데, 그 자체가 원고가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원고는 "Joost의 집과 Hill의 집 사이에 장시간의 전화 통화가 있었다."고 말하였다. '장시간의 심야 통화'가 Susan Joost와 그녀의 친구 Kathy Hill 사이에 있었는지 여부를 아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답: 그것은 누가 통화하였는지를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는 통화 중인 전화 번호 2개가 있을 뿐입니다.

분명히, '그것(it)'이란 (1) 발신번호와 수신번호, (2) 통화 일자, 그리고 (3) 통화 시간을 보여주는 유형의 통화 기록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통화 기록에 관한 위 기사도 법률의 문제로서 판단할 때 실질적으로 진실이었다고 판단한다.

2. AP통신과 Mike Cochran에 대한 청구

AP통신과 Cochran에 대한 원고의 명예훼손 청구는, (1) 1996년 2월 8일, Keel의 비판을 정확히 인용한 기사를 전송한 것과, (2) 1996년 6월 7일, 실제로 Cook은 Trinity 카운티에 12 에이커의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그가

12,000에이커를 소유하고 있다고 잘못 보도한 기사를 전송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가. Keel의 진술을 인용한 부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우리는 Keel의 비판은 헌법상 보장되는 의견의 진술이라고 본다. Chronicle지 및 Smith와 마찬가지로, AP통신이나 Cochran은 그 비판을 보도한 것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Cook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보도한 부분

AP통신이 실수를 하였다는 것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AP 통신은 그 실수가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저지른 것이라는 점을 원고가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로써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다룬다. 명예훼손 소송의 피고가 법률의 문제로서 현실적 악의를 부정하는데 성공하는 경우 Texas 주법 하에서 악식 재판을 얻을 수 있다. 명예훼손 소송의 피고는, 어떠한 허위성을 현실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혹은 그 진실성에 대하여 무모하게 무시하고, 그 문제된 명예훼손적 기사를 보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현실적 악의를 부정할 수 있다. 현실적 악의를 부정하는 피고의 입증은 분명하고도 명확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 기사를 보도한 사람이 작성한, 다분 여지없는 공증 진술서의 내용에서 그 기사가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면, 법률의 문제로서 현실적 악의를 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증책임을 이행한 것이다.

AP통신이 제출한 증거 중에는 문제의 기사를 작성한 Terri Langford 기자의 공증진술서가 포함되어 있다. Cook이 기자 회견을 열어 소송 제기를 선언한 이후, 그녀는 그 소장의 사본을 입수하기 위해 Trinity 카운티에 파견

되었다. Langford는 왜 Cook이 자신의 거주지이자 근무지인 Austin에서 멀리 떨어진 Trinity 카운티에 소송을 제기하였는지 알고 싶었다. 소장의 사본이 교부되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Langford는 Cook이 Trinity 카운티 내에 '12,000' 에이커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재산세 기록을 보게 되었다. 처음에, 그녀는 그 숫자가 '12,000' 에이커인 것으로 이해하였고, 이 내용이 AP통신의 기사에 실리게 되었다. 그녀는 이 기사를 보도할 당시에 이 기사가 진실하고 또한 정확한 것으로 믿었다고 말했다. AP통신 Dallas 지국 책임자인 John Lumpkin의 공증진술서도 제출되었는데, 그는 12,000 에이커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을 때 그 기사가 사실이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Langford가 유능한 조사 기자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녀의 조사 결과를 쉽게 믿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사가 보도된 이후 Lumpkin은 자신의 주도 하에, 12,000 에이커라는 숫자가 정확한지 다시 확인하도록 했다. Cook이 단지 12에이커를 소유한 사실을 확인한 후, AP통신은 즉시 정정 기사를 내보냈다.

우리는 AP통신이 현실적 악의를 부정하기 위한 입증을 다하였다고 본다. 일단 AP 통신이 자신의 입증책임을 다한 이상, 그 입증의 부담은 원고에게로 넘어간다. 원고는 현실적 악의를 입증할 증거로서 무엇이 있는지를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그 대신, 그는 법원이 양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여 원고와 Cochran 사이의 개인적 증오심을 현실적 악의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서 현실적 악의라는 것은, 앙심, 나쁜 동기 또는 원한을 포함하지 않는 기술적 용어이다. 문제된 기사가 현실적 악의

에 기한 것이라는 증거를 원고가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1심 법원이 AP통신의 약식 재판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다.

3. Terry Keel에 대한 청구

Keel은 1심 법원이 명예훼손, 제3자의 불법적 계약 침해행위(tortious interference with a contract), 그리고 고의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에 기한 원고의 청구에 대한 자신의 약식재판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Keel은 Chronicle과 AP통신에 의하여 인용된 자신의 비판적 언행에 대하여 제소된 것이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Keel의 비판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의견의 진술이라고 본다. 또한 제3자의 불법적 계약 침해행위, 그리고 고의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에 기한 원고의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그와 같은 발언을 Keel 자신의 직무 범위 내에서 선의로(in good faith) 한 재량적 행위라고 보고, 공직자로서의 직무상 면책특권 (official immunity)을 인정한다.

4. 결론

약식 재판 신청을 기각한 1심 판결이 잘못이라는 Chronicle지와 Smith, AP통신과 Cochran, 그리고 Keel의 항소는 이유 있다. 따라서, 우리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Media Law Reporter* 28권 pp. 2065-2075.

번역 : 장상균 판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호주시례 1

문제의 보도시점으로부터 두 달이 지나
신청인의 견해를 게재한 것은 적절치 않아

호주신문평의회는 부자들의 자선 기부 습관에 관해 보도한 시드니의 The Sun-Herald지의 기사내용에 대한 불만신청을 일부 수용하면서 신문사들은 가능한 빨리 정정과 해명을 보도하는데 심각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0년 1월 30일자 한 면에 걸친 기사의 제목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1만불 이상의 소득자들은 전혀 기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라고 적시하고 있다.

그 기사의 요지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대부분의 갑부들이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기사는 오스트레일리아 국세청의 개

인소득세 신고서 통계자료에만 의존했다.

자선기부단체에도 속해있는 Givewell사의 상무이사이자, 신청인인 Michael Walsh 씨는 그 신문사에 통계청의 자료는 기간이 지난 것이며, 부유한 오스트레일리아인이 기부선물을 준다던가 파트너십 활동 또는 기업을 통해서도 기부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그들의 개인소득세에는 그 어느 것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또한 많은 부유한 오스트레일리아인들은 그들의 의지에 따라 기부행위를 하며, Sun-Herald지의 기사에는 나

타나지 않았지만, 그들이 기부한 선물에 대한 세금 감면을 주장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청인은 문제의 기사가 보도된 다음 날, 자신의 견해를 Sun-Herald지에 전달했는데, 신문사는 두 달이 지난 시점인 2000년 3월 26일, 신청인이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을 독자투고란에 보도했다.

그러나 호주신문평의회의원칙은 언론사가 실수를 정정하거나 다양한 관점을 제시할 공간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문평의회는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신청인의 견해를 보도한 것이나 신문사가 제기한 여러 이슈들이 적절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문평의회가 부분적으로 불만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적절한 조치가 부족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

호주사례 2

신문에 소개되는 음식점에 대한 비평기사는 공정을 기해야

신문평의회는 Port Melbourne에 소재한 Sassi Bistro-Bar라는 음식점에 대한 2000년 5월 5일자 The Sunday Age의 비평에 관한 불만신청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신문사들은 전통적으로 식당에 대한 비평을 게재하고 있다. 이런 비평기사는 음식점 경영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단순하게 말하면 비평기사가 사업의 흥망을 좌우할 만큼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문평의회는 비평의 내용적 수준을 판단할 입장은 아니다. 만약 음식점의 운용이나 질과 관련된 비평내용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져 혹시 사업에 손해를 입혔다 해도 그 비평기사에 대한 식당운영자의 불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비평의 내용이 음식점에 대한 평가에 대해 매우 공정해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 불만신청 사건의 경우, 비평가는 Sassi 음식점을 별 네 개에서 별 두 개로 평가했

다. 그러나, 신문평의회는 그 비평이 여러 측면에서 음식점의 질에 관한 잘못된 인상을 독자에게 주었다고 판단했다. 비평가는 음식점의 서비스의 양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비우호적으로 언급했다. 이탈리아 스투오리인 risotto가 “약간 빈약하게 나왔고”, 전체 식단을 보더라도 “우리들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을 정도다.”라는 것이다.

문제의 비평기사는 또한 소스가 너무 짜다고 지적했지만 그 소스는 애초에 짜게 만들

어진 것이고 신청인은 처음 주문을 받을 때 비평가에게 이 점에 대해 충고했다고 말했다.(비평가는 식사할 때 다이어트 콜라를 마셨는데, 이것이 소스의 맛을 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빠뜨렸다. 사실 그는 와인을 마셨다고 썼다.)

음식점의 다른 측면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평가한 부분도 있으나 신문평의회는 Sassi음식점에 대해 전체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신문평의회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식당비평가는 비평하고자 하는 문제의 모든 측면에서 공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사건에서 신문평의회는 독자들이 비평의 내용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여러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만신청을 부분적으로 수용했다. □

호주사례 3

의약품 등 국민 건강과 관련된 보도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기사내용의 자료출처를 밝혀야

호주신문평의회는 시드니 흑색증 단체(Sydney Melanoma Unit)가 새로 개발한 백신이 흑색증(黑色症 : 머리카락,

피부, 눈 따위에 갈색 또는 흑색의 색소가 많은 증상)에 좋지 않다고 보도한 The Daily Telegraph지에 대한 불

만신청을 수용하였다.

신문평의회는 언론사가 의료 치료,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등 모든 건강문제에 대한 보도를 할 경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지시키고자 했다.

신청인인 시드니 대학의 압전문가 McCarthy 교수는 The Daily Telegraph지의 기사 내용 중 몇 가지에 대해 자세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신청인은 문제의 기사가 부정확하고 부적절한 데이터에 근거해 독자들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청인은 이 보도가 백신에 관한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제약회사로부터 나온 보도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했다.

신문사는 문제의 보도는 의학협회가 발표한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연구 결과에 근거한 것이며, 관련 데이터는 압 전문가로부터 확인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문평의회는 신문사가 기사내용의 정보원 출처를 확인하는데 명백히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문제의 기사는 M-VAX로 알려진 새로 개발된 백신의 몇 가지 측면에 대해 대담한 설명을 담고 있으나, 그러한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기사의 말미에 미국인 연

구자와 제약회사를 언급하면서 정보제공자와 관련한 단 하나의 암시만 있을 뿐이며, 다른 상세한 자료내용의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은 데서 드러난다.

신문평의회는 궁극적인 사실의 진위 여부에 대해 판단하거나 기사를 상대로 한 보상청구는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기사의 자료 제공처는 분명하게 밝혔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의학, 기술 그리고 과학

에 대한 보도를 할 때 주어진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독자들은 “누가 그렇게 말했는가?”라고 물으면서 보도의 정당성을 찾고, 보도의 가치를 판단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문평의회는 이런 분야에서 언론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인정하지만 공익과 관련된 복잡한 의학적·과학적 문제를 다룰 때 특히 신증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영국사례 1

유명배우라 할지라도 개인의 사생활권은 보장되어야

Granada Television은 Georgia Taylor양을 대신해서 2000년 6월 18일자 Sunday Sport지 “Coronation가의 스타 Toyah와 흥분된 나의 저녁” 제하의 기사내용이 보도실천강령 제3조(프라이버시)를 위반했다고 불만을 신청했다.

이 불만신청은 받아들여졌다.

문제의 기사는 Coronation가에 사는 여배우 Taylor양이 Michael Moore라는 학생과 밤을 함께 보낸 것에 대한 내용으로 Moor학생의 말을 빌어

표현한 것이다.

신청인은 그 기사가 보도에 필요한 공익과는 거리가 먼 배우 개인적인 사생활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도실천강령 제3조는 ‘모든 사람은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받아야 하며, 사생활이 공표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Taylor양은 공식적으로 기사내용에서 언급된 것과 유사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고 기사의 내용은 이미 공적인 범위가 아니라고 주장

했다.

신문사는 Taylor양이 이전에도 자신의 경력을 홍보하기 위해 언론매체를 이용했으며, 자신의 사생활과 개인적 생활에 대해 발언한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Moore씨가 그녀의 사생활에 대해 언급할 권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평 결

PCC는 개인의 권리와 표현

의 자유간의 균형 그리고 또 다른 권리로서 프라이버시 권간의 이익형량은 서로의 권리를 비례적으로 사고하여 그 범주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불만신청사건에서 언론사는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두 권리를 균형있게 사고하지 않은 점이 분명하며, 신청인이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공표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PCC는 주저없이 불만신청을 수용했다. □

영국사례 2

**언론사의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문을 게재해야**

Frank 국회의원은 The Independent와 가진 자신의 인터뷰 기사의 제목이 보도실천강령 제1조(정확성)을 위반한 것이라며 불만신청을 제기했다. 2000년 6월 9일자 The Independent의 인터뷰 전면기사의 제목은 “블레어 ‘급락과 미약한 만회’ -프랭크”라고 적시하였다. 신청인은 또한 자신이 보낸 편지가 문제보도의 후속보도로써 보도실천강령상의 불만에 대한 적절한 치유책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불만신청은 수용되었다. 신청인은 기사제목이 뒤집어진 씬표로 그가 진술한 내용을 잘못 암시케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신청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며, 따라서 신문 전면에 ‘작은 정정기사와 사과’ 그리고 자신의 편지를 게재할 것을 요구했다. 신문사는 신청인의 첫 번째 요구를 거절했으나 기사에 게재된 내용은 신청인이 언급한 사실이 아님을 밝히는 신청인의 편지를 게재했다.

그러나 신청인은 신문사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부적절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반면 신문사는 기사의 제목이 실사 오해를 살지라도 기사본문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견해나 관점이 본질적으로 독자들에게 잘못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신문사는 제목과 관련한 것은 단지 사소한 것이고 신청인의 편지를 게재함으로써 그 피해구제가 당시 상황에서 적절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신청인은 이 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문제의 제목은 독자를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 결

PCC는 언론사의 실수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과 정정을 보장했다는 신문사측의 주장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보도실천강령 제1조 3항은 적절한 사과문의 게재를 규정하고 있으며, PCC는 명백한 실수가 있었던 이러한 경우에는 신문사가 사과를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신청인의 편지를 게재한 것으로는 충분한 치유가 될 수 없다고 PCC는 평결했다. □

언론과 법

언론소송과 판결

여성단체, R모양 비디오 선정비도한 방송사 사장, PD 고발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 3개 여성단체는 7일 "서울방송이 백씨의 '사생활 비디오'를 선정적으로 보도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방송 사장과 <한밤의 TV연예> 담당 PD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여성연예인들의 사생활을 담은 비디오 등에 대한 언론사의 보도를 문제삼

아 집단적인 법적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이들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지상파 방송이 사생활 비디오의 일부를 자료화면으로 쓰는 등 무책임한 흥미위주 보도를 했다"면서 "특히 <한밤의 TV연예>는 상대남자를 자처한 7씨의 인터뷰를 여과없이 내보내는 등 문제가 심각해 일차적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최영애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사생활 비디오의 파문 과정에서 피해자인 여성연예인이 사회의 이중적 성규범으로 오히려 비난을 받고 활동 중단을 종용받고 있다"면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은근히 따라가는 언론의 보도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 2000. 12. 8.(19면)

신건 씨, 한나라당-문화일보 상대 15억 손해소 제기

신건 전 국정원 2차장은 12월 4일 이부영 의원 등 한나라당의 '권력형 금융비리 진상조사특위' 소속 의원 7명을 서울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의

주장을 보도한 문화일보와 취재기자 3명도 함께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 전차장은 소장에서 "본인은 진승현 씨와 일면식도 없는데도 한나라당이 지난달 30일 기자회견과 서울지검 방문

때 본인이 진씨의 배후이고 도표를 도와주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문화일보는 이를 확인도 하지 않고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2000. 12. 5.(A29면)

민주당 KKK, 동아일보 상대 3억 소송제기

민주당 권노갑 최고위원과 김옥두, 김홍일 의원 등은 11월 9일 자신들(여권실세 KKK)이 '정현준 펀드'에 가입

한 것으로 확인된 듯이 보도한 동아일보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신문을 상대로 각각 3억원씩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한겨레 2000. 11. 10.(5면)

리타워텍, 서울경제신문 상대 20억원 손해소 제기

코스닥 등록기업인 리타워 테크놀러지가 11월 6일 <서울경제신문>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청구를 신청하고 서울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리타워텍은 이날 서울경제신문의 탈법 외자유치 및 주가조작 혐의 보도와 관련, 안상운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반론 및 정정보도청구와 함께 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리타워텍은 소장에서 "서울경제신문의 허위, 왜곡보도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에 엄청난 훼손을 가져왔기 때문에 반론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동시에 재산상, 정신적 손해 등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리타워텍은 또 "서울경제신문의 보도로 인해 자본유치 및 해외투자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주가급락과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의 항의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0. 11. 6.

대한매일 상대로, 검사가 2억 손해소

서울지검 이봉상 검사는 11월 6일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대한매일신보)와 이 신문 편집국장 등 7명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검사는 소장에서 "모 방송국 자회사 김모 대

표의 청부폭력 사건을 수사하며 정당한 절차에 의해 김대표를 무혐의 처리했다"며 "그러나 대한매일은 마치 검사와 담당 변호사가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대한매일은 지난달 "청부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대표를 검찰이 무혐의 처리하고 구속을 취소해 축소수사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2000. 11. 7.(25면)

통조림에 포르말린을 첨가했다는 검찰 발표 신종보도한 10개 언론사 상대로 통조림 제조사들 소송제기

통조림에 방부제인 포르말린을 첨가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서기복(45) 씨와 통조림 제조사들은 9월 22일 "검찰이 허위 사실을 발표하고 언론사가 이를 그대로 보도하는 바람에 회사가 부도나는 등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9개 신문사, 2개 방송사 등을 상대로 모두 37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

이들은 또 신문사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컴퓨터 통신, 한국언론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검색 사이트인

'KINDS' 등에 이 사건 기사를 게시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청구했다.

서씨 등은 소장에서 "통조림에 유독물질인 포르말린을 넣은 적이 없고,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포름알데히드가 통조림에서 검출됐을 뿐인데도 '통조림에 포르말린을 넣어 방부처리를 했다'는 검찰의 허위 발표 내용을 언론사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보도하는 바람에 부도가 나는 등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98년 7월 서씨 등 통조림 제조업자들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입건하면서 '이들이 통조림에 포르말린을 넣어 방부처리를 했다'고 발표했고 언론사들은 '통조림에 발암물질' 등의 기사를 보도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해 1, 2심에서 "통조림에서 포르말린의 구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자연상태의 식품에도 존재하며 인체에 무해한 천연 포름알데히드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연합뉴스 2000. 9. 22.

'김훈 중위 사건' 보도 피해자 김영훈 중사 승소

서울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3일 김훈 중위 사망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원고와 가족들이 서울방송, 경향신문,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판결에서 "경향신문 5,000만원, 동아일보 3,750만원, SBS 8,750만원을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군 수사당국의 발표를 토대로 보도하였다 하더라도 살인과 간첩 혐의에 대하여는 아무런 단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살인자나 간첩 혐의자로 보도하여, 발표내용을 수정하거나 상당한 정도를 넘는 추측을 가미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8년 2월 관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원고가 소속된 소대의 소대장인 김훈 중위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김중위의 타살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어 진상과약소위원회를 구성, 조사를 하던 중 원고를 비롯한 소대 부대원들이 북한군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자 마치 원고가 북한군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며, 김훈 중위의 살인범인 것처럼 보도하자 김중사와 가족들은 허위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의 판결 이후 3개 언론사는 항

소를 포기했다. SBS의 한 관계자는 "변호사 자문결과 항소를 해도 승소가가능성은 물론 금액이 낮춰질 가능성도 없어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원고 변호사인 황덕남 변호사측은 "9월 중순에 10대 중앙 일간지 중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을 제외한 8개 신문사와 KBS와 MBC 그리고 시사저널 등을 대상으로 조정신청을 제기했다"며 "각 사별로 금액에 차이가 있으나 전체 소송가액은 5억원 정도며 1심 판결이 있기 때문에 조정신청을 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2000. 10. 12.(3면) 참조

MBC, 민민중앙교회 상대 일부 승소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민중앙교회(주심장사 조동환)는 11월 3일 1심에서 민민중앙교회와 그 신도들을 상대로 낸 23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민민중앙교회 잘못" 판도는 MBC에 2억9천여 원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재복 민민중앙교회 목사에 대해 청구한 부분

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방송사에 들어가 방송을 중단시키고 잡비를 부쳐 방송장비를 8천9천여 만원의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목사는 방송사 난입에 기담했다는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민민중앙교회 신도 230여 명은 지난해 5월 11일 MBC가 PD수첩을 통해 이목사의 이단파문, 미국 원정도박 등의 내용을 보도내려 하자 MBC 사옥에 들어가 방송장비를 부수고 PD수첩의 방송을 중단시켰다.

국민일보 2000. 11. 3.(28면)

'선부로 명예훼손' MBC에 2500만원 배상판결

서울지법 남부지원 제4민사부(재판장 김형)는 10월 27일 "사이버 종교집단으로 일반적으로 매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합동선부교전도관부총합회와 합회 회장직 고 박태선의 아들인 박문연 씨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MBC는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프로그램 성격상 시급을 요하여 신속하게 방송해야 할 필요가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방영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확인을 촉구했음에도 철저한 사실확인 없이 교주의 혼음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종교라고 방송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작년 8월 방송된 MBC-TV "한국 100년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라는 기획 프로그램이 선부부 총합회를 주강한 여러 종교들이 살인, 간음, 노동력 착취, 재산 축적 등 사회적으로 많은 폐해를 남겼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면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기무사 장성들, SBS상대 손해배상 일부 승소

서울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10월 18일 "병역면제 등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99년 당시 기무사에서 근무한 조모 씨 등 장성 5명이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 1500만원씩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기무사에 대한 병무 비리 수

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에는 기무사의 수사방해와 압력이 작용했음에도 모른다"는 내용의 보도 등 3건의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재기자가 확보한 자료에 비춰 보면 현역 장성 중 한 명은 병무 비리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하지만 기무사 소속 현역 장성들이 병무비리를

알선하고 6천만~1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단정해 보도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해 10월 'SBS 8시 뉴스'에서 '현역 장성도 연루되는 제목으로 기무사 관련 병무비리 관련 보도를 2건 내보내는 등 모두 4건의 기사를 방송하자 각각 1억5천만원씩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2000. 10. 18.

성추행장면 TV방송 "명예훼손 해당" 판결

서울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16일, 원고의 지하철 성추행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 TV 방영하여 명예가 훼손됐으며 서울방송 담당 PD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담당 PD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성추행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가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의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까지 국민의 알 권리라 할 수 없고, 얼굴 부분의 모자이크 처리가 완벽하지 못하고 음성변조됨이 없이 방송되어 신원이 노출된 만큼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방송 프로그램 '추적, 사건과 사

람들' 담당 PD인 피고는 97년 1월, 지하철 수사대와 함께 지하철 성추행법 단속에 동행 취재 나가 원고가 앞에 있던 여자 승객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같은 달 25일 범행장면과 함께 원고의 인터뷰 장면을 방송하였다.

정보공개 협의 기자 항소심서도 벌금형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치용 부장판사)는 11월 7일 김옥두 민주당 사무총장 부인의 '특혜 보험모집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김규원(30) 기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 김 기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기자가 보험계약 자료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보도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료에는 가입자의 이름과 주소, 계약보험료 등 가입자의 모든 신용정보가 기재돼 있어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높다고 볼 때 1심 판결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기자는 지난해 9월초 삼성생명 대전 모 영업소의 보험모집인던 어머니(56)를 통해 김옥두 당시 국회의 총

재 비서실장의 아내(56)에게 거액의 보험을 가입한 삼성 이건희 회장 부부를 비롯한 기업인과 전·현직 고위공직자 부인 등 고객 명단 등을 빼낸 혐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돼 지난 5월 19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2000. 11. 7.

'O양 비디오'제작 H씨, 언론사 상대 일부 승소

서울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10월 11일 'O양 비디오'를 만든 H씨가 '근거도 없이 마약복용설 등을 보도해 피해를 봤다'며 대한매일신보사, <썬21C뉴스>, <경향신문사>, <문화방송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한매일신보는 2천만원을, 나머지 회사는 각각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디오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보관하지 않은 잘

못으로 일반에 공개됨으로써 한 여자 유명 연예인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게 된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음이 마땅하다고 하더라도, 비디오테이프를 몰래카메라로 단정하거나 비디오테이프의 유출경위나 협력여부, 마약복용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실인 것처럼 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의 승낙 없이 비디오테이프에 담긴 원고의 사생활을 적시하거나

원고의 초상을 게재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상처를 가하였다"고 밝혔다.

H씨는 지난해 12월 "O양의 동의를 얻어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했는데도 일부 언론이 내가 마약을 복용했다거나 O양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협박을 했다는 등 허위내용을 보도하는 바람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4개 언론사를 상대로 모두 4억4천4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앙일보 '왓슨아지매' 정순경 화백 등 무혐의 결정

서울지법 공안1부(부장검사 박만)는 지난 9월 25일 지난 4.13총선 때 서울 종로에 출마했던 이종찬 씨가 중앙일보 '왓슨아지매' 만화에 의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중앙일보 금창태 사장과 이재훈 편집인, 정운경 화백 등 3명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

정을 했다. 검찰은 "당시 왓슨아지매 만화에선 이 후보가 언론문건과 도청 사건 등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려진 점은 인정되나 언론문건과 도청 사건은 허위가 아닌 실제 사건인 만큼 이 만화를 공공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으로 간

주,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6일자 중앙일보 만화에서 언론문건 사건 등으로 총선시민연대에서 자신을 낙선대상자로 삼은 것처럼 그렸다고 선거법상의 후보자 비방 혐의 등으로 정화백 등을 고소했다.

중앙일보 2000. 9. 26.(31면)

'양민 학살'선급 칼럼 '여적' 명예훼손에 해당 안돼

서울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0일 "제주 4·3 항쟁과 관련된 경향신문의 '여적' 내용 중 '서북청년단이 양민을 학살했다'는 문구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북청년단을 대리한 문모씨가 경향신문사와 해당 논설위

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사의 주된 취지는 '제주 4·3항쟁 발생 뒤 반세기가 지났는데도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 반성을 촉구하는 공익

적 내용'이라며 "논설위원이 기사를 쓰며 참고했던 자료에 원고의 발언이 담겨 있는 등 서북청년단에 의한 제주도민의 희생이 컸다는 것을 믿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2000. 9. 21.(19면) □

2000년도 정기세미나 현황리에 개최 ... 귀경길에 개롱대 방문

위원회는 “언론관련 법률의 쟁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난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중재위원회와 언론사 사회부 부·차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유성호텔에서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제1주제로 최근 언론관련 법률의 쟁점을 정리·검토한 강경근 교수(숭실대 법학과)는 편집권은 언론의 내적 자유를 실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향상하는 기본권으로서 편집권의 핵심은 편집의 전문성이라는 물적 독립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양삼승 위원(변호사)은 처음 소개되는 가칭 언론피해구제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언론중재제도의 그간 성과를 고려할 때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여러 경우에 있어서 그 조정자로서 차지하는 역할을 보다 넓은 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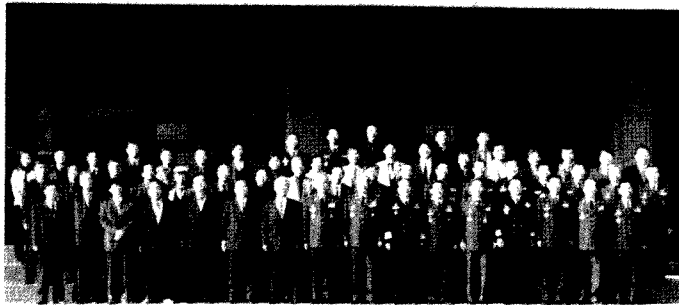
주제발표에 이어 윤재운 위원(서울지법 부장판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언론계 참석자들은 편집권의 독립문제와 관련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었으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 법제화에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한편 처음 공개된 가칭 ‘언론피해구제법’에 대한 토론에서는 이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 가운데 중재위가 손해배상청구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열띤 논쟁이 전개되었다. 대다수 언론계 참석자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언론피해자들이 정정이나 반론보도청구에 그치지 않고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언론의 취재기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소송가액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중재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다. 박영

식 위원장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추후 많은 검토와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입법청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미나를 마친 25일, 박영식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육·해·공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를 방문하여 육군참모총장 및 각군 참모차장의 영접을 받고 3군 통합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영내 시설을 시찰했다.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 개편

위원회 홈페이지가 10월 9일부로 일부 개편되었다.

‘위원회 소식지’ 페이지가 신설되었고, 위원회 영문소개 자료(Introduction To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와 찾아오는 약도도 게시했다. 또한 중재신청서와 관련법규를 다운로드 없이 내용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언론중재위원회 소식’ 게시판에 함께 게시해 왔던 ‘오늘의 중재심리’ 내용을 별도의 게시판으로 분리했다.

<언론중재편람> 개정판 발간

위원회의 업무지침서인 2000년도판 <언론중재편람>이 12월 14일 발간되었다.

이 편람에는 위원회 현황 및 업무, 관련 법규, 언론관계 법조문, 유관단체관련 법규, 언론관계기관 주소 등의 최신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국내 문헌

- 김영석, 『디지털미디어와 사회』, 나남, 2000. 9.
- 김우룡, 『미디어윤리』, 나남, 2000.
- 방송위원회, 『독일방송법』 방송조사자료 2000-2, 2000.
- 성동규·리도삼, 『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 한울, 2000. 10.
- 유선영 외, 『한국시시만화』, 한국언론재단, 2000.
- 이나시오 라모네, 『커뮤니케이션의 황포』, 민음사, 2000.
- 한국언론2000년위원회, 『한국언론보고서』, 관훈클럽, 2000.
- 한국언론재단, 『언론인의 직업윤리책임언론을 위한 현실 점검과 대안 모색』,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
- 한국언론재단, 『수용자의식조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
- 한동섭, 『한겨레신문과 미디어 정치경제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
- 홍기선 외, 『현대방송의 이해』, 나남, 2000. 9.
- 강태영, “뉴미디어 시대의 지상파 텔레비전-공영방송의 새로운 방향-”, 『방송문화연구』, 2000.
- 김남기, “이런 것이 명예훼손이다!”, 『기자통신』, 2000. 9.
- 김영호, “국회 언론발전특위 추진과 그 임무”, 『관훈저널』, 2000년 가을.
- 김영호, “정치·경제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주최 『언론보도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발제논문, 2000. 11. 24.
- 김택환, “국가미디어정책과 발전방안”, 언론노동조합연맹 주최 『정보소유의 언론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 발제논문, 2000. 10. 17.
- 김택환, “오피니언면의 역사와 윤리”, 삼성언론재단 주최 『오피니언면의 현황과 발 전방향』 세미나 발제 논문, 2000. 10. 27.
- 김택환, “한국 언론 발전을 위한 방안과 의제”, 언론개혁 시민연대 주최 『언론개혁을 위한 시민토론회』 발제논문, 2000. 9. 27.
- 김학천, “통합방송법 시행 이후의 성찰”, 『방송문화』, 2000. 10.
- 김호석, “공영방송의 이념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방송 문화연구』, 2000.
- 노성환, “영·미 법원의 취재원 보호시각 차이”, 『신문과 방송』, 2000. 9.
- 박선영, “반론보도문의 내용과 청구방법”, 『방송문화』, 2000. 10.
- 박선영, “반론문의 게재와 실행”, 『방송문화』, 2000. 11.
- 박은희, “통합방송법과 시청자주권”, 한국방송학회·한국 언론정보학회·한국 광고 교육학회 공동주최 『통합방송법 시행 반년 점검, 쟁점과 토론』 세미나 발제논문, 2000. 8. 17.
- 서정우, “오보의 발생과 대책”, 언론중재위원회 개최 부산지방토론회 발제논문, 2000. 9. 26.
- 성낙인, “정보공개법의 정립과 개정방향”, 『디지털콘텐츠』, 2000. 9.
- 안진아, “TV홈부즈맨 프로그램 포맷과 내용에 관한 연구-방송3사 비교평가를 중심으로”, 『저널리즘연구』, 2000. 16호.
- 오상석, “취재현장과 언론윤리강령”, 『언론중재』, 2000 가을호.
- 유일상, “보도의 선정성과 신문윤리”, 한국신문윤리위원

- 회 개최 세미나 발제논문, 2000. 11. 10.
- 이내국, “일본신문협회 새 신문윤리강령 제정”, 『신문과 방송』, 2000. 9.
- 이은택, “과학관련 보도와 언론윤리 : 구제역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2000 가을철 학술대회 발표논문.
- 이재경, “한국신문 오피니언면의 현황과 특성”, 삼성언론재단 주최 『오피니언면의 현황과 발전방향』 세미나 발제논문, 2000. 10. 27.
- 이재경·김진미, “한국 신문기사의 취재원 사용 관행 연구”, 『한국언론학연구』 2, 2000.
- 정걸진, “언론보도에 비친 언론윤리”, 『언론중재』, 2000 가을호.
- 조규승, “‘신종 언론통제 도구’ 명예훼손”, 『기자통신』, 2000. 9.
- 조광희, “명예훼손, 이것만은 알아두자”, 『기자통신』, 2000. 9.
- 조명식, “반론보도 중재결정 이의신청 및 중재불성립결정 사건의 권리구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반론보도청구소송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조준원, “1990년대 손해배상판결의 사회과학적 분석”, 『언론중재』, 2000 가을호.
- 조준원, “징벌 개념 도입, 손해배상액 고액화”, 『기자통신』, 2000. 9.
- 차형근, “명예훼손법, 외국과는 어떻게 다른가?”, 『기자통신』, 2000. 9.
- 채수영, “수용자가 바라본 언론인 직업윤리”, 『언론중재』, 2000 가을호.
- 최현철, “법조출입이 바라본 최근 소송사례”, 『기자통신』, 2000. 9.
- 최경수, “디지털시대의 방송 저작권”, 『방송21』, 2000. 9.
- 최영목, “텔레비전 선정성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한국시청자연대회의 주최 『방송프로그램 저질화 경향과 개선방안』 세미나 발표논문, 2000. 8. 21.
- 황 근, “방송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점검”, 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한국광고교육학회 공동주최 『통합방송법 시행 반년 점검, 쟁점과 토론』 세미나 발제논문, 2000. 8. 17.
- 현경보, “방송내용 규제방식의 분류모델에 관한 연구”, 『방송연구』, 2000. 여름.
- 홍수원, “미 FCC, 방송반론권 규정 시행 보류”, 『신문과방송』, 2000. 11.

외국 문헌

- Kyu Ho Youm, “Editorial Rights of Public Broadcasting Stations vs .Accessfor Minor Political Candidates to Television Debates”, *Federal Communications Law Journal*, Vol. 52, No.3.
- Roy Leeper, “Keegstra and R.A.V.: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anadian and U.S. Approaches to Hate Speech Legislation”, *Communication Law and Policy*, Vol. 5., No. 5. □

On-Line 중재 상담실



장애인으로 잘못 소개한 기사에 대하여

저는 의정부에 사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장애인이 아닌데 ○○신문이 제가 일하는 곳을 취재한 후, 저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장애인으로 소개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장애인 훈련 시설입니다. 저는 장애인은 아니며, 사전에 그런 내용을 기사화한다는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정정보도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ddwoong@lycos.co.kr



귀하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중재신청 관련 안내' 메뉴를 참조하시고, 중재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매체가 어디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냐에 따라 담당 중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단 저희에게 전화 (02-732-6031) 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on-line상의 문제입니다

얼마전 한 언론사가 피해자의 신분을 그대로 노출하며 과장된 표현을 사용, 보도하여 피해자 측이 이에 반론기사나 공식 사과문을 보도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당시 해당 기사는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알아보니 off-line상에 보도가 안 되어, on-line상에서도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과 광고 요구에 대해서도 91년 이후 사과광고는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어째서 위헌인가요? 사과

문이라는 것이 신문에 종종 나는데, 그것 모두 위헌인가요? 이 기사는 인터넷 ○○일보 첫 화면에 무려 10시간 정도 기사가 게재되었고, 주위 사람들은 인쇄매체보다 인터넷을 통해 신문 기사를 접하고 있는 실정인데 off-line이라면 책임이 있고 on-line이라면 선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반론 기사를 요구할 수 없나요?



저희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경우 이를 접수하여 도와드리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중재의 대상이 되는 '언론'의 보도는 현행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및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체, 즉 off-line 상의 각종 신문, 잡지 및 공중파와 유선방송의 보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비록 언론사가 운영하는 뉴스 사이트라 할지라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만 가지고는 저희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실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on-line 상의 보도 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on-line 상의 보도 내용에 의해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형사상의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사죄광고를 명한 판결에 대해 헌법 제19조에 명시된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에 어긋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아닌 법원의 명령 등으로

사과광고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사과 광고 자체가 위헌이라기 보다는 아무도 그러한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즉, 언론사와의 합의에 의해 사과광고를 낼 수 있다면 가능하겠으나 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신청당시 사과하는 내용을 정정보도문 내용에 포함시켜 줄 것을 청구하는 신청인들이 더러 계십니다만 이는 언론사와 합의하지 않으면 힘든 사항이며, 만일 중재부가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사과의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다니는 회사가 현재 배임죄로 검찰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판결이 나지도 않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신문사측이 몇몇 잘못된 사실을 포함하여 회사와 관련된 회사명, 대표이사, 관계회사 등등의 많은 사항들을 보도했습니다. 또한 TV 방영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하였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인터뷰 장면을 방영하였습니다. 이런 처사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okko44@hanmail.net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경우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명의로 중재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보도의 내용이 회사의 혐의사실 및 그로 인한 형사적 조치(구속, 기소 등)에 대한 것이라면 해당 사건이 무죄, 무혐의 및 그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정정보도 청구에 대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시점에서의 반론보도 청구나 사건 종결후 추후보도 청구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내용과 상관없는 사진 게재

주간○○가 커버스토리 기사로 미성년자 매춘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였는데 내부 기사를 읽다보니 한 쪽의 사진에 제 여자친구의 뒷모습 사진이 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은 장소는 테크노마트 문앞에 길가는 사람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옷 입은 스타일과 가방, 머리 스타일이 똑 같았습니다. 비록 뒷모습이긴 하지만 다른 기사도 아니고 미성년자 매매춘에 올려져 있다는 것이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kb747-400@hanmail.net



해당 기사를 확인해 본 결과, 사진 캡션 말미에 사진이 특정기사와 관련 없다는 부분을 명시해 놓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초상권 침해의 문제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문제는 별개로 하고, 저희 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를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허락 없이 촬영되고 게재된 사진이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어(주위 사람들이 본인임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저희 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면 해당 사진이 기사의 내용과 상관이 없다는 내용을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에 대해서는 미리 그러한 내용을 명시해 놓았으므로 정정보도청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문제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통안전시설물 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11월 21일 ○○일보 기사로 인하여 저희 회사는 커다란 고통과 어려움에 놓여 있기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기사에 나온 업체는(물론 실명으로 나오진 않았습디다) 저희 업체는 아닙니다만 유사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로 인해 수주 물량이 현격히 줄었고, 모 벤처투자업체에서 투자 결정을 반복해 그동안 기획해 왔던 많은 일들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과 기자에게 해명

을, 요구했던 메일의 내용, 기자의 답변 메일 등을 첨부하여 보내드리오니 중재 요청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jinamom@lycos.co.kr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미루어보아 귀하가 소속한 회사 명의의 중재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는 주장이십디만, 해당 보도에서 귀하의 회사에 대해(이니셜 등으로라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회사가 해당 보도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보도가 회사가 종사하고 있는 업계 전체를 문제삼아 얘기하고 있다면 업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연합회 등)의 명의의 중재신청이 가능할 것이며, 만일 그러한 연합회가 없다면 동종업계의 업체들이 연명으로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촬영에 대해

저는 원하지 않은 촬영을 당한 사람입니다. ○○방송의 기자이신 모양인데, 저희는 찍지 말라고 했고, 일부러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린 학생이라 그런지 저희 말을 무시하고 바웃하시는 듯 말씀하시며 계속 카메라를 들이대시더군요. 이런 경우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그런 방송이 나오길 원하지 않습니다.

violetplace@hanmail.net



귀하를 촬영한 화면이 방송되고 난 후 그 내용을 보아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임을 충분히 알 수 있게 방송이 되었는지, 방송의 내용과 화면이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방송의 내용이 귀하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의 명의로 중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의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추측기사

저는 A라는 기업에 재직 중에 있는 직장인입니다. 다

음과 같은 내용이 궁금하여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A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서술하여 기사화하였다면 이는 중재의 대상이 되는지요?

둘째, 만약 이러한 기사화한 내용의 취재원이 A회사 직원으로 통상인이라면 그 말을 믿을 만한 위치에 있는 책임 있는 직원이었다면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요?
drlaw@freechal.com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거나 사업의 한쪽 부분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했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명의로 중재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회사 직원이 취재원이었다 하더라도 회사 차원의 중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취재원이 누구였나 하는 문제는 회사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중재심리 과정에서 언론사는 믿을 만한 회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전 잊고 싶은 기억을 한 잡지에서 보았습니다. 6년전 살인사건으로 전 고모와 사촌동생을 잃었습니다. 이 잡지는 살해자의 부자 상봉 기사관련 기사를 보도하면서 돌아가신 저희 고모와 동생이름을 실명으로 기재하였으며, 잊지도 않은 사실을 보도하여 살인자를 동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고모가 동생을 매춘시켰다는 기사내용으로써 아무리 생존해 계시지 않지만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살해자는 동정을 받고 비명에 가신 분은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생존해 계시지 않지만 고모에 억울함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oms0202@chollian.net



고인에 대한 잘못된 기사가 보도된 경우에는 직계가족 명의의 중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직계가족이 직접 심리에 참석하기 곤란한 경우는 신청은 직계가족 명의로 하되,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리로 출석하

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02-732-6031로 전화하시기 바라며,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하셔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도 언론중재신청이 가능한지요?

특정 지역신문의 편파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금융기관 대표자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언론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 지 궁금하여 이 글을 씁니다. 제가 문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직 기자임을 빌미로 자신과 직접 관련된 과거 1년3개월전에 있었던 대졸당시의 일을 이제와서 거론하며 상대방 단체의 의견이나 입장은 전혀 무시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입장만 악의적으로 기사화한 경우, 중재신청이 가능한지요?

또한 전체적인 기사내용과 관련되지 않는 내용이나, 또 사실이 아닌 기사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로 밖에 볼 수 없는 내용을 보도하여 독자로 하여금 기사관련 단체나 개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도록 표현한 기사에 대해서도 중재신청이 가능한지요?



기자의 보도가 고의에 의한 것이었는지의 여부를 막론하고 신문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중재신청의 대상이 되는 보도내용은 사실적 주장에 대한 부분이며, 사실에 대한 평가(논평) 부분은 중재신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가 된 보도의 경우 기자 개인의 논평이라기 보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보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정정이나 반론을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가 전남 지역신문의 기사이므로, 중재신청은 광주중재부(062-676-0360)으로 하셔야 하며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중재신청서 양식 및 자세한 신청요령은 저희 홈페이지 중재신청 관련안내 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찾기를 고소합니다

○○방송 모 프로그램 편지쇼란 코너에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서 제 글이 방송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각색을 했으나 원본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 하기에, 방송용으로 문장 정도 고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낸 사연은 우연히 얻은 산삼을 아이들에게 끓여 먹이면서 생긴 에피소드를 썼을 뿐인데 방송된 내용은 아이들 얘기는 생략하고, 남편이 정력제로 산삼물을 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도둑고양이처럼 훔쳐 먹으려고, 전 그걸 못먹게 하려 인삼가루로 가짜 산삼물을 만들어 먹고 새벽엔 산삼효과를 시험하려 남편이 저를 어떻게 했다는 등...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방송해야 재미있고 시청률이 오르는 건가요? 지금 미칠 지경입니다. 사진까지 방영된 해당 방송을 본 사람들에게 일일이 해명할 수도 없고...



본인에 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이 방송되어 피해를 입으셨다면 저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서 작성 요령 등은 저희 홈페이지 [중재신청 관련안내] 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02-732-6031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 여부를 검토하신 후 연락 주십시오.



투표결과를 왜곡보도

대부분의 일간지에서 근거없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예과생 6,760명 중 32%인 2,166명만 수업을 거부한다는 기사입니다. 분명히 투표는 예과생, 본과생 모두 같은 투표함에다가 했고 개표도 각 학교별로 한 것이 아니고 개표함의 표를 모두 섞어서 했습니다. 도저히 예과생을 따로 계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디다. 그런데 수치까지 들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과보도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피해자 중의 한 명이므로 사과기사를 요구할 수 있겠조?

dongghgh@hanmail.net



해당 보도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라 자세한 답변은 힘들지만, 보도가 귀하 개인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면 개인 명의의 중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투표 과정이나 결과를 보도한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투표를 주관한 단체(의사협회 등) 명의의 중재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언론중재 신청과 처리 절차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업무

*중재업무

•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자와 해당 언론기관간의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회복시켜 주고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업무

•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언론기관의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하여 건전한 언론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재신청서의 제출요령

- 중재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문제가 된 보도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보도문 및 중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을 할 때는 반론보도

청구, 정정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대리인(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이 중재를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서양식은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나 지방사무소에서 무료로 배부하며, FAX나 인터넷 홈페이지(www.pac.or.kr)를 이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 및 처리절차

*중재신청의 종류

• 반론보도청구

언론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자신의 반론을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정보도청구

허위보도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정정기사를 게재 또는 방송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후보도청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

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형사절차가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자신의 결백을 추후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기간

•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보도가 있는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추후보도청구의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재사건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중재부의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할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중재심리

• 중재심리는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

는 중재부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관할 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중재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출석 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중재기일에 해당 중재부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중재대리인에 대한 중재부의 허가**

• 변호사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의 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중재기일에 중재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 및 합의간주된 경우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합의간주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직권에 의한 중재결정 및 중재불성립결정**

•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중재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중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또한 중재부는 중재에 적합치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합니다.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중재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중재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취하 및 취하간주**

• 중재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재기일에는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신청

•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않아도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의 신청은 중재불성립결정 또는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전국 15개의 중재부,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

• 언론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7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에는 사무처가 있습니다.

• 75명의 중재위원들은 각 시도별로 설치된 중재부에 소속되어 중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5인 이내로 구성된 중재부는 서울에 5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춘천, 청주, 전주, 창원, 제주에 각 1개씩 모두 15개의 중재부가 있습니다.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이 맡고 있습니다.

***중재부의 관할구역**

•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합니다.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방송법, 선거법 중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조항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하 “언론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는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언론사가 반론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일간신문과 주 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및 통신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같은 정기간행물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반론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

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 ①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 및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되, 위원의 5분의 2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로 하고 위원 중 5분의 1 이상은 언론계 인사 중에서 위촉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중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⑤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

한 자를 포함한다)와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아니한다.

⑦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중재절차등) ①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언론보도로 인한 반론보도청구권 또는 민법 제764조에 의해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권리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제16조 제1항이 정하는 기간(제16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 협의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 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중재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어야 한다.

③ 중재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중재사건의 대상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언론사에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거나 중재에 필요한 증

거소사를 할 수 있다.

④ 중재는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지체없이 중재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출석을 요구받는 자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출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중재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이행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외에는,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중재결정을 할 수 있고,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재불성립 결정을 한다. 다만,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재신청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⑦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⑧ 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⑨ 중재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사무처의 조직, 시정권고의 방법과 절차, 중재위원회 위원의 수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

①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제18조 제6항의 중재불성립 결정 또는 제7항의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반론보도청구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의한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반론보도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697조 및 제705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의 2(불복절차) ①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이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반론보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언론사가 이미 반론보도청구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반

론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 게재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20조(추후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된다.

③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언론중재위원의 위촉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 장관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30

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의 대우) 중재위원회는 그 위원에 대하여 중재위원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의 지급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24조(중재신청)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중재신청서를 중재위원회 사무처 또는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26조(중재관할권등) ①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다만, 동일한 관할구역 안에 수개의 중재부가 설치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재사건을 담당할 관할중재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외지사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중재관할권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③ 위원장은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중재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중재절차) ① 중재부의 결정은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5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② 중재부의 장은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중재위원회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상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피신청인이 1차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중재부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게재를 요하는 반론보도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게재방법 등을 정하여 2차 중재기일출석요구서와 함께 피신청인에게 송부한다.

⑤ 당사자가 법 제18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새로운 중재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당해 중재부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신청이 이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시 중재기일을 지정한다.

⑦ 중재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⑧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재에 관한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중재화해조서 및 중재결정문 등) ①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합의성립통지서 및 그 중재조서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정 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하는 때에는 중재결정문 또는 중재불성립결정문을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서등본을 그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제29조(시정권고) ① 법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월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④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는 중재위원회 명의로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통보받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⑥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받은 시정권고소위원회는 당해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권고를 철회한다.

⑦ 시정권고소위원회의 운영, 시정권고의 세부절차 기타 필요

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0조(사무처) ① 중재위원회의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각 중재부에 사무처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사무처 직원의 정원·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관계서류의 보존) ①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중재절차에 관한 조서와 관계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을 위하여 법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등) ① 중재위원회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는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

재) 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신청·관할·중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4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방 송 법

제91조(반론보도청구권) ①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방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반론보도청구권은 당해 방송이 행하여진 날부터 6월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된다.

② 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주소를 기재하며, 이의 대상인 보도내용과 반론보도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업자는 반론보도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요구받은 날부터 9일 이내에 무료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와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한정되며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및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반론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어야 한다.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 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방송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⑧ 방송에 의한 분쟁의 중재 및 심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가 이를 행하며,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법 제18조·제19조·제19조의2·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법 제20조(방송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

표하여야 한다.

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⑦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정기간행물"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④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 보도청구)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후보자나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 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후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후보자나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

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④ 방송법 제91조(반론보도청구권) 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선거방송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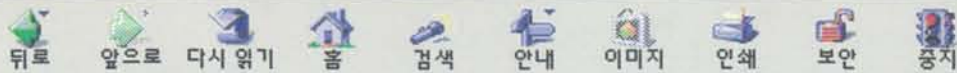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5항 및 제6항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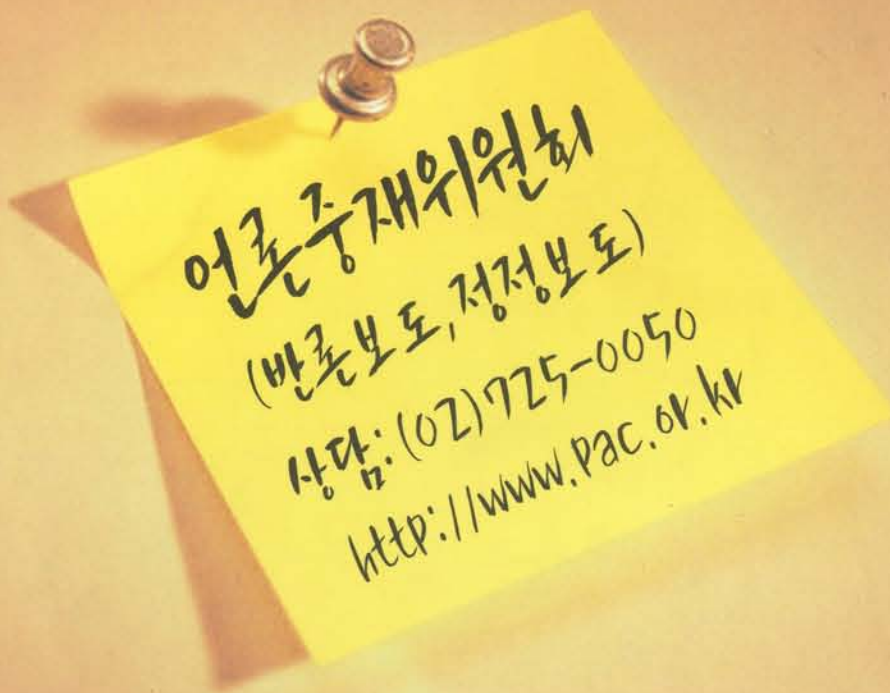
나. 제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



찾아가기: <http://www.pac.or.kr/>

언론중재위원회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반론보도, 정정보도)
상담: (02)725-0050
<http://www.pac.or.kr>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언론중재위원회로 연락해 주십시오. 비용없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통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 드립니다.
- 언론중재 신청기간은 보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신청시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 중재신청이 접수되면 14일(직권 중재결정의 경우 21일) 이내에 중재를 해 드립니다.
- 합의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중재부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언론중재위원회로 연락해 주십시오. (전국 15개 중재부)



언론중재위원회

상담: (02)725-0050, (02)732-6031

<http://www.pac.or.kr>